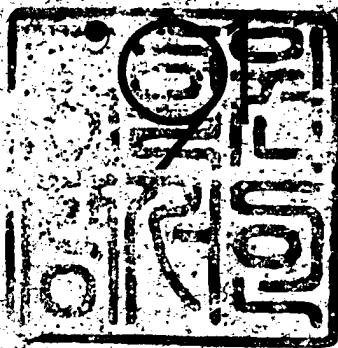


# 北韓概要



統一院



## 책을 내면서

南北 分斷 45년째를 맞았던 올해에는 국내외의 統一 環境이 큰 변화를 거듭하였다.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冷戰時代의 종식과 더불어 화해와 협력, 상호의존성 증대라고 하는 큰 흐름을 주도하여 世界秩序의 재편을 진척시키고 있다. 이같은 국제정치적 조류의 연장선상에서 獨一統一이 실현되었고, 이는 또한 소련·동구에서 이루어진 改革·開放, 민주화와 함께 韓半島 統一에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의 총리를 대표로 하는 高位級會談이 실현되었는가 하면, 비록 초보적인 단계이나 體育人과 藝術人 교환방문 및 物的 交流도 기대감 속에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平和統一을 향해 기울인 남북한의 적응 노력은 내외적 여건이 성숙된데 비해서는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北韓體制의 경직성과 개방에 따른 被害意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外部世界에 대한 변화에 못지 않게 북한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統一課題를 풀어나가는 노력의 첫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南北 開放時代, 協力時代에 대비하고 평화통일을 모색하기 위한 북한 실상의 재평가 작업은 그동안 統一院 調查研究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이었다. 정부내의 北韓 狀況室로서, 그리고 북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창구 역할을 해온 조사연구실로서 北韓實相 再評價 작업에 열성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집약하여 北韓 實態를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86년도판 「北韓概要」를 혁신, 이번에 다시 修整 補完版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에 출간한 수정 보완판은 지난 5년동안 변화한 북한의 제반 실상과 자료를 1990년도 말 현재로 최대한 再作成, 體系化 하였다.

물론 이제까지 閉鎖體制를 유지해 온 북한 실정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으며, 論者에 따라서는 見解를 달리하는 점도 지적하게 되리라고 본다. 또한 이 책자가 概要이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들을 다 망라하지 못한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版을 거듭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 대상인 北韓의 實相을 올바르게 理解하고 評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0년 12월

統一院 調查研究室



# 目 次

## I. 地 誌

1. 自然環境 .....23
  - 가. 位置 및 面積 .....23
  - 나. 地形 및 氣候 .....24
  - 다. 地下資源 .....25
2. 社會環境 .....27
  - 가. 人 口 .....27
  - 나. 行政區域 .....30

## II. 政 治

1. 政治理念 .....37
  - 가. 主體思想 .....37
  - 나. 革命路線 .....41
2. 政治體制 .....47
  - 가. 朝鮮勞動黨 .....47
  - 나. 政權機關 .....65
3. 政治權力 .....86
  - 가. 政治權力的 變遷 .....86
  - 나. 支配層的 變化 .....93

## III. 經 濟

1. 經濟政策의 基調 .....99
  - 가. 自立的 經濟建設 .....99
  - 나. 重工業 優先政策 .....100
  - 다. 軍事·經濟의 並進 .....101
2. 經濟體制 .....102
  - 가. 社會主義的 所有制度 .....102
  - 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105

|                     |     |
|---------------------|-----|
| 3. 管理原則 및 體系        | 108 |
| 가. 靑山里精神, 靑山里方法     | 108 |
| 나. 大安의 事業體系         | 109 |
| 다. 獨立採算制            | 111 |
| 라. 社會主義 勞力競爭        | 114 |
| 4. 分野別 管理           | 116 |
| 가. 農業管理             | 116 |
| 나. 工業管理             | 119 |
| 다. 流通管理             | 122 |
| 라. 價格管理             | 124 |
| 마. 分配管理             | 126 |
| 5. 經濟計劃 및 實績        | 128 |
| 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基盤構築期 | 128 |
| 나. 社會主義의 經濟計劃 推進    | 134 |
| 6. 生産部分別 現況         | 141 |
| 가. 國民所得             | 141 |
| 나. 財政 및 金融          | 146 |
| 다. 產業部門別 實態         | 164 |
| 라. 貿易 및 對外經濟協力      | 192 |

#### IV. 科學 · 技術

|                   |     |
|-------------------|-----|
| 1. 科學技術 政策        | 209 |
| 가. 政策基調           | 209 |
| 나. 科學技術政策의 展開過程   | 210 |
| 2. 科學技術 行政 및 研究體系 | 217 |
| 가. 科學技術 行政體系      | 217 |
| 나. 科學技術 教育 및 研究體制 | 221 |
| 다. 科學技術 研究機關      | 222 |
| 3. 對外協力           | 230 |
| 가. 科學技術 協定        | 230 |
| 나. 中 · 蘇와의 協力 實態  | 231 |

## V. 社 會

|                     |     |
|---------------------|-----|
| 1. 社會政策 및 構造 .....  | 235 |
| 가. 社會政策의 基調 .....   | 235 |
| 나. 社會階層 構造 .....    | 236 |
| 2. 社會統制와 社會問題 ..... | 239 |
| 가. 組織生活 統制 .....    | 239 |
| 나. 經濟·社會的 統制 .....  | 240 |
| 다. 社會問題 .....       | 241 |
| 라. 社會的 不條理 .....    | 242 |
| 마. 特別 獨裁對象區域 .....  | 244 |
| 3. 住民生活 .....       | 247 |
| 가. 衣食住生活 .....      | 247 |
| 나. 職場生活 .....       | 254 |
| 다. 家庭生活 .....       | 258 |
| 라. 餘暇生活 .....       | 259 |
| 4. 勞動問題 .....       | 261 |
| 가. 勞動政策 .....       | 261 |
| 나. 勞動組織과 勞動條件 ..... | 261 |
| 5. 社會福祉 .....       | 264 |
| 가. 社會保障制度 .....     | 264 |
| 나. 社會福祉施設 .....     | 265 |
| 다. 社會保障 .....       | 267 |
| 6. 保健·醫療 .....      | 269 |
| 가. 保健·醫療政策 .....    | 269 |
| 나. 醫療施設 .....       | 270 |
| 다. 保健·醫療要員 養成 ..... | 272 |
| 라. 東 醫 學 .....      | 273 |
| 7. 道德·風俗 .....      | 274 |
| 가. 道 德 .....        | 274 |
| 나. 冠婚喪祭 .....       | 276 |

|                       |     |
|-----------------------|-----|
| 다. 名 節 .....          | 278 |
| 라. 民俗놀이 .....         | 279 |
| 8. 觀 光 .....          | 280 |
| 가. 觀光政策 .....         | 280 |
| 나. 觀光事業 推進實態 .....    | 281 |
| 다. 주요 觀光資源 開發現況 ..... | 282 |
| 라. 觀光 便宜施設 및 交通 ..... | 284 |

## VI. 教育·文化

|                    |     |
|--------------------|-----|
| 1. 教 育 .....       | 291 |
| 가. 教育政策 .....      | 291 |
| 나. 教育體系 .....      | 292 |
| 다. 教育內容 .....      | 294 |
| 라. 教員養成 .....      | 295 |
| 마. 特殊教育 .....      | 296 |
| 2. 文學·藝術 .....     | 297 |
| 가. 文藝政策 및 理論 ..... | 297 |
| 나. 文藝團體 .....      | 300 |
| 다. 分野別現況 .....     | 302 |
| 3. 言論·出版 .....     | 313 |
| 가. 言論政策 .....      | 313 |
| 나. 言論現況 .....      | 314 |
| 다. 出 版 .....       | 323 |
| 4. 體 育 .....       | 324 |
| 가. 體育政策 .....      | 324 |
| 나. 指導·養成機關 .....   | 325 |
| 다. 主要 體育大會 .....   | 328 |
| 라. 體育施設 .....      | 329 |
| 5. 宗 教 .....       | 332 |
| 6. 歷 史 .....       | 336 |

|               |     |
|---------------|-----|
| 7. 言 語 .....  | 338 |
| 8. 文化施設 ..... | 341 |

## VII. 外 交

|                      |     |
|----------------------|-----|
| 1. 外交政策 .....        | 349 |
| 가. 政策基調 .....        | 349 |
| 나. 政策變遷 過程 .....     | 352 |
| 2. 外交活動 .....        | 356 |
| 가. 政策決定 및 執行機構 ..... | 356 |
| 나. 主要 外交活動 .....     | 358 |
| 다. 外交現況 .....        | 361 |

## VIII. 軍 事

|                      |     |
|----------------------|-----|
| 1. 政策基調 .....        | 399 |
| 가. 軍事政策 .....        | 399 |
| 나. 軍事戰略 .....        | 402 |
| 2. 人民軍의 形成과 特徵 ..... | 404 |
| 가. 軍의 形成過程 .....     | 404 |
| 나. 軍의 性格과 特徵 .....   | 406 |
| 3. 軍事制度 .....        | 407 |
| 가. 軍事機構 .....        | 407 |
| 나. 軍事編制 .....        | 412 |
| 다. 軍事教育 .....        | 413 |
| 라. 軍隊服務 .....        | 416 |
| 4. 軍事現況 .....        | 417 |
| 가. 兵 力 .....         | 417 |
| 나. 豫備兵力 .....        | 420 |
| 다. 軍 事 費 .....       | 423 |
| 라. 兵器生産 .....        | 425 |
| 마. 軍事同盟 .....        | 427 |

## IX. 統 一

|                         |     |
|-------------------------|-----|
| 1. 對南戰略 .....           | 431 |
| 가. 對南戰略의 基調 .....       | 431 |
| 나. 對南戰術의 變遷過程 .....     | 434 |
| 2. 北韓의 統一政策 .....       | 439 |
| 가. 統一政策의 基調 .....       | 439 |
| 나. 統一政策의 變遷 .....       | 442 |
| 다.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 | 451 |
| 3. 南北對話 .....           | 455 |
| 가. 北韓의 對話戰略과 運用 .....   | 455 |
| 나. 會談推進 背景과 過程 .....    | 459 |
| 다. 分野別 對話進行 .....       | 462 |
| 라. 南北韓 交流·協力實態 .....    | 475 |

## 資 料

|                   |     |
|-------------------|-----|
| • 북한 헌법 .....     | 483 |
| • 북한 로동당 규약 ..... | 499 |
| • 북한 주요 인물록 ..... | 518 |

# I. 地誌





# 1. 自然環境

## 가. 位置 및 面積

우리나라는 地理的으로 아시아 大陸의 동북쪽에 위치한 韓半島이다. 동쪽과 남쪽은 東海와 大韓海峽을 사이에 두고 日本列島와, 서쪽과 북쪽은 黃海와 鴨綠江·豆滿江을 사이에 두고 中國大陸과 소련의 시베리아 地方과 접하고 있다.

北韓 地域은 우리나라 國土중에서 1953년 7월의 韓國停戰協定에 의해 설정된 軍事分界線(그 以前은 北緯 38 度線) 以北의 地域으로 그 東西南北端은 <표 I-1>과 같으며, 面積은 우리나라 전체面積 221,336km<sup>2</sup>의 55%인 122,762km<sup>2</sup>이다.

### 北韓 地域의 境界

<표 I-1>

| 方 向 | 經 緯 度           | 該 當 地 名                             |
|-----|-----------------|-------------------------------------|
| 東 端 | 東經 130度 00分 03秒 | 咸鏡北道 先鋒郡 牛岩里<br>(分斷前: 雄基郡 蘆西面)      |
| 西 端 | 東經 124度 11分 00秒 | 平安北道 龍川郡 비단섬勞動者區<br>(分斷前: 龍川郡 馬鞍島)  |
| 南 端 | 北緯 37度 41分 0秒   | 黃海南道 康翎郡 登岩里)<br>(分斷前: 黃海道 甕津郡 鳳崗里) |
| 北 端 | 北緯 43度 00分 36秒  | 咸鏡北道 穩城郡 豐西里<br>(分斷前: 現在와 같음)       |

韓半島 南北의 총 길이는 약 1,100km이고東西의 길이는 좁은 곳이 200km, 넓은 곳이 320km이다. 海岸線 길이는 총 8,693km인데 이중 北韓地域의 海岸線은 2,495km이다. 國境線은 총 1,375.5km인데 이중 中國과는 1,360km, 蘇聯과는 16.5km이다.

### 나. 地形 및 氣候

우리나라는 北部와 東部가 높고 西海岸과 南海岸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北韓地域은 그 면적의 약 80%가 山地로 구성되어 있다. 2,000m 이상의 산은 북한지역에만 약 60여개가 있다.

#### 北韓 地域의 주요 山·平野·河川

〈표 I-2〉

| 구 분 | 이 름       | 높이, 넓이, 길이           |
|-----|-----------|----------------------|
| 山   | 白 頭 山     | 2,750m               |
|     | 冠 帽 山     | 2,540m               |
|     | 北 水 白 山   | 2,521m               |
|     | 遮 日 峰     | 2,505m               |
| 平野  | 平 壤 準 平 原 | 약 500km <sup>2</sup> |
|     | 安 州 平 野   | 약 300km <sup>2</sup> |
|     | 咸 興 平 野   | 약 300km <sup>2</sup> |
|     | 延 白 平 野   | 약 400km <sup>2</sup> |
|     | 載 寧 平 野   | 약 500km <sup>2</sup> |
| 河川  | 鴨 綠 江     | 790.4km              |
|     | 豆 滿 江     | 525.2km              |
|     | 大 同 江     | 431.1km              |
|     | 清 川 江     | 212.8km              |
|     | 禮 成 江     | 174.3km              |

북한 지역은 氣候帶上으로 北溫帶의 남쪽에 있으므로 비교적 溫和하며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하다. 1년 平均氣溫이 8°C~12°C로서 사람의 활동에 비교적 적합한 편이다.

북한지역의 年中 平均降雨量은 1,000mm정도이다. 그중 50~60%는 6~8월의 3개월 사이에 내린다. 최근에는 寒冷前線의 영향으로 여름철 장마현상이 없어지고 가뭄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 北韓 地域 年平均 氣溫과 降雨量

〈표 I-3〉 (1988년)

| 地 域 | 平均氣溫(°C) | 降雨量(mm) |
|-----|----------|---------|
| 平壤  | 10.3     | 850.6   |
| 新義州 | 9.8      | 1,194.0 |
| 海州  | 11.3     | 856.1   |
| 沙里院 | 10.7     | 711.5   |
| 元山  | 10.8     | 1,424.9 |
| 咸興  | 10.0     | 941.7   |
| 清津  | 7.6      | 545.6   |
| 江界  | 7.3      | 890.1   |
| 惠山  | 3.0      | 621.6   |

\* 출처 : 「조선중앙년감」(1989)

## 다. 地下資源

북한 지역에는 360여종의 지하자원이 있으며, 有用鑛物만 200여 종에 이른다. 그중 埋藏量이 풍부한 것으로는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흑연, 중정석, 운모, 형석, 은, 철, 연, 아연, 알루미늄, 석탄 등으로 좁은 면적에 비해 多種多樣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 主要 鑛物 埋藏 및 分布 現況

〈표 I - 4〉

| 鑛 種                  | 埋 藏 量                          | 分 布 地                                  |
|----------------------|--------------------------------|--|
| 鐵(Fe)                | 20~40억톤                        | 함북 무산, 함남 이원·허천, 황남<br>은율·재령, 평남 개천·강서 |
| 重石(Wo <sub>3</sub> ) | 20~30만톤                        | 황북 신평, 함남 대흥, 평남 양덕,<br>평북 창성          |
| 몰리브덴                 | 1~3천톤                          | 황북 수안, 함북 종성·어랑, 강원<br>금강              |
| 망간(Mn)               | 10~30만톤                        | 함북 부평, 강원 금강                           |
| 니켈(Ni)               | 2~3만톤                          | 함남 광천, 함북 부운                           |
| 石 炭                  | 80억톤<br>(무연탄 55억톤<br>유연탄 25억톤) | 평남 남북부, 함북 안주                          |
| 납(Pb)                | 400~600만톤                      | 함남 광천, 평남 성천·개천, 자강<br>용림·송원·위원        |
| 亞鉛(Zn)               | 1,000~2,000<br>만톤              | 〃                                      |
| 金(Au)                | 1~2천톤                          | 평북 동창·운산, 황북 수안·연산,<br>함남 허천, 강원 금강    |
| 銀(Ag)                | 3~5천톤                          | 〃                                      |
| 마그네사이트<br>(Mgo)      | 30~40억톤                        | 함남 광천, 양강 백암·운홍                        |

## 2. 社會環境

### 가. 人 口

북한은 1964년 이후 人口統計를 일체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하여 算出한 바에 의하면, 북한인구는 1989년말 현재 약 2,137만명으로 推算된다.

예컨대 1990년 4월의 最高人民會議 9期 代議員은 총 687명으로 발표되었는데, 북한의 1개 選舉區는 인구 3만명을 단위로 설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基準으로 計算하면 북한인구는 대략 2,061만명이 된다. 이를 통해 北韓人口의 地域別 分布를 개략적으로 분석할 경우 西海岸沿岸의 平野地帶에 총인구의 59%가 살고 있으며, 북부지방의 자강·양강의 兩道에는 겨우 8.6%만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總人口의 45%가 都市地域에, 그리고 55%가 農村 또는 여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北韓人口 推計

〈표 I - 5〉

| 年 度                        | 總 人 口      | 增加率(%) | 性別構成(%) |      |
|----------------------------|------------|--------|---------|------|
|                            |            |        | 男       | 女    |
| 1946年末                     | 9,257,000  | —      | 50      | 50   |
| 1949年末                     | 9,622,000  | 2.25   | 49.7    | 50.3 |
| 1953. 12. 1                | 8,191,000  | 0.7    | 46.9    | 53.1 |
| 1956. 9. 1                 | 9,359,000  | 1.34   | 47.8    | 52.2 |
| 1959. 12. 1                | 10,392,000 | 2.73   | 48.3    | 51.7 |
| 1960年末                     | 10,789,000 | 2.8    | 48.4    | 51.6 |
| 1963. 10. 31 <sup>1)</sup> | 11,568,000 | 2.99   | 48.7    | 51.3 |
| 1967 <sup>2)</sup>         | 1,040만     |        |         |      |

| 年 度                | 總 人 口     | 增加率(%) | 性別構成(%) |   |
|--------------------|-----------|--------|---------|---|
|                    |           |        | 男       | 女 |
| 1968 <sup>3)</sup> | 1,076만    |        |         |   |
| 1970 <sup>4)</sup> | 1,380~90만 |        |         |   |
| 1974 <sup>5)</sup> | 1,680만    |        |         |   |
| 1976 <sup>6)</sup> | 1,640만    |        |         |   |
| 1979 <sup>7)</sup> | 1,720만 이상 |        |         |   |
| 1983 <sup>8)</sup> | 1,872만    |        |         |   |
| 1989 <sup>9)</sup> | 2,061만    |        |         |   |

- \* 출처 : 1) 1963년 이전은 「조선중앙년감」(1964), p. 316.  
 2) 「조선중앙년감」(1968), p. 180.  
 “總人口의 1/4인 290만명이 공부……”에 의거 逆算  
 3) 「조선중앙년감」(1969), p. 226.  
 “總人口의 1/4인 269만명이 공부……”에 의거 逆算  
 4) 「로동신문」(1970. 11. 3), 노동당 5차대회 보고중 공산품 총생산량에 대한 1인당 생산량 발표에 의거 逆算  
 5) 「조선중앙년감」(1975), p. 337.  
 “總人口의 1/3인 560만명이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에……”에 의거 逆算.  
 6) 「조선중앙년감」(1976), p. 186. 김일성의 일본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중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인 820만명이 공부……”에 의거 逆算.  
 7) 「로동신문」(1979. 9), 北韓政權樹立 31주년 기념 박성철 보고중에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860여만명이 공부……”에 의거 逆算.  
 8) 「조선중앙년감」(1984), 김일성 신년사 중에서 “15억m의 천을 생산하면 우리나라 인구 한사람당 천이 83cm씩 차례지게 되는데……”에 의거 逆算.  
 9) 1990. 4. 최고인민회의의 9기대의원 687명 선출을 근거로 逆算.

## 北韓의 地域別 人口推計

〈표 I - 6〉

(單位: 名)

| 年度<br>地域 | 1990      | 1991      | 年度<br>地域 | 1990       | 1991       |
|----------|-----------|-----------|----------|------------|------------|
| 平壤       | 3,288,042 | 3,334,702 | 咸鏡北道     | 2,055,035  | 2,084,178  |
| 南浦       | 790,399   | 801,614   | 黃海南道     | 2,023,407  | 2,052,120  |
| 開城       | 379,392   | 384,774   | 黃海北道     | 1,612,406  | 1,635,282  |
| 平安南道     | 2,813,803 | 2,853,737 | 江原道      | 1,549,174  | 1,571,149  |
| 平安北道     | 2,497,641 | 2,533,088 | 慈江道      | 1,201,413  | 1,218,461  |
| 咸鏡南道     | 2,845,423 | 2,885,801 | 兩江道      | 663,943    | 673,367    |
|          |           |           | 계        | 21,720,078 | 22,028,273 |

\* 산출근거: ① 1990年度 地域別 人口는 1990년 4월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選舉區를 기준으로 산출.

② 1991년도는 1989年度 인구증가율 기준으로 산출.

## 北韓의 主要 都市別 人口推計

〈표 I - 7〉

(單位: 名)

| 年度<br>地域 | 1990    | 1991    | 年度<br>地域 | 1990    | 1991    |
|----------|---------|---------|----------|---------|---------|
| 清津市      | 663,925 | 673,340 | 金策市      | 189,697 | 292,389 |
| 新義州市     | 316,155 | 320,644 | 咸興市      | 790,394 | 801,611 |
| 龜城市      | 189,696 | 192,386 | 新浦市      | 158,079 | 160,322 |
| 平城市      | 252,927 | 256,518 | 元山市      | 284,542 | 288,580 |
| 順川市      | 474,236 | 480,967 | 沙里院市     | 284,541 | 288,580 |
| 熙川營      | 189,697 | 192,389 | 松林市      | 94,848  | 96,193  |
| 江界市      | 252,927 | 256,517 | 海州市      | 221,310 | 224,454 |
| 惠山市      | 221,316 | 224,457 | 端川市      | 347,775 | 352,711 |

\* 산출근거: 〈위의 표〉와 同一.

## 나. 行政區域

北韓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 6道, 9市, 89郡이었으나, 1952년 12월 行政體系와 行政區域 개편을 통해 4단계 행정구역체계인 道(특별시), 市·郡(구), 里(동)의 行政單位중 面을 폐지하여 道(特別市, 直轄市), 市·郡(區域), 邑·里(洞·勞動者區)의 3단계 행정구역체계로 개편하고 郡지역을 재분할하여 그 수를 증가시켰다.

## 行政區域 現況

〈표 I-8〉

(1990년 현재)

| 區 分   | 市(區域)  | 郡(邑)     | 洞   | 里     | 勞動者區 |
|-------|--------|----------|-----|-------|------|
| 平壤특별시 | (18)   | 4(4)     | 253 | 132   | 5    |
| 南浦직할시 | (5)    | 1(1)     | 61  | 37    | —    |
| 開城직할시 | 1      | 3(3)     | 20  | 66    | 1    |
| 平安南道  | 4      | 15(15)   | 33  | 395   | 29   |
| 平安北道  | 2      | 23(23)   | 56  | 509   | 33   |
| 慈江道   | 3      | 15(15)   | 61  | 243   | 22   |
| 兩江道   | 1      | 11(11)   | 23  | 170   | 37   |
| 黃海南道  | 1      | 19(19)   | 27  | 415   | 7    |
| 黃海北道  | 2      | 14(14)   | 42  | 279   | 6    |
| 咸鏡南道  | 3(6)   | 15(15)   | 118 | 482   | 35   |
| 咸鏡北道  | 3(8)   | 14(14)   | 108 | 183   | 37   |
| 江原道   | 1      | 16(16)   | 42  | 390   | 11   |
| 合 計   | 21(37) | 150(150) | 844 | 3,398 | 223  |

특히 북한은 鑛山, 林産事業所, 工場·企業所등으로 人口가 집중되어 일종의 취락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곳에「勞動者區」를 설치하였다.北韓은 1949년 평양시를 特別市로 승격시킨 이래 35차에 걸친 행



정구역개편을 거쳐 1990년 10월 현재, 9個 道, 1個 特別市, 2個 直轄市, 21個 市, 150個 郡, 37個 區域, 4242個 里·洞, 150個 邑, 223個 勞働者區의 行政區域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行政區域 改編은 ① 中央集權制의 강화, ② 金日成偶像化를 위한 地名改名, ③ 南北韓을 같은 수준으로 두기 위한데 그 특징이 있다.

### 行政區域 改編 內容

〈표 I-9〉

| 時 期          | 內 容   |
|--------------|---|
| 19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壤市를 특별시로 승격</li> <li>◦ 京畿道에 있던 連川郡과·함북의 元山市, 文川郡, 安邊郡을 분리 강원도로 통합, 강원도 신설</li> </ul>  |
| 1949. 1.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北의 江界郡 慈城郡, 厚昌郡, 渭原郡, 楚山郡, 熙川郡과 咸南의 長津郡 일부를 통합하여 慈江道 신설</li> </ul>  |
| 19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城市와 開豐郡을 통합하여 開城地區 신설, 중앙 직속으로 운영</li> </ul>  |
| 1952. 12.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面을 폐지</li> <li>◦ 面을 정리 병합하여 郡을 증설(98個郡→168 個郡)</li> <li>◦ 里를 10,120개에서 3,658개로 통합 개편</li> <li>◦ 郡의 중심지를 邑으로 호칭</li> <li>◦ 勞働者區 설치</li> <li>• 4 단계 행정체제를 3단계로 개정</li> </ul>   |
| 1954. 10.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江道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咸北 산악지대를 惠山市와 10개군을 통합</li> </ul> </li> <li>◦ 黃海道를 南·北道로 분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黃海北道는 沙里院, 松林市와 16개군으로 신설</li> <li>• 黃海南道는 海州市와 16개군으로 신설</li> </ul> </li> </ul> |
| 19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開城市와 開豐·板門郡을 통합, 開城직할시로 승격</li> </ul>  |
| 1955. 2.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내의 里를 洞으로 개칭</li> </ul>  |

| 時 期          | 內 容  |
|--------------|--|
| 1960. 10.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咸興, 清津市를 도급인 직할시로 승격하였다가 1967. 10 일반시로 격하</li> <li>◦ 平壤을 11區域→18區域으로 확장</li> </ul>                              |
| 1965. 1.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城區 신설</li> <li>◦ 兩江道の 赴戰郡을 咸南에 편입</li> </ul>   |
| 1972. 11.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南 順安郡을 平壤市에 편입</li> <li>◦ 平南 平城區를 시로 승격</li> <li>◦ 咸興市, 德山 退潮區域을 郡으로 변경</li> <li>◦ 江原道 文川郡을 元山市에 편입</li> </ul> |
| 1974. 1.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咸南 일부 郡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興, 新昌, 興山, 新山, 水洞·德山郡 폐쇄</li> </ul> </li> </ul>            |
| 1974. 5.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南 殷山郡 폐지</li> <li>◦ 平北 清城郡 폐지</li> <li>◦ 咸南 廣泉郡 폐지</li> <li>◦ 咸北 遊仙郡 폐지</li> </ul>                             |
| 1976. 6.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元山市 일부를 분리, 文川郡 신설</li> </ul>   |
| 197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咸北 永興郡을 錦野郡으로, 慶興郡을 仁德郡으로 개칭</li> </ul>   |
| 1977. 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清津市에 茂山郡과 鏡城郡을 편입, 직할시로 승격</li> </ul>   |
| 1980. 3.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南浦市에 大安市와 龍崗郡을 편입, 직할시로 승격</li> </ul>   |
| 1981. 8.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兩江道 新坡郡을 金正淑郡으로 개칭</li> </ul>   |
| 1981. 10. 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咸北 雄基郡을 先鋒郡으로, 明潤郡을 華城郡으로 개칭</li> </ul>   |
| 1981. 11. 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咸南 五老郡을 榮光郡으로 개칭</li> </ul>   |
| 1982. 9.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咸南 瑞川郡을 市로 승격</li> <li>◦ 咸南 退潮郡을 樂園郡으로 개칭</li> </ul>  |
| 1983. 4.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南 江東郡을 平壤市에 편입</li> <li>◦ 南浦직할시에 大安市와 南浦區域을 폐지하고 5개구역 신설</li> </ul>  |
| 1983. 11.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平南 順川郡을 市로 승격</li> </ul>  |

| 時 期         | 內 容   |
|-------------|---|
| 1985. 8. 2  | ◦ 清津직할시를 폐지, 清津市, 鏡城郡, 茂山郡으로 분리, 각각 咸北道에 편입 |
| 1987. 8.    | ◦ 平南 安州, 德川郡을 市로 승격                         |
| 1988. 8. 25 | ◦ 慈江道 厚昌郡을 金亨稷郡으로 개칭                        |
| 1990. 8. 12 | ◦ 兩江道 豊山郡을 金亨權郡으로 개칭                        |

\* 출처 : 북한의 신문·방송보도 내용 종합.

### 北韓의 行政區域圖

〈그림 I - 1〉





## II. 政治



# 1. 政治理念

## 가. 主體思想

오늘날 북한에서는 金日成 主體思想을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指導理念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規約과 헌법은 주체사상을 黨과 국가활동의 指導的 指針으로서 명문화하고 있다.

노동당 規約 前文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sup>1)</sup>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憲法 제4조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못박고 있다.

### (1) 主體思想의 展開過程

북한에서 主體라는 말이 강조되어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5년 말로 보고 있다. 즉 1955년 12월 28일 노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金日成이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sup>2)</sup>

---

1) 1970. 11. 노동당 5차 대회시 개정, 채택된 당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했으나 1980. 10. 노동당 6차 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한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로 수정했다.

2) 「김일성이 밝힌 3대혁명노선의 생활력」(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p. 44.

이에 대해 북한은 주체사상의 原理를 처음 밝힌 起點을 1930년 6월 중국 길림성 장춘현 카툼에서 열린 靑靑 및 反帝靑靑同盟 간부회의로 잡고 있다.<sup>3)</sup>

그러나 국내외 학계의 통설은 1955년 말 金日成이 「당사업에서의 주체」를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고, 노동당 중앙위 4기 16차全員會議(1967. 6. 28)와 제5차黨大會(1970. 11. 12)를 거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공식 統治 이데올로기로 규정하였다.

북한에서 主體를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戰後 복구건설시기에 金日成이 노동당내 반대파들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勞動黨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해나가는 데서 심각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된다. 바꿔말해 1955년 말 朴憲永의 處刑 등 黨內 宗派分子에 대한 숙청을 통해 金日成을 중심으로 한 당건설과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주체를 내세운 것이다.

이처럼 주체 확립문제는 당초 金日成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당면 사상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그후 中·蘇간의 이념분쟁을 계기로 金日成은 주체를 對內外 統治 名分으로서 본격적으로 들고나오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오늘날 주체사상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능가하는 현시대 노동계급의 「영생불멸의 지도이념」<sup>4)</sup>으로 自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金正日이 주체사상을 金日成主義<sup>5)</sup>로 定式化하고 그 체계와 원리·방법을 발전, 풍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3) 金正日,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4) 해방40돌, 노동당 창건 40돌을 맞아 발표한 노동당 구호. 「로동신문」, 1985. 1. 31.

5) 「金日成主義」와 관련된 논문은 金正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가 대표적이며, 그밖에는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옹호하게 인식할 데 대하여」(평양: 1976. 10)등이 있다.



## (2) 主體思想의 內容

주체사상에서는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고, 주인다운 태도란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sup>6)</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론가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 즉, 自主的立場과 創造的立場을 견지하는 것을 기본적 요구로 하는 사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기 위한 지도적 지침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군사에서 자위를 구현하는 것이며,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지도적 지침으로는 「인민 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북한은 이같은 주체사상을 모든 분야에 걸쳐 지도이념화하고 유일사상 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은 社會를 主體思想化」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예컨대 세계 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주체사상 연구소조」<sup>8)</sup>는 물론 이들 소조활동을 통제·조정하는 통할기구로 국제 및 지역별 主體思想研究所를 설립하여 토론회를 갖고 있다. 또한 金日成·金正日 「勞作」을 現地語로 발간하여 金日成 金正日의 국제적인 지도자상과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의 당위성 부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주체사상의 선전 양태는 주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非同盟국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소련이나 중국

6) 「김일성 저작선집」 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 pp. 504~505.

7) 김일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 p. 13; 김창해,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8.

8) 최초의 「주체사상연구」 해외조직은 1969년 4월 15일 김일성의 57회 생일을 계기로 말리에서 결성된 고등사범학교 학생들의 「김일성노작 연구소조」이다.

및 서방국가들에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sup>9)</sup>

### (3) 主體思想과 政策路線

주체사상과 정책노선의 관계를 밝힌 金日成의 연설은 1967년 12월 16일 제4기 제1차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나왔다. 즉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의

#### 主體思想의 展開와 政策路線

〈표 II-1〉

| 內 容              | 提 起 時 期  | 背 景  |
|------------------|--|--|
| 思想에서의<br>主體      | 당 선동원대회<br>(1955. 12. 28)                                      | ◦ 스탈린의 사망<br>◦ 당내 國內派 숙청                       |
| 經濟에서의<br>自 立     | 당 중앙위원회 全員會議<br>(1956. 12. 11)                                 | ◦ 對外援助 감소(5개년<br>경제계획 수립 차절)<br>◦ 당내 反金日成運動 고조 |
| 政治(內政)<br>에서의 自主 | 당 중앙위원회 12월全員會議<br>(1957. 12. 5)                               | ◦ 공산권내 個人崇拜<br>반대운동<br>◦ 당내 中共派, 소련파<br>타도     |
| 軍事에서의<br>自 衛     | 당 중앙위원회 4기 5차全員<br>會議(1962. 12. 10)                            | ◦ 중·소분쟁의 심화와<br>미·소 공존 모색<br>◦ 한국의 군사혁명        |
| 政治(外交)<br>에서의 自主 | 제2차 당 代表者會<br>(1966. 10. 5)                                    | ◦ 中·蘇紛爭의 확대<br>◦ 非同盟 운동의 발전                    |
| 종합체계화            | 당 중앙위원회 4기 16차<br>全員會議(1967. 6. 28) 및<br>제5차 黨大會(1970. 11. 12) | ◦ 김일성 1人支配體制 확립<br>◦ 김일성 個人崇拜運動<br>전개          |

9) 주체사상 연구의 국제적 조직으로는 1978. 4 일본에 설립된 「주체사상 국제연구소」가 있으며, 지역별 조직으로는 1978. 2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와 1980. 9 인도에 설립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 연구소」가 있다. 「조선중앙년감」(1981), p. 280.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sup>10)</sup>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체사상을 정책노선에 적용하여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를 내세우게 되었다. 이같은 주체사상의 정책노선은 각 부분별로 동시에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기와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표 II-1>과 같다.

## 나. 革命路線

북한의 革命路線은 ①북한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②남조선 혁명, ③세계혁명이라는 세 가지 革命課業間的 연관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연관성이란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의 동시 추구」<sup>11)</sup>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란 南朝鮮革命을 위한 基地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世界革命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1) 社會主義 建設 : 3大革命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을 보면,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는 革命段階 구분과 각 혁명단계의 특징 및 임무에 따르는 혁명의 목표, 그리고 戰略的 課業 등으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 혁명론의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하는 人民政權을 수립한 다음,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실현과 사회주의 제도의 확립,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까지의 단계를 過渡期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2)</sup>

10) 「김일성 저작선집」 4권, p. 533.

11) 주체사상연구소,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05~206.

12) 철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4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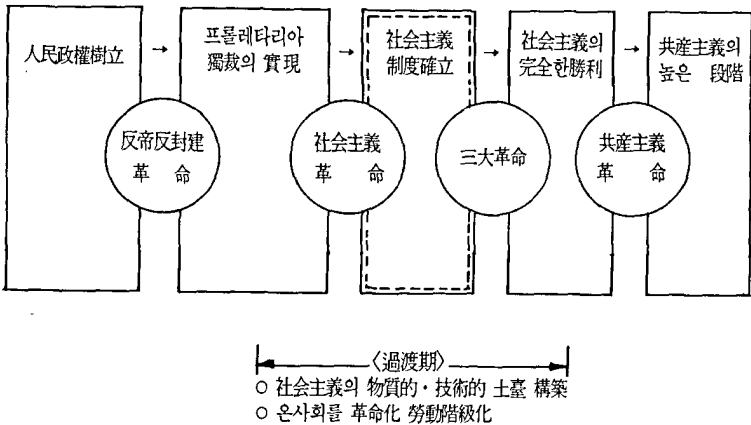
이에 대해 金正日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사회주의 사회의 공산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 過渡期 性格이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sup>13)</sup>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社會主義의 完全勝利를 이룩하기까지의 과도기 단계에서 필요한 革命目標로서 「物質的 要塞」와 「思想的 要塞」의 점령을 제시하고 있다. 물질적 요새의 점령이란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고, 사상적 요새를 점령한다는 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과도기 단계에서의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思想·技術·文化의 이른바 3大革命 수행을 당면한 戰略的 課業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사상, 기술, 문화 낙후성과 그에 따르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 革命的 段階區分

<그림 II-1>



13) 金正日,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근로자」 (평양: 근로자사, 1983. 5호), p. 8.

계급적 차이, 노동의 차이, 물질생활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sup>14)</sup>고 보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3대혁명이 노동뿐 아니라 교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주민이 견지해야 할 基本行動原則으로 되어 있다.<sup>15)</sup>

3대혁명 중에서도 思想革命은 다른 혁명에 우선하여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상혁명이야말로 階級鬭爭의 기본형식이며, 사회 전체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인간개조사업인 동시에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政治事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도기 단계에서 思想革命은 人間改造事業에 집중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노동계급의 혁명화, 농민의 노동계급화·혁명화, 인텔리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의미하고 있다.<sup>16)</sup>

이와같은 사상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당의 조직은 물론 정권기관, 근로단체, 교육·문화·보건기관 등 모든 조직이 동원되며, 조직을 통한 각종 학습과 문학예술의 형식을 빌린 「群衆教養 改造事業」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상혁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활동에서 政治事業의 선행을 당연시하고 있다.

技術革命은 공산주의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물질적인 요새를 점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혁명이다. 기술혁명은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고 손노동을 기계화·반자동화·자동화하기 위한 투쟁”을 뜻하며,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그 當面目標로 내세우고 있다.<sup>17)</sup>

14) 金正日, 위의 논문, p. 9.

15) 북한헌법 제11조, 제36조; 사회주의노동법 제9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노동당 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 10).

16) 「사상혁명,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 20~25.

17) 북한헌법 제25조; 사회주의 노동법 제7조; 노동당 6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 10) 참조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계속되는 경제 계획에 따른 「긴장된 노력 사정」을 해소하는데 있다.

특히 김일성은 “일꾼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사대주의·기술신비주의·경험주의”를 기술혁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고 이를 타파하는 것이 기술혁명 수행의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文化革命도 명분상으로는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혁명이란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지식, 예를들면 화학비료의 施肥, 트랙터 이용과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는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환경위생 정화와 질서 확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社會主義의 生活樣式을 북한 사회내에 뿌리박자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러한 3대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金正日의 직접 관장하에 「3大革命 小組運動」이 전개되고 있으며, 全黨·全人民의 차원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과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운동」, 「90년대 속도 창조운동」 등을 강행하고 있다.

이들 3대혁명 소조원들은 1973년 2월 「金正日의 영도」로 경제분야 등 각 부문에 파견된 이래 총 17만여명에 달하고, 그중 “2만여명의 조선로동당원, 1명의 공화국 영웅, 24명의 노력영웅, 5만여명의 국가수훈자를 배출했다”고 밝히고 있다.<sup>18)</sup>

## (2) 南朝鮮革命

북한은 조국통일을 「南朝鮮革命의 完遂」로 보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全朝鮮革命은 남조선혁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남조선혁명을 전조선혁명의 지역혁명”<sup>19)</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

18) 「조선중앙방송」, 1990. 2. 12.

19)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김일성사상(2)」, (동경: 구월서방, 1974), p. 278.

해 全朝鮮革命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南朝鮮革命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혁명이란 南韓에서의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지칭한다. 즉 남조선혁명의 목표는 우선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非共產系列까지를 일단 참가시키는 民主聯合政府 형태의 人民政權을 수립하는데 두고 있다.

이와같은 1단계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革命力量 강화의 전략적 구상은 먼저 남한에 마르크스·레닌主義黨<sup>20)</sup>을 건설하고, 그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결속시켜 강력한 혁명의 「主力軍」을 편성하는 동시에 「보조역량」<sup>21)</sup>을 동원하는 統一戰線 형성을 통하여 反革命勢力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전선 형성은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면서 상층 통일전선과 밀접히 결합시킨다”<sup>22)</sup>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통일전선의 대상인 한국내의 政黨·社會團體내의 下層 군중들과 「下層 統一戰線」을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당·사회단체내의 지도층과 「上層 統一戰線」을 형성하여 上·下를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각개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하나씩하나씩 統一戰線에 흡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방침하에 主客觀的 정세에 맞게 “정치투쟁,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비합법 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과 결합”하며, 모든 투쟁은 “주권을 쟁취하는 결정적 투쟁의 준비로 되어야 한다”<sup>23)</sup>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人民政權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폭력적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20)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 「로동신문」, 1979. 8. 25.

21) 보조역량에는 국군병사 및 중하층 장교도 포함된다.

22) 「김일성 선집」(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p. 62.

23) 김일성, “노동당 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1970. 10. 4;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김일성사상(2)」, (동경: 구월서방, 1974), pp. 162~169.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또는 全朝鮮革命의 완수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平和統一의 명분을 표방하면서 南北對話와 協商에 임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혁명투쟁의 旗幟를 결코 내린 적이 없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제1차회의(1990. 5. 24)에서의 金日成 施政演說을 통해 드러난 “全民族的 統一戰線 형성” 주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24)</sup>

### (3) 世界革命

이른바 사회주의 역량과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 및 민주주의 운동을 基本動力으로 하는 世界革命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대외적 환경으로서의 國際革命力量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개별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의 共產化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世界革命觀에서는 그 기본전략으로서 反美투쟁을 “세계 모든 혁명력량의 선차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며 일본에 대한 반대 역시 당면한 鬭爭目標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반제·반미 공동행동과 반제반미 통일전선 형성”에 모든 力量을 집중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단결이 실현되어야 한다”<sup>25)</sup>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對日修交 노력과 함께 中·蘇지도층의 言動

24)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 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면적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동신문」, 1990. 5. 25.

25)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91~99. 金日成은 노동당 6차대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현시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역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나 政策方向을 보면 세계혁명전략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 조짐도 엿볼 수 있어 공산주의 세계관의 변화 여부와 더불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 政治體制

### 가. 朝鮮勞動黨

북한 政治體制的 특징은 한마디로 1黨獨裁體制, 1人首領支配體制라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관이나 각종 정치조직에 대한 首領과 黨的 領導가 강조되며, 국가기관이나 각종 政治組織은 勞動黨의 지도와 영도 밑에 사업해야만 하는 이른바 「黨國家的 性格」을 뚜렷이 하고 있다.

북한의 勞動黨 이론가들은 주권을 잡은 勞動階級이 사회에 대한 政治的 領導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반드시 수령에 의해 유일적으로 領導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 「수령, 당, 계급, 대중이 하나의 全一體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아래서 勞動黨은 최고 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인 領導力量으로, 그리고 근로단체 등과 같은 각종 정치조직들은 勞動黨의 外廓團體로서 勞動黨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引傳帶이며, 광범위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라고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다.

둘째, 혁명과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령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해 「지위에 있어서는 절대적 지위로, 역할에 있어서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死活的 意味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설정하여 首領의 唯一的 領導를 강조하는 金日成 1인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sup>26)</sup> 즉 수령은 “프롤레타리아 당과 국가를 창건 지도하며 黨의 최고 영도자로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의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뇌수”이며, “勞動黨과 大衆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라고 한다.<sup>27)</sup>

따라서 이러한 首領의 영도적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勞動黨의 領導를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는 반혁명적 책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形成過程

오늘날 북한은 朝鮮勞動黨의 創建日을 1945년 10월 10일로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노동당 북조선분국의 창설이 결정된 朝鮮勞動黨 西北5道 黨責任者 및 熱誠者大會(1945. 10. 10~13)의 개최일로서 남·북노동당이 실제로 朝鮮勞動黨으로 통합·창건된 것은 1949년 6월 30일이다. 그리고 朝鮮勞動黨 北朝鮮分局의 창건 초기에만 해도 북조선 공산당 서울중앙은 인정되고 있었다.<sup>28)</sup>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1945년 4월 18일 美·蘇共同委員會가 한반도에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의 자격 문제에 관한 제5호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北朝鮮共產黨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어 동년 8월 28~30일에 中國 延安에서 平壤으로 돌아온 朝鮮獨立同盟系를 중심으로 지식층·소시민층을 망라하여 조직된 朝鮮新民黨과 合黨, 北朝鮮勞動黨으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sup>29)</sup>

북조선 노동당은 1948년 8월 人民共和國 정권수립을 위하여 南朝鮮勞動黨과 聯合 中央委員會를 구성하였고, 이어 정권수립 이후 1949년 6월 30일에 南·北勞動黨은 1國 1黨원칙에 따라 朝鮮勞動黨으로 통합된 것이다.

26)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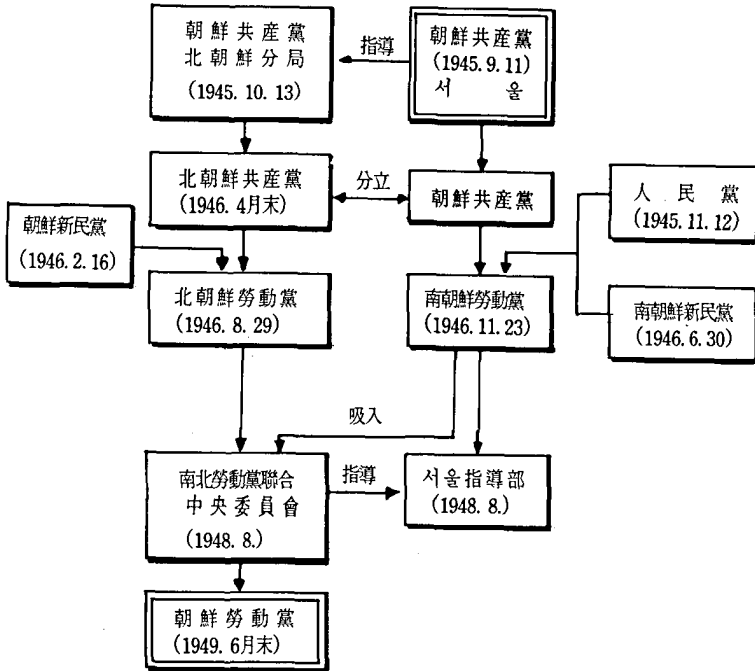
27)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196.

28) 1945년 10월 25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에서 북조선 분국 설립을 승인했다  
「조선중앙년간1945-46」(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715

29) 「정치용어사전」, p. 299.

朝鮮勞動黨 形成過程

〈그림 II-2〉



(2) 性格變化

(가) 理念·目標

朝鮮勞動黨은 당창건 이래 이념과 목표에 대한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차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에서는 당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하고 투쟁목표에 대해서는 다만 통일정부의 수립으로만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3次黨大會(1956. 4)에서 채택된 黨規約부터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혁명전동이 접목되기 시작하였고 5次黨大會(1970. 11)를 기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黨지도이념으로 추가되었으며, 6次黨大會(1980. 10)에서는 金日成

## 黨 指導理念 및 變遷過程

## 〈丑 II-2〉

| 規 約                      | 指 導 理 念                    | 當 面 目 標  |
|--------------------------|----------------------------|--|
| 北朝鮮勞動黨<br>創立大會(1946. 8)  | 마르크스·레닌주의                  | • 統一政府의 樹立   |
| 北朝鮮勞動黨<br>2次 大會(1948. 3) | 마르크스·레닌주의                  | • 統一政府의 樹立   |
| 南北勞動黨<br>合黨大會(1949. 6)   | 마르크스·레닌주의                  | • 統一政府의 樹立   |
| 朝鮮勞動黨<br>3次大會(1956. 4)   | 마르크스·레닌주의+<br>조선인민의 革命傳統   | • 社會主義制度的 樹立<br>(대내)<br>• 反帝·反封建 民主主義<br>革命(전한반도)      |
| 朝鮮勞動黨<br>4次大會(1961. 9)   | 마르크스·레닌주의+<br>항일무장투쟁의 革命傳統 | • 社會主義制度的 強化發展<br>(대내)<br>• 反帝·反封建民主主義<br>革命(전한반도)     |
| 朝鮮勞動黨<br>5次大會(1970. 11)  | 마르크스·레닌주의+<br>金日成 主體思想     | • 社會主義制度的 승리보장<br>(대내)<br>• 民族解放과 人民民主<br>主義革命수행(전한반도) |
| 朝鮮勞動黨<br>6次大會(1980. 10)  | 金日成 主體思想                   | • 社會主義 勝利<br>(대내)<br>•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br>혁명완수(전한반도)      |

\* 출처: 1) 박창옥, “북조선로동당 규약해설”, 「근로자」, (평양: 근로자사, 1949. 3호), PP. 43~46; 「북조선 로동당 창립대회 회의록」(평양: 북조선 로동당출판사, 1946); 각 당대회 규약 참조.

의 主體思想이 유일한 黨 指導理念임을 명문화하였다.

노동당의 최종목표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온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당의 당면목표도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다. 노동당 규약전문은 대내적으로는 통일정부 수립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제도 수립·강화에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보장으로, 그리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완수로 바꾸어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반제·반미 통일전선 형성으로 그 목표가 바뀌어져 왔다.

### (나) 組織의 運營

#### 組織·運營體系의 變遷過程

〈표 II-3〉

| 黨大會            | 指 導 機 關                     | 黨責任者         | 會議開催期間                                |
|----------------|-----------------------------|--------------|---------------------------------------|
| 1, 2차<br>대 회   | 당대회→당중앙위원회→<br>정치위원회→상무위원회  | 정치위원회<br>위원장 | 당대회: 1년에 1회<br>중앙위원회의: 3<br>개월에 1회    |
| 합당대<br>회(49.6) | 당대회→당중앙위원회→<br>정치위원회→조직위원회  | 전당위원장        | 당대회: 1년에 1회<br>중앙위원회의: 3<br>개월에 1회이상  |
| 3 차<br>대 회     | 당대회→당중앙위원회→<br>상임위원회와 조직위원회 | 중앙위원회<br>위원장 | 당대회: 4년에 1회<br>중앙위원회의: 4<br>개월에 1회이상  |
| 4 차<br>대 회     | 당대회→당중앙위원회→<br>정치위원회→비서국    | 중앙위원회<br>위원장 | 당대회: 4년에 1회<br>중앙위원회의: 6<br>개월에 1회이상  |
| 5 차<br>대 회     | 당대회→당중앙위원회→<br>정치위원회→총비서    | 중앙위원회<br>위원장 | 당대회: 4년에 1회<br>중앙위원회의: 6<br>개월에 1회이상  |
| 6 차<br>대 회     | 당대회→당중앙위원회→<br>정치국→비서국      | 중앙위원회<br>총비서 | 당대회: 5년에 1회*<br>중앙위원회의: 6<br>개월에 1회이상 |

\*주: 당 대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는 유보규정을 두고 있음.

조선노동당 창설 초기에는 黨大會와 中央委員會의 권한이 중요 시되어 당대회는 매년 1회,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씩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현재 당대회 개최 기간은 5년으로, 중앙위원회는 6개월로 변경되었다. 1956년 3次黨大會부터 中央委員會 보다는 政治委員會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의 黨代表會에서 秘書局제가 신설됨에 따라 당의 운영이 黨權을 집행하는 秘書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다) 黨員構成

黨員 構成上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6. 25동란중이었다. 이 기간중에는 출당·전사 등으로 인해 많은 黨員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약 45만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당원 증가가 있었다. 이와같은 黨員의 양적인 증가는 자연이 질적 저하를 가져 왔으며,<sup>30)</sup> 黨員들에 대한 政治教養事業 強化의 필요성이 당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은 입당절차와 당원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勞動黨 3次大會부터 候補黨員制를 신설하여 당원으로 입당을 희망하는 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sup>31)</sup> 候補黨員으로서의 活動年限을 경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는 데도 입당보증인의 당원경력을 4차당대회부터는 1년에서 2년으로 그 기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입당 절차를 강화시켰다.

그런데 지난 1973년 9월부터는 3대혁명소조원들을 대거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있는데, 3대혁명소조원 출신으로 黨員이 된자는 근 2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sup>32)</sup> 이들은 金日成의 당권기반강

30) 김일성, “로동당 중앙위원회 2기 5차 전원회의 보고”, (1952. 12. 15)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p. 372.

31) 3大革命小組員 출신들은 候補黨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黨의 핵심으로 발탁되어 왔음.

32) 「평양방송」, 1990. 2. 13, “1973. 2 첫 3대혁명소조 파견 이래 17만여명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되었으며, 이층에서 근2만여명이 노동당원이 되었다.”

## 黨員構成的變化

〈표 II-4〉

| 區分<br>時期 | 構 成 比(%) |      |      |     |      |     |                      |
|----------|----------|------|------|-----|------|-----|----------------------|
|          | 勤勞者      | 貧農   | 中農   | 富農  | 事務員  | 學生  | 商人, 企業家,<br>自由業者, 其他 |
| 1945. 10 | 30       | 34   |      |     | 36   |     |                      |
| 1946. 8  | 20       | 50.5 | 29.5 |     |      |     |                      |
| 1948. 3  | 20.2     | 52.8 | 27   |     |      |     |                      |
| 1950. 7  | 21.2     | 54.7 | 7.5  | 0.3 | 11.4 | 1.0 | 3.9                  |
| 1952. 12 | 22.2     | 57.4 | 3.9  | 0.1 | 12.5 | 1.4 | 2.5                  |
| 1956. 1  | 22.6*    | 56.8 | 3.7  |     | 13   | 3.9 |                      |
| 1961. 9  | 30       |      |      |     |      |     |                      |

\* 출처: 각 당대회시 중앙위원회 사업보고; 김일성 연설; 「조선중앙년감」

\*주: 4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는 17.3%로 언급.

화와 관련 후보당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당의 핵심으로 발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黨員의 의무강화를 위해서는 4次黨大會부터 黨員의 당생활과 당회의 및 토의에의 참가를 黨員의 의무로 명시하였으며, 5次黨大會에서는 여기에 黨學習을 의무조항으로 추가하고 있다.

黨員構造에 관해서는 1956년 1월에 있었던 발표 이래 아직까지 공개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 (3) 黨 勢

창당 초기 勞動黨은 4,530명의 黨員으로 구성된 前衛組織으로 출발하였으나, 朝鮮新民黨과의 合黨大會인 北朝鮮勞動黨 創立大會를 계기로 黨員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후 대대적인 당원의 증가로 1952년 12월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5차전원회의 때에는 약5

## 黨員增加趨勢

〈표 II-5〉

| 時 期                                   | 黨員數(名)      | 黨細胞數      |
|---------------------------------------|-------------|-----------|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3차확대 집행<br>위원회 (1945. 12) | 4,530       |           |
|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1946. 8)                 | 366,000     | 12,000    |
| 북조선노동당 2차대회 (1948. 3)                 | 725,762     | 28,000    |
| 조선노동당 중앙위 2기 5차전원회의<br>(1952. 12)     | 1,000,000   | 48,933    |
| 조선노동당 3차대회 (1956. 4)                  | 1,164,945   | 58,259    |
| 조선공산당 4차대회(1961. 9)                   | 1,311,563   | 65,000    |
| 조선노동당창건20주년(1965. 10) <sup>1)</sup>   | 1,600,000   |           |
| 조선노동당창건25주년(1970. 10) <sup>2)</sup>   | 1,600,000   |           |
| 1972. 8 <sup>3)</sup>                 | 2,000,000   |           |
| 1978. 1 <sup>4)</sup>                 | 2,000,000   | 약 200,000 |
| 조선노동당 6차대회(1980. 10) <sup>5)</sup>    | 약 3,000,000 | 약 300,000 |

\* 출처 : 각 당대회 중앙위 사업보고서 김일성 연설, 「조선중앙년감」

\* 주 : 1) 「로동신문」, (1965. 10. 10.)

2) 「로동신문」, (1970. 10. 10.)

3) 「로동신문」, (1972. 8. 29.)

4) 「로동신문」, (1978. 1. 29.)

5) 당 5기 19차 전원회의(1979. 12. 18) 당대표자 선출비율(당원 1,000명당 결의권자 1명)을 근거로 작성한 추계치.

만개의 細胞組織과 100만 黨員을 확보하게 되었다.<sup>33)</sup>

북한은 1961년 9월 1일 현재 黨員數를 1,311,563名, 黨細胞數를 65,000개로 공식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黨勢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발표는 없으나, 1980년 10월 6次 黨大會에 참가한 黨代表數가 3,220명(결의권 대표 : 3062명, 발언권 대표 : 158명)에 이른 것으로

33) 김일성, “노동당 중앙위원회 2기 5차전원회의(1952. 12. 15)보고”,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p. 372.



미루어 현재 黨員數는 300만명 정도로 추계된다. 이를 기준으로 1개 細胞組織黨員을 15명으로 잡는다면(黨規約上에는 5~30명) 약 20만개 정도의 黨細胞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된다.

이와같이 최근년 들어 黨원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金日成의 黨權基盤 강화를 위한 3大革命小組員 중심의 戰後世帶 엘리트들의 대거입당과 더불어 사회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및 업무의 복잡화로 黨원 비율확대를 통한 각급기관과 工場·企業所들에 대한 黨의 指導·統制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人口의 自然增加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 (4) 組織體系

勞動黨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하에 모든 地域別·部問別로 階序의 組織을 가지며, 그 組織原理는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을 선거하고,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한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sup>34)</sup>

現 노동당의 조직체계는 5次黨大會에서 채택된 黨規約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6次黨大會 규약에 의거해 일부 개편되었다.

당조직의 最高指導機關은 全黨의 경우에는 黨大會, 道(直轄市)·市(區域)·郡黨의 경우에는 해당 黨代表會이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黨中央委員會가, 그리고 당대회와 당대표회 사이에는 당해 黨委員會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sup>35)</sup>

軍隊내에도 각급 단위에 勞動黨의 조직을 가지며, 人民軍黨委員會가 中央委員會의 직속하에 조직되어 있다. 軍隊內 黨委員會는 中央委員會의 批准을 받아 주둔지역의 각급 당위원회에 정치 및 軍事幹部를 委員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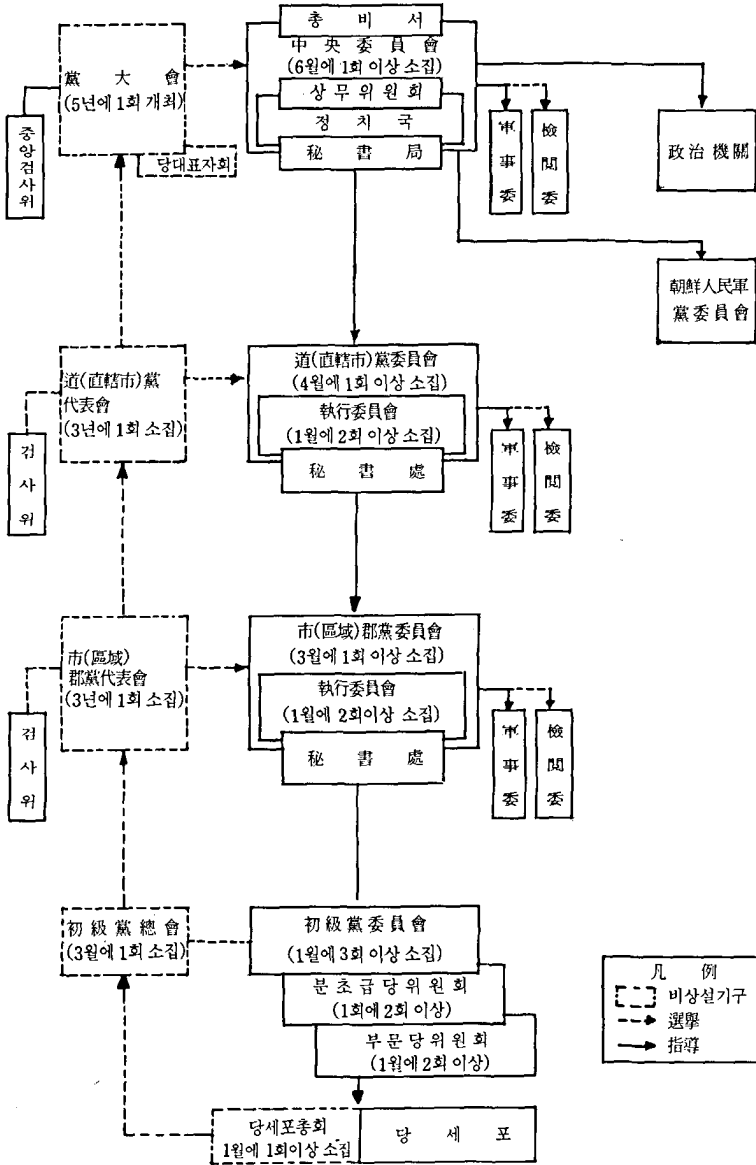
또한 黨中央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정치·경제·군사분야의 주요 부문에 당중앙위원회 직속의 政治機關을 두고 있다. 각급의 中央

34) 조선노동당규약 제11, 12조.

35) 조선노동당규약 제14조 1항.

勞動黨組織體系圖

<그림 II-3>



機關에는 政治局(또는 政治部 예컨대, 朝鮮人民軍 總政治局)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당해 기관에 조직된 黨委員會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勞動黨의 기층조직으로 “당원생활의 거점” 또는 “당의 전투단위”로 정의되는 黨細胞를 두고 있다. 黨細胞는 黨員 5~30명의 單位에 조직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당세포의 상급조직으로는 초급당조직이 있으며, 초급당 조직은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 조직된다. 또한 당원이 31명 이상이 되는 생산 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는 初級撞組織과 黨細胞중간에 부문(마을)당 조직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초급당 조직과 부문(마을)당 조직의 중간형태로 분초급당 조직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당원 3명 미만의 單位에는 市(區域)·郡黨委員會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여 黨小組를 조직할 수 있다.

### (5) 運營體系

黨政策의 決定은 형식상 各級 黨委員會의 회의형식을 거쳐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金日成의 敎示 또는 命令에 의해 좌우된다. 各급 黨委員會 全員會議는 당해 당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3분의 2이상의 참가로 성립되며, 會議의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會議에서 채택된 諸般政策은 사실상 祕書制를 근간으로 하여 집행되고 있다. 중앙에는 祕書局을 두고 지방에는 祕書處를 두어 당해 黨委員會의 部署들을 통괄케 하고 있다. 中央委員會의 祕書局에는 總祕書와 10名 内外의 祕書를 두고, 地方 黨委員會의 祕書處에는 責任祕書와 수명의 祕書가 있으며, 당의 기층조직인 初級黨委員會와 黨細胞에는 祕書와 副祕書가 있다.

黨幹部에 대한 효율적인 人力管理를 위해서 各급 당위원회는 당해 幹部養成 및 再教育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勞動黨의 教育機關으로는 중앙에 市(區域)·郡黨 부장급

이상을 입교대상으로 하는 김일성 고급당학교가 있으며, 各 道에는 共產大學, 各 郡에는 郡黨學校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 고급당학교의 경우 강습반, 기본반, 재직반, 연구원반 등 1개월~5년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당간부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각급 再教育機關에서 적어도 한달씩 교육을 받는 것이 義務化되어 있다.<sup>36)</sup>

이밖의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宣傳하기 위한 선전선동매체로는 노동신문사와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있는데, 이들은 勞動黨 黨원들과 一般住民들에 대한 思想教育和 함께 勞動黨의 政策貫徹에로 일반 주민들을 조직·동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6) 中央黨組織

### (가) 黨大會

黨大會는 형식상으로 勞動黨의 最高指導機關이다. 당규약에는 中央委員會가 5년에 한번씩 黨大會를 召集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sup>37)</sup>

黨大會는 ①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의 사업총화, ② 黨綱領과 규약의 채택 및 수정·보완, ③ 黨路線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결정, ④ 黨中央委員會 및 黨中央檢査委員會의 선거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黨中央委員會 또는 黨中央委員會 政治局의 결정사항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黨大會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개최되었으나, 당규약에 규정된 기간에 열린 적이 한번도 없었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勞動黨의 노선과 정책 또는 전략·전

36) "당간부 양성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6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pp. 136~152.

37) 조선노동당규약 제21조.

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 黨代表會를 소집하

### 黨大會 開催現況

〈표 II - 6〉

| 大會別        | 開催<br>日 字           | 議 題  | 黨員數            | 人口<br>對比 | 代議<br>員數             |
|------------|---------------------|--|----------------|----------|----------------------|
| 1 次<br>黨大會 | 1946.<br>8. 28~3. 6 | • 북조선 공산당과<br>신민당 합당문제<br>• 북조선노동당강령<br>및 규약   | 366,000<br>명   | 4%       | 881명                 |
| 2 次<br>黨大會 | 1948.<br>3. 27~30   | • 북조선노동당규약<br>개정   | 758,000<br>명   | 84%      | 999명                 |
| 3 次<br>黨大會 | 1956.<br>4. 23~29   | • 평화통일선언 채택  | 1,164,945<br>명 | 10%      | 916명                 |
| 4 次<br>黨大會 | 1961.<br>8. 11~18   | • 경제발전 7개년계획<br>채택<br>• 평화통일 선언 채택   | 1,311,563<br>명 | 17.5%    | 1,657명               |
| 5 次<br>黨大會 | 1970.<br>11. 2~13   | • 경제발전 6개년계획<br>채택   | 1,600,000<br>명 | 11.4%    | 1,734명 <sup>1)</sup> |
| 6 次<br>黨大會 | 1980.<br>10. 10~14  | • 김정일의 김일성 후<br>계 지위 공식화<br>• 사회주의 건설 10<br>대 전망 목표 제시<br>• <고려민주연방공<br>화국·공화국 창립<br>방안>제안 | 3,000,000<br>명 | 12.2%    | 3,220명 <sup>2)</sup> |

\* 출처: 黨大會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조선중앙년감」; 「로동신문」

\* 주: 1) 발언권만 갖는 대표 137명 포함

2) " 158명 "

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黨代表會가 소집된 예는 3次黨大會와 4次黨大會 사이인 1958년 3월과 4次黨大會와 5次黨大會 사이인 1966년 10월의 두 차례에 불과하다.

한편 黨大會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黨中央委員會가 결정하며, 次下級 黨組織인 道(直轄市) 黨代表會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1980년 10월 개최된 6차대회 대표자 선출비율을 보면 黨員 1,000명에 決議權 대표자 1명, 候補黨員 1,000명에 發言權 대표자 1명을 선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黨中央委員會

黨中央委員會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있어서 모든 黨事業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最高指導機關이다.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는 당중앙위원회 政治局과 정치국 常務委員會, 당중앙위원회 總秘書와 秘書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 秘書局과 軍事委員會를 조직한다.<sup>38)</sup>

당중앙위원회는 委員, 候補委員 및 準候補委員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黨大會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은 發言權만 가지며, 準후보위원은 生産勞動에 직접 참가하는 核心黨員中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委員, 候補委員, 準候補委員은 黨大會에서 선출되나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당중앙위원회 全員會議가 후보위원중에서, 또는 별도의 規則과 節次에 따라 후보위원이 아닌 黨員중에서 보선하며, 당중앙위원회 委員의 除名도 당중앙위원회 全員會議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6個月에 1回 이상 全員會議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과 지방의 黨·政간부 및 經濟機關 등의 책임 일군들이 참가하는 擴大全員會議를 개최하기도 한다. 그간 全員會議에서 취급·토의된 案件을 보면 50年代 중반 이후부터는 經濟問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195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5~7개년계획 등의 中長期經濟計劃의 실시와 관련된다.

38) 조선노동당규약 제23조, 24조.

## (다) 黨中央委員會 政治局

당중앙위원회의 政治局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黨中央委員會 명의로 黨의 모든 事業을 조직·지도하는 사실상의 最高 核心部署이다.<sup>39)</sup>

政治局은 1946년 北朝鮮勞動黨 창립대회에 이어 개최된 黨中央委員會 第1期 第1次全員會議에서 처음 政治委員會로 조직되었으며, 1956년에 제3차당대회에서 常務委員會로 일시 개칭되었다가 1961년 개최된 제4차당대회 이후 다시 政治委員會로 불리워지면서 政治委員會내에 새로이 常務委員會가 조직되었으나 제5차당대회에서 상무위원회를 폐지시켰다. 그후 1980년 10월 제6차당대회에서는 政治委員會를 政治局으로 개칭하고 政治局내에 常務委員會를 조직하였다.

## (라) 黨中央委員會 祕書局

黨中央委員會 祕書局은 1966년 10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幹部問題, 黨內問題, 기타 당면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sup>40)</sup> 당중앙위원회의 각 專門部署를 일상적으로 지휘·감독하는 勞動黨의 中樞機關이다. 뿐만 아니라 祕書局은 북한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勞動黨의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마) 黨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

黨中央委員會 軍事委員會는 勞動黨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人民軍을 포함한 全武力의 강화와 軍需産業의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북한의 軍隊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sup>41)</sup>

---

39) 조선노동당규약 제25조.

40) 조선노동당규약 제26조.

41) 조선노동당규약 제27조.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책집행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당중앙위원회에 軍事委員會가 조직된 것은 1962년 12월에 소집된 중앙위원회 4기 5차전원회의에서 군사력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후부터이다. 1984년 이후 中央軍事委員會라고 하고 있다.

#### (바) 黨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

黨中央委員會 檢閱委員會는 反黨·反革命的 宗派行爲를 하거나 勞動黨의 노선과 정책,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黨規律에 위반된 당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의 규율문제와 관련된 道(直轄市) 黨委員會의 제의 및 당원의 申訴를 심의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42)</sup>

창당대회 규약에는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次당대회부터는 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서 사업을 하고 그 구성원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檢閱委員會를 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둔 이유는 당의 最高指導機關인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사) 黨中央委員會 檢查委員會

黨中央委員會 檢查委員會는 그 구성이 黨大會에서의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당의 財政經理事業을 검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 (7) 地方黨組織

道(直轄市) 黨과 市(區域)·郡黨 등 각급 지방당의 조직체계는 黨中央指導機關의 組織原則에 준하고 있다.

地方黨代表會는 당해 지방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당규약에 따르면 3년에 1회 해당 당위원회가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sup>43)</sup>

地方黨代表會에서는 당해 地方 黨委員會와 檢查委員會, 당대회

42) 조선노동당규약 제28조.

43) 조선노동당규약 제31조.



및 상급당대표회에 파견할 대표를 선거하고, 당해 지방 당위원회와 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급 지방 黨委員會 全員會議<sup>44)</sup>는 당해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책임비서와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각급 黨執行委員會는 1개월에 2회 이상 소집되며,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黨委員會 명의로 당내 사업을 조직·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地方 黨委員會의 주요임무<sup>45)</sup>는 다음과 같다.

- ①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확립하는 사업의 조직·지도
- ②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 교양의 강화와 함께 혁명화·노동계급화를 통한 당주위예의 결속
- ③ 근로대중들이 자기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④ 勞農赤衛隊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의 강화를 통한 전투태세의 완비와 군사동원사업 강화.

道(直轄市) 黨委員會는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며, 市·(區域) 郡黨委員會는 初級黨組織 집행기관의 강화와 그 기능 및 역할의 향상을 위해 그들을 지도·감독한다.

#### (8) 기타 黨의 外廓團體

북한 헌법 제53조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적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치단체나

44) 道(直轄市) 黨全員會議는 4개월에 1회 이상 소집(조선노동당규약 제34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구역)·도당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집(조선노동당규약 제39조)하도록 되어 있다.

45) 조선노동당규약 제33조, 제38조.

## 勤勞團體 現況

〈표 II-7〉

| 團 體        | 創 立 日        | 盟 員 數               |
|------------|--------------|---------------------|
| 직업총동맹      | 1945. 11. 30 | 약160여만(1971. 12.현재) |
| 농업근로자동맹    | 1965. 3. 25  | 약130여만(1982. 12.현재) |
|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 1946. 1. 17  | 약400만(1981. 12.현재)  |
| 민주여성동맹     | 1945. 11. 18 | 약20여만(71. 10.현재)    |

\* 출처 : 방환주, 「조선개관」(평양 : 외국출판사, 1987), pp. 90~91.

조직들은 노동당의 지도통제하에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형식상의 政黨으로는 이른바 노동당의 友黨인<sup>46)</sup> 1945년 11월 3일에 창립된 朝鮮社會民主黨<sup>47)</sup>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天道教靑友黨이 있으나, 실제적인 정당조직을 갖추지 못한 정당으로 對南非難聲明을 발표하거나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의 개최를 주장하는 등 주로 對南宣傳活動에만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 발표의 각종 성명에서는 이와같은 노동당의 우당 외에도 많은 단체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근로대중의 조직으로 불리우는 근로단체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黨規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引傳帶”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등과 같은 위장 평화통일 단체를 비롯하여 세계평화와 반제·반식민주의 투쟁을 하는 인민들과의 연대성 표방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

46) 「조선문화어사전」(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3), p. 998 “우리당을 지지하며 우리당과 통일전선을 이룬 관계에 있는 정당”

47) 1981. 1 개최된 조선민주당 6차대회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

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가 있으며, 종교단체로는 조선기독교도 연맹, 조선불교도 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노동당의 혁명노선 선전과 반한·반미 선전·선동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하수조직들이다.

## 나. 政權機關

북한은 國家의 階級的 本質과 使命을 강조하면서 현 북한政權은 “勞農同盟에 기초한 革命的 人民政權”<sup>48)</sup>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치체제에 있어서 政權은 首領의 革命思想을 실천하는 정치기구로서, 그리고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 統治權 行使의 法的 形式

〈표 II-8〉

| 機 關                  | 形 式        |
|----------------------|------------|
| 주 석                  | 명 령        |
| 최고인민회의               | 憲法, 法令     |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결 정        |
| 중앙인민위원회              | 정령, 결정, 지시 |
| 정 무 원                | 결정, 지시     |
| 부·위원회                | 지 시        |
| 지방인민회의               | 결 정        |
| 지방인민위원회              | 결정, 지시     |
| 도(직할시) 행정 및 경제제도 위원회 | 결정, 지시     |

48) 북한 헌법 제2조, 제3조.

북한은 이와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政權機關의 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sup>49)</sup>

- ① 反革命的 要素 등에 대한 獨裁를 수행하는 「鎮壓의 機能」
- ② 社會에 대한 法的 制裁를 수행하는 「統制的 機能」
- ③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추진하는 「文化教養的 機能」
- ④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經濟組織的 機能」
- ⑤ 革命的 國際的 任務를 수행하는 「對外的 機能」

그리고 이러한 政權機關의 기능은 各級 기관의 法的 權利行事形式으로 표현되고 있다.

### (1) 北韓政權의 樹立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는 蘇聯軍의 點領下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政權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첫작업은 1945년 8월 24일 咸南道 人民委員會 결성을 시발로 8월 27일 平南道 人民委員會의 조직 등 각 지방에서의 人民委員會 조직이었다. 同年 10월 8일에는 北韓 주둔 蘇聯軍司令部의 주재로 평양에서 北朝鮮 5道 人民委員會 聯合會議가 소집되고, 10월 28일에는 北朝鮮 5道 行政局이 정식으로 발족되었다.<sup>50)</sup>

이듬해인 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北朝鮮 民主主義 各政黨·社會團體, 各 行政局 人民委員會代表 擴大協議會」에서는 북한주둔 소련군사령관의 양해하에 北朝鮮임시인민위원회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同年 3월 5일 공포된 「北朝

49)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김일성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p. 273~283.

50) 同 會議에 참석하였던 이·엠·치스차코프(당시 북한주둔 소련 제26군 사령관, 大將)는 이 회의에서 최초로 북한지역내 5도 인민위원회를 통합하는 단일조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엠·치스차코프, “第26軍의 戰鬪行路”, 웨·베·박, 에스·에스·수술리나 공편, 「조선의 해방」(모스크바: 소련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1976), p. 52.

鮮臨時人民委員會 구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北韓地域의 中央行政機關이었으나, 소련군사령부에 法令과 決定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자성이 없었다.

이어 1946년 11월 3일에는 北韓全域에 걸쳐 道·市·郡 人民委員會 선거를 실시하여 3,459명의 人民委員을 선출하였는데, 북한은 당시 총유권자의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51)</sup>

1947년 2월 17~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各 道·市·郡 人民委員會 및 各 政黨·團體代表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북조선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서 代議員 237명을 선출하여 北朝鮮人民會議을 구성하고,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2. 21~2. 22)에서 北朝鮮人民委員會의 조직을 결성하였다.<sup>52)</sup>

북조선인민위원회는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여 총2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政黨別 構成을 살펴보면 北朝鮮勞動黨 16명, 朝鮮民主黨 2명, 天道教靑友黨 2명, 無所屬 2명으로 사실상 북조선노동당 일색으로 조직되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시의 北朝鮮人民委員會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의 탄생”<sup>53)</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美·蘇共同委員會가 결렬되고 1947년 11월 유엔總會가 유엔감시하의 南北韓總選舉 실시와 선거를 감시할 UN韓國臨時委員會團의 설치를 결의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北韓政權樹立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1947년 11월 18~19일 개최된 北朝鮮人民會議 3차회의에서 朝鮮臨時憲法制定委員會를 조직하고, 12월 20일 同 위원회는 憲法草案을 확정하였다.

51) 「조선중앙년감 1945~1946」(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p. 83~84.

52) 앞의 책 p. 85.

53) 「조선노동당 력사교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 201.

이듬해인 1948년 2월 6일부터 개최된 北朝鮮人民會議 4차회의에서는 임시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심의, 2월 13일 同憲法草案을全體人民會議에 회부하고 人民討議를 거친 헌법초안을 심의하기 위해 北朝鮮人民會議 특별회의를 3月中旬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同年 4월 28일에 개최된 同 특별회의에서는 인민토의 결과로 이루어진 憲法修正草案을 축조심의, 북한의 헌법초안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이어 7월 9~10일에는 北朝鮮人民會議 5차회의가 소집되어 北韓憲法の 실시를 결정하는 한편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선거일,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문제 등을 北朝鮮人民會議 常任委員會에 위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북조선인민회의 5차회의의 결정에 따라 同年 8월 25일에는 북한 최초의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가 실시되어 총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는데, 당시 북한은 총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여 이중 98.49%가 찬성 투표한 것으로 발표하였다.<sup>54)</sup>

그리고 同年 9월 2~10일까지 9일간 最高人民會議 1차회의를 개최하고<sup>55)</sup>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憲法草案을 심의·채택한데 이어 北朝鮮人民委員會로부터 정권을 이양받고, 9월 9일 金日成을 首相으로 하는 北韓共產政權 수립을 결정하였다.

## (2) 社會主義憲法 채택과 國家機關體系

북한은 1948년 2월 최초의 헌법(11장 104조)을 채택한 이래 수차례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가해 오다가 1972년 12월 27일 最高人民會議 5기 1차회의에서 종래의 人民民主主義 憲法을 폐기하고 전문 11장 149조로 된 새로운 社會主義憲法을 채택하게 되었다.

54) 「조선중앙년감」, (1945~1946) p. 43.

55) 북한은 이 회의에서 존재하지도 않은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60명도 참가하였다고 허위선전을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중요문헌집」, (평양: 1948), pp. 283~287. 「조선중앙년감 1945~194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p. 14~17.

## 政權機關의 性格變化

〈표 II-9〉

| 新 憲 法                     |   | 舊 憲 法           |                               |
|---------------------------|---|-----------------|-------------------------------|
| 機 關                       | 性 格                                     | 機 關             | 性 格                           |
| 主 席                       | 국가수반<br>국가주권의 대표                        | 수 상             | 정부의 수석                        |
| 最高人民會議                    | 최고주권기관                                  | 최고인민회의          | 최고주권기관                        |
| 最高人民會議<br>常設議會            | 최고인민회의<br>상설기관                          | 최고인민회의<br>상임위원회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br>최고주권기관          |
| 中央人民委員會                   | 국가주권의<br>최고지도기관                         |                 |                               |
| 政 務 院                     | 최고주권기관의<br>행정적집행기관                      | 내 각             | 국가주권의 최고<br>집행 기관             |
| 地方人民會議                    | 지방주권기관                                  | 지방인민회의          | 지방주권기관                        |
| 地方人民委員會                   | 당해인민회의 휴회중<br>지방주권기관<br>해당인민회의의<br>집행기관 | 지방인민<br>위원회     | 당해인민회의의<br>집행기관<br>지방의 국가행정기관 |
| 地方行政委<br>員會 <sup>1)</sup> | 지방주권기관의<br>행정적집행기관                      |                 |                               |

\* 주 : 1) 81.9 이후 「지방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경제지도위원회」를 설치 하였으며, 1985. 5 이후 「경제지도위원회」를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로 변경함.

이 社會主義憲法の 특징은 한마디로 社會主義制度를 법적으로 안착시키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國家機關體系를 主席 中心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새로운 社會主義憲法에서는 國家의 성격을 自立的인 사회주의 국가로 명문화하고, 主權은 勞動者·農民·兵士·근로인텔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과 舊憲法간의 두드러진 차이중의 하나는 國家機關體系이다.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國家首班으로 國家主權을 대표하는 主席과 국가주권의 最高指導機關인 中央人民委員會를 신설하였고, 종래의 內閣을 단순한 行政的 집행기관인 政務院으로 바꾸었다. 地方政權機關도 行政委員會를 신설함으로써 主權의 指導機關과 行政的 執行機關의 二元的 체계를 이루었으나, 1981년 9월 道(直轄市) 經濟指導委員會의 신설과 함께 各급 地方行政委員會의 일부 기능을 당해 人民委員會에 이양하고, 行政委員會를 폐지하였다. 그후 1985년 5월 지방행정기관 운영체계를 다시 개편하여 道(直轄市)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로 하고, 道(直轄市)·市(區域)·郡 행정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 (3) 政權機關의 組織과 機能

북한은 모든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이 이른바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sup>56)</sup> 이러한 원칙은 “上部的 指導와 下部的 創意性을 결합시키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식적인 民主主義의 選舉절차의 보장과 上命下服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主權機關과 行政的 執行機關, 그리고 그 활동의 지역적 관할범위에 따라 中央政權機關과 地方政權機關으로 나누어진다.

#### (가) 主 席

主席制는 金日成 一人支配體制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主席은 4년 임기로 最高人民會議에서 선출되나 主席에 대한 最高人民會議의 召喚權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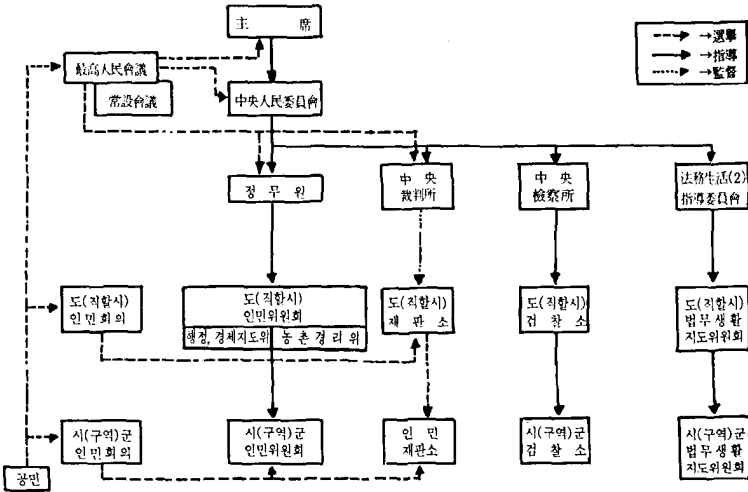
헌법상 主席의 地位는 ① 國家首班으로 國家主權을 대표하는 의

56) 북한 헌법 제9조.



政權機關 組織體系

<그림 II-4>



에, ②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 ③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委員長으로서<sup>57)</sup>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絕對權力者의 地位에 있는데, 헌법상 명시된 主席의 權限은 다음과 같다.

- ① 中央人民委員會에 대한 직접지도
- ② 政務院會議의 소집·지도
- ③ 일체의 武力 지휘·통솔
- ④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決定의 공포와 主席 命令의 발표
- ⑤ 特赦權의 行使
- ⑥ 條約의 批准 및 폐기
- ⑦ 외국 使臣의 信任狀 및 召喚狀 접수

57) 북한 헌법 제89조, 91조, 93조.

⑧ 최고인민회의에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書記長 및 委員, 정무원 總理, 국방위원회 副委員長의 선거 및 소환 제의

⑨ 최고인민회의의 議案 제출

⑩ 中央裁判所, 中央檢察所의 사업감독

그리고 主席을 보좌하는 통상 2~3명의 副主席을 두고 있는데 副主席은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最高人民會議에서 선출된다.

#### (나) 最高人民會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立法權을 행사하는 最高主權機關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을 갖는 形式的 追認機關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sup>58)</sup> 제9기 최고인민회의 구성에서는 기존의 常設會議과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外交委員會<sup>59)</sup> 외에 통일정책심의위원회<sup>60)</sup>를 신설하여 모두 5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最高人民會議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憲法 및 法令의 채택·수정

②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③ 主席 선거

④ 主席의 제의에 의거하여 副主席, 中央委員會 書記長 및 委員, 정무원 總理, 국방위원회 副委員長의 선거 및 소환

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의 선거 및 소환

⑥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해임

⑦ 人民經濟發展計劃의 승인

58) 북한 헌법 제75조.

59) 「조선중앙방송」, 1989. 11. 14.

60) 「로동신문」, 1990. 5. 25

## 最高人民會議 選舉一覽

〈표 II-10〉

| 期別 | 選舉日            | 代議員<br>數 | 投票率/<br>贊成率     | 任 期       | 備 考   |
|----|----------------|----------|-----------------|-----------|---|
| 1  | 1948.<br>8.25  | 572      | 99.97/<br>98.49 | 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백합 투표 실시(제1기-2기)</li> <li>◦ 인민공화국 헌법 승인(제1-2기)</li> <li>◦ 인구 5만명당 1인 선출</li> <li>◦ 13차 회의 개최</li> </ul> |
| 2  | 1957.<br>8.27  | 215      | 99.99/<br>99.92 | 5년<br>2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5개년 경제계획<br/>시행(1957. 6)</li> <li>◦ 11차 회의 개최</li> </ul>   |
| 3  | 1962.<br>10.8  | 383      | 100/<br>100     | 5년<br>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합투표 실시(제3기-9기)</li> <li>◦ 인구3만명당 1인 선출(제3기-9기)</li> <li>◦ 7차회의 개최</li> </ul>                           |
| 4  | 1967.<br>11.25 | 457      | 〃               | 5년<br>1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항 통일방안 제안</li> <li>◦ 6차회의 개최</li> </ul>  |
| 5  | 1972.<br>12.12 | 541      | 〃               | 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 헌법개정(주석선출)</li> <li>◦ 7차회의 개최</li> </ul>  |
| 6  | 1977.<br>11.11 | 579      | 〃               | 4년<br>3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정권을 더욱강화하자”<br/>(시정연설)</li> <li>◦ 5차회의 개최</li> </ul>  |
| 7  | 1982.<br>2.28  | 615      | 〃               | 4년<br>8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br/>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br/>대한 결정” 채택(3차회의)</li> <li>◦ 5차회의 개최</li> </ul>                   |
| 8  | 1986.<br>11.2  | 655      | 〃               | 3년<br>6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br/>위하여” (시정연설)</li> <li>◦ 5차회의 개최</li> </ul>   |
| 9  | 1990.<br>4.22  | 687      | 99.78/<br>10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회의 개최(90.5.24-26)</li> <li>◦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br/>더욱 높여 발양시키자” (시정연설)</li> </ul>                       |

## ⑧ 국가예산의 승인

## ⑨ 戰爭과 平和에 관한 문제의 결정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定期會議과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과 常設會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臨時會議가 있으며,<sup>61)</sup> 會期는 통상 2~3일로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sup>62)</sup>

회의에서의 법령과 결정은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나 헌법의 채택·수정에는 전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휴회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常務機關으로 議長·副議長(2명)·事務長, 議員(11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두고 있다. 常設會議는 決定을 채택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sup>63)</sup>

## 歷代 最高人民會議 開催現況

〈표 II-11〉

(1990. 12 현재)

| 期 別 | 任 期    | 會議召集回數 | 會議開催總數 |
|-----|--------|--------|--------|
| 1期  | 9년     | 13     | 55     |
| 2期  | 5년 2개월 | 11     | 32     |
| 3期  | 5년 1개월 | 7      | 22     |
| 4期  | 5년 1개월 | 6      | 18     |
| 5期  | 5년     | 7      | 30     |
| 6期  | 4년 3개월 | 5      | 15     |
| 7期  | 4년 8개월 | 5      | 12     |
| 8期  | 3년 6개월 | 5      | 11     |
| 9期  |        | 1      | 3      |

\* 출처: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61) 북한 헌법 제77조.

62) 북한 헌법 제78조.

63) 북한 헌법 제87조.

## 歷代 最高人民會議 討議案件

〈표 II-12〉

(1990. 12 현재)

| 期                             | 召集<br>回數 | 討議된 案件   |          |                |                    |          | 計   |
|-------------------------------|----------|----------|----------|----------------|--------------------|----------|-----|
|                               |          | 政治<br>問題 | 經濟<br>問題 | 社會<br>文化<br>問題 | 對南關<br>係, 統<br>一問題 | 對外<br>關係 |     |
| 1期(1948. 9. 2~1957. 9. 17)    | 13       | 7        | 13       | 2              | 2                  | 5        | 29  |
| 2期(1957. 9. 18~1962. 10. 21)  | 11       | 1        | 8        | 3              | 2                  | 2        | 16  |
| 3期(1962. 10. 22~1967. 12. 13) | 7        | 10       | 7        | 1              | 1                  | 2        | 21  |
| 4期(1967. 12. 14~1972. 12. 24) | 6        | 6        | 8        | 1              | 1                  |          | 16  |
| 5期(1972. 12. 25~1977. 12. 14) | 7        | 6        | 7        | 3              | 2                  |          | 18  |
| 6期(1977. 12. 15~1982. 2. 27)  | 5        | 2        | 5        | 2              |                    |          | 9   |
| 7期(1982. 2. 28~1986. 11. 1)   | 5        | 4        | 5        |                | 2                  |          | 11  |
| 8期(1986. 11. 2~1990. 4. 22)   | 5        | 1        | 4        |                |                    |          | 5   |
| 9期(1990. 4. 23~ )             | 1        |          |          |                |                    |          |     |
| 計                             | 60       | 37       | 57       | 12             | 10                 | 9        | 125 |

- ①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의 심의·결정
- ②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現行法令의 修正 및 해석
- ③ 中央裁判所 判事, 人民參審員 선거 소환
- ④ 최고인민회의의 소집
- ⑤ 최고인민회의의 代의원 선거사업 실시
- ⑥ 地方人民會議 代議員 선거사업 조직
- ⑦ 중앙재판소 판사, 人民參審員의 선거 및 소환

한편 북한은 종래와 달리 제9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사회민주당 위원장(이계백)과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정신혁)을 상설회의 의원으로 선출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 中央人民委員會

中央人民委員會는 1972년 12월에 채택된 社會主義憲法에 의해

신설된 형식상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으로서 首位인 主席의 직접 지휘·감독·통제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中央人民委員會는 主席과 副主席, 書記長 및 委員들로 구성되며, 部門別 委員會로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sup>64)</sup> 법제위원회<sup>65)</sup>와 경제정책위원회<sup>66)</sup> 등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국방위원회는 1990년 5월 2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국가지도기관개편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의 중앙인민위원회 개편에 나타난 주요 특징중의 하나는 종래에는 中央人民委員會 위원들의 대부분이 勞動黨의 정치국위원(후보위원),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과 같은 勞動黨의 핵심간부나 政務院의 고위간부들이 겸하고 있어 黨·政協議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개편에서는 이들의 대부분이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배제되고 그 대신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전원이 중앙인민위원으로 선출된 점으로 중앙인민회의의 성격변화와 관련 주목되는 점이다. 중앙인민위원회는 政令과 決定을 채택하고 지시를 내리는 등 立法的 機能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① 국가의 대내외 정책 수립
- ② 정무원, 지방인민회의 및 지방인민위원회 사업의 지도
- ③ 재판·검찰기관의 지도
- ④ 국방 및 국가정보위 사업의 지도
- ⑤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主席命令, 중앙인민위원회 政令·決定·指示의 집행상황 감독 및 그에 위반된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폐기
- ⑥ 政務院의 部 설치 및 폐지
- ⑦ 정무원 副總理, 각 部長 및 기타 정무원 成員들의 임명 및 해

64) 북한 헌법 제105조.

65) 「로동신문」, 1978. 5. 22.

66)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신설.

임(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거)

- ⑧ 大使와 公使의 임명 및 소환
- ⑨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將領軍事 칭호의 수여
- ⑩ 훈장·명예칭호·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의 제정, 훈장·명예칭호 수여
- ⑪ 大赦실시
- ⑫ 행정구역의 개편
- ⑬ 유사시 戰時상태와 動員令의 선포

#### (라) 政務院

정무원은 舊憲法上的 內閣을 개칭한 것이지만, 종래의 內閣과는 성격이 다르며, 그 권한과 역할도 크게 축소되었다.

종래의 내각이 「國家主權의 최고집행기관」으로 「최고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하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정무원은 주석의 제의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총리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하는 副總理, 部長(委員長) 등과 그밖의 성원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무원은 사업집행을 위해 政務院 成員을 會員으로 구성되는 「全員會議」를 두고 있으며,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발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헌법상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① 各部,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행정 및 경제 지도위원회 사업의 지도
- ② 정무원 직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
- ③ 국가의 人民經濟計劃 작성 및 집행대책 수립
- ④ 국가예산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 ⑤ 공업, 농업, 대내외 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문화, 보건사업의 조직지도
- ⑥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 수립
- ⑦ 외국과의 條約締結 및 대외사업의 수행

## 歷代 政務院(內閣)의 構成

## 〈표 II-13〉

| 期 別          | 總 理<br>(首相) | 副 總 理<br>(副首相)   | 部 長(相)<br>및 院 長  | 委 員 長 | 事 務 長 |
|--------------|-------------|------------------|------------------|-------|-------|
| 1기(1948. 9)  | 1           | 3                | 17               | 1     |       |
| 2기(1957. 9)  | 1           | 6                | 24               | 2     |       |
| 3기(1962. 10) | 1           | 8                | 22               | 5     |       |
| 4기(1967. 12) | 1           | 8                | 30               | 6     |       |
| 5기(1972. 12) | 1           | 6                | 15               | 7     |       |
| 6기(1977. 12) | 1           | 6                | 21               | 7     | 1     |
| 7기(1982. 4)  | 1           | 13               | 17               | 14    |       |
| 8기(1986. 12) | 1           | 10               | 11               | 15    |       |
| 9기(1990. 5)  | 1           | 10 <sup>1)</sup> | 26 <sup>2)</sup> | 14    | 1     |

\* 출처: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주: 5기(1972. 12) 이전은 수상, 부수상, 相의 숫자

1) 1990. 10 현재 부총리 수는 11명

2) 25부 1원

⑧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이익보호 및 公民의 權利保障을 위한 대책 수립

⑨ 정무원의 決定·指示에 위배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과 지시의 폐기

북한은 1982년 4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1차회의에서 人民武力部와 社會安全部 등 정권보위기관을 정무원에서 분리·개편하였으나 1986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의 국가지도기관 개편시에는 사회안전부를 정무원 기구로 다시 환원시키는 한편, 중앙자재총연합상사와 체육지도위원회, 중앙은행, 중앙통계국등을 정무원 기구로 편입시켰다. 그후에도 북한은 경제관계부서를 중심으로한 정무원 부·위원회의 통·폐합과 분리·신



설의 과정을 되풀이하여 왔다.

정무원은 1990년 5월 24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또다시 14개 委員會 25개部 1개院 2개局 1개 은행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주요 특징은 종래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가검열위원회를 정무원에 편입시키고 해운부를 부활시킨 대신 합영공업부를 폐지한 것으로, 특히 합영공업부를 합영공업총국으로 축소 개편하여 대외경제사업부에 통합시킨 것은 대외교섭에서의 창구일원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 (마) 地方政權機關

지방정권기관으로는 各道(직할시), 市(구역)·郡 人民會議와 人民委員會, 그리고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가 있다.

1954년 10월 30일에 채택된 地方主權構成法에 따라 각급 지방인민회의는 地方主權機關으로, 그리고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地方行政機關으로 정의되었으나, 1972년 12월 社會主義憲法의 채택과 함께 행정적 집행기관인 각급 地方行政委員會가 신설되면서 地方人民委員會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sup>67)</sup>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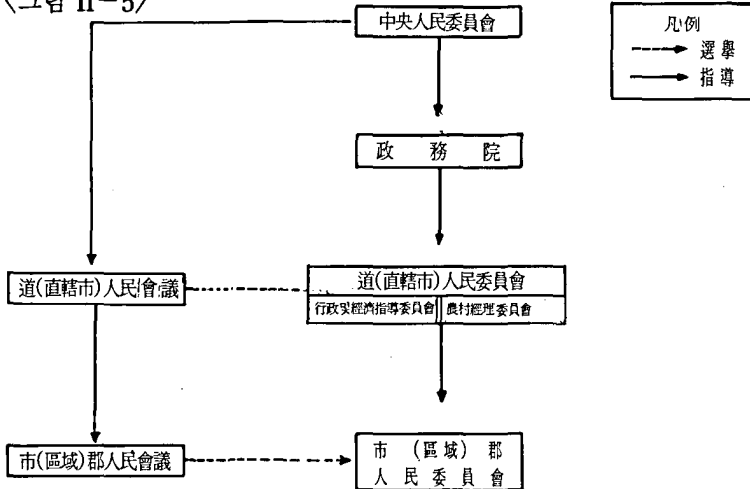
그러나 1981년 9월 道(직할시) 經濟指導委員會의 신설과 더불어 각급 地方行政委員會를 폐지, 당해 地方人民委員會에 통합함으로써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地方主權機關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舊憲法상의 집행기관적 성격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그후 1985년 5월 道(직할시) 經濟指導委員會를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로 다시 개편하면서, 地方人民委員會의 행정 및 집행기능은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로 이관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급 지방당 위원회의 責任秘書가 당해 人民委員會의 委員長을 겸하게 되었다. 地方政權機關의 임무와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7) 북한 헌법 제123조.

地方政權機關 組織體系

<그림 II-5>



\*市(區域)·郡에도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시(구역)·군인민회의는 임기 4년의 대의원과 임기 2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당해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외에 당해 인민위원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및 행정및 경제지도위원장, 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소환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地方人民會議는 위와 같은 헌법상의 임무와 권한<sup>68)</sup>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1~2회의 定期會議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臨時會議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sup>69)</sup>會議는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채택된 決定은 人民委員會 委員長이 공포한다.<sup>70)</sup>

68) 북한 헌법 제118조.

69) 북한 헌법 제119조.

70) 북한 헌법 제120조, 122조.

## 歷代 地方人民會議 選舉

〈표 II-14〉

| 選 學 日                      | 代 議 員 數 |        |                        |                 |
|----------------------------|---------|--------|------------------------|-----------------|
|                            | 道·直轄市   | 市·區域·郡 | 里·邑·勞動者區 <sup>1)</sup> | 面 <sup>2)</sup> |
| 1949. 3. 30                | 689     | 5,164  |                        |                 |
| 1949. 11. 24~25            |         |        |                        | 13,354          |
| 1949. 12. 3                |         |        | 56,112                 |                 |
| 1956. 11. 20 <sup>3)</sup> |         |        | 54,279                 |                 |
| 1956. 11. 27               | 1,009   | 9,346  |                        |                 |
| 1959. 2. 28                |         | 9,759  | 53,250                 |                 |
| 1963. 12. 3                | 2,517   | 14,303 | 70,882                 |                 |
| 1967. 11. 30               | 3,305   | 18,673 | 84,541                 |                 |
| 1972. 12. 12               | 3,185   | 24,784 |                        |                 |
| 1975. 2. 27                |         | 23,833 |                        |                 |
| 1977. 3. 4                 | 3,244   | 24,268 |                        |                 |
| 1979. 3. 11                |         | 24,247 |                        |                 |
| 1981. 3. 5                 | 3,705   | 24,191 |                        |                 |
| 1983. 3.                   |         | 24,562 |                        |                 |
| 1985. 2. 24                |         | 28,793 |                        |                 |
| 1987. 11. 15               |         | 26,539 |                        |                 |
| 1989. 11. 19               |         | 29,535 |                        |                 |

\* 출처: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주: 1)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으로 폐지.

2) 1952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폐지.

3) 1954년 10월 30일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채택 이후 &lt;인민위원회&gt;를 &lt;인민회의&gt;로 개칭.

다음으로 各級 地方人民委員會에 대해 살펴보면 地方人民委員會는 당해 人民會議의 소집과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실시, 하급 人民委員會의 사업지도, 당해지역내 國家機關, 기업소, 사회협동

단체사업을 감독·통제하는 등의 권한<sup>71)</sup>을 가지고 있다.

1985년 5월에 설치된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의 경우 그 임무와 권한에 대한 발표가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으나, 地方人民經濟發展計劃의 추진 등 주로 해당 지역의 경제관계 업무 수행외에 과거 行政委員會가 가지고 있던 헌법상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바) 裁判 및 檢察機關

북한의 裁判機關은 중앙에 中央裁判所, 도에는 道裁判所, 시·군에는 2~3개 市·郡을 단위로 人民裁判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軍事裁判所와 같은 特別裁判所를 두고 있다.

이들 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당해 地方人民會議에서 각각 선출되는 判事 및 人民參審員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당해 人民會議의 임기와 같은데,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소만은 中央裁判所에서 임명하는 판사와 당해 軍務者會議과 종업원회의에서 선출되는 人民參審員으로 구성된다.

재판은 3級 2審制를 원칙으로 判事 1명(특별한 경우 3명), 人民參審員 2명이 수행하나 통상 單審으로 끝나며, 主席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中央裁判所가 모든 재판업무를 감독함으로써 裁判의 獨立性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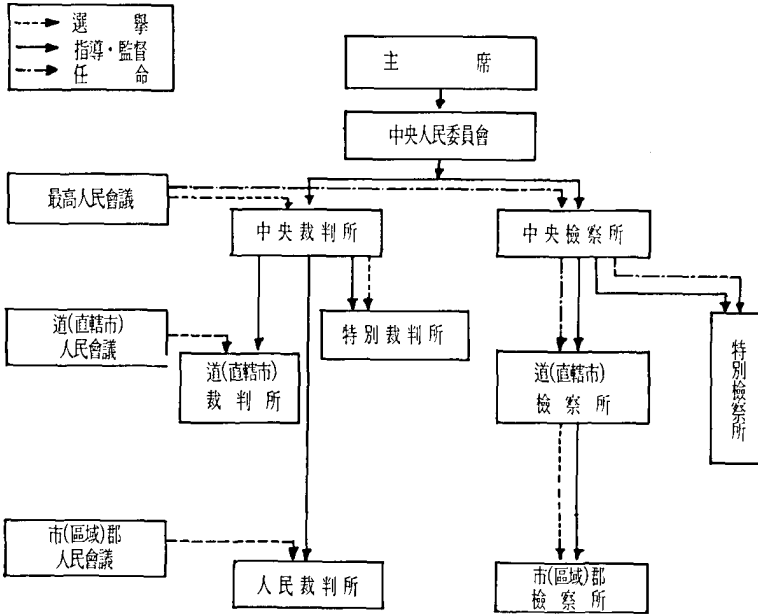
檢察機關도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로 이루어져 裁判機關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檢事의 경우는 判事와는 달리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하며, 검찰 업무 또한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를 받는 中央檢察所의 통일적 지도하에 모든 하급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에 복종해야 하는 中央集權의 檢事同一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裁判·檢察機關 외에 1970년대 초 주민들에게 이른바 社會主義 法務生活을 강조하면서 사회에 대한 法的 統制와

71) 북한 헌법 제125조.

<그림 II-6>

裁判・檢察機關體系



준법 교양의 임무수행을 위해 裁判・檢察機關과는 별도의 國家機關으로 法務生活指導委員會를 두고 있다.<sup>72)</sup>

그런데 각급 法務生活指導委員會는 인민위원장, 사회안전부장, 인민위원회 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당해 지역의 指導幹部級 5~6 명으로 구성되는 準檢察機關의 성격을 지닌 協議體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 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처벌방침 결정
- ② 김일성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류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72)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김일성 연설 : (1977. 12), 김여라,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 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평양 : 근로자사, 1987. 7호) p. 28.

## (4) 特殊機能 組織

북한은 勞動黨規約 또는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수조직들은 1970년대 초반 金日成·金正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權力體系의 확립을 위하여 설치 또는 규정되었으며, 오늘날 北韓體制의 주요 통제장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가) 國家保衛部

國家保衛部는 1973년 당시 政務院 부서인 社會安全部의 기능중 政治保衛部門만을 독립시켜 신설한 기구로 1982년 4월 5일 개최된 最高人民會議 제7기 1차회의에서의 中央國家機關 개편시 人民武力部 및 社會安全部와 함께 政務院機構에서 제외되면서 그 이름도 國家政治保衛部에서 國家保衛部로 개칭되었다.

이 기관은 社會安全部와 더불어 金日成 一人獨裁의 직접적인 집행기관으로서 政治查察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행정체계에 따라 中央으로 부터 道·市(구역)·郡은 물론 人民軍과 같은 군대조직에 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은 每期 최고 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새로운 中央國家機關의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보위부만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人的 構成의 변동은 일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 (나) 3大革命小組

북한은 1972년 社會主義憲法에 3大革命을 규정<sup>73)</sup>한 이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1973년 2월 勞動黨政治委員會 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3大革命小組를 발기해 각급 생산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sup>74)</sup>

73) 북한 헌법 제11조, 25조, 36조.

74) 김강성, 「3대 혁명소조운동과 그 생활력」(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 83.

小組는 노동당 일군, 국가·경제기관 일군, 대학생, 대학교원, 공장기업소의 기술자, 과학자 등의 미혼남녀로 구성되며, 單位小組는 지도대상에 따라 20~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3년 현재 小組員의 총수는 4만 6천명에 달하며, 이 小組員 출신은 모두 11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5)</sup>

이들은 ‘黨中央’인 金正日의 직접 지도밑에 인민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문화기관, 각급 학교에 까지 파견되어 기존의 勞動黨 조직과 더불어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思想革命小組는 主體思想의 보급과 이행을, 技術革命小組는 기술적 낙후성 분석과 새 技術革新의 시도를, 그리고 文化革命小組는 문화시설면의 낙후성 개선을 그 주임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小組運動은 이른바 “靑山里方法을 구현하는 혁명적 지도방법”으로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하고, 위가 아래를 도와주며, 대중을 발동하여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을 다그쳐 나가는 형식의 혁명적 지도방법”<sup>76)</sup>이라 한다.

小組運動은 표면적으로 黨中央의 친위대·근위대로서 勞動黨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오래된 幹部들의 병폐인 보수주의·경험주의·요령주의·기관본위주의·관료주의 등을 개조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sup>77)</sup> 실질적으로는 金日成父子世襲體制 구축과 연관된 체제개편작업의 일환이며, 1980년 10월 노동당 6차 대회시 3大革命小組員 중심의 戰後世代가 대거 입당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하겠다.

75) 3大革命小組員大會報告(1983. 9), 김창성, 「김일성이 밝힌 3대혁명로선의 생활력」(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75), p. 83.

76) 위의 책, p. 83.

77) 손병찬,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로선관철에 끊임없이 충성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근로자」(평양 : 근로자사, 1977. 11호), p. 20.

### 3. 政治權力

#### 가. 政治權力的 變遷

북한의 정치권력 변천과정은 곧 金日成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결과는 몇 가지 時期區分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階級로 구분된다. 즉 ① 북한 정권 初期의 공산주의체제 移植과 金日成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반 구축 단계, ② 金日成 1인체제를 확립 강화하고 偶像化하는 단계, ③ 1970년대 이후 金正日의 등장과 권력승계체제를 유지 강화해나가는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 (1) 權力基盤 構築과 肅清過程

북한의 정치권력은 처음에는 해방전의 공산주의 운동 또는 抗日 鬪爭 경력과 지역적 출신을 달리하는 派閥들간의 연립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북한의 초기 지배층을 구성하였던 과별로는 金日成系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地下공산당운동을 했던 國內派,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 귀국하여 朝鮮新民黨으로 규합된 중국파, 그리고 소련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해방 후 소련군의 진주에 뒤따라 귀국한 소련파가 있었다.

해방 직후 金日成은 북한 주둔 소련군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배자로 부각되었으나, 사실상 뚜렷한 정치적 기반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sup>78)</sup>

78) 1945. 10. 13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1차 확대위원회에서는 金鎔範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으며, 동년 12. 17 개최된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비로소 김일성이 「분국」 책임비서로 선출되었다.



金日成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反對派 혹은 잠재적인 敵對勢力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추진하였다. 숙청의 첫번째 희생자는 국내파 인물들이었다. 金日成은 이미 정권 수립 이전부터 國內派의 유력한 인물들을 “좌경적 오류, 종파주의, 영웅주의자”라고 비판하였다.<sup>79)</sup>

이와같이 시작된 肅清作業은 정권 수립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休戰後의 南勞黨系에 대한 숙청을 비롯하여 1950년 대의 중·후반에 걸쳐 실시된 중국·소련파의 숙청과 1960년 후반의 甲山派와 軍部에 대한 숙청이다. 金日成은 6. 25남침 전쟁의 실패로 인해 조성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南勞黨系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金日成은 195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5차 全員會議를 시발로 1955년 12월까지 南勞黨系의 지도급 인물들인 박헌영, 이승엽, 이강국, 임화 등을 美帝의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몰아 일대 숙청을 단행하였다.<sup>80)</sup>

이후에도 남로당계의 殘黨에 대한 숙청과 함께 中國 및 蘇聯派에 대한 숙청을 거듭하였다.

1956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는 軍需工業을 위주로 한 重工業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함께 같은 해 2월에 개최된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 이후 공산권에서의 個人崇拜 반대 및 스탈린 格下 運動의 여파로 反金日成 기운이 고조됨에 따라 金日成으로서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金日成은 중국파와 소련파에 의한 反金日成 運動이 좌절되고 中·蘇對立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1956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두봉, 최창익, 박창욱 등 중국파와 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79) 1948년 3월 제2차 당대회시 행한 金日成의 報告 原文은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1951), pp. 105~212.

80) 「미 제국주의의 고용간첩 박헌영, 이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 전복 음모와 간첩 사건 공판 문헌」(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1956), pp. 150~160.

## 歷代 黨政治委員會 및 政治局 派閥 構成

〈표 II - 15〉

| 黨大會                 | 委 員 數 |    | 派 閥 構 成 |     |     |     |
|---------------------|-------|----|---------|-----|-----|-----|
|                     |       |    | 김일성과파   | 중국파 | 소련파 | 국내파 |
| 1차(1946. 8)         | 正     | 5  | 1       | 2   | 1   | 1   |
| 2차(1948. 3)         | 正     | 7  | 2       | 3   | 1   | 1   |
| 3 차<br>(1956. 4)    | 正     | 11 | 5       | 2   | 2   | 2   |
|                     | 候補    | 4  | 1       | 1   | 1   | 1   |
| 4 차<br>(1961. 9)    | 正     | 11 | 7       | 1   | 1   | 2   |
|                     | 候補    | 4  |         | 1   |     | 3   |
| 2차대표회<br>(1966. 10) | 正     | 15 | 11      | 1   | 2   | 1   |
|                     | 候補    | 12 | 10      | 1   | 1   |     |
| 5 차<br>(1970. 11)   | 正     | 11 | 11      |     |     |     |
|                     | 候補    | 4  | 4       |     |     |     |
| 6 차<br>(1970. 10)   | 正     | 19 | 19      |     |     |     |
|                     | 候補    | 15 | 15      |     |     |     |
| 현 재<br>(1990. 12)   | 正     | 14 | 14      |     |     |     |
|                     | 候補    | 11 | 11      |     |     |     |

\* 출처 : 각 당대회에서 발표된 「정치위원회」의 출신배경, 경력, 김일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

金日成은 1958년 3월 제1차 노동당 대표회를 소집하여 숙청작업을 일단락 짓는 한편, 전국적으로 「中央黨集中指導事業」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대파를 일소하는 등 1인 지배체제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南勞黨系와 중국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작업을 마무리 지은 김일성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自派에 대한 숙청에 착수하였다. 즉 1967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 회의에서는 박금철과 이효순 등 自派內 甲山派 黨료들을 「反黨 宗派分子」로 몰아 숙청한데 이어, 1969년 1월에는 人民軍黨 제4기 제4

차회의를 소집하여 허봉학, 김창봉 등을 「唯一思想 체계 문란」 등의 죄목으로 숙청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 11월 개최된 노동당 5차대회 이후부터 북한의 지배층은 완전히 金日成 一派로 일색화되었다.

그러나 1973년 9월 金正日의 등장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金日成의 實弟인 金英柱를 비롯하여 김동규, 이용무, 유장식 등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당료와 군부에 대한 숙청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반대파에 대한 숙청은 金日成 父子世襲體制 기반의 확대 및 공고화와 관련, 필요에 따라 계속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 (2) 1人支配體制의 確立과 偶像化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는 처음에는 黨의 思想體系의 확립으로 시작되었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가 본격화된 시점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이 제거되고 1인지배체제의 기반이 구축된 1958년부터로 잡고 있다.<sup>81)</sup>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운동은 그를 과장시킨 찬양과 상징조작, 사상교육, 선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까지 金日成을 대상으로 한 경칭과 찬양의 修辭는 무려 180여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近代史, 특히 우리 민족의 抗日독립운동사는 완전히 金日成의 「혁명투쟁사」와 一家의 美化로 改作되었으며, 신문·잡지와 심지어 학교 교과서, 학술서적 등 모든 출판물에서는 金日成 개인숭배가 일반화되어 있다.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의 내용은 우선 그를 「항일혁명투사」, 「조선의 해방자」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造作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81) 「로동신문」사설 1969. 5. 17.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적 사업 기풍을 세우자”고 주장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sup>82)</sup>라는 戰鬪記錄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이 回想記는 북한주민들에게 정치학습의 기본교재중의 하나이며 聖典처럼 되어 있다. 그 내용의 허구성은 일일이 지적할 필요조차 없겠으나 한가지 예만 들어보면, 金日成의 부대가 15년간 10만여회의 전투를 통해 단 한번도 패배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10만회의 전투일 경우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평균 20여회의 전투를 하였다는 셈이 된다.

오늘날 북한에서의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을 능가하는 위대한 사상가로, 정치·경제·사회·문학·예술의 理論家로 추켜세우는 가 하면 주민들이 먹고 입고 일하는 것까지도 「수령님의 은혜」로 생각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自然科學의 논문에서까지 金日成 語錄을 인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러한 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운동은 혁명적 家系 조작을 통해 金正日의 우상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金日成의 先祖와 외가 친척은 물론 전처인 김정숙도 위대한 항일혁명투사로 과장하여 공식 역사 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의 가족들의 활동장소는 革命戰跡地·史蹟地로, 그리고 무덤은 烈士陵으로 하여 숭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1958년 5월 2일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한 남한의 정객들과 협의회를 가졌다는 평양소재 쑥섬을 성역화하고, 여기에 통일전선탑을 건립하는 등 이른바 「통일의 九星」으로서의 金日成 상징조작을 강화하고 있다.

### (3) 金正日의 登場과 權力 承繼體制 強化

북한에서 後繼問題가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11월 노동당 5차대회 이후로 알려져 있다.

82)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朴成哲, 金東奎, 崔賢, 林春秋 등 항일 빨치산투쟁을 전개했다는 94명이 집필에 참여, 총 12권(3222면)을 1959년 5월 노동당 역사연구소 명의로 발간하였다.

1971년 6월에 개최된 社勞靑 6차대회 연설에서 金日成은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해방 후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sup>83)</sup>고 주장함으로써 世代交替論, 革命承繼論의 입장을 밝혔다.<sup>84)</sup>

그리고 1971년 노동당 기관지인 「근로자」 7호에 게재된 논설에서도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혁명위업은 아들이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sup>85)</sup>는 주장을 통해 後繼世襲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이와 같은 후계세습의 필연성 주장은 金日成 없는 「김일성주의」를 유지하고, 死後 金日成에 대한 格下運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김일성체제와 김일성 사후체제의 동질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역사 심리학적인 김일성 개인의 정치적 욕구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金正日이 후계자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9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非公開會議에서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로 선출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金正日로의 후계 옹립운동이 적극화된 것은 1974년 2월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이후로 보인다. 이 회의를 통해 노동당 5차대회 이래 金日成의 후계자로 알려져 왔던 實弟 金英柱가 당비서에서 물러남은 물론, 김영주와 함께 권력의 중심부로 급성장하던 남일, 김동규(부주석)등이 잠적하는 한편, 金正日을 옹호하는 임춘추, 오진우 등의 지위가 강화되는 권력 중심

83) 1971. 6. 24 社勞靑 6차대회에서의 金日成 연설 “청년들은 代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중앙년감」(1972), p. 285.

84) 북한의 부자세습에 대한 명분을 합리화 하는 이론들은 「혁명세습론」, 「세대교체론」, 「혈통계승론」, 「역사적 준비 단계론」, 「김일성 화신론」 등이 있다.

85) “모든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서 튼튼히 키우자”, 「근로자」(평양: 근로자사, 1971. 7호), p. 15.

부에서의 변동현상이 나타났다.<sup>86)</sup> 그리고 金正日이 이끄는 3大革命小組運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들 小組員들의 활동이 사회 전부분에 걸쳐 확대되는 등 下部組織에서의 金正日에 대한 지지기반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sup>87)</sup>

이와 함께 북한은 그들의 宣傳煽動資料 가운데 父子世襲을 비판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제거하였다.

즉 社會科學院에서 편찬한 1970년도판 「정치용어사전」에는 세습이라는 용어와 함께 비판적 내용이 수록되었으나,<sup>88)</sup> 1973년도판 「정치사전」에서는 세습이란 단어 자체를 삭제, 수록치 않고 있다. 그리고 1975년 10월부터는 金正日을 후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資質禮讚論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때에는 金正日의 이름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고 「黨中央」이라는 別稱을 사용하였다. 金正日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면서 후계자로 지칭되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로 해외로 나가는 선전책자, 특히 朝總聯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를 통해서였다.<sup>89)</sup>

金日成·金正日 세습체제의 구축작업은 이상의 과정을 거쳐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金正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86) 노동당 중앙위원회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힘을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총동원할 데 대하여”라는 議題를 토의하고 6개년 계획을 75년 10월 당창건 30주년 기념일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후 「속도전운동」이 전개되는 등 새로운 變化의 징후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이 全員會議가 끝나자 곧바로 조직담당비서인 金英柱를 부총리로 전보 발령했다.

87) 3대혁명이라는 말이 북한의 출판물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3년 10월부터이다. 「로동신문」, (1973. 10. 22) 참조.

88) 세습제도는 착취사회에서 특권계급의 신분에 기초하여 그 직위 또는 재산을 대대로 물려 받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킨 반동적 제도이다.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414.

89) “...우리 당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수령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조총련 간부 학습제강」(1977. 2); 노동신문에 金正日의 이름이 처음 나온것은 훨씬 뒤인 1981년 4월 27일 콜롬비아 국회대표단 방북시 대표단장의 연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각하”라는 언급을 보도한 때이다.

상무위원·비서·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김정일이 노동당 6차대회에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공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1980년 12월 19일 社會安全部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 때부터이며, 실무차원의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1년 5월 김일성을 따라 묘향산 지구 개발공사 현장에서 「實務視察」을 한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주요 산업·건설현장에 나타나 「實務指導」를 해왔다.

그리고 김정일은 1983년도부터는 중국이나 소련의 당·정 간부를 접견하는 등 대공산권 외교활동도 하고 있다. 1983년 6월에는 중국당 총서기 胡耀邦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1984년에는 북한을 방문한 소련 부외상 카피차를, 1986년 1월에는 소련 외상 세바르드나제를 접견하였고 1986년부터는 중·소의 수뇌급 지도자들과 신년 연하장을 교환하는 등 정상급으로서의 대·소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1989년 10월 26일 쿠바공산당기관지 그란마 사장의 질문에 서면 답변한 데 이어 1990년 10월 노동당 창건 45돌에 즈음해서는 근로자 10월호에 「조선 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종래와 달리 「現地指導」를 김일성과 동일하게 현지지도로 발표하는 등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노동당을 대표하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 金正日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사실상 시기의 선택만 남은 셈이다.

## 나. 支配層의 變化

北韓의 지배층은 경직된 少數集團으로 이루어져 있다. 政治支配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勞動黨政治局委員(후보위원 포함)과 秘書를 역임한 人物은 1948年 8月 勞動黨 1次大會부터 1990年 12월 현재 모두 54명이며, 中央委員會委員으로 선출되었던 인물은 347

명이며, 政權機關의 경우도 주석·부주석·중앙인민위원·총리(수상)·부총리(부수상)를 역임한 인물은 54명, 部長(相)·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은 203명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의 거의 모두가 黨·政權機關의 직책을 겸직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방 이후 現在까지 北韓을 統治해 온 最高支配層의 변화는 실제 300명 내외의 소수집단내에서의 교체에 불과한 것이다.

### 歷代 黨政治委員會(局)委員 및 祕書 變化

〈표 II-16〉

| 黨大會     | 委員 및 祕書 | 連任 | 候補에서昇進          | 新任 | 再選              | 3選              | 4選 | 5選 | 6選 | 7選 |
|---------|---------|----|-----------------|----|-----------------|-----------------|----|----|----|----|
| 1 차     | 정 5     |    |                 |    |                 |                 |    |    |    |    |
| 2 차     | 정 8     | 5  |                 | 3  | 5               |                 |    |    |    |    |
| 3 차     | 정 11    | 3  |                 | 7  |                 | 3               |    |    |    |    |
|         | 후보 4    |    |                 | 4  |                 |                 |    |    |    |    |
| 4 차     | 정 11    | 10 | 1               |    | 9               |                 | 1  |    |    |    |
|         | 후보 4    |    |                 | 4  |                 |                 |    |    |    |    |
| 2차대표자회의 | 정 15    | 9  | 1               | 5  | 1               | 7               |    | 1  |    |    |
|         | 후보 11   | 2  |                 | 9  | 1               | 2               |    |    |    |    |
|         | 비서 11   |    |                 |    |                 |                 |    |    |    |    |
| 5 차     | 정 11    | 3  | 2               | 8  | 3               |                 | 2  |    | 1  |    |
|         | 후보 4    | 1  |                 | 3  |                 | 1               |    |    |    |    |
|         | 비서 10   | 4  |                 | 6  | 4               |                 |    |    |    |    |
| 6 차     | 정 19    | 8  | 1 <sup>1)</sup> | 10 | 3               | 3 <sup>2)</sup> |    | 1  |    | 1  |
|         | 후보 15   | 1  |                 | 14 | 1 <sup>3)</sup> |                 | 1  |    |    |    |
|         | 비서 10   | 2  |                 | 8  | 1               | 1               |    |    |    |    |

\* 출처: 각 당대회시 발표 명단을 근거로 작성.

\* 주: 재선, 연임 등의 구분은 당대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노동당의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선출된 것은 고려하지 않았음.

- 1) 2차 대표자회의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노동당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임.
- 2) 노동당 4차대회와 2차 대표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 포함.
- 3) 2차 대표자회의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되었던 1명임.



## 歷代 黨中央委員會 委員變化

〈표 II-17〉

| 黨大會 | 中央委員會    | 連任  | 候補에<br>서昇進 | 新任              | 2選 | 3選               | 4選              | 5選              | 6選 |
|-----|----------|-----|------------|-----------------|----|------------------|-----------------|-----------------|----|
| 1차  | 委員       | 43  |            |                 |    |                  |                 |                 |    |
|     | 候補<br>委員 | -   |            |                 |    |                  |                 |                 |    |
| 2차  | 委員       | 67  | 29         |                 | 38 | 29               |                 |                 |    |
|     | 候補<br>委員 | 20  |            |                 | 20 |                  |                 |                 |    |
| 3차  | 委員       | 71  | 29         | 5               | 35 | 19 <sup>1)</sup> | 12              |                 |    |
|     | 候補<br>委員 | 45  | 3          |                 | 42 | 3                |                 |                 |    |
| 4차  | 委員       | 85  | 27         | 11              | 47 | 15               | 7               | 5               |    |
|     | 候補<br>委員 | 50  | 1          |                 | 49 |                  | 1               |                 |    |
| 5차  | 委員       | 117 | 29         | 15              | 72 | 19               | 8 <sup>2)</sup> | 1               | 2  |
|     | 候補<br>委員 | 55  | 6          |                 | 49 | 6                |                 |                 |    |
| 6차  | 委員       | 145 | 70         | 11              | 61 | 54 <sup>3)</sup> | 12              | 5 <sup>4)</sup> | 2  |
|     | 候補<br>委員 | 103 | 15         | 6 <sup>5)</sup> | 81 | 16 <sup>6)</sup> |                 |                 |    |

\* 출처 : 각 당대회시 발표명단.

- \* 주 : 1) 노동당 1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2차 대회에서는 탈락되었던 2명 포함.  
 2) 2차, 3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4차대회에서 탈락됐던 1명 포함.  
 3) 3차, 4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됐던 2명 포함.  
 4) 1차, 2차, 3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4차, 5차대회에서 탈락됐던 1명 포함.  
 5) 4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됐던 3명과 5차대회에서 중앙위원이었던 2명 포함.  
 6) 3차대회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5차대회에서 탈락됐던 1명 포함.

그러나 이와 같은 少數의 경직된 집단내에서의 相互交替의 빈도는 比較的 높은 편으로 1980년 10월 勞動黨 6次大會 이후 중앙위원회 政治局委員(후보위원 포함)은 27%, 祕書는 58%가 교체되었으며, 현재 中央人民委員會위원은 최고인민회의의 8기 1차회의시(1986. 12. 29)에 비해 構成員의 20%가 교체되었다.

# Ⅲ. 經濟



# 1. 經濟政策 基調

## 가. 自立的 經濟建設

북한은 경제체제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면서 부터 自力更生の 원칙을 앞세워 자립경제를 구축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이때 북한경제에서의 自立이란 自己完結的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북한은 自力更生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입장과 정신”<sup>1)</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金正日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金正日의 명의로 “자력갱생은 자기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투쟁원칙”<sup>2)</sup>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것은 自力更生の 원칙을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정신으로 하여 자체의 힘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해야 한다<sup>3)</sup>는 종래의 주장에 부자세습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金正日을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自力更生은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對內 需要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sup>4)</sup> 이와같은 自力更生

1) 「백과전서」 4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160.

2) 「경제사전」 2권(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p. 20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 47.

3)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p. 2.

4) 「우리당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선」(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p. 2.

원칙의 고수는 결과적으로 폐쇄적 경제체제로 구체화됨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조건하에서 국가간 資源과 商品의 교류에서 오는 國際分業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先進技術과 海外資本의 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기술 낙후, 성장 둔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內資動員에 의한 경제개발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1984년 9월 合營法을 제정하는 한편, 대외무역의 확대, 특히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증대에 주력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폭넓은 내부개혁체제로의 전환을 도외시킨 채 對外經濟協力を 부분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여의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에 金日成 新年辭 및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全員會議를 통해 「增産과 節約 鬭爭」을 제기하고 각종 경제선동집회를 개최하면서 自力更生에 의한 內資動員 극대화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sup>5)</sup> 특히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1990. 5. 24)에서 合營工業部를 신설된지 1년 6개월만에 폐지시킨 것은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실패 하였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 나. 重工業 優先政策

북한은 重工業을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기간공업부문들과 임업이 중공업에 포함된다.<sup>6)</sup>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초기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重工業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5) 이상 1990년도 상반기 발행 「로동신문」 참조.

6) 「백과전서」 4권, p. 695.

重工業은 생산의 骨格體系를 이루고 勞動道具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 富를 창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중공업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없다”<sup>7)</sup>고 주장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북한은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의 추진으로 輕工業, 農業 등 여타 산업부문들과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역시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宣傳媒體를 통해 重工業과 輕工業간의 균형을 올바르게 設定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 와서 輕工業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1989년도를 輕工業의 해로 설정<sup>8)</sup> 하였던 사실도 산업부문간 불균형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진다.

## 다. 軍事·經濟의 竝進

북한은 1962년 12월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大 軍事路線」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國防에서의 自衛를 제창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하여 군사력 강화와 경제건설의 竝進政策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정책은 1966년

7) 「김일성 저작집」 19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 294.

8) “1989년도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89. 1. 1.

10월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 제기되었고 勞動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을 통해 채택<sup>9)</sup>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경제 운용의 기본방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년까지는 예산에서 軍事費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67~71년 동안은 30% 이상으로 군사비가 대폭 증액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동서화해와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북한은 軍事費를 종전의 절반정도 (예산총액의 17% 이하)로 축소시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비를 실제로 절감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平和 이미지 부각을 위해 군사비를 人民經濟費, 社會文化施策費 등 여타 豫算費目에 은폐시킨 것에 불과하다.<sup>10)</sup>

북한의 軍事·經濟 並進政策은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책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國防力을 강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11)</sup>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면 필연적으로 消費部分을 억제시킬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북한주민의 소비생활 窮乏化 現象은 북한이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과 軍事·經濟 並進政策의 계속적 추진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經濟體制

### 가. 社會主義的 所有制度

9) 「로동신문」, 1966. 10. 8.

10) 본서 생산부분변천황중 재정부분을 보면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변화를 알 수 있음.

11) 「김일성저작집」 19권, p. 294 ; 「백과전서」 4권, pp. 695~696.



북한은 社會主義的 所有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sup>12)</sup>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全人民的 所有와 協同的 所有로 대별된다.

全人民的 所有는 國家所有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자연부원의 전부, 공장기업소의 절대다수, 운수, 은행 및 체신기관의 전부, 상업수매기관의 기본부분, 도시와 노동자 區의 기본적인 주택포드나 공공시설 그리고 국가기업소 생산물의 전부 등”이 속한다.<sup>13)</sup> 協同的 所有는 資本主義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로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社會主義的 所有의 한 형태라고 북한은 주장한다. 協同的 所有는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밑에 농민과 수공업자, 그리고 중소상공업자들이 그들의 사적 소유인 생산수단”<sup>14)</sup>을 통합하여 형성한 것이다. 북한에서 協同的 所有가 지배적으로 남아 있는 분야는 농업이다.

協同的 所有는 小商品生産을 기초로 하는 私的 所有로부터 全人民的 所有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全人民的 所有로 이행하게 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또한 全人民的 所有와 協同的 所有는 “사회화 수준에서 차이를 가질 뿐 사적 소유의 폐절(廢絶)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회적 소유로서 동일한 유형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sup>15)</sup>

이 밖에 북한에서는 매우 부분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 개인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 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협동농장원들의 「副業經理」生産物과 그 생산을 위한 약간의 소농기구들도 개인소유를

12) 「백과전서」 3권, p. 530.

13) 「경제사전」 2권(평양: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 p. 118.

14) 위의 책, p. 740.

15) 「백과전서」 3권, p. 740.

허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sup>16)</sup> 북한의 각종 수매 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社會主義的 改造를 1946년에 착수하여 12년만인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동년 3월 5일 「土地改革에 관한 法令」을 발표하여 無償沒收·無償分配의 原則<sup>17)</sup>에 따라 「民主改革」이라는 이름의 土地改革을 실시하였고, 동년 8월 10일에는 主要産業의 國有化 法令을 발표,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의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 부문을 계속 확대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國營 農·牧場을 설치하는 등 「社會主義的 改造」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는 社會主義的 改造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8)</sup>

오늘날 북한은 어느 공산권 국가보다도 私有的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의 임금과 분배 몫으로 구득할 수 있는 개인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생산물과 생산수단이 國·公有化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소유로 인정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蓄積」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라 북한주민은 소비생활에서 크게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선 축적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축적을 소비보다 빨리 늘릴 것”<sup>19)</sup>이 강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增産과 節約鬭爭」<sup>20)</sup>을 강조하고 있다.

16) 「경제사전」 2권(1970), p. 118.

17)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 16.

18) 구체적인 생산수단의 집단화 과정은 본서 「경제계획 및 실적」중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기’에서 참조.

19) 「백과전서」 3권, p. 154.

20) 1990년도 김일성 신년사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 전원회의

이와 같은 북한의 社會主義的 所有는 북한 주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 國·公有 및 私有化 比率

〈표 III-1〉

| 年度<br>區分 |      | 1949 | 1953 | 1956 | 1957 | 1958. 6 | 1958.10 |
|----------|------|------|------|------|------|---------|---------|
|          |      | 工業   | 國·公有 | 90.7 | 96.1 | 98.3    | 98.7    |
|          | 私有   | 9.3  | 3.9  | 1.7  | 1.3  |         |         |
| 農業       | 國·公有 | 3.2  | 32.0 | 80.9 | 95.6 | 98.6    | 里單位     |
|          | 私有   | 96.8 | 68.0 | 19.1 | 4.4  | 1.4     | 로 통합    |
| 商業       | 國·公有 | 56.5 | 67.5 | 84.6 | 87.9 | 100     |         |
|          | 私有   | 43.5 | 32.5 | 15.4 | 12.1 |         |         |

\* 출처: 統一朝鮮新聞社, 「統一朝鮮年鑑」 1967~68, p. 830.

## 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

북한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sup>21)</sup>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意思決定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中央當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中央集權的 命令(指令)經濟體制」라고도 한다.

오늘날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북한, 쿠바 등을 제외하고 이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는 經濟體制 자체의 構造的 矛盾과 經濟規模의 확대에 따른 경제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經濟管理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21) 「경제사전」 1권 (1970), p. 369.

종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制限的 分權化 體制 및 市場社會主義 經濟體制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북한에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國家計劃委員會를 중심으로 하여 道·市·郡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一元化된 體系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勞動黨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計劃의 一元化와 細部化 원칙이 강조된 이래, 종래의 道·市·郡 계획위원회 이외에 국가계획위원회 직속의 地區計劃委員會와 중앙 공장·기업소에 計劃部를 설치함으로써 계획체제의 中央集權化를 더욱 강화시켰다. 政務院의 각부 및 위원회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를 통해 경제를 계획화하는데 있어서 구조적 모순점이 되고 있는 主觀主義와 機關本位主義, 地方本位主義를 없애고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sup>22)</sup>고 보고 지금까지 이를 고수하고 있다.

計劃의 細部化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취해지는 계획의 원칙적 체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요한 것만을 계획화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經營活動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한다는 것으로서 사소한 자연발생성의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計劃化 방법이라고 주장한다.<sup>23)</sup>

이러한 計劃의 細部化는 計劃의 一元化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한편 계획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sup>24)</sup>

第1段階는 「豫備數字」 작성단계로서 하부 생산단위에서부터 상

22) 「김일성저작선집」4권, p. 173 ; 「경제사전」 1권(1970), p. 370.

23) 「백과사전」 1권, pp. 793~794.

24)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p. 582~608.

향으로 작성·제출된 계획 숫자를 地區計劃委員會 및 政務院의 각 위원회와 部에서 이를 통합, 國家計劃委員會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第2段階는 보고된 예비숫자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별도로 제시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기초로하여 「統制數字」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統制數字는 계획시기의 경제발전방향과 규모 및 균형을 규정한 政府의 지령이며 계획작성의 기준으로서 豫備數字와는 달리 당의 지령으로서 거의 법적 의무성을 띤다. 이 단계에서 工業總生産額과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규모, 농업생산 규모, 수송 규모, 상품 유통액, 각종 소비재 생산관련지표, 기본건설투자 규모 등이 統制數字를 통해 명시된다. 統制數字는 國家計劃委員會가 하부로부터 올라 온 豫備數字를 참고로 하여 당의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초안을 작성하여 黨의 批准을 받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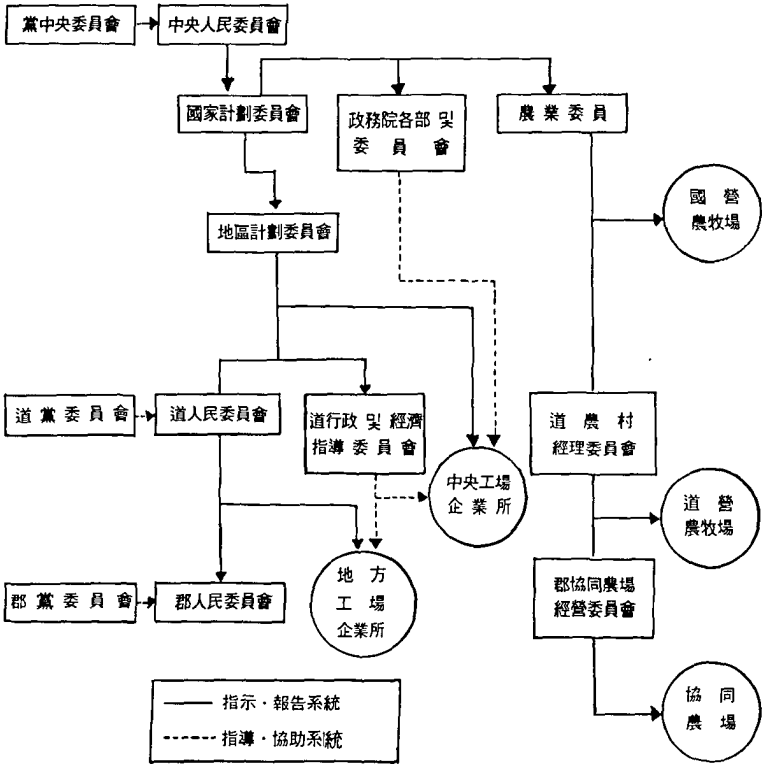
第3段階에서는 비준된 統制數字가 國家計劃委員會를 통해 다시 하부 단위기관으로 시달되는데, 이 統制數字를 근거로 하여 해당 계획부서에서 계획초안을 만들어 상향 보고하고 國家計劃委員會는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계획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하부 단위기관들은 하달된 통제숫자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만을 세우도록 한정되어 있다. 통제숫자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計劃草案에 근거를 밝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통제숫자가 半法的 性格을 띠고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이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관계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第4段階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초안을 政務院 全員會議나 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여기에서 「展望計劃」에 대해서는 형식상 最高人民會議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되게 되어 있다. 확정된 계획의 수행은 법적 의무로 된다.

이상과 같은 계획수립의 과정을 북한측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면 <그림Ⅲ-1>과 같다.

經濟計劃 作成體系

<그림 III-1>



### 3. 管理原則 및 體系

#### 가. 靑山里精神, 靑山里方法

靑山里 정신·靑山里 방법은 북한 경제관리의 기본이 되고 있다.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은 1960년 2월 金日成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現地指導를 실시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북한은 이를 “주체사상과 혁명적 균중로선에 기초한 조선노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며 공산주의적 대중지도사상이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sup>25)</sup>

북한 경제관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청산리 방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관철하고, ② 항상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③ 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자 각각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一般的指導」와 「個別的指導」를 결부시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낸다는 것도 청산리 방법에 포함되어 있다.

## 나. 大安의 事業體系

북한은 공업관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支配人 唯一管理制」를 채택하여 支配人이 관리·운용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하여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唯一管理制는 官僚主義와 機關本位主義와 같은 개인의 독단과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기업관리에 下部 職員의 직접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결함이 지적되기에 이르렀다.<sup>26)</sup>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1961년 12월 金日成이 大安電氣工場 現地指導에서 제시한 大安의 事業體系이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청산리 정신·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sup>27)</sup>

25) 「백과전서」 5권, p. 48.

26) 「경제사전」 2권(1970), p. 821.

27) 「경제사전」 1권(1970), p. 533

1962년부터 실시된 대안의 사업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① 勞動黨의 지도적 역할 강화와 경제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앞세우는 정치사업의 우선, ② 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工場黨委員會의 集體的 討議와 지도 및 勞動黨 간부와 지배인의 생산현장 지도의 강화가 포함된 群衆路線의 관철, ③ 중앙집권화된 계획적 관리와 獨立採算制의 실시 등이 그것이다.<sup>28)</sup>

이러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9)</sup>

① 工場黨委員會의 집체적 지도와 책임 아래 생산활동을 관리하며, 工場黨委員會에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생산핵심당원) 등이 참여한다.

②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하에서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技師長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사업·後方供給事業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및 경제활동은 支配人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③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各部 管理局→工場·企業所→職場→生産現場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지도하며, 상급기관이 자재를 책임 공급한다.

④ 總合的 後方供給體系로서 지금까지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는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어 副食物 공급 조차 매우 부진하게 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勞動者區 經理委員會」를 설치하고 공장 후방공급 副支配人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근로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결국 대안의 사업체계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sup>30)</sup> 라는 집단주의적 구호 아래 근로대중을 동원, 정치활동을 선행시키는 가운데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북한의 공업부문관리

28)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2권, pp. 86~123, p. 423;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27~234.

29) 「경제사건」1권(1970), pp. 533~536.

30) 「김일성저작선집」제3권, p. 422.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다. 獨立採算制

북한은 모든 국영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獨立採算制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실시정도에 따라 完全獨立採算制, 半獨立採算制, 二重獨立採算制로 구분되어 있다.

완전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모든 국영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본 형태를 지칭한다. 당초의 독립채산제는 個人利己主義·機關本位主義·地方本位主義 등의 사업태도가 상존하는 가운데 노동기피현상과 國家財産의 소홀한 관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장·기업소에 대한 계획적 지도와 함께 「원(화폐)에 의한 통제」<sup>31)</sup>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중앙계획에 의해 공급되고 제한을 받는 勞力·資材·資金의 절약, 비생산적 지출의 감소, 勞動生産性의 제고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데는 지금까지 다음의 원칙들이 요구되고 있다.<sup>32)</sup>

먼저 勞動黨의 정책과 國家計劃의 무조건적 실행, 기업 운영에서 生産大衆의 참여와 정치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계획·관리, 기업소의 운영상의 융통성, 상품과 화폐 관계에 있어서의 적절한 배합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이 옹기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31) 「원에 의한 통제」는 일명 재정통제라고도 하며, 사회주의국가가 재정은행기관들을 통하여 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를 말한다.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2)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pp. 146~147; 「경제사전」 1권(1985), pp. 442~443.

있다.

북한이 말하는 독립채산제의 기업적 측면을 보면,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각 國營企業은 은행신용의 이용과 독자적인 貸借對照表를 보유하며, 물자 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貨幣指標를 활용하게 되며 이익금에 있어서는 「國家 몫」(이것을 ‘국가계정 이익금’이라고 함)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경우, 그것은 기업소의 운영상태 개선과 종업원들의 물질생활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독립채산제는 북한의 주장과 실제 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이 제도의 통제적 측면에서 발견되어진다.

독립채산제의 통제적 측면을 보면, 기업소의 勞賃資金·賞金·企業所 基金의 積立 規模 등 모든 경제관리를 정확히 규정화하고 고정재산의 관리·이용을 제도화하며 재정사무 수행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月別·分期別·指標別로 국가계획의 엄격한 수행을 감독·통제하는 한편, 기업소의 운영실적이나 근로자의 노동에 대해서도 모든 항목과 지표별로 매달·매분기 마다 물질적·정치적 평가를 실시한다.

북한은 이와 같이 양면성을 지닌 독립채산제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천리마 작업반 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반 우대제, 분조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북한경제운용에 있어서 일부 하부 경제단위에 다소나마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독립채산제 자체가 “공업관리에서 중앙집권적 지도를 약화시키면서 지방의 독자성을 내세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대치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東歐 社會主義經濟의 分權化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sup>33)</sup>

그런데 독립채산제는 1970년대 초부터 중앙의 國營企業所 뿐만

33) 「로동신문」 사설, 1981. 10. 14.

아니라 지방공장을 포함한 공업부문, 농업부문,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인 流通部門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 6월 전국 지방산업 일꾼 대회에서 金日成이 소규모의 지방산업 공장에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sup>34)</sup> 1984년 6월에는 事務機關을 제외한 非生產部門의 기관이나 기업소에서도 完全獨立採算制 또는 半獨立採算制의 형태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또 제2차 7개년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소집된 1984년 12월 勞動黨 中央委員會 제6기 제10차 全員會議에서도 1985년도 경제계획 수행 문제와 함께 조직문제를 제기하면서 金日成은 半獨立採算制를 점차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지시하였다.<sup>35)</sup>

半獨立採算制는 “非生產 部門의 기관·기업소들 가운데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단위들에 적용”<sup>36)</sup>되는 독립채산제의 한 형태이다. 반독립채산제는 대상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자체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國家豫算의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적 독립채산제이다. 이것은 대상기관 및 기업소들의 수입을 제고시켜 財政支出을 줄이겠다는 목적하에 실시되는 것이다.

2重 獨立採算制는 중간 관리조직인 聯合企業所와 總局, 管理局 등이 산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장·기업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하나의 計劃單位, 生產單位, 執行單位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독립채산제 실시 강화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다.<sup>37)</sup> 즉 하부 단위조직인 공장·기업소가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상위조직인 연합기업소, 총국, 관리국 등도 각각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二重的인 독립채산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34) 「조선중앙년감」(1974), pp. 152~153; 「조선중앙년감」(1981), p. 25.

35) 「조선중앙년감」(1985), p. 120.

36) 전국계정은행일군대회(1990. 9. 13~14)에서의 연형목 보고내용 참조.

37) 위 대회에서의 연형목 보고내용.

## 라. 社會主義 勞力競爭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社會主義 勞力競爭運動을 전개한다. 이 노력경쟁은 개인별, 작업분조별, 작업반별, 직장별, 공장·기업소 또는 협동농장별로 진행되는데, 노력경쟁의 주된 기준은 부과된 生産課題를 얼마만큼 초과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노력경쟁 운동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북한경제 운용에 있어서 각종 經濟煽動集會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정치·경제체제의 規範的 속성에 기인한다.

북한은 1946년 12월부터 「建國思想總動員運動」이라는 사회주의 경쟁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經濟建設과 思想改造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었는데, 특히 國家財産 愛好, 勞動規律 強化, 原價 切下, 技術習得 등이 강조되었다. 이 운동은 그후 「증산돌격대 운동」으로 구체화되었으며 「3·1절 증산경쟁」, 「5·1절 증산경쟁」, 「상시증산돌격대」 등의 운동으로 증폭되었다.<sup>38)</sup>

戰後에는 1954년 초부터 3개년 복구계획과 함께 「복구돌격대 운동」, 「民靑巡廻優勝旗 爭取運動」 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력경쟁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2월 勞動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 이후부터이다.<sup>39)</sup>

북한은 노동 강화를 통한 생산증대의 도모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千里馬運動을 내세웠다.

북한 노동당의 總路線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1959년 3월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61년 8월까지 200만명

38) 「조선중앙년감」(1949), p. 97.

39)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p. 101 ; 같은 책 제4권, p.115.

이상의 근로자가 이 운동에 동원되었다고 한다.<sup>40)</sup>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천리마 운동이 내세운 모든 근로자의 共產主義的 敎養·改造를 바탕으로 작업반 단위로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兩者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운동의 범위는 공업·농업·건설·보건·과학·교육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중심과업으로는 「사람과의 사업」(思想革命), 「설비·자재와의 사업」(技術革命), 「책(당학습교재, 김일성저서 등)과의 사업」(文化革命)을 잘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41)</sup>

1975년 말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勞力競爭運動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오래전부터 金日成과 勞動黨 中央委員會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던 검덕광산과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1975년 12월 1~2일에 각기 쫓기대회를 가짐으로써 발단되었다.<sup>42)</sup>

이 운동이 발단된 것은 이른바 革命과 建設에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제문제들을 해결하고 金日成 主體思想의 요구대로 3大革命을 촉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운동은 종래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같이 作業班을 기본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보다 넓은 단위와 영역에서 전개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1982년 7월 9일 金策製鐵所의 쫓기모임을 시발로 하여 소위 「80년대 속도창조 운동」이 金正日의 주도하에 적극 추진되었다.<sup>43)</sup> 이 운동은 종래의 「千里馬運動」과 「速度戰」을 가미하여 작업 성과를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데 그 목적이

40)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p. 53, p. 426 : 천리마작업반 운동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에서 발단된 것이며 「민주조선」(1965. 7. 17)에 의하면 1955년 6월 말 현재 87만 3천명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학생을 망라한 23,000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칭호를 받았다고 함.

41)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pp. 321~354.

42) 「로동신문」, 1975, 12, 2 : 「근로자」(평양 : 근로자사, 1976. 1호), pp. 12~17.

43) 「경제사전」 2권(1985), p. 552.

있었다. 특히 북한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와 관련하여 1988~89년 기간중 2차에 걸쳐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특별상금을 지급하는 등 북한에서의 勞動競爭은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4. 分野別 管理

### 가. 農業管理

북한의 농업관리는 「適地適作, 適期適作」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위 主體農法을 실현시킨다는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郡農業協同農場 經營委員會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관리하는 전문적인 農業指導機關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이를 중심으로 하여 농업생산의 계획화 및 기술적 지도는 물론, 農業生産의 「多角化·專門化·地域化」를 도모하고 있다.<sup>44)</sup>

북한의 농업관리 조직은 社會的 所有의 두 가지 형태에 따라 대별된다. 國家的 所有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國營 農·牧場, 國營 農機械作業所, 國營 灌溉管理所 등이며, 協同的 所有로는 協同農場을 들 수 있다.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은 농업 전문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 관리 조직의 구성면에서는 協同農場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45)</sup>

管理體系를 보면, 처음에는 郡人民委員會 農村經理部에서 郡內의 농업 전반을 장악하여 행정방식으로 지도·관리하였다.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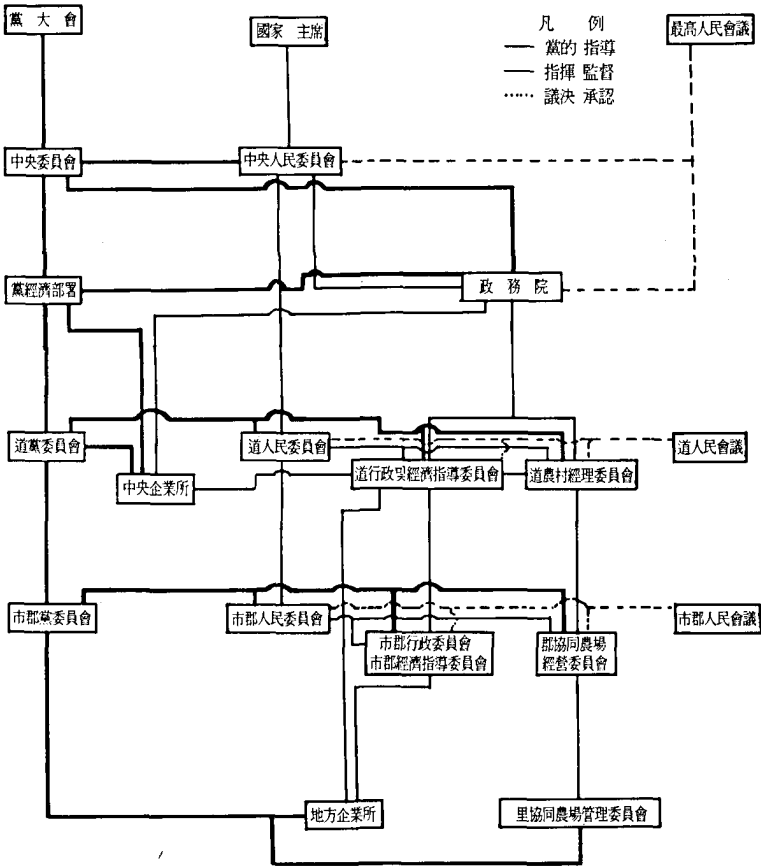
44) 「경제사건」 1권(1985), pp. 400~403.

45) 「정치경제학」하권 (동경: 학우서방, 1967), pp. 366~367.

官僚主義·獨斷主義 등이 팽배하였으며 郡人民委員會 委員 자체의 지도역량 부족과 지도 간부의 低水準으로 協同組合에 대한 계획수립, 기술·자재공급, 노동행정, 재정활동 등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sup>46)</sup> 이에 따라 1961년 12월 金日成의 평남 숙천군

北韓의 經濟官理 體系

<그림 III-2>



46)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pp. 31~75.

현지도에 의해 종래의 군인민위원회에서 農村經理部를 분리시켜 郡協同農場 經營委員會를 신설하게 되었다.<sup>17)</sup>

1962년 말부터 郡協同農場 經營委員會를 농촌경리의 말단 단위로 하여 이를 道農村經理委員會와 중앙 政務院의 農業委員會와 一元의으로 연결시켰다. 전문적 농업지도기관이자 농업기업소의 성격을 띤 郡協同農場 經營委員會는 군내 협동농장 및 농업부문의 國家企業所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개편된 農村管理體系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농업관리의 기본방향을 보면, ① 당위원회의 集體的 指導下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 지도, ② 郡단위로 工業的·企業的 方法에 의한 농촌관리, ③ 中央集權的 一元化 體系의 원칙 반영 등이다.

또한 郡協同農場 經營委員會에 나타난 「農村經理」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郡을 단위로한 企業的·綜合的인 관리: 郡內 협동농장들의 생산활동과 관련 기업소의 財政活動 등 모든 기업활동을 總括的·集體的으로 지도한다.

② 「협동경리」에 대한 國家的 指導·협조 강화: 郡內的 農機械 作業所·農機械修理工場·獸醫防疫所 등 국가단위의 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이용함으로써 郡協同經理 전반에서 생산의 조직성을 제고시키고 郡을 단위로 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준비를 갖춘다.

협동농장에서의 생산조직의 기본 형태는 作業班이 된다. 이 작업반은 일정한 경지, 노동력 및 작업도구를 가지고 부과된 연간 생산과제를 수행한다. 작업반은 몇개의 分組로 다시 나뉘어지고 있으며 분조단위로 작업을 한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生産規模와 자연부락, 지역적 조건에 따라 農産作業班, 畜産作業班 및 農機具修理班 등으로 조직된다. 기타

47)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2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pp. 144~165.



생산부문은 소규모의 경우는 작업반 내의 分組로 소속시키고 규모가 큰 경우는 專門作業班을 조직하기도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分組管理制와 함께 作業班 優待制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優待基準을 설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반의 구성원들이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sup>48)</sup>

## 나. 工業管理

북한의 공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이 모두 社會化되어 있는 관계로 관리의 초점은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 제고를 위한 政治事業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북한은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 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49)</sup> 북한에서 각종의 대규모 경제선동집회가 자주 개최되는 사실도 「사람과의 사업」의 일환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된다. 또한 북한이 제시하는 經濟管理의 基本原則은 ① 行政經濟事業과 黨 政治事業의 결합, ② 集體的 指導와 統一的 指揮의 결합, ③ 계획의 一元化와 細部化 실시, ④ 獨立採算制 실시 등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사회주의적 소유 및 관리 제도로 인한 생산의욕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의 사업」인 근로자의 主人意識 고취와 責任性 提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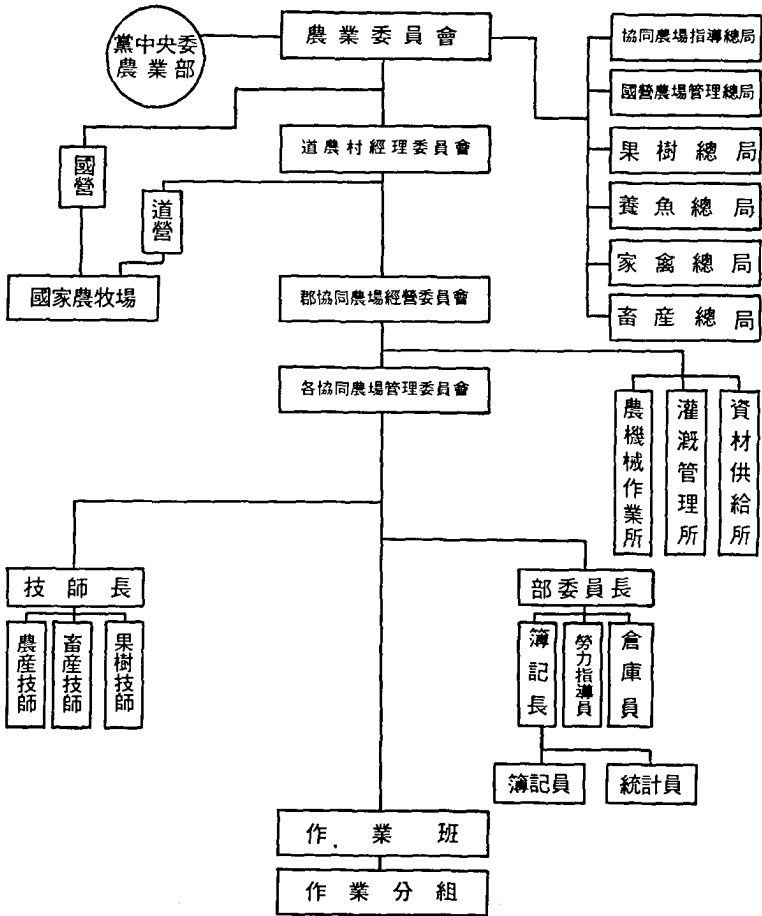
북한의 工業管理는 그 내용에 따라 計劃作成, 設備管理, 資材管理, 勞力管理, 生産指導, 財政管理, 後方管理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공업관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공장·기업소뿐만 아니라

48) 「경제사전」2권 (1985), p. 265.

49) 「경제사전」1권 (1985), p. 707; 「김일성저작선집」17권, p. 493.

農業管理組織 體系

〈그림 Ⅲ-3〉



\* 予：北韓의 農業은 1949年 3月의 土地改革에 의한 〈耕作地制〉를 基礎로 한 個人農時代以後 1954~1958年間に 實施된 農業集團化 課程을 거쳐서 現在 協同農場을 主軸으로 소위 社會主義的 定形의 農業經營體制를 形成하고 있다.

농업·건설 등의 생산조직 체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所有形態別로 보면, 國營工場·企業所와 協同團體 工場·企業所로, 관할에 따라서는 中央工場·企業所와 地方工場·企業所로 나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單一企業所, 聯合企業所, 綜合企業所로 구분된다.

공장·기업소의 생산조직 및 관리는 생산·기술적 특성과 생산의 전문화, 그리고 협동화 수준에 따라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각 공장·기업소의 生産工程別, 生産品目別로 職場이 조직되며, 각 직장은 여러개의 作業班으로, 작업반은 다시 分組들로 나뉘어진다. 특히 3級 이상의 중요한 공장·기업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中央黨 및 政務院의 경제 관련부서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 공장·기업소에 대해서는 각 道·市·郡 黨委員會와 각 道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장·기업소의 관리·운영은 工場黨委員會를 중심으로 집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무적 차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을 따로 두고 있어, 실제로 공장·기업소의 관리 및 운영은 黨責任祕書와 지배인의 二元的 構造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리구조는 1961년 12월 대안전기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비롯되었다. 金日成은 당시 공장 운영·관리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장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하였다.<sup>50)</sup>

“공장관리운영체계를 순위대로 말한다면 공장당위원회가 첫자리에 있고 공장당위원회 밑에 공장당집행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그 밑에 지배인과 공장당위원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배인 밑에는 기사장과 부지배인들이 있고 그 밑에 공장의 여러 부서들이 있어야 하며 공정당위원장 밑에는 공장당위원회의 여러 부서들과 직맹, 민청, 녀맹과 같은 근로단체조직들이 있어야 한다.”

50) 「김일성저작선집」 15권, pp. 510~511.

## 다. 流通管理

북한경제에서 유통은 國家의 計劃과 統制속에서 中央集權的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商業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상업과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의 상업은 자본주의경제와 같이 市場機構가 존재하는 상업이 아니라 國家唯一體制하에서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 내지 관리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업이다.

북한에서의 상업체계는 원칙적으로 行政指導 기능과 管理기능을 분리하며 都賣商業과 小賣商業에 대한 지도나 관리를 분리하는 원칙하에서 상업관리체계를 조직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人民奉仕委員會 商業部를 비롯하여 道·市·郡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에 상업행정부서를 설치하고 있다.<sup>51)</sup>

북한은 관리상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勞動黨은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는 상품유통의 전과정을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지휘함과 동시에 특히 소매상업의 지방관리를 통해 지방관리들로 하여금 상품공급에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sup>52)</sup>

북한의 商業網은 대부분 상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商店網이라고도 하는데, 상업망에는 都賣商業網, 小賣商業網, 社會給養網, 收買網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매상업망으로서 이를 규모에 따라 商店·賣店·賣臺로, 취급품종에 따라 專門商店과 非專門商店으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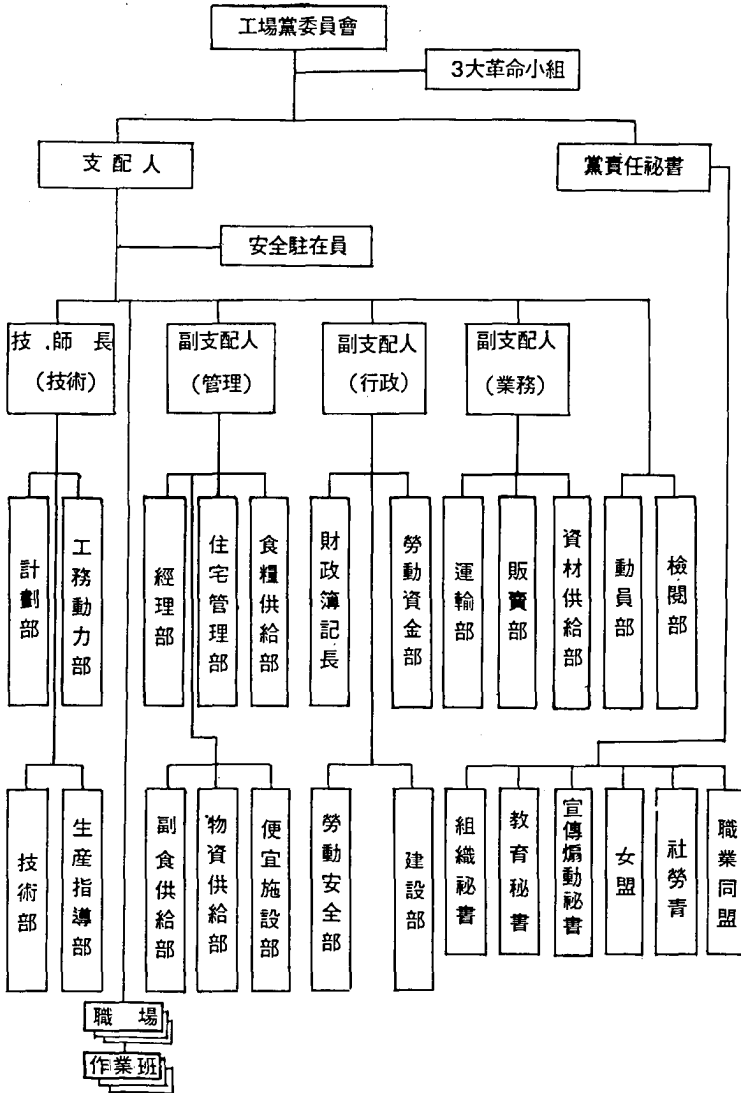
商業企業所의 운영은 商業附加金を 기초로 이루어진다. 상업부가금은 商業企業所의 유통비와 이익금을 고려하여 상품에 반영하는 添加金を 말한다. 이를테면 생산기업소에서 상품을 넘겨 받을 때

51) 「경제사건」 2권, p. 59.

52) 위의 책, 같은 페이지.

工場・企業所 生産組織

〈그림 III-4〉



적용되는 도매가격에 상업부가금이 첨가되어 소매가격을 이룬다.

商業附加金은 국가에서 상품가격을 정할 때 그 상품의 유통비와 상업기업소의 이윤 규모를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한다. 그러나 상품이 생산지에서 최종소비지에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북한은 상업부가금은 1회만 적용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sup>53)</sup>

상업부가금에는 도매상업부가금과 소매상업부가금이 있다. 소매상업부가금은 소매상업기업소에 상품이 직접 공급될 때에 적용되며 이것은 소매상업기업소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또한 도매망을 거칠 경우에는 도매소와 소매기업소 사이에 그 수입이 일정을씩 분배된다. 이와 같은 상업부가금은 政務院 商業部에서 통일적으로 시달한다.

상업부가금의 수입은 상업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맞추고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으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상업부가금의 증대는 국가기업이익금을 늘이고 북한의 재정수입을 확대시키는 기본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 라. 價格管理

북한에서의 價格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 노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된다.<sup>54)</sup> 투하된 勞動費用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되는 社會的 必要勞動支出이 상품가격 결정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價格制定의 중요한 원칙의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리시키는 것이다.<sup>55)</sup> 예를 들어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는 관계없이 높게 정한다. 이와 같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까닭에 북한의 가격은 市場價格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53) 「경제사전」 2권, p. 56.

54) 「김일성저작선집」 23권, p. 462.

55) 「경제사전」 1권, p. 42.

가격제정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 때에 요구되는 것이 가격제정사업을 중앙집권 원칙에서 유일적으로 정한다는 價格의 一元化이다.

價格의 一元化는 국가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協同經理에서 생산되는 일부 채소와 과일, 수산물의 가격은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해진 標準價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sup>56)</sup>

일원화 체계에서의 가격제정 과정을 보면, 우선 공장·기업소에서 「가격제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격제정기관들에 제출하게 된다. 각 가격제정기관들은 이 가격제정신청서를 심의하고 비준함으로써 가격을 제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앙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중요 제품의 가격은 中央價格制定機關에서 유일적으로 제정되며 지방공업기업소와 중앙공업기업소의 생활필수품, 직장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들은 지방가격제정기관에서 제정된다.

북한의 가격은 기관, 기업소들이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된다. 북한은 이러한 가격통제를 “가격제정 및 적용과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sup>57)</sup> 價格統制는 國家計劃委員會, 財政部, 價格制定委員會 등 여러 경제기관들에 의하여 실시된다. 가격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격제정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의 전문가가격제정기관에 의한 통제이다. 전문가가격제정기관은 모든 경제부문에 당의 價格政策 執行定型을 시달하고 가격에 대한 감독과 검열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각종의 경제적 및 법적 제재조치를 취한다. 국가의 전문가가격제정기관들은 가격제정의 원칙과 절차, 가격제정 범위와 가격제정 및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가격이 제정되고 적용되도록 통제한다.

56) 「경제사전」 1권, p. 44. “가격의 일원화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1. 3. 26, 김일성 담화)

57) 「경제사전」 1권 (1985), p. 42.

이를 위해 가격제정기관들은 價格表와 그 적용 규정을 공포하고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검열을 실시한다. 가격통제는 가격제정기관외에 계획 및 통계기관, 재정은행기관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계획기관과 통계기관은 경제계획의 작성과 모든 計劃 指標들의 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적용된 가격의 통제를 실시한다. 또한 재정은행기관들의 가격통제를 보면, 제정기관들은 기관·기업소들의 재정계획, 이윤과 자재수입품 계획 작성과정에서 계산수단으로 이용된 가격들을 통제하며, 은행기관들은 국가자금 공급 및 대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원에 의한 통제」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가격통제는 기자재 공급 및 소비품 유통기관에 의한 통제, 생산기업소 및 지방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 마. 分配管理

북한의 소득은 “사회의 공동적인 소비(국가관리, 과학, 교육, 보건, 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된다.<sup>58)</sup> 생산수단은 機 資財 供給計劃에 의거하여, 노동임금은 勞動報酬計劃에 따라 분배·관리된다. 특히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지불할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 노동계획 기본항목의 하나인데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 노동보수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계획, 장려금계획, 상급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總生活費計劃이 있고, 계획시기에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平均生活費計劃이 있다. 獎勵金計劃은 「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이

58) 위의 책, p. 650.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보수계획」이다. 이 계획은 獎勵金計算勞力數와 基準平均生活費, 계획년도의 勞動定畧提高率, 獎勵金率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급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이게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더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목적의 報酬計劃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사무원들의 生活費를 기초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는 勞力日을 기준으로 분배되고 있다. 연말(보통 10월~12월)에 가서 각 협동농장을 단위로 決算分配를 진행,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 활동을 총 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決算分配사업은 ① 결산분배의 준비, ② 결산서의 작성과 비준, ③ 決算分配總和會議 진행, ④ 현물 및 현금 분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sup>59)</sup> 결산분배를 위한 준비사업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확정, 勞力日의 확정과 재평가, 채권·채무의 청산, 財産實査등이 진행된다. 결산서에는 생산계획 수행과 관련한 지표들과 수입분배 관련 지표들, 그리고 생산 및 재정성적을 평가하는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산서는 農場員總會(대표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해당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이때 상급기관은 제출된 決算書를 심의하고 매개 단위의 생산 및 財政活動을 평가하며 경리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 준다. 상급기관의 결산서 비준 절차가 끝나면, 협동농장 결산분배총화회의를 통해 總和報告에 이어 決算分配書를 통과시키고 檢査委員長이 결산기간중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검열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금 및 현물 분배가 실시된다.<sup>60)</sup>

그런데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분배 몫인 「勞力報酬 фонд」의 규모는 소비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다. 이는 북한경제가 재산을 위한 「蓄積 фонд」와 함께 「社會文化 фонд」,

59) 위의 책, p. 79.

60) 위의 책, 같은 페이지.

「社會保障펀드」, 「國家管理펀드」, 「國防펀드」 등의 「사회적 펀드」를 중요시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 가운데 노력보수에 대한 분배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 5. 經濟計劃 및 實績

### 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基盤構築期

북한은 남북분단 직후부터 土地改革, 主要産業國有化,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 1958년 8월의 농업 협동화와 수공업자·상공업자의 협동화를 끝으로 생산관계의 社會主義化를 완료하였다. 이같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가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北韓의 社會主義 改革過程

〈표 III-2〉

| 時 期          | 改 革 內 容              |
|--------------|----------------------|
| 1946. 3. 5   | 土地改革에 관한 法令 公布       |
| 1946. 8. 10  | 主要 産業의 國有化 法令 公布     |
| 1946. 12. 22 | 地下資源·山林·水域 國有化 法令 公布 |
| 1954. 4      | 協同農場 조직 착수           |
| 1958. 8      | 農業, 手工業·商工業者 協同化 완료  |
| 1958. 10~12  | 協同組合을 里單位로 확대, 개편    |

북한에서 국가적 소유에는 협동단체 소유를 제외한 토지·지하자원·산림자원·기타 자연자원·중요공장과 기업소·은행·항만

그밖의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 등이 포함되며,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sup>61)</sup> 이에 대해 협동적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구, 동물, 어선, 건물 등과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된다.<sup>62)</sup>

### (1) 土地改革과 農業의 集團化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土地改革 法令을 공포하고, 無償沒收·無償分配<sup>63)</sup>에 의한 土地改革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농경지 약 200만 정보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이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sup>64)</sup> 되고 나머지는 모두 國有化되었다.

그후 「土地灌溉 管理令」(1946. 9), 국영 농·목장의 규모 확장 (1949. 12) 農機械 賃耕所 설치(1950. 2) 등을 거쳐 휴전 후인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6차전원회의에서 1954년부터 農業協同組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sup>65)</sup>

노동당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는데,<sup>66)</sup> 第1形態는 고정적인 「노력협조반」이고, 第2形態는 出資한 노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半社會主義的 形態」이며, 第3形態는 토지·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量과 質에 의해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북한 당국은 이 세 가지 형태중 농민들의 실정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個 郡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

61) 북한헌법 19조.

62) 북한헌법 20조.

63) 「조선로동당 력사 교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 16.

64)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71.

65) 「김일성선집」 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0), p. 21.

66) 「정치경제학」 하권 (동경: 학우서방, 1967), pp. 66~67.

부터 집단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56년 4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1차5개년계획 기간중 집단화를 완성시킬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집단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었다.

북한은 농업집단화를 착수한지 불과 5년만인 1958년 8월에 이미 전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당시의 농업협동조합의 수는 13,309개였는데, 1개 협동조합은 평균 80戶, 농가로 조직되었고 경지 면적은 1개 조합당 130정보였다. 그러다가 1958년 10월 협동조합을 里단위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3,843개 조합으로 그 수가 줄어든 반면, 1개의 협동조합은 300戶, 500정보로 그 규모가 커졌다.

### 農業의 集團化

〈표 III-3〉

| 年度   | 農業協同<br>組合總數<br>(개소) | 協同組合에 가입한 農家戶<br>數 |                     | 協同組合에 편입된 耕地面積    |                     |
|------|----------------------|--------------------|---------------------|-------------------|---------------------|
|      |                      | 戶 數                | 總 農家戶數에<br>대한 비율(%) | 耕地面積<br>(1,000정보) | 總 耕地面積에<br>대한 비율(%) |
| 1953 | 806                  | 11,879             | 1.2                 | 11                | 0.6                 |
| 1954 | 10,098               | 332,662            | 31.8                | 576               | 30.9                |
| 1955 | 12,132               | 511,323            | 49.0                | 885               | 48.6                |
| 1956 | 15,825               | 864,837            | 80.9                | 1,397             | 77.9                |
| 1957 | 16,032               | 1,025,106          | 95.6                | 1,684             | 93.7                |
| 1958 | 3,843                | 1,055,015          | 100.0               | 1,791             | 100.0               |
| 1963 | 3,732                | 1,066,896          | 100.0               | 1,837             | 100.0               |

\*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1946~63)」(동경: 일본 조선연구소, 1965)

그후 1961년 11월 郡(區域) 人民委員會로부터 農村經理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郡(區域) 農業協同

組合 經營委員會를 조직하고, 郡내에 있는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 공장, 관개 관리소, 자재 공급소, 獸醫 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2년부터 오늘의 협동농장 경영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농업협동조합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게 된 것이다.

## (2) 産業의 國·公有化

1946년 8월 10일, 북조선 임시위원회는 「主要産業國有化法令」을 발표하여 일체의 공장·기업소·광산·발전소·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을 國有化하는 조치를 취했다.<sup>67)</sup> 그 결과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社會的 所有로 전환되었다.<sup>68)</sup>

한편 개인이 경영하던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6·25전은 물론 휴전 후까지도 부족한 생활 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獎勵·利用·制限」이란 정책의 과정을 거쳐 오다가 결국에는 이것들마저도 國·公有化해 버렸다.

6·25사변 이후 個人商工業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는 農業의 集團化와 같이 다음 세 가지 형태가 활용되었다. 즉 第1形態는 도시의 手工業者들에 대한 生産 協同班化이며, 第2形態는 中小商工業者들의 협동반화이며, 第3形態는 생산수단이 共同所有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이었다.

### 小賣商品 流通額의 所有形態別 構成

〈표 III-4〉

(단위: %)

| 區 分         | 1946 | 1949 | 1953 | 1956 | 1957 | 1959 |
|-------------|------|------|------|------|------|------|
| 國營 및 協同團體商業 | 3.5  | 56.5 | 67.5 | 87.3 | 87.9 | 100  |
| 個人商業        | 96.5 | 43.5 | 32.5 | 12.7 | 12.1 | 0    |

\* 출처: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 355.

67)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 17.

68)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 73.

이와같은 노동당의 방침과 과정을 거쳐서 農業集團化의 완성과 때를 같이하여 수공업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協同化도 1958년 8월에 완료되었다.

요컨대 북한은 수공업자들을 協同經理의 튼튼한 기반위에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워 企業家·商工人들이 협동조합에 집단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

### 工業 總生産額의 經濟形態別 構成

〈표 III-5〉

(단위: %)

| 區 分       | 1946   | 1949   | 1956   | 1959   | 1960   | 1963   |
|-----------|--------|--------|--------|--------|--------|--------|
| 社會主義經濟形態  | 72.4   | 90.7   | 98.0   | 100.0  | 100.0  | 100.0  |
| (國 營)     | (72.4) | (85.5) | (89.9) | (89.5) | (89.7) | (91.2) |
| (協同經營)    | (—)    | (5.2)  | (10.5) | (8.1)  | (10.3) | (8.8)  |
| 小商品 經濟形態  | 4.4    | 1.5    | 0.7    | —      | —      | —      |
| 資本主義 經濟形態 | 23.2   | 7.8    | 1.3    | —      | —      | —      |

\* 출처: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4), p. 171.

### (3) 短期 經濟計劃의 실시

북한의 經濟計劃은 1947년부터 실시되었다. 당시는 단기계획으로서 1947년과 1948년 2회에 걸쳐 각각 1個年計劃으로 추진되었으며, 1949년에는 2個年計劃을 착수하였다.

2개년계획에서는 산업분야에서 日帝의 식민지적 잠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각 부문의 생산을 급속히 늘릴 목표를 세웠으나, 2개년 계획은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전후 북한은 戰前水準으로의 경제복구에 목적을 둔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社會主義 工業化의 기초 구축에 목적을 둔 5個年計劃을 실시하였다.

195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7차회의에서 채택된 戰後復舊 3個年計劃은 생산수준을 戰前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계획은 중·소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

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sup>69)</sup> 실제로는 석탄, 시멘트, 곡물 등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었던 것이다.

1957년부터 착수한 5個年計劃은 社會主義 經濟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동 계획은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 經濟計劃의 目標

<표 III-6>

| 計 劃                                      | 課 業  | 計 劃 目 標   |
|--|--|---|
| 1次1個年計劃 <sup>1)</sup><br>(19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企業所 복구조업</li> <li>◦ 國營商工業 확대</li> <li>◦ 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생활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총생산:<br/>1946년 비 약 2배</li> <li>◦ 곡물수확고:<br/>1946년 비 30만톤 증산</li> </ul>               |
| 2次1個年計劃 <sup>2)</sup><br>(19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工業의 편파성 극복</li> <li>◦ 생산품의 질 제고 및 원가절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총생산:<br/>1947년 비 41% 증가</li> <li>◦ 곡물수확고:<br/>1947년 비 13.5% 증가</li> </ul>            |
| 2個年計劃 <sup>3)</sup><br>(1949~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후된 産業과 農業의 발전</li> <li>◦ 조선 전역의 경제 복구토대 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산업총생산:<br/>1948년 비 194%</li> <li>◦ 곡물총생산:<br/>1946년 비 158% (쌀잡곡)</li> </ul>          |
| 전후복구<br>3個年計劃 <sup>4)</sup><br>(1954~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戰前水準 도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소득: 1953년 비 75% 증가</li> <li>◦ 공업총생산: 2.6배</li> <li>◦ 곡물수확고: 1949년 대비 119%</li> </ul> |
| 5個年計劃 <sup>5)</sup><br>(1957~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工業化的 기초구축</li> <li>◦ 食衣住문제 기본적인 해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소득: 약 2.2배</li> <li>◦ 공업총생산: 2.6배</li> <li>◦ 곡물수확고: 376만톤</li> </ul>                 |

\* 출처: 1) 북한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보고(1947. 2. 19)

2) 북한 인민위원회 4차회의(1948. 2. 6)

3) 1948년 계획실행 총화 및 1949~50년 2개년계획 법령 발표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54. 4. 23)

5) 북한 노동당 3차대회 보고(1956. 4. 23)

69) 「북한노동당 3차 대회 보고」 1956. 4. 23.

## 나. 社會主義的 經濟計劃 推進

북한에서 社會主義的 經濟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經濟計劃이 시작된 것은 1961년 第1次7個年計劃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6個年計劃 第2次7個年計劃을 실시한 이래, 현재 第3次7個年計劃은 추진중에 있는데 각 계획 기간별 當面課業과 計劃目標 및 實績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經濟計劃의 目標와 實績

〈표 III-7〉

| 區 分                                     | 基本 課 業   | 主 要 目 標  | 實 績   |
|---|--|--|---|
| 第1次<br>7個年計劃 <sup>1)</sup><br>(1961~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重工業發展</li> <li>• 輕工業·農業의 同時的 發展</li> <li>• 全國的 技術革新</li> <li>• 文化革命과 國民生活의 向上</li> <li>• 國防·經濟 竄進</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所得: 2.7倍</li> <li>• 工業總生産: 3.2倍</li> <li>• 糧穀收穫高: 600~700萬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所得: 未發表</li> <li>• 工業總生産: 3.3倍</li> <li>• 機械金屬工業成長率: 18.4%</li> <li>• 勞動生産性成長率: 147.5%</li> <li>• 糧穀收穫高: 未發表</li> <li>• 計劃期間 3年延長</li> </ul>   |
| 6個年計劃 <sup>2)</sup><br>(1971~7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社會主義 物的, 技術的 土臺 鞏固化</li> <li>• 産業設備近代化</li> <li>• 技術革命 促進</li> <li>• 勞動者를 解放된 勞動에서 解放</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所得: 1.8倍</li> <li>• 工業總生産: 2.2倍</li> <li>• 糧穀收穫高: 700~750萬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所得: 1.7~1.8倍</li> <li>• 工業總生産: 2.5倍</li> <li>• 機械金屬工業成長率: 19.1%</li> <li>• 勞動生産性成長率: 155%</li> <li>• 糧穀收穫高: 800萬噸(1976年)</li> </ul>  |
| 第2次<br>7個年計劃 <sup>3)</sup><br>(1978~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民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li> <li>• 生産原價 引下</li> <li>• 節約運動 強化</li> <li>• 輸送의 近代化</li> <li>• 住民生活 向上</li> <li>• 獨立採算制 強化</li> <li>• 對外貿易 增大</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所得: 1.9倍</li> <li>• 工業總生産: 2.2倍</li> <li>• 糧穀收穫高: 1,000萬噸</li> <li>• 80年代 10大展望目標과 4大自然改造事業 推進</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所得: 未發表</li> <li>• 工業總生産: 2.2倍</li> <li>• 電力生産成長率: 178%</li> <li>• 鐵道生産成長率: 185%</li> <li>• 工作機械生産成長率: 167%</li> <li>• 糧穀收穫高: 1,000萬噸(1984年)</li> <li>• 시멘트·合成樹脂·織物 生産 目標達成</li> <li>• 鐵道 60% 電氣化</li> </ul> |
| 第3次7個年計劃 <sup>4)</sup><br>(1987~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民經濟 主體化·現代化·科學化</li> <li>• 技術革新</li> <li>• 對外貿易 및 經濟協力 增大</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民所得: 1.7倍</li> <li>• 工業總生産: 1.9倍</li> <li>• 農業總生産: 1.4倍</li> </ul>   | 추진중   |

\* 출처: 1) 북한 노동당 4차 대회 보고(1961. 9. 11)

2) 북한 노동당 5차 대회 결정서(1970. 11. 12)

3)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1977. 12. 15)

4)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1987. 4. 21)



## (1) 第1次 7個年計劃(1961~70)

북한은 1961년부터 1950년대 후반의 5개년계획에서 구축된 工業基盤을 더한층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한 7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 조성이 불균형한 상태로나마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함께 북한의 對內指向의 工業化 정책의 한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1년 7월의 쿠바 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大軍事路線을 채택하고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소의 理念紛爭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對北韓 援助가 격감됨에 따라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계획기간을 3年間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의 계획목표에 미달하였다.

## (2) 6個年計劃(1971~76)

북한은 1970년 11월 12일 勞動黨 5次大會를 통해 3大技術革命 수행과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6個年計劃을 마련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개년계획기간중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西歐로부터의 자본, 技術 및 設備의 도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제국으로부터 도입한 借款 및 延拂收入貨金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外債問題를 야기하였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 자본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당초 계획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1975년 8월 갑자기 동계획을 1년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그후 무려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第2次 7個年計劃의 초기부터 북한 경제는 공업생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 (3) 第2次 7個年計劃(1978~84)

1978년부터 착수된 第2次 7個年計劃에서는 人民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를 표방하고, 1977년에 비하여 國民所得 1.9배, 工業總生産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目標年度인 1984년이 지나도록 동 계획의 완수 및 추진결과에 대해 일체의 발표가 없다가 1985년 2월 16일 중앙통계국을 통해 동 계획이 1984년 말을 기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의하면 동 계획기간의 주요 成長指數는 기준년도에 비해 공업 생산액 2.2배를 비롯하여 電力 178%, 石炭 150%, 鋼鐵 185%, 工作機械 167%, 트랙터 150%, 자동차 120%, 채탄기 4.2배, 화학비료 156%, 화학섬유 180%, 시멘트 180%, 천 145% 등으로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은 「社會主義 經濟建設 10大展望目標」, 「4大 自然改造事業」<sup>70)</sup> 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북한은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 확대·발전방침 채택,<sup>71)</sup> 合營法 제정·공포 등과 같은 경제적 대외개방 조치를 취했으나 역시 실적은 부진했다.

이와같은 의욕적인 경제시책하에 第2次 7個年計劃은 예정대로 1984년에 종료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실적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북한은 第3次 7個年計劃에 착수하기까지

70) 「북한노동당 제6기 4차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81. 10). 4대자연개조사업이란 20만정보 새땅찾기, 30만정보 간석지 개관, 태천발전소 건설, 서해 감문건설 등을 말함.

71)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1984. 1)

2년간의 調整期를 거쳐야 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第2次 7個年計劃 후반기부터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消費生活에 대한 욕구충족 문제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80年代 10大 展望 目標

〈표 III-8〉

| 區 分     | 單 位   | 1989年 目標值 | 備 考                      |
|---------|-------|-----------|--------------------------|
| 電 力     | 萬 Kwh | 1,000     | 成分含量 기준시 164<br><br>粗穀基準 |
| 石 炭     | 萬 噸   | 12,000    |                          |
| 鋼 鐵     | 〃     | 1,500     |                          |
| 有 色 金 屬 | 〃     | 150       |                          |
| 化 學 肥 料 | 〃     | 700       |                          |
| 시 멘 트   | 〃     | 2,000     |                          |
| 織 物     | 萬 m   | 15        |                          |
| 알 곡     | 萬 噸   | 1,500     |                          |
| 水 産 物   | 〃     | 500       |                          |
| 干 拓 地   | 萬정보   | 30        |                          |

\* 출처 : 「북한노동당 6차대회 김일성 보고」(1980. 10. 10)

#### (4) 第3次 7個年計劃(1987~93)

제3차 7개년계획은 그 기준과업으로 제2차 7개년계획과 같은 經濟의 主體化·現代化·科學化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7배(연평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10大展望目標 실현 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고 있다.<sup>72)</sup>

이처럼 제3차 7개년계획은 그 추진방향이 제2차 7개년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 특히 計劃目標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경제계획에 비해 下向 査定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북한의

7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회의」(1987. 4. 21)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려워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第3次 7個年計劃의 主要計劃 數值

<표 III-9>

| 區 分             | 3次7個年計劃 | 2次7個年計劃                |             |
|-----------------|---------|------------------------|-------------|
|                 | 目 標     | 目 標                    | 實 績         |
| • 電 力 (億 kwh)   | 1,000   | 560~600                | -           |
| • 石 炭 (萬 t)     | 12,000  | 7,000~8,000            | 7,000       |
| • 鐵 鋼 (萬 t)     | 1,000   | 740~800                | -           |
| • 非鐵金屬 (萬 t)    | 170     | 100                    | -           |
| 機 械 (倍)         | 2.5     | (500萬 t)               | 2.3         |
| • 化學肥料 (萬 t)    | 720     | 500(1.6倍)              | 500         |
| 化學纖維 (萬 t)      | 22.5    | (1.8倍)                 | (1.8倍)      |
| 合成樹脂·가소製 (萬 t)  | 50      | (合成樹脂 2倍)              | (合成樹脂 2.4倍) |
| 炭酸소다 (倍)        | 4.5     | 3.4                    | -           |
| 苛性소다 (倍)        | 2.1     | 1.8                    | -           |
| 硫 酸 (倍)         | 3       | 1.9                    | -           |
| • 시멘트 (萬 t)     | 2,200   | 1,200~1,300(生産能力1,200) | -           |
| • 織 物 (億 m)     | 15      | 8                      | 8           |
| 地方工業 (倍)        | 2.5     | 2.4                    | -           |
| • 殺 物 (萬 t)     | 1,500   | 1,000                  | 1,000       |
| 쌀 (萬 t)         | 700     | -                      | -           |
| • 于拓地造成 (萬 ha)  | 30      | 10                     | -           |
| 耕地10ha當트랙타臺數(臺) | 10~20   | 10                     | -           |
| 1ha當化學肥料施肥量(t)  | 2.5     | 2                      | -           |
| 肉類生産 (萬 t)      | 170     | 80~90                  | -           |
| 계란生産 (億個)       | 70      | -                      | -           |
| 山林構成 (萬ha)      | 150     | -                      | -           |
| 과일生産 (萬 t)      | 200     | 150                    | -           |
| • 水産物生産 (萬 t)   | 1,100   | 350                    | 350         |
| 魚 類 (萬 t)       | 300     | -                      | -           |
| 해조·貝類양식 (萬 t)   | 800     | -                      | -           |
| 住宅建設 (萬世帯)      | 每年15~20 | 每年20~30                | 期間中 數10     |
| 技術者·專門家數 (萬人)   | 200     | -                      | 125         |
| 豫防治療集團數 (倍)     | 1.2     | 1.3                    | (290여곳 新設)  |
| 病院寢臺數 (倍)       | 1.3     | 1.2                    | -           |
| 人口1萬名當醫師數 (人)   | 43      | -                      | -           |

\* 출처: 北韓의 公式發表值

\* 주: ① ·은 「10대전망목표」 對象品目.

② ( )안은 직접비교가 아닌 參考數值.

③ 2次7個年計劃의 -표시는 未發表.

동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① 技術革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 무역과 對外 經濟協力の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技術革新을 종전처럼 노력동원의 補助手段으로서가 아니라, 經濟開發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sup>73)</sup> 또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중 國民所得의 3.4%를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한국이 6次5個年計劃(1987~91)에서 과학 기술투자를 3%까지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의욕을 짐작할 수 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주요정책 방향과 북한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은 동 계획기간중 특히 대외 경제부문에 있어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어 온 外債問題를 비롯, 경제체제의 경직성 그리고 金正日 승계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대외개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북한의 무역과 對外經濟協力 확대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 第3次 7個年計劃의 主要目標

〈표Ⅲ-10〉

| 部 門 別   | 建 設 內 容   |
|---------|---|
| 基本建設全般  | 第2次7個年計劃期間에 비하여 1.6배의 基本建設投資 실시, 基本건설투자의 80% 이상 生産的 建設에 投資.                                   |
| 國 民 所 得 | 國民所得 1.7배 증대, 勤勞者 實質所得 1.6배, 農民 實質所得 1.7倍 增大  |
| 科學技術開發  | 科學研究事業에 國民所得 3~4% 投資. 光纖維 케이블化, 人工衛星 通信網 擴張, 海外留學生·研究生 과건으로 共同研究 強化.<br>과학자·기술자 1人1技術 開發 義務化. |

73) 「김일성 신년사」(1986. 1)

| 部 分 別   | 建 設 內 容   |
|---|---|
| 工 業 部 門<br>電力工業<br><br>石炭工業<br><br>基他鑛業<br><br>金屬工業<br><br>機械工業<br><br>化學工業 | 泰川발전소·金剛山발전소·熙川발전소·南江발전소·수<br>野江발전소·漁郎川발전소·다목적갑문발전소·지방중소<br>수력발전소 등 신규수력발전시설 400kw이상건설, 安州화<br>력발전소·沙里院화력발전소·海州화력발전소·東平壤화<br>력발전소·12월화력발전소·金策화력발전소 건설, 대규모<br>原子力發電所 建設.<br>安州지구 탄광 개조·확장, 順川지구·德川지구·北倉지<br>구·江東지구·北部지구 등 각 지구 탄광 확장.<br>茂山광산연합기업소확장, 茂山-城津間 精鑛輸送파이프 증<br>설, 德峴광산·西部地區철광산확장, 新規 耐火物生産基地<br>建設.<br>金策제철연합기업소 第2段階건설공사완료, 대형용광로·<br>대형산소전로·소결로 등 增設로 同연합기업소 年産 500<br>만톤 이상으로, 黃海제철연합기업소·千里馬제강연합기업<br>소·城津제강연합기업소 등의 개조·확장, 檢德지구·端<br>川지구·兩江道지구 등의 非鐵金屬광산 개조·확장, 11월<br>8일광산·3월 5일 청년광산 등의 비철금속광산개조 확장,<br>알루미늄·알루미나 生産基地建設, 티탄·마그네슘 생산<br>기지 건설.<br>數値制御(NC)工作機械生産基地·자동차엔진·디젤엔진<br>프레스기 생산기지·전기기계 생산기지 증설.<br>電子·自動化 要素생산기지, 電子日用品 공장 건설.<br>平壤地區 등에 로봇 생산기지 건설.<br>順川비닐련합기업소(년산 10만톤) 건설.<br>沙里院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br>順川탄산소다공장 건설.<br>威興지구 합성고무생산기지 건설.<br>南興지구 石炭가스化에 의한 合成樹脂生産基地 建設.<br>上院시멘트공장완성, 沙里院지구, 介川지구에 시멘트 생산<br>기지 건설. |
| 輕 工 業   | 紡織設備의 現代化와 增設.<br>地方工業部門 생산공장의 生産工程과 設備 現代化.  |
| 農 業   | 30萬ha의 干潟地于拓(처음 3~4년간 15만ha).<br>畜産基地 擴大.<br>150만ha의 山林에 낙엽송 등 植林.  |
| 水 産 業   | 14,000톤級 大型加工母船·3,750톤級선미 트롤船·1,000톤<br>급·480톤급 각종 漁船 建造沿岸養殖面積을 10만ha 확대.<br>現代적 水産物加工基地, 貯藏施設 증설.  |

| 部 分 別   | 建 設 内 容  |
|---------|--|
| 交 通 運 輸 | 北部鐵道 완성, 西部지구에 새로운 環狀線鐵道 형성.<br>平壤-清津間 복선철도완공, 平壤-沙里院間 主要幹線 鐵道 複線化.<br>主要幹線道路 高速道路化.   |
| 都 市 建 設 | 매년 15~20萬世代 住宅建設. 平壤 光復거리·樂浪거리 등에 住宅街 造成.<br>大同江·普通江·凌羅島·羊角島에 근로자 문화휴식장 건설. 地方都市와 農村에 실리카트 블록 住宅建設. 白頭山·金剛山·妙香山 종합개발. 名沙十里·夢金浦 등에 해수욕장 조성. |
| 住宅生活向上  | 人民消費品 生産에서 일대 革命.<br>消費商品 流通額 2.1倍 증대. 특히 農村에 상품공급 치중.   |

\* 출처 : <표-9>와 同一.

## 6. 生産部分別 現況

### 가. 國民所得

북한에서는 현재 總量部門의 經濟指標로서 「社會總生産」과 「國民所得」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sup>74)</sup> 즉 사회총생산물은 공업, 농업, 건설, 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과학·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 반면에 최종 생산재뿐 아니라

74) 「경제사전」 제1권 (평양 : 사회과학원 주체과학연구소, 1985)

中間生産財 생산액도 포함된다는데에 개념상의 특징이 있다.

한편 북한은 국민소득을 “사회총생산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에서 固定資本 減價償却 充當金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소득(NI : 협의의 국민소득) 개념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민소득에는 非生産的 部門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외에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去來收入金」과 정부가 농업생산이나 생필품 생산 등에 지급하는 「補助金」이 가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sup>75)</sup>

이와같이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소득과 개념상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우리의 개념에 부합되는 국민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거래수입금이나 보조금의 규모, 비생산적 부분의 생산액 등)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북한은 그들 개념에 의한 국민소득 조차도 발표하지 않으며, 다만 1人當 國民所得에 대하여 간혹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표III-1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外國의 情報 또는 軍事分野 專門 研究機關이나 우리나라의 관계당국은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GNP와 1인당 GNP를 추계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대표적인 외국의 군사정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USCIA :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Y : SIPRY Yearbook),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 The Military Balanc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중 美 CIA와 SIPRY는 1984년까지 북한의 GNP 推計 資料를 대외에 발표하였으나, 1985년부터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IISS는 현재까지도 북한의 GDP와 1인당 GNP 추계결과를

75) 거래수입금, 보조금 등에 관해서는 본서 재정 및 금융의 『예산제도』를 참조.



## 北韓이 發表한 1人當 國民所得

〈표 III-11〉

| 年度   | 1人當 國民所得           | 根 據  |
|------|--------------------|--|
| 1946 | 64.44원             | “1967년도 國民所得 580원은 1946년比 9배” <sup>1)</sup> 에서 算出              |
| 1949 | 131.82원            | “1967년도 國民所得 580원은 1946년比 4.4배” <sup>1)</sup> 에서 算出            |
| 1962 | 416.67원            | “1966년도 國民所得 500원은 1962년比 1.2배” <sup>2)</sup> 에서 算出            |
| 1966 | 500원 <sup>2)</sup> |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 보고 (1967. 12. 16)                            |
| 1967 | 580원               | 북한 중앙방송 보도(1970. 9. 17)  |
| 1970 | 605.73원            | “1970년 所得은 1946년比 9.4배” <sup>3)</sup> 에서 算出                    |
| 1974 | 1,029.75원          | “1974년 所得은 1970년比 1.7배” <sup>4)</sup> 에서 算出                    |
| 1979 | 1,920美弗            | 김일성 신년사(1980. 1. 1)  |
| 1982 | 2,200美弗            | 1983. 9. 12, 김우중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 일본기자와의 회견(「매일신문」, 1983. 9. 13) |
| 1986 | 2,400美弗            | 방환주,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

\* 출처 : 1) 「조선중앙년감」 (1970), p. 276.

2) 「조선중앙년감」 (1968), p. 2.

3) 「조선중앙년감」 (1974), p. 242.

4) 「조선중앙년감」 (1976), p. 371.

발표하고 있으며, 1990년도에는 미국의 헤리티지財團이 「미국과 아시아의 統計便覽」에서 북한의 GDP와 1인당 GNP를 발표한 바

있다.<sup>76)</sup>

외국의 각 기관이 발표하는 북한의 GNP 評價値는 발표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같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북한의 원화표시 생산액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換率, 국민소득 개념상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調整計數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각 기관은 북한 GNP 추계에서 적용하는 환율이나 조정계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최종 평가치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참고로 IISS가 발표한 1987년도 북한의 GDP 및 1인당 GNP와 헤리티지財團이 발표한 1989년도 북한의 그것을 비교하여 보면 <표 III-12>와 같다.

#### 外國機關이 發表한 北韓의 GNP

<표 III-12>

| 機 關 名                | 該當年度 | GDP(억불) | 1人當 GNP(불) | 備 考                       |
|----------------------|------|---------|------------|---------------------------|
| IISS <sup>1)</sup>   | 1987 | 455.4   | 2,049      | 1인당 GNP는 발표된 GDP와 인구에서 산출 |
| 헤리티지재단 <sup>2)</sup> | 1989 | 207.8   | 930        |                           |

\* 출처: 1)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9~1990*(런던: 1990).

2) 헤리티지 재단, 「미국과 아시아의 통계편람」(1990)

일반적으로 북한의 GNP 추계는 다음과 같이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sup>77)</sup>

첫째단계는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단계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그들 개념의 국민소득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76) 「중앙일보」, 1990. 11. 14.

77)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 GNP 추계방법 해설」(서울: 국토통일원, 1988)을 참조.

때문에 그 자체도 추계가 불가피하므로 과거에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수치를 근거로 「始初所得 總和法」에 의한 分配所得 推計, 豫算增加率, 各 部門別 成長率, 貿易規模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소득 추계치를 확정한다. 그 다음은 서방개념의 GNP로 조정하는 단계인데, 非生産部門의 要素所得, 固定資本, 減價償却充當金 등을 종합하여 북한 원화표시 GNP를 확정하고, 이를 북한의 年平均 商業換率로 환산, 달러표시 경상가격 GNP를 산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매년 統一院이 추계·발표하고 있는 북한의 연도별 GNP 및 1인당 GNP는 <표 III-13>과 같다.

國土統一院이 發表한 北韓의 GNP

<표 III-13>

| 區 分         | 1970 | 1975 | 1980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GNP (억불)    | 39.8 | 93.5 | 135.0 | 151.4 | 173.5 | 193.7 | 206.0 | 211.0 |
| 1인당 GNP (불) | 286  | 579  | 758   | 765   | 860   | 936   | 980   | 987   |

\* 출처: ①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년도판.

②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서울: 국토통일원, 1990. 9)

이미 알고 있는 바와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資本主義的 經濟理論에 따라 평가한 GNP 또는 1인당 GNP 자체도 측정상의 한계가 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나 분배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sup>78)</sup>

하물며 經濟體制가 다르고 經濟理論上 개념도 상이한 북한의 國民所得을 지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의 GNP 개념에 맞게 추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그만큼 오차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 III-13>에서 명시된 북한의 GNP 또는 1인당 GNP를

78) 조순·정운찬, 「경제학원론」(서울: 법문사, 1990), p. 383.

가지고 북한 경제를 평가하거나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나. 財政 및 金融

### (1) 財政의 概念과 機能

#### (가) 財政의 概念

북한은 財政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 분배, 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sup>79)</sup>

즉 북한에서는 財政을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經濟組織이 주체가 되어 資金을 調達하고, 分配·利用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주의)의 재정 개념은, 국가가 전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지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재정 개념과 같으나, 재정의 주체가 權力團體인 國家機關뿐만 아니라, 政黨은 물론 사회주의적 所有 概念에 의거 國家的 所有 또는 協同的 所有로 된 경제조직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재정 개념과 다르다.

#### (나) 財政의 機能

북한에서의 재정은 사회주의적 재정 개념상의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은 재정의 기능을 分配的 機能과 統制的 機能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sup>80)</sup>

재정의 分配的 機能이란 “사회 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업소와 기업소간, 인민경제부문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축적과 소비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재정의

79) 「경제사전」 제2권(평양: 사회과학원 주제과학연구소, 1985), p. 465.

80) 위의 책 제1권, pp. 209~10.

통제적 기능이란 “사회 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북한의 재정은 경제 전체와의 관련하에서 資源의 合理的 配分, 經濟成長의 促進, 所得 再分配, 그리고 計劃經濟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調整과 統制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다) 財政計劃

財政의 分配的, 統制的 機能 수행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정의 주체들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다.

財政計劃이란 “전국가적으로, 또한 기관·기업소별로 계획기간에 벌어들이게 될 돈과 쓸 돈을 수입·지출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타산하여 세우는 계획”<sup>81)</sup>으로서, 크게 기본 재정계획과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으로 구분된다.

基本 財政計劃은 사실상 「國家豫算」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재정 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재정부문별 각종 자금수요와 재정부문에 집중된 화폐자금의 규모를 나타낸다.

한편 人民經濟部門 및 機關·企業所의 財政計劃은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된 기업 및 경제조직의 개별적 재정계획으로서, 연차별 경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적 계획인 바, 해당 기업이나 경제조직의 자금원천과 자금지출의 방향, 기타 경영활동의 재무적 측면이 반영된다.

### (2) 豫算制度

#### (가) 豫算權限과 豫算의 形式

북한에서의 예산에 대한 권한은 憲法(제70조 및 제109조)상 最高人民會議과 政務院에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국가예산은 정무원이 편성, 제출한 예산초안에 대하여 최고인민회

81) 위의 책 제2권, p. 466.

의가 심의한 후 「法令」의 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政務院이 제출하는 국가예산초안을 심의 승인하는 바, 그 핵심 내용은 일체의 收入, 支出形態 및 規模와 中央豫算, 地方豫算의 規模를 확정하는 것이다. 지방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으로 승인한 지방예산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자체 지방예산을 심의,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집행에 대한 연간 결산(북한은 이를 「豫算總化」라고 부름)의 承認權도 가지고 있다.

한편 政務院은 國家豫算의 編成과 執行 및 監督業務를 담당하는 바, 부문별 집행기관의 하나인 財政部를 통하여 국가예산 초안을 편성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分期別 執行計劃과 執行對策을 세우며, 지방행정위원회의 예산집행을 지도한다.

政務院은 또한 財政部를 통하여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분기별 결산과 연간 결산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연간 결산내용을 最高人民會議에 제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 (나) 會計年度와 豫算構造

북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년도(북한은 이를 「豫算年度」라고 부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의 예산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 수입부분과 예산 지출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수입·지출 항목은 각각 행정기관 조직별,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되고<sup>82)</sup> 다시 관, 항, 목으로 세분된다. 예를들면 국가 예산수입에서 거래수입금(款)은 경공업위원회(項)로, 그것은 다시 방직공업총국(目)으로 구분된다. 이들 예산 항목별 내용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의 변경하여

82) 북한에서는 행정기관 조직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관할별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하며, 성질별로 편성하는 것을 「경제적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함.

집행할 수 없다.

(다) 中央豫算과 地方豫算

북한의 예산체제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합쳐진 국가 전체예산을 국가예산이라고 부른다.

中央豫算이라 함은 “국가 중앙기관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예산의 기본을 이룬다. 이에 반하여 地方豫算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지역 단위 범위에서 지방살림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지방행정기관 자체로 편성, 집행된다.<sup>83)</sup>

국가예산체제를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 재정원칙상 공통적인 현상인 바,<sup>84)</sup> 북한은 지방예산제를 1972년까지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1973년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고<sup>85)</sup> “지방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5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78년 12월에는 地方財政體系에 관한 特別法規가 채택되었는데, 이 법규는 지방공업기업소에 대한 지방 정권기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의 주요 내용은 소비재 증산, 지방공업기업소 採算性 向上, 지방행정기관의 감축, 은행의 재정감독 기능 강화, 화폐상여기금의

83) 사회과학원 주체과학연구소, 앞의 책 제1권, p. 216.

84) *Russia Encyclopaedia*(런던: 1982)

85) 「김일성 저작선집」 제7권, pp. 240~241.

조성·승인·사용, 지방예산의 결산제도 강화 등이다.<sup>86)</sup>

中央集權의 計劃經濟體制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와같이 지방 예산제도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경제건설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中央豫算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행정 지역 단위별 경쟁의식 고취로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구분하고 있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관할 대상기관 및 각각의 수입원천, 지출대상 사업 등을 요약하면 <표 III-14>와 같다.

### 中央豫算과 地方豫算의 區分

<표 III-14>

| 區 分  | 對象機關   | 主要收入源泉   | 主要支出對象  |
|------|--|--|---|
| 中央豫算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적 國營企業所와 기관</li> <li>◦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 기업소와 社會文化機關</li> <li>◦ 사업상 특성을 가지는 社會安全, 司法, 檢察, 裁判機關, 철도 운수기관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집중적 순수득 (거래 수입금)</li> <li>◦ 國營企業所의 국가 기업 이익금</li> <li>◦ 地方豫算으로부터의 이전금, 가격 편차 수입, 국가재산판매 수입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民經濟에 대한 지출(기본건설, 유동자금 등)</li> <li>◦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교육, 의료, 연금 등)</li> <li>◦ 國防費</li> <li>◦ 중앙기관 管理費</li> </ul> |
| 地方豫算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규모의 機關·企業所</li> <li>◦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機關·企業所와 사회문화기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예산 대상기관</li> <li>◦ 기업소의 거래 수입금, 協同團體 이익금, 便宜奉仕料</li> <li>◦ 중앙예산의 補助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산업 및 농촌 경리와 지방산업 건설</li> <li>◦ 지방의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부문</li> <li>◦ 지방기관 管理費</li> </ul>                         |

86) 소련과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모스크바: 1985)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서울: 국토통일원, 1988)



## (라) 豫算의 編成節次

북한에서의 예산편성 권한은 政務院 財政部에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黨우위의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예산은 人民經濟計劃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헌법 제32조) 財政部도 당과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는 國家計劃委員會에 크게 구속받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가격은 자원배분 및 물자의 수급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부는 예산가격을 결정하는 國家價格委員會와 긴밀하게 협조하게 된다.

북한의 예산편성 절차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예산편성 과정상의 가장 큰 특징은, 年次別 豫算編成이 財政計劃 作成과 同時에 또는 이들 재정계획 작성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財政部는 國家計劃委員會 및 國家價格制定委員會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예산안 작성을 위한 지도서를 작성하고 전년도 3/4분기 초에 각 해당기관별 세부지침서를 수립, 시달한다. 물론 이 지도서나 세부지침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작성되고 중앙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연차별 경제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산편성 세부지침서가 中央의 各機關(정무원의 각 위원회, 부, 기타 직속기관)과 각 지방 행정 및 경제지도 위원회(도 및 평양직할시) 해당 부서에 시달되면, 중앙의 각 기관이나 각 지방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는 傘下機關, 企業所, 協同團體 등의 예산을 포함하는 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정부에 제출한다.

財政部는 이들 재정계획안을 종합하여 基本財政計劃案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곧 새해의 국가예산 초안이 되는 것이다. 이 예산초안의 작성시기는 대체로 전년도 12월이나 당해년도 1월중인 바, 이는 전년도 경제계획 실적을 반영하여 11월경에 가서야 작성 완료되는 새해 경제계획에 따라 새해 예산안도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해년도 1월~2월경에 그해의 예산초안 작성이 완료

되면 政務院 심의와 中央人民委員會 비준을 거쳐 最高人民會議 豫算審議委員會에서 1개월 정도의 심의를 마친 후 통상적으로 4월중에 최초로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에 정식 의제로 제출된다.

북한의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당해년도 예산이 형식절차상 그해 4월에 가서야 최종 확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현재까지 정무원에서 작성, 제출한 예산초안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예가 전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고인민회의의 심의 승인 이전이라도 정무원이 최초로 작성한 새해 초안을 기준하여 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國家豫算收入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예산의 수입원에는 去來收入金, 國家企業利益金, 協同團體 利益金, 奉仕料 收入金, 기타 收入 등이 있다.

去來收入金은 원칙적으로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그 제품의 도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소비자에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으로써,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북한은 거래수입금을 사회순소득 가운데에서 기업소 순소득을 제외하고 남은 중앙집중적 순소득이라고 설명하나, 성질상 소비재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이다. 거래수입금은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87)</sup>

한편 國家企業利益金이란 생산부문은 물론 유통부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국영기업소가 그 企業經營 활동에서 얻어지는 기업소

87)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생활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생산물을 자기를 위한 생산물부분과 사회를 위한 생산물부분으로 나누고, 후자를 사회순소득이라고 부른다. 사회 순소득은 다시 국가의 중앙집권(중)적 순소득과 기업소 순소득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집권(중)적 순소득은 거래수입금의 형태로, 기업소 순소득은 국가기업이익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동원됨.

순소득중에서 국가의 결정에 따라 기업소에 남겨 놓고 쓰기로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국가기업 이익금은 기업이윤에 부과되는 일종의 法人所得稅라고 볼 수 있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 이익금은 社會純所得의 일부분을 국가에 산으로 동원하는 하나의 형태라는 점에서 비슷하나, 納付義務者, 부과 대상 및 성질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표 III-15〉참조)

### 去來收入金과 國家企業利益金の 差異點

〈표 III-15〉

| 區 分            | 去 來 收 入 金                                  | 國 家 企 業 利 益 金   |
|----------------|--|---|
| 納付義務者          | 소비재를 판매하는 國營企業所<br>나 協同團體 企業所              | 소비재, 생산재, 유통부문을 포<br>합하는 모든 國營企業所   |
| 賦課率 또는<br>賦課金額 | 소비재 도매가격의 일정 비율<br>에 해당하는 금액               | 國營企業所 순소득중에서 국가<br>가 事前的으로 정하는 기업<br>留保額 <sup>12)</sup> 을 공제한 후의<br>잔액 전액 |
| 賦課對象           | 원칙적으로 소비재<br>단, 최종소비재적 성격의 중<br>간재 일부에도 부과 | 국영기업소 純所得(이윤)   |
| 租稅의 性質         | 소비재 거래시 부과되는<br>間接稅                        | 企業利潤에 부과되는 直接稅  |

協同團體 利益金은 생산협동조합, 便宜協同組合, 수산협동조합 등이 국가로부터 각종 생산수단을 공급받거나 국가의 지도하에 경영활동을 한 대가로 국가에 납입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적 성격의 납부금으로서 생산협동조합과 편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 결산이윤에, 수산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판매수입에 일정한 비율로 부

과된다. 협동단체 이익금은 지방예산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奉仕料 收入금은 편의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봉사료 수입에서 자체 경비와 이윤을 공제하고 남는,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금으로서 업종별 봉사요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부과대상 업종에 따라 편의봉사료 수입금, 사회급양 봉사료 수입금, 수송운임 봉사료 수입금, 채신업무 봉사료 수입금, 극장·영화관 관람료 수입금 등이 있다.

국가예산의 기타 수입으로는 기업소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국가재산 판매수입, 가격편차 수입 등이 있다.

북한의 國家豫算 收入에서 특이한 것은 租稅라는 명목의 세입원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974년 3월 21일 稅金制度의 완전 폐지원칙을 발표한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稅金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去來收入金, 국가기업 이익금 등으로 명칭만이 바뀌었을 뿐, 예산수입의 대부분은 각종 조세에 의하여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바) 國家豫算支出

북한의 국가예산지출은 人民經濟에 대한 支出(人民經濟費), 社會文化施策에 대한 支出(社會文化費), 國防에 대한 支出(國防費), 國家管理에 대한 支出(管理費) 등으로 구분된다.

人民經濟費는 생산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건설자금,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 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기타 식량이나 생필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 독립채산제 공업·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자원자금, 과학기술 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다.

社會文化施策費는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며, 국방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투자, 장비 현대화, 병력 유지 및 전인민 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함한다.

管理費는 국가관리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사) 年度別 國家豫算 現況

북한은 매년 4월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財政報告」의 형식을 빌어 政務院 財政部長이 전년도 국가예산의 결산내용과 당해년도 국가예산을 최초로 공개한다. 그러나 공개하는 내용은

北韓의 年度別 國家豫算 現況

<표 III-16>

단위 : 만원(북한貨)

| 구분   | 세입        | 세출        | 성질별지출내역   |         |         |        |
|------|-----------|-----------|-----------|---------|---------|--------|
|      |           |           | 인민경제비     | 사회문화비   | 국방비     | 관리비    |
| 1960 | 210,930   | 196,787   | (?)       | (?)     | 6,100   | 6,297  |
| 1965 | 357,384   | 347,613   | 236,376   | 68,422  | 27,809  | 15,006 |
| 1967 | 410,663   | 394,823   | 197,017   | 69,094  | 120,026 | 8,686  |
| 1970 | 623,220   | 600,269   | 282,126   | 119,394 | 187,884 | 10,805 |
| 1972 | 743,030   | 738,861   | 409,932   | 187,807 | 125,606 | 15,516 |
| 1975 | 1,158,630 | 1,136,748 | 650,688   | 275,762 | 186,427 | 23,872 |
| 1980 | 1,913,923 | 1,883,691 | 1,397,777 | 417,434 | 275,019 | 51,461 |
| 1981 | 2,068,400 | 2,033,300 | 1,245,776 | 446,654 | 300,928 | 39,942 |
| 1982 | 2,268,000 | 2,220,360 | 1,380,040 | 463,180 | 324,173 | 43,967 |
| 1983 | 2,438,360 | 2,401,860 | 1,515,433 | 485,413 | 352,967 | 48,037 |
| 1984 | 2,655,100 | 2,615,800 | 1,683,657 | 521,819 | 381,907 | 28,417 |
| 1985 | 2,743,887 | 2,732,883 | 1,706,786 | 565,746 | 393,535 | 66,816 |
| 1986 | 2,845,154 | 2,845,154 | 1,805,780 | 578,758 | 401,167 | 59,449 |
| 1987 | 3,037,80  | 3,037,80  | 1,933,939 | 611,916 | 418,248 | 66,677 |
| 1988 | 3,190,580 | 3,166,090 | 2,127,225 | 600,152 | 386,263 | 52,450 |
| 1989 | 3,360,810 | 3,338,294 | 2,250,605 | 630,880 | 400,595 | 56,214 |
| 1990 | 3,565,610 | 3,565,610 | 2,405,897 | 671,887 | 431,439 | 56,387 |

\* 출처 : 각 년도별 북한의 예산결산 발표내용.

\* 주 : 1989년 이전은 결산기준이며, 1990년도는 예산기준임.

국가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의 총 규모 및 성질별 내역의 총괄적인 사항뿐이다. 재정보고서 북한이 발표한 자료와 朝鮮中央年鑑을 토대로 파악한 연도별 국가예산 현황은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한의 財政規模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財政負擔率)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특성상 우리나라의 재정부담을 보다 월등히 높다. 1989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을 기준할 때 북한의 재정부담율은 71%에 달하고 있다.<sup>88)</sup>

북한이 발표하는 세출예산중 국방비 규모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항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군비 증강에 노력하여 왔으며, 이미 김일성은 1970년 11월 노동당 5차 대회에서 四大軍事路線을 천명한<sup>89)</sup> 이래 1978년 북한정권 수립 기념행사에서 이의 완성을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이 발표한 國防費의 歲出豫算에 대한 構成比를 보면 (<표 III-17>참조)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결과 마침내 1967년부터 30%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북 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 20% 이하로 급격히 하락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12%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같은 최근의 국방비 규모는 북한의 군사력이나 국방비로 분류되는 지출대상의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으며,<sup>90)</sup> <표 III-17>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국방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의 증감추세는 人民經濟費의 구성비 증감추세와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방비의 상당부분이 人民經濟費에 은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8)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서울: 국토통일원, 1990. 9)

89) 「북한 노동당 제5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90) 보유군사력(장비, 병력 포함)을 기준으로 적정 군사비 소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OB(Order of Battle) 방식이 있음. 북한에서 국방비의 범주에 포함되는 비목은 「국가예산지출」 항목을 참조.

## 北韓 歳出豫算의 性質別 構成費

〈표 III-17〉

(단위: %)

| 年 度  | 歳出總額  | 人民經濟費 | 社會文化費 | 國防費  | 管理費 |
|------|-------|-------|-------|------|-----|
| 1960 | 100.0 | (?)   | (?)   | 3.1  | 3.2 |
| 1965 | 100.0 | 68.0  | 19.7  | 8.0  | 4.3 |
| 1967 | 100.0 | 49.9  | 17.5  | 30.4 | 2.2 |
| 1970 | 100.0 | 47.0  | 19.9  | 31.3 | 1.8 |
| 1972 | 100.0 | 55.5  | 25.4  | 17.0 | 2.1 |
| 1975 | 100.0 | 57.2  | 24.3  | 16.4 | 2.1 |
| 1980 | 100.0 | 60.5  | 22.2  | 14.6 | 2.7 |
| 1981 | 100.0 | 61.3  | 22.0  | 14.8 | 1.9 |
| 1982 | 100.0 | 62.5  | 20.9  | 14.6 | 2.0 |
| 1983 | 100.0 | 63.1  | 20.2  | 14.7 | 2.0 |
| 1984 | 100.0 | 64.4  | 19.9  | 14.6 | 1.1 |
| 1985 | 100.0 | 62.5  | 20.7  | 14.4 | 2.4 |
| 1986 | 100.0 |       |       |      |     |
| 1987 | 100.0 |       |       |      |     |
| 1988 | 100.0 | 67.2  | 19.0  | 12.2 | 1.6 |
| 1989 | 100.0 | 67.4  | 18.9  | 12.0 | 1.7 |
| 1990 | 100.0 | 67.5  | 18.8  | 12.1 | 1.6 |

\* 출처: 〈표 III-16〉에서 산출.

## (3) 貨幣・金融

## (가) 金融의 機能 및 特徵

북한에서 금융이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화폐자금의 유통”을 말하며, 지역적 범위에 따라 國內金融과 國際金融으로 구분한다.

國內金融은 다시 화폐자금이 이동하는 성격과 형식에 따라 신용, 자금공급, 화폐유통으로 구분하는데, 信用이란 서로 다른 소유형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대부, 저금, 국가보험

등)을 말하며, 資金供給이란 같은 국가적 소유 안에서 의 일방적(불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기본건설 자금이나 유동자금의 공급, 경비예산의 지급 등)을 말한다. 貨幣流通이란 신용과 자금공급 관계에 기초하여 화폐자금이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서, 現金流通과 無現金流通으로 나뉘어진다.<sup>91)</sup>

북한은 金融의 機能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sup>92)</sup> 즉 사회주의 금융은 생산과 유통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건설을 도와주는 자원 배분적 기능,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 통제적 기능, 외화거래의 합리적 조직기능 등이 그것이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인 북한에서는 재정계획과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資源配分機能을 맡고 있으므로, 이자율과 수익율을 매개로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하의 금융기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금융의 주입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화폐자금의 수입과 공급과정에서 기관·기업소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바<sup>93)</sup>, 금융은 오히려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財政統制的 機能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는 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단기자본시장, 증권시장, 기타 유사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資本主義國家에서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91) 현금유통이란 주로 기관·기업소와 주민간 또는 주민들 상호간에, 특별한 경우는 기관·기업소 상호간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하며, 무현금유통이란 주로 국가기관·기업소들 사이에서 현금의 직접 이동없이 문서에 기초하여 상호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92) 「경제사건」 제1권, p. 264.

93) 은행에 의한 재정통제를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함. 「재정의 통제와 감독」 부문 참조.



있다.<sup>94)</sup>

실제로 북한은 상품부족으로 주민들이 剩餘貨幣를 보유함에 따라 야기되는 인플레이 압력을 없애기 위하여 강제저축, 낮은 임금수준 유지, 엄격한 배급제 등 강력한 금융긴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sup>95)</sup>

#### (나) 金融機關과 貯金制度

북한의 은행체계는 朝鮮中央銀行과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 전 문분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貿易銀行 등 몇 개의 특수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6년 1월에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타 은행을 지도·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기업소들에게 기본건설자금, 유동자금 등 일체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국가수입금을 수납하며 고정자산의 형성, 보수, 이용사업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의 本店,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總支店(도), 支店(군) 등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저금, 보험사업, 귀금속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sup>96)</sup>

特殊銀行으로는 貿易銀行, 大聖銀行, 金剛銀行, 朝鮮合營銀行, 朝鮮樂園金融合營會社 등이 있다. 貿易銀行은 대외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 외국환업무, 무역기관들을 위한 지불보증, 환율의 결정·공표, 그리고 『외화와 바꾼 돈표』 발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 金剛銀行과 大聖銀行은 1970년대 후반에 대외무역 증대 방안의 하나로 설립된 무역결제업무 전담 은행이며, 朝鮮合營銀行, 朝鮮樂園金融合營會社는 합영기업의 유치를 위한 정보 및 자금의 제공과 이들 기업의 수출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북한에서의 저축은 자본주의국가에서와는 달리 재산 증식을 위한

94)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82), p. 146.

95) M. triguvenko, "조선의 경제위기와 전망에 대한 예측,"(서울: 의회정치연구소 국제회의 논문 1990. 11), p. 7.

96) 「백과전서」 제4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p. 722~723.

자발적 저축이라기보다는 주로 재정계획상의 자금동원 목표달성을 위한 강제저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축의 종류로는 보통저금(연리 3%), 준비저금(3.6%), 정액저금(4%) 및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저금 등 4종류가 있다.<sup>97)</sup>

일반주민들은 저금 또는 저금인출시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점이나 지점 이외에 우편, 전화업무를 취급하는 遞信所를 이용한다.

(다) 貨幣의 機能 및 種類

북한은 화폐를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 주고 교환을 증대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價値尺度와 流通手段, 蓄財手段, 支拂手段, 世界貨幣로서의 機能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北韓貨幣의 種類

<표 III-18>

| 區 分  |                  | 種 類                      | 備 考  |
|------|------------------|--------------------------|--|
| 一般貨幣 | 지 폐<br>(5종)      | 1원, 5원, 10원<br>50원, 100원 | 1979년 4월 제3차 화폐개혁에 의한 지폐 : 녹색                      |
|      | 주화<br>(5종)       | 1전, 5전, 10전<br>50전, 1원   | 50전 주화는 1979년 4월, 1원 주화는 1987년 10월부터 유통            |
| 特殊貨幣 | 외화와 바꾼<br>돈표(8종) | 2전, 5전                   | ◦ 사회주의국가 화폐와의 교환<br>: 적색<br>◦ 서방세계 화폐와의 교환<br>: 녹색 |
|      |                  | 10전, 50전                 |  |
|      |                  | 1원, 5원<br>10원, 50원       |  |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서의 가격은 국가가 經濟部門別 均衡 達成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

97) 위의 책 제4권, p. 246.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화폐의 가치척도기능이나 축재기능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화폐개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화폐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5종과 주화 5종 등 10종이 있고,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 무역은행이 외화와 교환하여 발행하는 특수화폐 8종이 있다.

#### (라) 換率 및 外貨管理

사회주의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간의 협정에 의거 환율을 규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환율의 결정방법은 이론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국의 화폐가 대표하는 금의 양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각국의 상품가격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쌍방 화폐간에 적용할 환율의 결정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일정 상품 등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것을 두 나라의 화폐로 각각 가격과 총금액을 산출하여 대비하는 방법에 의거 이루어진다.<sup>98)</sup>

북한의 환율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로 對西方 선진국 화폐들과의 환율로서 여기에는 公定換率(북한은 이를 「公式換算比率」이라고 함)과 商業換率(북한은 이를 「特別添加金を 붙인 환산비율」이라고 함)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公定換率이란 북한 주민의 외화환전(외화벌이에 대한 수매, 해외송금 등)이나 북한 경제력의 외환평가, 수출입 상품의 대내가격 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한 환율은 실제 구매력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결재에서 적용되지도 않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환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한편 商業換率이란 공정한 환율에 특별첨가금을 붙인 환율로서, 무역결재, 외국인의 북한원화 환전 등에 적용되는 환율이다. 상업환

98) 「경제사전」 제2권, p. 615, 환자시세 참조.

율에는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입기준율, 현찰매입률, 매도 기준율, 현찰매도율 등이 있다.

북한은 그들의 환율을 1978년까지는 「조선중앙년감」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는 이에 관한 내용을 직접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 교역 상대방 또는 북한 방문자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한 연도별 달러환율(연평균)은 <표 III-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 北韓 元貨의 對美달러 換率推移

<표 III-19>

(북한원/미달러)

| 區 分  | 1975 | 1980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
| 公定換率 | -    | 0.87 | 1.07 | 1.02 | -    | -    | 1.07 |
| 商業換率 | 2.05 | 1.79 | 2.43 | 2.23 | 2.14 | 2.15 | 2.23 |

\* 출처 : 국토통일원 자료 종합.

북한에서는 위에서 본 공정환율, 상업환율 이외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暗示場換率이 존재하는 바, 1989년도 1달러당 암시세는 70~80원에 달하고 있어 상업환율과는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외화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일적인 외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모든 외화는 무역은행에 집중시키고 「국가의 수령님」만 외화를 쓰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북한 주민이나 기관·기업소들이 외화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sup>99)</sup>

북한방문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외화를 국가에 집중시킬 목적으로 무역은행은 이들에게 상업환율을 기준하여 「외화와 바꾼 돈표」를 발행해 주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99)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1990. 9. 13)에서 연행록 보고, 「중앙방송」 1990. 9. 13.

#### (4) 財政의 統制·監督

재정활동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最高人民會議과 地方人民會議를 비롯하여 政務院 및 地方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가 재정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예산안과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심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재정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정무원 재정부는 재정계획 및 예산안의 작성, 집행, 결산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정리를 지도하고 통제·감독한다.

재정에 관한 통제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주권과 행정직 집행기관들에 의한 통제, 재정은행기관들에 의한 통제, 부문 재정관리기관에 의한 통제, 기관·기업소 내부통제 및 사회적 통제로 구분되며, 통제시점에 따라 사전통제, 경상통제, 사후통제로 구분된다.

북한이 재정을 통제·감독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財政總化」제도와 「원에 의한 統制」제도가 있다.

재정총화제도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에서부터 정무원의 위원회,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기업소가 일정기간 동안(월별, 분기별, 연간)에 수행한 재정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며, 원에 의한 통제란 주로 재정은행기관이 기관·기업소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 재정계획과의 연계하에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를 말한다.

북한은 최근들어 재정은행기관들과 검열, 통제기관의 재정검열 활동 강화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는 바,<sup>100)</sup> 그 내용을 보면, 2급 이상 공장·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위원회, 부를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관리에 관하여 1년에 한두 개 이상 대상

100) 위의 보고.

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 재정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 다. 産業部門別 實態

북한의 産業部門別 實態, 특히 남북한간의 産業部門別 現況을 比較, 研究하고자 하는 경우 부딪치는 문제중의 하나는 산업부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산업부문별 분류개념은 우리나라에서의 분류개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들의 산업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다. 다만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산업발전 정책의 기초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산업을 크게 중공업, 경공업, 농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01)</sup>

먼저, 重工業이란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서 여기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 기간공업부문과 임업이 포함된다. 북한 이들 개별 공업부문중 석탄공업, 광업, 임업을 채취공업으로 총칭하며, 그 이외의 나머지 공업부문을 가공공업이라고 부른다.<sup>102)</sup>

한편 輕工業은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으로서,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일용공업, 종이공업 등이 포함되며,<sup>103)</sup> 생산되는 재화가 주로 소비재라는 점에서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중공업과 구분된다.

農業은 토지를 기본 생산수단으로 하는 산업분야로서, 농산업, 축산업, 과수업, 잡업 등이 포함된다.<sup>104)</sup>

101) 「경제사전」 제1권, p. 90.

102) 위의 책 제2권, p. 424.

103) 위의 책 제1권, p. 80.

104) 위의 책 제1권, p. 393.

북한은 수산업을 “어업, 천해양식업, 물고기 기르기, 수산물가공업” 등으로 세분하고 어업은 채취공업 범주에, 수산물가공업은 경공업 범주에, 그리고 천해양식업과 물고기 기르기는 농업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sup>105)</sup>

본서에서는 북한의 산업부문을 분류함에 있어 편의상 農林水産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등 3大部分으로 나누고, 북한 개념에 의한 산업부문별 실태를 우리 개념에 맞도록 재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분류기준으로 중공업에 속하는 임업과 어업은 농림수산업에서, 전력공업은 사회간접자본에서 설명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체신)부문을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農林水産業

#### (가) 農 業

북한은 1946년부터 시작된 토지개혁과정을 거쳐 1958년에 농업의 협동화 작업이 마무리되자, 농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명목하에 196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라는 소위 농업강령을 발표하였다.<sup>106)</sup>

이 강령은 사회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농민문제와 농업문제의 본질적 내용을 농업의 낙후성과 도시·농촌간의 격차로 규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3대기본원칙으로 농촌에서의 기술·문화·사상 혁명 수행,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과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강화, 협동적 소유형태의 「全人民的 所有化」(국유화)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sup>107)</sup>

북한은 이 강령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추진하였으며, 1976년 10월 노동당 중앙위 제5기 12

105) 위의 책 제2권, p. 99.

106) 「조선중앙년감」(1975), p. 12.

107) 「김일성저작집」 제18권, p. 198.

차 전원회의에서는 「自然改造 5大方針」을 결정하고<sup>108)</sup>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자연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1981년 10월 노동당 중앙위 제6기 제4차회의에서는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 20만정보의 새 땅 찾기, 남포감문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사업 등 「4大 自然改造事業」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한편 북한은 농촌기술혁명의 일환으로 농작의 집약화, 품종 개량, 병충해 방지 등 영농기술 발전에도 주력하여 오고 있다.

이와같은 농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우선정책, 투자재원의 부족, 소유제도의 불합리에 따른 낮은 생산성, 자연적, 지형적으로 불리한 영농조건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90년도 김일성 신년사에서 “3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서해바다를 기름진 옥토로 전면시켜 당이 제시한 농업생산 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월에는 1985년 이후 5년만에 全國 農業勤勞者大會를 평양에서 개최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30만정보 간석지와 20만정보 새 땅 개간사업에 참여하여 가까운 몇 년 안에 1,500만톤의 알곡 고지를 점령”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제 북한 농업의 부문별 현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경지면적<sup>109)</sup>은 1989년 현재 논 63.2만정보, 밭 150.8만정보 등 214만정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총면적의 약 18%에 불과한 것이다. 198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지확장사업도 미진하여 30만정보 간사지 개간사업은 1989년 말 현재 6만여 정보 간척하는데 그쳤으며, 20만정보의 새 땅 찾기 운동의 성과는 특별히

108) 「자연개조 5대방침」이란 ① 밭 관개의 완성 ② 토지정리·토지개량 ③ 다락밭 건설 ④ 치산치수 ⑤ 간석지 개간 등임.

109) 북한은 경지면적을 「부침땅 면적」이라고 부르며, 그 해에 실제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정작면적」이나 2모작, 혼작 등을 고려한 「씨뿌린 면적」과 구별함.



알려진 바 없으나, 무리한 산지개간으로 하천관리, 홍수통제 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은 食糧統計指標로 서류까지 포함하는 粗穀 개념의 “알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984년 알곡 1,000만톤 생산을 보도한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생산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의 목표를 1,500만톤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며, 1990년 10월 현재 “1,500만톤의 고지점령으로 내달리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sup>110)</sup>

북한의 耕地面積, 氣象條件, 營農技術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식량통계 개념으로 통일원이 재평가한 1989년도 곡물생산 실적은 548.2만톤으로서 그중 쌀은 215.9만톤이다. (<표 III-20> 참조)

### 北韓의 穀物 生産實績

<표 III-20>

(단위 : 만톤)

| 年 度  | 北韓 發表值 | 評 價 值 |     |          |
|------|--------|-------|-----|----------|
|      |        | 計     | 쌀   | 옥수수 및 기타 |
| 1975 | 770    | 446   | 173 | 273      |
| 1980 | 950    | 391   | 125 | 266      |
| 1984 | 1,000  | 560   | 221 | 339      |
| 1985 | —      | 503   | 201 | 302      |
| 1986 | —      | 483   | 201 | 282      |
| 1987 | —      | 495   | 203 | 292      |
| 1988 | —      | 521   | 210 | 311      |
| 1989 | —      | 548   | 216 | 332      |

\* 출처 : ① 북한발표치는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② 평가치는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각 년도판.

③ 1989년도 평가치는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0. 9).

110)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농촌의 水利化실태를 보면, 북한 전역에 1,700여개의 저수지와 25, 800여개의 양수장이 건설되었으며, 14,000여km의 강·하천 제방과 4만여km의 관개수로가 갖추어져 있다.<sup>111)</sup> 북한의 관개능력은 총 경지면적의 65%수준에 해당하는 139만정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용수량 자체가 부족하여 관개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북한은 1986년 6월에 완공된 서해갑문(남포갑문)에 의하여 저수되는 대동강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1990년도에 『서해갑문-강령-용진물길』을 비롯하여 예성강 물길 등 주요 간선 관개수로 400여km를 완공하였다.

機械化·化學化의 성과에 대하여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지면적 100정보당 트랙터는 평지에서 7대 수준, 모내는 기계는 6.1대이고 화학비료 시비량은 2톤 이상이라고 한다.<sup>112)</sup>

電氣化는 1969년에 완성되어 거의 모든 농촌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에너지 부족과 송·배전 체계의 불량으로 실제 농촌의 전기사용은 「한집 한등」 켜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축산업은 국영과 협동농장 축산을 주로하고 여기에 개인 부업 축산을 배합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낙농기술이 뒤떨어져 있고 사료 확보가 어려워 草地面積의 확대와 자연생 사료의 취득에 역점을 두면서 소, 돼지 등 큰 가축보다는 토끼, 오리, 닭, 산양 등의 사육에 더 치중해 왔다. 축산생산은 1986년도 현재 55만톤으로 발표되었으며, 제3차 7개년계획상 목표는 육류 생산 170만톤, 계란 생산 70억개이다.<sup>113)</sup>

북한의 과수정책은 1961년 4월 함경남도 북청군 문화협동농장에서 개최된 이른바 『북청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이 지시한 30萬町歩의 과수원 조성과 樹種의 다양화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북한

111)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112)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113) 방환주,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발표에 의하면 1986년 현재 30만정보의 과일 생산기지가 조성되었으며, 과일생산은 약 150만톤이다.<sup>114)</sup> 과일의 종류는 주로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자두, 버찌, 포도, 감, 대추 등이다.

### (나) 林 業

북한의 산림면적은 940만정보로 전체면적의 약 80%에 달한다. 특히 주요 원목생산지인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과 백두산 지역에는 침엽수 및 활엽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북한은 이같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요 원목생산지에는 林産事業所를 설치하고, 기타 지역에는 林産協同組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또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150만정보의 조림사업 목표를 세워놓고 경제림 위주의 산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수종은 낙엽송, 포플러, 은행나무 등이며 관상수로 진달래, 한약재로 월귤나무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20만정보 새 땅 찾기 운동, 전국토 다락밭 만들기 운동, 각종 건설자재용 목재, 심지어 땀감 획득을 위한 남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산림이 지극히 황폐한 실정이다.

북한은 부족한 임산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소련의 시베리아지역에 원목 벌채를 위한 노동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原木을 들여오고 있다.

### (다) 水 産 業

북한의 연근해는 어족이 풍부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한류나 난류가 만나고 있어 세계적인 어장으로 꼽힐 만큼 어족이 풍부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유용 水産資源은 약 300여종이나 되며, 이중 120여종이 생산되고 있다.

主要 水産資源은 漁類로서 명태, 조기, 멸치, 꽁치, 이면수, 갈치, 민어, 청어, 오징어, 가재미, 대구 등 연근해 어족과 잉어, 붕어, 초어,

114) 위의 책.

숭어, 은어, 방어, 열목어, 산천어, 누치, 전장어 등 담수어가 있다. 기타 수산자원으로는 김, 다시마, 미역, 곤포 등 해조류와 조개, 소라 등 패류, 게 등 갑각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풍부한 수산자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산업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는 주로 어로장비 및 가공처리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바다가 동서로 갈라져 있어 어획기에 어로장비의 집중투입이 안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漁獲構成面에서 있어서도 동해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획량의 70% 이상을 명태와 정어리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어종의 풍·흉어여부가 전체 수산물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水産物의 生産 實績을 보면, 1988년도 이전 몇년간은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어획량이 평년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었으나, 천해양식사업의 적극 추진 결과 최근에는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北韓의 水産物 生産實績

〈표 III-21〉

(단위 : 만톤)

| 年 度  | 北韓 發表值 | 評 價 值 |      |     |      |
|------|--------|-------|------|-----|------|
|      |        | 計     | 海面漁業 | 養 殖 | 淡水漁業 |
| 1975 | 146    | 130   |      |     |      |
| 1979 | 200    | 170   |      |     |      |
| 1980 | —      | 170   |      |     |      |
| 1984 | 350    | 223   |      |     |      |
| 1985 | 360    | 242   |      |     |      |
| 1986 | —      | 237   | 150  | 79  | 8    |
| 1987 | —      | 212   | 116  | 87  | 9    |
| 1988 | —      | 215   | 108  | 96  | 11   |
| 1989 | —      | 219   | 101  | 107 | 12   |

\* 출처 : ①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년도판.

②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1990. 9)

그리하여 1989년도 수산물 생산은 약 219만톤을 기록하였다.(<표 III-21>참조)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1986년 생산량 350만톤(북한 발표기준)의 3배가 넘는 1,100만톤(어류: 300만톤, 천해양식물: 800만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어선의 대형화, 어항의 기능적 개선, 냉동보관시설의 확충, 수송수단의 발전 등을 통하여 수산업을 현대화하고, 양식어업과 원양어업의 발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遠洋漁業의 경우, 원양어선 및 어로기술 부족으로 소련 수역내의 어획커터(연간 20만톤)조차 자체능력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1990년 5월에는 일본이 대형 어선들을 북한 선적으로 위장시켜 소련관할 캄차카반도 부근 공해상에서 연어와 송어를 불법으로 잡아오다 소련 당국에 의거 납포되어 북한·소련·일본간에 外交問題를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sup>115)</sup>

북한은 양식업 및 수산물가공업 발전의 일환으로 이 분야에서 합영기업 유치 또는 해외진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평양양어합영회사(1989. 1), 동성수산물생산판매회사(1989. 5), 연간 4,000여톤의 수산물 가공회사인 대덕산합영회사(1990. 10) 등의 북한내 설립(조총련과의 합영)이나, 성계 합영공장, 해조류가공합영공장, 섭조 개양식합작회사 등의 소련내 진출 등이 그 예이다.

## (2) 鑛工業

### (가) 採取工業

채취공업이란 “자연부원을 노동대상으로 하여 시초원료와 연료를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서, 석탄공업, 광업, 원유 및 가스 채굴업, 임업, 어업 등이 이에 속하는 바, 그 중심은 물론 石炭工業과 鑛業이다.

115) 「한국일보」, 1990. 6. 20.

채취공업은 가공공업보다 시간적으로나 순차상으로 먼저 발전하여야 가공공업에 원료와 연료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하에서 북한은 채취공업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즉 새로운 탄광과 광산개발을 위한 地質探査의 강화, 갱도 굴착 및 채취공정에서의 技術革命, 채굴설비 및 탐사에 관한 科學研究事業推進 등이 그것이다.<sup>116)</sup>

먼저 북한의 賦存資源 現況을 개관하면, 북한지역에는 지금까지 총 360여종의 광물부존이 확인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용광물만도 200여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전세계에서 매장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위 이내에 드는 광물도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이나 된다. 이처럼 북한지역에는 金屬鑛物과 에너지광물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북한은 공업원료 및 연료의 70%를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化學工業과 에너지의 주축이 되고 있는 석유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석탄도 무연탄, 유연탄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나 채철, 제강공업의 주연료인 역청탄 매장량은 매우 적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 북한의 資源開發 실태를 보면, 중공업 및 軍需産業과 관련이 깊고 주요 수출상품인 금속광물과 에너지의 주축을 이루는 석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용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화학공업도 석탄계열 화학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업발전은 석탄수급 여하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鐵鑛石은 茂山鑛山을 비롯하여 은률, 재령, 하성, 천동, 이원, 덕성, 용원, 풍산 등 20여개 광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무산광산은 매장량이 약 10억톤, 연간 생산능력이 800여만톤에 이르는 북한의 최대 철광산이자 세계적인 露天鑛山으로 1993년까지 생산능력을 1,500만톤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제3선광장이 건설중에 있다.

116) 「경제사전」 제2권, p. 511.

鐵鑛石의 生産量은 철광산의 지속적인 확장 및 개발로 70년대 이후 연간 2% 정도씩 증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철광석 매장량을 탐사,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탄광설비 노후화로 철광석 생산량은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1989년도 철광석 생산능력은 정광기준 1,03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표 III-22〉참조)

## 北韓의 鐵鑛石 및 石炭 生産能力

〈표 III-22〉

(단위: 만톤)

| 年 度  | 鐵 鑛 石 (精鑛) | 石 炭                 |
|------|------------|---------------------|
| 1975 | 735        | 2,700               |
| 1980 | 835        | 3,027               |
| 1985 | 980        | 3,750               |
| 1986 | 980        | 3,750               |
| 1987 | 980        | 3,900               |
| 1988 | 1,030      | 4,070               |
| 1989 | 1,030      | 4,330 <sup>1)</sup> |

\* 출처: ①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년도판.

②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0. 9)

\* 주: 1) 「조선중앙통신」(1990. 10. 8)은 당 창건 45돌 기념보고에서 1989년도 석탄생산량을 8,500만톤으로 발표.

무연탄은 평남 증산·덕천·강동·개천군 등과 평북 구장, 함남 고원, 강원 천내, 자강도 전천, 평양 등지에 대량 매장되어 있고, 유연탄은 함북 은덕군·아오지 일대를 비롯 함북 새별·회령·종성·평남 안주, 함북 황산, 함남 영흥지역에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는 북한 무연탄 총생산량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소련 지원하에 두 개의 새 탄광과 하나의 선광장이 추가 건설중에 있다.

북한의 石炭 總埋藏量은 147억톤에 달하나 이중에서 채굴이 가

능한 매장량은 79억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1989년도 석탄생산량을 8,500만톤으로 발표하고 있으나,<sup>117)</sup> 기존탄광의 생산여건, 북한의 산업구조, 수송능력 등을 감안할 때, 1989년 말 현재 4,300여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III-22〉참조)

이와같은 생산능력은 북한의 絶對需要量(1993년 생산목표 : 1억 2,000만톤)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북한은 취사와 난방용 및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의 에너지원으로 저열탄과 초무연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나) 金屬工業

북한은 금속공업 특히 강철공업의 발전이 나라의 공업화 수준과 경제력, 군수생산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임을 인식하고, 자재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한 금속공업의 발전, 흑색금속 생산과 유색금속 생산의 균형발전과 금속생산공정의 완비, 금속공업의 기술적 토대 강화 등을 금속공업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북한에서는 金屬工業을 사용원료 및 生産製品에 따라 黑色金屬工業과 有色金屬工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sup>118)</sup> 전자는 鐵鑛石을 주 원료로 하여 선철, 입철, 강철, 압연강재, 2차금속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製鐵·製鋼工業部門을 말하며, 후자는 금·은·구리·연·아연·알루미늄 등을 생산하고 그 가공품을 제조하는 非鐵金屬部門을 의미한다.

먼저 북한의 黑色金屬工業 실태를 보면, 주요 철강공업 공장으로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함북 청진),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남 송림), 청진제강소(함북 청진), 4. 13제철소(서부지역에 위치), 성진제강소(함북 김책), 8호제강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대동강제철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이 자체 건설한 것은 4. 13제철소, 8호제강소,

117)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118) 「경제사전」 제1권, p. 260.



대동강 제철소뿐으로 나머지는 일제때 건설된 것들이다.

金策製鐵聯合企業所는 북한 최대의 製鐵所로서 1989년 9월 소련 지원하에 제2단계 확장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연간 강철 생산능력을 240만톤(압연능력 : 140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黃海제철연합기업소의 연간 생산능력은 제철 113.4만톤, 제강 144.5만톤이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연간 강철 76만톤(이중 특수강 3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종합제강소이다.

특히 천리마제강(련)은 1989년 10월 5. 18대형 단조공장을 추가 준공함으로써, 대형 압연롤(ROLL)을 비롯하여 선박부품(프로펠라 축, 크랭크), 발전기부품(발전기축, 터빈모터), 각종 병기부품(포신, 전차, 장갑차용 강판) 등의 생산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 北韓의 鋼鐵 生産能力

〈표 III-23〉

(단위 : 만톤)

| 年度   | 北 韓 發 表 值 | 評 價 值 |
|------|-----------|-------|
| 1975 | —         | 240   |
| 1977 | 400       | 383   |
| 1980 | —         | 398   |
| 1985 | —         | 430   |
| 1986 | —         | 430   |
| 1987 | —         | 481   |
| 1988 | —         | 504   |
| 1989 | 700       | 594   |

\* 출처 : ① 북한 발표치중 1977년도는 조선중앙년감(1971), p. 239.

② 1989년은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③ 1975~88년 평가치는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년도판.

④ 1989년 평가치는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0. 9)

북한은 1988년 1월부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산하에 연간 200만톤 생산능력의 「10월 9일 강철종합공장」을 1992년 4월 완공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

북한의 鐵鋼製品 연간 생산능력은 <표 III-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도 말 현재 선철이 517만톤, 강철이 594만톤(북한발표 : 700만톤), 압연강재 404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강철 생산능력 조성 목표 1,000만톤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서, 金日成은 1990년도 新年辭에서 “철강재 생산을 늘리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심고리”라고 규정하고 철강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철강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生産體系와 施設이 낙후되어 있어, 생산성이 세계적 수준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 기존의 제철, 제강시설에 대한 自動化, 反自動化, 산업 텔레비전화, 원격조정화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했으나, 당초 목표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북한은 有色金屬(비철금속)공업 발전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중요한 비철금속 제련장으로는 남포제련소, 문평제련소, 홍남제련소, 해주제련소, 북창알미늄공장, 단천제련소, 평양유색금속공장, 청화제련소 등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연, 아연, 동, 그리고 이들의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금, 은과 니켈, 몰리브덴 등의 생산에 치중해 왔으나, 1983년 북창알미늄공장 건설을 계기로 알루미늄과 텅스텐, 니오비움, 세리움 등 희소금속 생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 및 서방 등지로부터 설비를 들여와 건설된 북창알미늄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이 2만톤 규모인데, 원료인 알루미늄은 순천에 있는 부산리알루미나공장(연간 4만톤 규모)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1990년 2월에는 스테인레스강, 내열강, 합금특수강 등의 주요 원료인 니켈광산이 함남 정평군에서 새로이 완공되었는데, 同鑛山은 연간 약 20만톤의 원광(Ni 0.5%)을 처리하여 니켈정광(Ni 3%) 약 3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90년 4월에는 북한에서 채굴되는 희귀 元素類 포함 광물의

정련 및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북한 龍岳山 貿易總會社와 조총련 국제트레이딩상사간에 설립된 威興化學合營會社가 준공(이트류 등 年 1천톤 생산)되었는데, 동 회사를 통한 기술이전은 북한의 금속 공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비철금속공업은 제철, 제강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제련기술 및 생산설비가 세계적 수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어, 이들 시설의 근대화가 당면한 과제로 되어 있다.

#### (다) 機械工業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기계공업은 “경제에 요구되는 생산도구와 일부 일용품 생산하는 경공업의 핵심부문에 기계공업의 발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 운수, 기본건설 등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과업도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sup>119)</sup> 따라서 북한은 일찍부터 기계공업부문을 가장 核心産業으로 육성해 왔으며, 그 수준도 타산업부문에 비해 가장 앞서 있다.

중요한 기계공장·기업소로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4. 3공장, 승리자동차종합공장, 금성트랙터종합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10. 5자동차종합공장 등이 있다.

기계공업의 수준은 현대적 수준에는 뒤떨어지고 있지만 대형 기계류 및 설비의 생산과 자립적인 기계기술 기반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기계공업은 工作機械 생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밖의 거의 모든 기계공업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첨단전자장비를 이용한 기계는 일부 가정용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 集積回路 등 전자·자동화공업부문은 높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1989년 8월에는 勝利自動車綜合工場의 생산능력 확장공사가 완

119) 위의 책 제1권, p. 268.

료되었고, 같은해 10월에는 북한-소련간에 이루어진 회천-고리끼 합영회사가 완공됨에 따라 후라이스반(FRAISE반) 5천대의 생산 능력이 추가되었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확장된 승리자동차공장은 기관종합분공장, 주물직장, 제관 및 총 조립직장을 비롯해서 연건평 10만여㎡에 30여개 생산건물이 건설되어 「자주-82형」의 자동차를 系列生産할 수 있는 생산공정이 갖추어졌다고 한다.<sup>120)</sup> 북한의 주요 기계공업부문 생산능력은 <표 III-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 北韓의 主要 機械工業部門 生産能力

<표 III-24> (1989년말 현재)

| 自動車    | 貨 車    | 工作機械   | 텔레비전  | 造 船       |
|--------|--------|--------|-------|-----------|
| 3.3 만대 | 3,800량 | 3.5 만대 | 24 만대 | 21.4만 G/T |

\* 출처: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1990. 9)

#### (라) 化學工業

북한은 최 근들어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화학공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식량증산을 위하여 새로운 비료공장 또는 살초제공장 건설을 추진 하거나 화학섬유 증산으로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날론 생산공장 증설에 주력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화학공업은 아직도 석탄계열의 基礎 化學工業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시도한 석유화학계열의 화학공업도 초보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化學工業에서 중요한 공해방지시설이 미비되어 대기나 하천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21)</sup>

여기서는 북한의 화학공업분야 중 衣食住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120) 「평양방송」, 1989. 6. 29.

121) 「한·소간 '북한 경제문제 워크샾' 출장결과보고서」(서울: 국토통일원, 1990. 6), p. 5.

화학비료, 화학섬유 생산실태와 석유화학공업 발전실태만을 개관하기로 한다.

먼저 化學肥料 생산을 보면, 1989년도 현재 생산능력 기준 351만톤(질소비료 : 200만톤, 인비료 : 15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같은해 화학비료 생산량이 560만톤이고 정보당 화학비료 施肥量이 2톤이상이라고 하니 북한의 경작면적이나 생산설비로 보아 과다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표 III-25>참조)

### 北韓의 化學肥料 生産能力

<표 III-25>

(단위 : 만톤)

| 年 度  | 北 韓 發 表 値 | 評 價 値 |
|------|-----------|-------|
| 1975 | 3,000     | -     |
| 1978 | 3,690     | 2,680 |
| 1980 | -         | 3,100 |
| 1985 | -         | 3,510 |
| 1986 | -         | 3,510 |
| 1987 | -         | 3,510 |
| 1988 | -         | 3,514 |
| 1989 | 5,600     | 3,514 |

\* 출처 : ① 북한 발표치중 1975년은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보고”(1977. 12).

② 1978년은 「평양방송」, 1979. 2. 22.

③ 1989년은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④ 1978~88년 평가치는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연도판.

⑤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1990. 9)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비중심의 비료체계에다 요소별 생산능력 불균형이 심하며 특히 카리비료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아직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年産 51만톤 규모의 사리원 카리비료공장, 年産 5만톤 규모의 단천인안복합비료공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건설중에 있다. 또한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내에 年産 90만톤의 질소비료생산공장의 건설도 추진중에 있다.

다음으로 화학섬유는 함흥의 2. 8비날론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와 1981년 건설된 함흥모빌론공장 등에서 연간 약 12만톤의 화학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의 화학공업부문 중점사업으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공장의 최종 생산목표는 비날론 10만톤과 함께 카바이트 100만톤, 메탄올 25만톤, 질소비료 90만톤, 염화비닐 25만톤, 가성소다 25만톤, 탄산소다 40만톤, 단백질사료 30만톤 등이다.

이 연합기업소는 지난 1989년 10월 제1단계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제2단계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부문 완공된 공장의 내역은 비날론공장(10만톤중 5만톤), 카바이트공장(16기중 8기), 메탄올공장(75만톤중 7만톤), 석회로(12기중 6기), 발전소(20만kw) 등이다. 동 기업소의 생산대상 품목은 화학섬유뿐만 아니라 고급옷감, 가정용품(비누, 종이 등), 유리, 가축사료, 화학비료, 살초제 등으로 주로 주민들의 먹고 입는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들이다.

마지막으로 石油化學工業을 보면 精油工場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봉화화학공장(신의주)과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승리화학공장(청진)이 있는데, 각각 150만톤, 200만톤의 精油能力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솔린, 나프사, 등유, 경유, 제트연료, 중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1989년의 원유도입량은 260만톤으로서 정유능력 대비 74% 수준에 불과하였다. 각국별 원유도입량은 소련에서 50만톤, 중국에서 114만톤, 이란에서 92만톤, 리비아에서 4만톤이었다.<sup>122)</sup>

122)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서울 : 국토통일원, 1990. 9), p. 15.

석유화학공장으로는 서구로부터 설비를 도입해서 건설된 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남 안주)가 있는데, 이 공장은 승리화학과 봉화학으로 나뉘어 나프사를 공급받아 요소비료, 폴리에틸렌, 에틸렌그리콜, 아니론섬유(폴리에스테르 섬유), 펄프·종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의 石炭液化에 의한 인조석유공장인 아오지화학공장에서는 연간 유연탄 100만톤을 처리하여 약 10만톤의 人造石油를 생산하고 있다.

#### (마) 建材工業

북한에서의 建材工業이라 함은 “기본건설에 이용되는 시멘트, 철재, 목재, 벽돌을 비롯한 建設資材를 생산하는 물질적 생산부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멘트공업, 목재가공업, 금속건재공업, 요업건재공업, 화학건재공업, 유리건재공업, 돌건재공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철근, 형강, 판강 등의 압연건재는 금속공업에서 생산되며, 통나무는 林業에서 생산되므로, 건재공업부문에서 실제로 중요한 자재는 시멘트, 유리, 기타 내화물 등이다.<sup>123)</sup>

북한의 시멘트공업은 日帝 때 건설된 승호리, 2. 8마동, 해주, 천내리, 8. 2부래산, 고무산시멘트공장과 1970년대 후반에 완공된 순천시멘트공장, 1989년 4월에 완공된 상원시멘트공장 등 9개의 대규모 공장과 80여개의 중소규모 시멘트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는 그 산하에 年産 1,000만톤 규모의 시멘트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공장별 생산능력을 보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3백만톤,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200만톤, 2. 8시멘트연합기업소 160만톤, 해주시멘트공장 100만톤, 천내리시멘트연합기업소 80만톤, 승호리시멘트공장 95만톤, 8. 2시멘트공장 60만톤, 고무산시멘트공장 42만톤, 부래산시멘트공장 30만톤 등이다. 이 중에서 순천시멘트공장의 생

123) 「경제사건」, 제1권, p. 75.

산품은 다른 공장제품과 구별해서 「금강」이란 상표로 동남아, 중근동지방에 수출되고 있다.

### 北韓의 시멘트 生産能力

〈표 III-26〉

(단위 : 천톤)

| 年 度  | 北 韓 發 表 值 | 評 價 值  |
|------|-----------|--------|
| 1978 | 10,560    | 7,700  |
| 1980 | —         | 8,070  |
| 1985 | —         | 9,040  |
| 1986 | —         | 9,040  |
| 1987 | —         | 9,040  |
| 1988 | —         | 9,775  |
| 1989 | 13,500    | 11,775 |

- \* 출처 : ① 북한 발표치중 1978년은 「평양방송」, 1979. 2. 22.  
 ② 1989년은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③ 평가치는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년도판.  
 ④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1990.6)

1989년 말 현재 북한의 시멘트 생산능력은 〈표 III-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77만톤(북한 발표 : 1,35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 시멘트 생산목표는 2,200만톤이다.

북한에서 가장 큰 유리 생산공장으로 알려진 남포판유리공장은 판유리뿐 아니라, 光學유리, 防彈유리, 현미경과 쌍안경까지 만든다고 하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크게 낙후된 수준이며, 판유리의 국내 수요 충족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124)</sup>

북한의 耐火物工業은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단천마그네사크링카공장은 年産 200만톤 규모의 북한 최대 공장이다.

124) 이우홍, 「어둠의 공화국」(서울 : 통일일보사, 1990), pp. 212~221.



북한은 최근 도자기제품을 해외수출 전략 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자기공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주요 생산공장으로는 경성도자기연합기업회사, 문덕도자기공장, 안변요업공장 등이 있으며, 1990년 9월에는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산하에 7. 6도자기공장을 새로이 완공하였다.

벽돌 및 기와공장은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평양 벽돌, 순천벽돌, 강남벽돌공장 등 25개 공장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 최근 북한은 표면은 고르고 단단해 별도의 외장공사가 필요없고, 여러가지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실리카트벽돌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1989년도 현재의 연간 생산능력은 10억개에 달한다고 북한은 발표하였다.<sup>125)</sup>

#### (다) 輕工業

북한의 産業發展政策의 基調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偏向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이 분야에만 國家豫算을 집중투자함으로써, 경공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社會主義國家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현상은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은 그동안 경공업의 발전이 주민들의 소비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표면상으로는 경공업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84년부터 金正日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8. 3인민소비품 증산 운동」, 1989년의 「경공업의 해」 설정과 黨中央委 全員會議 경공업 발전 3개년계획 제기, 「전국 경공업대회」 개최(1990. 6),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한 경공업 제품의 공급증대 모색 등이 그

125) 「조선중앙통신」, 1990. 10. 8.

에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공업 발전에 관한 각종 운동 전개나 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생활품 증산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투자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그 예로 북한은 1989년도에 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 제기된 경공업 발전 3개년계획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 후속조치가 없는 실정이며, 1989년 국가예산결산이나 1990년도 國家豫算上에서도 경공업부문에 財源을 증액 策定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북한에서의 경공업제품 생산체계는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의 지방공업, 그리고 제품생산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副資材, 廢資材 활용으로 소위 「8. 3인민소비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공장·기업소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73년부터 地方豫算制를 확대 시행하면서 주민생활품 생산은 지방행정기관 책임하에 중·소규모의 지방 경공업공장에서 자체 충족토록 하고 있으나, 地方財政의 조달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경공업공장을 새로이 건설하기 위한 신규 투자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군마다 평균 25개 이상의 지방 경공업공장이 가동중에 있다고 하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설비가 낙후되어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sup>126)</sup>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주민들의 消費生活水準 향상을 위한 최대의 주력사업으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를 건설중에 있는 바(화학공업부문 참조), 현재 진행중인 제2단계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의류를 비롯한 生必需品 공급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과는 「1987~90년간 경공업 상품생산에 대한 朝-蘇 경공업협정」을 체결하고 각종 의류, 신발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 의하면 소련 공급원료로 完製品을 생산하여 소련에 납품(피복제품 2.3억벌, 뜨개옷 500만벌, 신발 1,300만켤레 등)하며, 제품

126) 위의 통신, 같은 날.

일부는 노동력 제공 대가로 북한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소련과의 관계 악화와 북한의 技術水準 낙후, 남기 지연 속출 등으로 양국간 경공업분야 협조도 감소 추세에 있다.

경공업분야중 섬유공업 실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섬유공업은 화학사(인견사와 화학섬유), 모사와 면사를 혼방한 혼방직계열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PVC계열의 비 날론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주요 化學纖維工場으로는 2. 8비날론공장을 비롯하여 스프사계열의 청진화학섬유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그리고 年産 5만톤 규모의 순천비날론공장 등이 있다.

면방직, 혼방직계열은 북한 최대의 종합방직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年産 1.4억m)과 강계방직, 사리원방직, 개성방직, 구성방직 공장 등이 있으며, 안주방직공장이 1991년 완공을 목표로 소련 지원하에 건설되고 있다.

### 북한의 직물 생산능력

〈표 III-27〉

(단위 : 백만m)

| 年度   | 北 韓 發 表 值 | 評 價 值 |
|------|-----------|-------|
| 1976 | 580       | 580   |
| 1980 | —         | 590   |
| 1985 | —         | 600   |
| 1986 | —         | 620   |
| 1987 | —         | 640   |
| 1988 | —         | 660   |
| 1989 | —         | 680   |

\* 출처 : ① 북한 발표치는 제6기 최고인민회의의 보고(1977. 12)

② 1976~88년 평가치는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년도판.

③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1990.6)

毛紡織系列은 함흥모방직, 신의주모방직공장이 있고, 건직계열로는 평양비단합영회사(평양공장, 박천공장), 영변건직, 함흥건직 등이 있으며, 해산아마방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청천강합영회사(회천제사공장) 등도 중요한 섬유공장이다.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상 목표상 화학섬유 22.5만톤, 직물 15억m이나, 1989년 말 현재 생산능력은 화학섬유가 17.7만톤, 직물은 6.8억m로 추정되고 있다.<<표 III-27>참조)

### (3) 社會間接資本

북한은 社會間接資本을 물질적 生産物의 창조에 오로지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非生産的 部門으로서, 이는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가를 돕고 인민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이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기, 가스, 도로, 철도, 항만, 통신망 등은 그 경제체제가 어떤 것이든간에 하나의 경제주체가 생산·소비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경제적 간접자본(Economic overhead capital)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북한분류의 電力工業은 물론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부문과 통신부문을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 (가) 電 力

북한은 일제 때 건설된 수풍,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회령, 금강산발전소 등에 힘입어 1960년대까지는 수력의존적인 발전구조였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는 降水量 차이에 따른 發電量의 변동이 심하고 送配電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북한은 1970년대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도시의 電力需要를 충족하고,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廢熱이나 餘熱을 도시 지역 주택의 난방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에 火力發電所를 집중 건설하고 있다.

북한의 水力發電施設은 시설용량 70만KVA의 水風發電所를 비롯하여 운봉, 서두수, 허천강, 장진강, 강계천년, 부전강, 대동강, 태

평만, 위원, 태천발전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풍, 운봉, 태평만, 위원 등 4개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공동으로 건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전력을 쌍방이 각각 절반씩 사용하고 있다. 태천수력은 북한이 수로를 역류시키는 「독특한 工法」에 의거 건설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발전소(시설계획용량: 80만KVA)로서, 현재 部分完工되어 조업(40만KVA)중에 있다.

1990년도중에 북한이 신규로 건설중에 있는 수력발전소는 영원수력, 예성강수력, 남강수력 등이 있으며, 능력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발전소는 위원수력(15만KVA→39KVA)<sup>127)</sup> 태천수력(40만KVA→80만KVA)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黨中央委 제5기 19차전원회의(1979. 12) 결정 이후 각 도별로 70~150여개의 건설목표를 정해 놓고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도 주력하고 있는 바, 1990년 1월 현재 총 693개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이 완공, 전기를 생산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 160만KVA의 북창화력을 비롯하여 평양화력, 용기화력, 청천강화력, 청진화력, 순천화력 등이 있으며, 1990년도중 새로이 건설중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12월화력, 평성화력, 동평양화력, 남포화력, 김책화력, 함흥화력 등이 있다. 평양·용기·북창·청진화력은 소련 지원하에 건설된 것이며, 현재 공사중인 동평양화력 역시 소련 지원하에 건설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85. 12월에 북한-소련간에 체결된 『원자력 건설에 관한 협정』에 의거, 소련 지원하에 원자력발전소(44만kw급×4기)를 1990년 초부터 건설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사찰 거부, 북-소간 관계 악화, 소련의 경제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말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총690만kw로 추정되고 있는 바, 이중 수력이 405만kw, 화력이 285만kw이며, 발전량은 292

127) 위원발전소 확장공사는 1990년 11월 15일 준공식을 거행하였음. 「중앙통신」, 1990. 11. 16.

억kwh로서 수력이 150억kwh, 화력이 142억kwh로 추정되고 있다.  
(〈표 III-28〉참조)

### 北韓의 發展 設備能力 및 發展 實績

〈표 III-28〉

| 年 度  | 發展設備能力(萬 KW) |       |       | 發展量(億 KWH) |       |       |
|------|--------------|-------|-------|------------|-------|-------|
|      | 計            | 水 力   | 火 力   | 計          | 水 力   | 火 力   |
| 1985 | 596.0        |       |       | 253.0      |       |       |
| 1986 | 610.7        |       |       | 253.0      |       |       |
| 1987 | 637.7        | 367.7 | 270.0 | 260.8      | 128.6 | 132.2 |
| 1988 | 690.2        | 405.2 | 285.0 | 278.9      | 140.7 | 138.2 |
| 1989 | 690.2        | 405.2 | 285.0 | 292.0      | 150.0 | 142.0 |

\* 출처: ①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 년도판.

② 1989년은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1990.9)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북한의 發電設備에 있어서 水力과 火力의 구성비는 59 : 41로서, 아직까지 수력이 우위에 있으나 발전량에 있어서는 수력과 화력의 구성비가 51 : 49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이 건설 또는 능력 확장중에 있는 수력, 화력발전소의 총시 설계획용량은 400~500만kw로 추정되나, 북한의 발전소 공기가 통상 5~10년이며, 북한의 현재 처한 경제건설 능력이나 발전실적 등을 감안할 때,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의 전력 생산목표 1,000억 kwh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電力工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먼저 수력발전소의 경우 山林 황폐화에 따른 수자원의 감소, 기존 수력발전소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발전량 증대가 곤란하다는 것이며,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주된 연료인 석탄의 생산과 輸送이 한계에 도달하여 발전소의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送配電體系의 불합리로 누전율이 심하여 기존의 발전량도 제대로 産業用이나 家

庭用으로 소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력 사정은 발전·송배전체계상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전력 사정이 호전될 가능성은 상당기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1990년 2월 북한 최대의 電線生産 공장인 3. 26공장 산하에 「수지고압케이블」 직장을 새로이 완공함으로써, 7,000V 이상의 고압배전케이블을 專門生産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전에 의한 電力損失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나) 輸 送

북한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철도 및 도로망은 비교적 지대가 낮은 서해안지대에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지대에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다.

북한 수송체계의 특징은 철도수송이 주축을 이루고 도로수송, 하천 및 해상수송은 철도수송과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수송이 전체 物動量의 90% 수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객수송의 경우도 철도수송이 전체 교통인구의 6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油類不足으로 도로수송을 政策的으로 억제하고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 동서로 갈라져 있는 해안 등 불리한 지형적 여건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철도망은 평양-신의주, 평양-혜산, 평양-남포, 평양-해주, 평양-만포, 평양-사리원-평산, 평양-지하리-원산, 평양-원산, 평양-나진·무산, 평양-만포-혜산을 주요 간선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철도수송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제1차 7개년계획 이후 기존철도의 電氣化, 廣軌化와 함께 새로운 철도를 부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지역내에서 수송수단이 가장 취약한 북부지구의 자강도 만포에서 양강도 혜산을 연결하는 북부순환선(북부철길)을 완공(1988. 8)하여 운행중에 있다. 또 제3차 7개년계획에서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8

축전기기관차와 100톤 화차 생산을 통한 철도의 重量化와 주요 간선철도망의 複線化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0년도에 신규건설 또는 복구중에 있는 주요 철도로는 서부지구 환상선 구성을 위한 남동-온천간 철길(80km)과 동해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원산-금강산 철길(107km)이 있다. 또한 북부 철길, 위연-삼지연 철길, 도내-유평 철길 전철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1989년 말 현재 철도 총연장은 5,024km로서, 이중 電鐵化區間은 전체의 60% 수준인 3,084km이며, 狹軌區間은 460km이다.

도로망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사가 심하고 노퍽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포장으로, 차량 壽命短縮과 輸送能力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도로 총연장은 1989년 말 현재 23,000km로서, 포장도로는 약 6% 수준인 1,469km에 불과하다.

이중 고속도로는 평양-남포(53km), 평양-원산(172km), 평양-순안(15km) 및 원산-금강산(114km) 고속도로 등 총 354km이다. 현재 평양-희천(120km), 평양-개성(170km) 등 2개 구간은 고속도로 路盤工事が 完工되어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항만은 立地條件이 유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년 20,000톤급 선박의 통과가 가능한 서해감문(남포감문)이 완공됨으로써 서해안의 海上輸送能力은 물론 대동강, 재령강을 이용한 河川輸送能力이 크게 향상됐다. 港灣荷役能力은 1970년대까지는 기존시설의 복구 및 정비 등 현상유지에 그쳐 매우 빈약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외무역 증대 방침에 따라 주요 무역항인 청진, 남포, 해주, 송림항 등의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海運貿易輸送量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1989년 말 현재 항만 능력은 약 3,500만톤/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수송능력을 보면 북한 空軍隸下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민용항공국 통제하에 주기종 29대와 보조기종 35대 등 총 64대의 민항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선으로 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동베를린, 평양-하바로프스크, 평양-모스크바-소피아구간 등 4개 정기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순수민간여행객이 국내



선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으나, 公的 任務를 수행하는 여객을 위하여 평양-함흥-청진노선이 거의 매일 왕복 1회 운행되고 있으며, 기타 인력과 물자수송, 농약살포, 魚群探知, 해안선 순찰 등을 위한 비정기 국내항공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의 飛行場施設은 국제공항으로 순안비행장이 있으며, 국내선 운행을 위하여 순안, 원산, 선덕, 청진, 혜산, 삼지연, 순천, 과일 등 10여곳에 민용항공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들어 평양-홍콩간 전세기 운항을 위한 試驗飛行 실시(1990. 1. 13),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 추진 등 對西方 항공노선 개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다) 通 信

북한에서의 通信이란 일반적으로 신문, 방송, 잡지 등 각종 報道媒體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sup>128)</sup>

따라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분류하는 통신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遞信」으로 부르고 있으며, “인민들의 통신 및 방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신, 전화, 우편, 방송 등 여러가지 遞信網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sup>129)</sup>

遞信事業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 소포, 송금),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 3대부문으로 분류되며, 政務院의 체신부를 비롯하여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북한의 통신부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능이 行政의 需要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政策을 전파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수송부문과 함께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국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군→리로 종적으로 연

128) 「백과사전」 제4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29) 「경제사전」 제2권, pp. 514~515.

결된 中央集中體系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동교환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대도시간의 현대적 통신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바, UNDP의 지원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하에 1990~91년 기간중 평양-함흥간 광섬유 통신망 설치 추진 등이 그 예이다.

국제통신망은 공산권과는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有線網이 형성되어 있고, 서방권과는 평양-싱가폴·홍콩간의 단파 무선과 중국의 北京地區局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1986년 3월 평양 근교에 일본·프랑스 기술진의 참여로 위성통신지국이 건설되어 위성통신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텔렉스시설은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서독으로부터 텔레타이프를 도입해 지방의 관공서와 주요 기업소, 무역상사 등 무역관계기관 등에 설치하는 등 텔렉스망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 8월 靜止衛星과 軌道衛星으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기상수문국 기상위성 수신소를 준공함으로써 보다 신속 정확한 중장기 기상예보가 가능케 되었다.<sup>130)</sup>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감소 및 해상, 항공운수의 안전운항은 물론 해양의 氣流分析으로 魚族資源의 분포실태 파악 등 농수산업 분야에서 기상예보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라. 貿易 및 對外經濟協力

### (1) 對外貿易

#### (가) 對外貿易政策

북한은 對外貿易政策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원칙하에서, 사회주

130) 「평양방송」, 1990. 8. 27.

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의 통일적인 통제 밑에 해당기관이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국가 單一貿易體系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국내경제의 발전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政策的 變遷過程을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에는 대외무역을 다만 자립적 민족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中·蘇로부터의 援助 削減과 軍事·經濟 並進政策 추진에 따라 종래의 폐쇄적 내지는 소극적 대외무역정책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들어와서 대내적으로는 6개년계획이 착수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는 대부분 借款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이전에 받았던 차관의 償還期間이 도래되어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화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성은행」과 「금강은행」 등을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sup>131)</sup>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노동당 6차대회(1980. 10), 最高人民會議 제7기 3차회의(1984. 1) 등에서 자본주의국가 또는 제3세계국가와의 交易增大를 위한 여러가지 방침들을 제시하면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여 오고 있다.<sup>132)</sup>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변화는 제3차 7개년계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계획기간중 무역을 계획전에 비해 3.2배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3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모스크바: 소련과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1985)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204~208.

132) 제6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제7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남협조와 대외 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음.

## (나) 貿易業務 擔當機構

북한은 그들의 對外貿易政策에 따라 貿易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구를 政務院內에 두고 있으며, 이들 中央機關의 통일적인 감독과 지도하에 실제로 무역업무를 집행하는 각종 산하기관을 중앙이나 지방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먼저 정무원내의 기구로서, 각 生産部門別 計劃과의 연계하에 무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國家計劃委員會, 무역정책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貿易協定을 체결하는 등 무역업무를 전담하는 貿易部가 있으며, 외국의 投資誘致, 기술도입, 시장개척 등을 담당하는 對外經濟事業部, 경제분야 외교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對外經濟委員會 등이 있다.

실제로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며 필요한 정보나 금융, 기타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무역업무 집행기관으로는 通關·品質檢査·보험·운송 등을 담당하는 세관검사국, 수출입검수국, 국제보험회사, 대외운수회사 등이 있으며, 100여개의 무역상사와 독자적인 무역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각종 공장·기업소, 국제금융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은행·금강은행·대성은행·조선낙원금융합영회사·조선합영은행 등이 있다.

## (다) 去來形態와 決濟方法

북한의 무역거래 형태는 무역상대국이 사회주의권 국가인가 서방권 국가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소련, 중국이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長期貿易協定과 이를 근거로 매년 체결하는 연도별 貿易議定書에 의하여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무역대금은 거래 시점마다 硬化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서로 거래한 상품의 수량 및 금액을 취합하여 그 차액만을 상호 합의된 화폐<sup>133)</sup>로 결제하는 일종의 바터貿易制이다. 이러한 무역결제업무를 위하여 북한은 무역상대국과 상호 지정하는

133) 지금까지는 주로 소련의 루블화로 결제하였음.

은행에 清算計定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개방에 따라 이들 나라와의 무역거래 형태 및 결제방법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소련과의 무역에서는 1990년 말에 만료되는 長期貿易協定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硬貨로 결제하도록 북한-소련간에 협정이 체결(1990. 11. 2)되었다.<sup>134)</sup> 이러한 변화는 향후 對東歐圈 교역에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西方圈 國家와의 무역은 교역절차나 대금결제방식에서 자본주의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본주의국가에서와는 달리 北韓 원貨와 결제통화간의 환율이 수출거래 성립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대외무역의 국가독점원칙에 따라 수출품의 가격이 당해 제품의 생산비나 수익성에 기초하기보다는 외화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 (라) 對外貿易 現況

북한은 다른 經濟統計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貿易統計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對外貿易 現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계로 지금까지의 북한 무역통계는 무역상대국이 발표하는 貿易統計資料, 기타 국내외의 북한경제 전문 연구기관이나 정보기관들이 발표하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무역상대국은 1989년도 현재 80여개국이며, 무역 총규모는 48억불로서 國民總生産(GNP)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무역추세를 보면, 1950~60년대에는 무역규모가 꾸준하고도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급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29>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0년도의 수출·수

134) 「조선중앙방송」, 1990. 11. 5; 「모스크방송」, 1990. 11. 5.

## 北韓의 年度別 貿易 推移

〈표 III-29〉

(단위 : 백만불)

| 區分<br>年度 | 先進工業國 |       |                 | 開發途上國 |       |                 | 社會主義國家  |         |                   | 計       |         |                    |
|----------|-------|-------|-----------------|-------|-------|-----------------|---------|---------|-------------------|---------|---------|--------------------|
|          | 輸出    | 輸入    | 計               | 輸出    | 輸入    | 計               | 輸出      | 輸入      | 計                 | 輸出      | 輸入      | 計                  |
| 1970     | 98.3  | 51.8  | 150.1<br>(18.6) | 10.3  | 8.8   | 19.1<br>(2.4)   | 224.6   | 411.8   | 636.4<br>(79.0)   | 333.2   | 472.4   | 805.6<br>(100.0)   |
| 1975     | 161.2 | 474.6 | 635.8<br>(30.6) | 162.2 | 45.8  | 208.0<br>(10.0) | 443.9   | 790.2   | 1,234.1<br>(59.4) | 767.3   | 1,310.6 | 2,077.9<br>(100.0) |
| 1980     | 419.2 | 551.6 | 970.8<br>(28.3) | 357.7 | 221.5 | 579.2<br>(16.9) | 871.6   | 1,063.1 | 1,880.7<br>(54.8) | 1,594.5 | 1,836.2 | 3,430.7<br>(100.0) |
| 1985     | 229.2 | 375.1 | 604.3<br>(20.6) | 147.6 | 144.2 | 291.8<br>(9.9)  | 794.8   | 1,251.0 | 2,045.8<br>(69.5) | 1,171.6 | 1,770.3 | 2,941.9<br>(100.0) |
| 1986     | 235.9 | 331.3 | 567.2<br>(16.4) | 149.6 | 158.1 | 307.7<br>(8.9)  | 971.4   | 1,603.1 | 2,574.5<br>(74.6) | 1,356.9 | 2,092.5 | 3,449.4<br>(100.0) |
| 1987     | 331.0 | 503.3 | 834.3<br>(19.9) | 190.6 | 229.4 | 419.6<br>(10.0) | 1,107.1 | 1,836.9 | 2,944.0<br>(70.1) | 1,628.3 | 2,569.6 | 4,197.9<br>(100.0) |
| 1988     | 374.0 | 466.9 | 840.9<br>(16.1) | 361.0 | 453.1 | 814.1<br>(15.5) | 1,298.0 | 2,291.0 | 3,589.0<br>(68.4) | 2,033.0 | 3,211.0 | 5,244.0<br>(100.0) |
| 1989     | 322.2 | 419.7 | 741.9<br>(15.5) | 348.8 | 384.3 | 733.1<br>(15.3) | 1,275.0 | 2,041.0 | 3,316.0<br>(69.2) | 1,946.0 | 2,845.0 | 4,791.0<br>(100.0) |

\* 출처 : ① 1970~86은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서울 : 1989), pp. 1986~87에서 재인용.

② 1986~89중 선진공업국·개발도상국은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0, pp. 304~305,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원 관계자료 종합 추계.

\* 주 : 선진공업국에는 IMF의 DOTS분류상의 Industrial Countries가, 사회주의 국가에는 소련·중국·동구 사회주의 국가·몽고·쿠바가 포함되며, 개도국은 그 이외의 모든 국가를 말함.

입액은 1970년도 수출·수입액에 비해 각각 4.8배, 3.9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前半期中에는 대서방권 外債償還問題와 북한의 主種 수출품인 광산물의 가격 폭락, 외화부족 등으로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인 결과 1985년도의 수출액은 1980년도 대비 무려 26.6%나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4.1% 감소하였다. 이 기간중에 북한의 수출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주로 대서방권 수출의 격감(45.3%)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6~88기간중의 貿易規模는 수출입액 공히 매년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1989년도에는 1988년도 대비 각각 4.3%, 11.4% 감소하여 수출 19.5억불, 수입 28.5억불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輸出入市場을 社會主義國家圈, 西方先進國圈, 그리고 開發途上國圈으로 대별하고, 각 권역별 및 권역내의 주요 국가별 무역액 구성비 변화 추세를 보면(〈표 III-29〉참조), 북한의 무역총액중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도 79%에서 1980년도 54.8%로 격감한 반면, 대서방선진국 무역구성비는 같은 기간중 18.6%에서 28.3%로, 대개발도상국 무역구성비는 2.4%에서 16.9%로 높아졌다.

이와같이 북한의 1970년도 권역별 貿易構成比가 1980년도에 와서 큰 폭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1971년부터 시작된 6個年 經濟計劃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플랜트, 기계설비 등을 주로 서방권에서 집중적으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1985년도 이후에는 주로 對蘇 교역량의 상대적 증가에 힘입어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액이 무역총액의 7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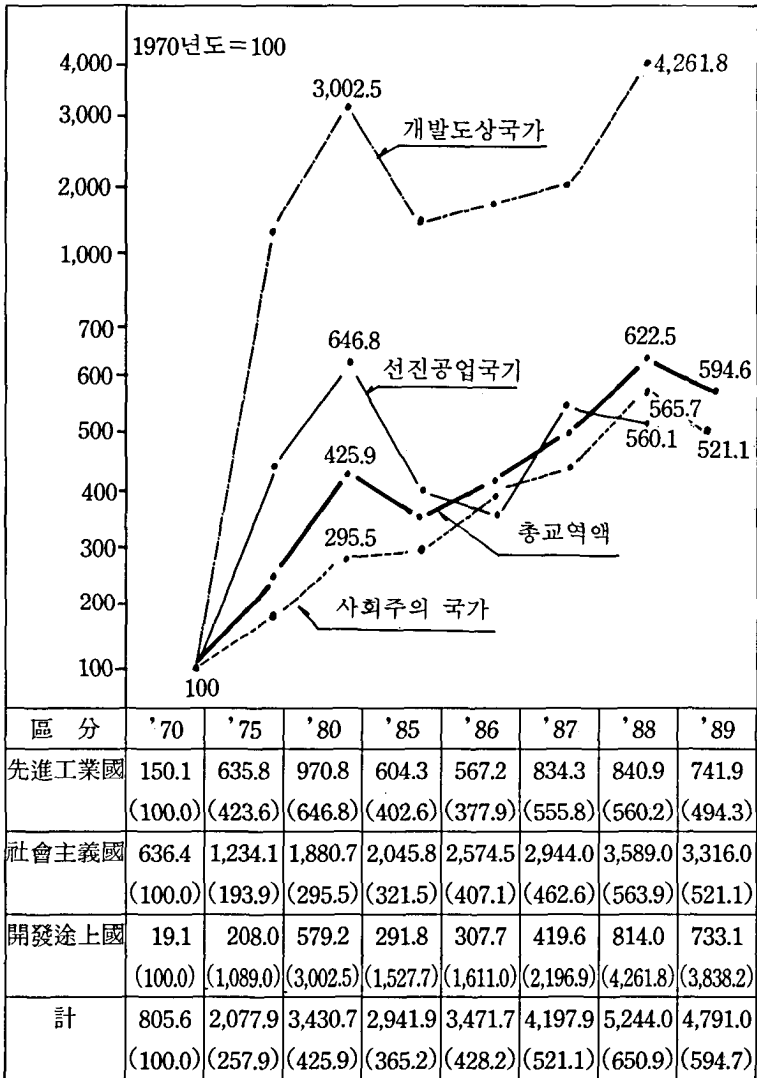
이상의 권역별 무역구성비 변화 추세는 권역별 교역량의 상대적 증감 변화에 따른 결과인데, 1970년의 각 권역별 교역량을 100으로 하여 증감률을 指數로 나타내면 〈그림 III-5〉와 같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북한의 무역 신장률은 기본적으로 무역총액의 70%수준을 차지하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량

圈域別 交易量 增加 趨勢

<그림 III-5>

(단위 : 백만불, %)



\* 출처 : <표 III-29>에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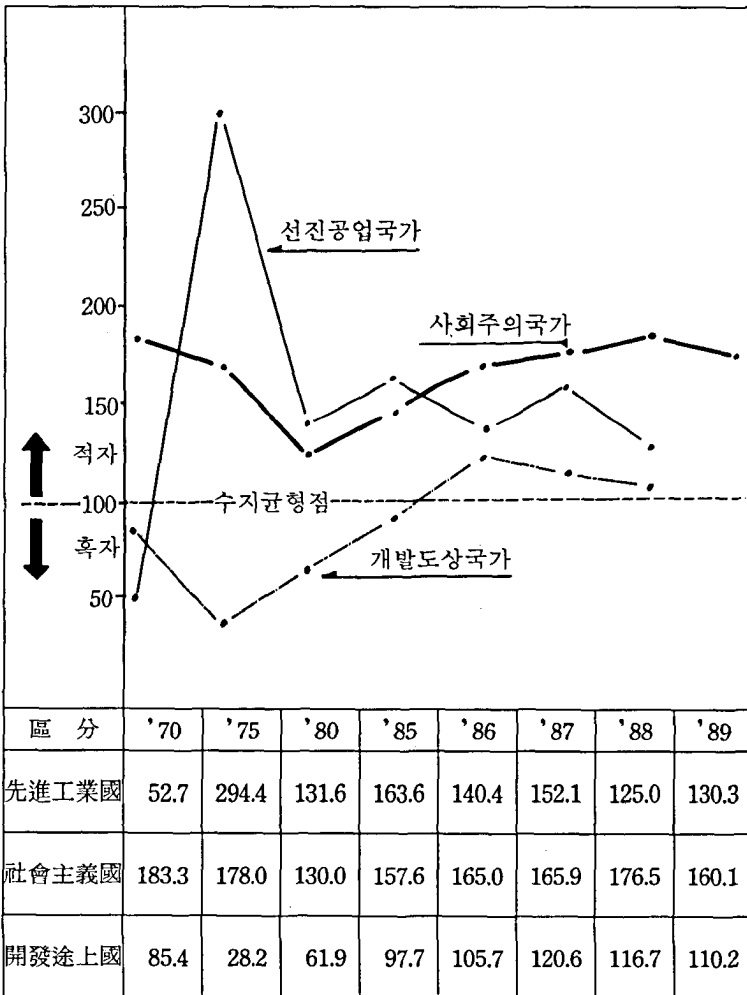


증감에 따라 좌우되지만,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교역량이 급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들 나라와의 교역량 변화에 크게 영향을

國家別 輸出入市場 比率

<그림 III-6>

(單位：輸入/輸出×100(%))



\* 출처 : <표 III-29>에서 산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표 III-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매년 貿易收支 赤字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무역총액의 70% 수준이나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에서 가장 심각하며, 先進工業國이나 개발도상국과는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실태를 북한의 수출액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 즉 「輸出入市場 比率」로 나타내면 <그림 III-6>과 같다. (무역수지 균형시 수출입시장비율=100).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7월의 「7.7특별선언」 및 동년 10월의 南北韓 物資交易指針 시행 이후 1990년 7월말까지 총104건, 3,253만불이었다.

이중 북한으로부터의 搬入은 총101건에 3,237만불이며, 搬出은 3건에 16만불로서 대북한 교역은 搬入 위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간의 교역은 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제3국을 仲介地로 하는 間接貿易方式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남북한간 搬出入 實績은 이들 仲介國과의 輸出入統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한 반입(반출) 실적은 북한의 무역 통계상 중개국에 대한 수출(수입)실적에 포함되는데 1989년도 북한 수출액중에서 남한과의 간접거래에서 비롯된 금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약 1%(무역총액 기준시 0.4% 정도이다.)

## (2) 合營企業

合營企業이란 “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sup>135)</sup> 이와같이 合營企業은 국제간 經濟合作의 한 형태이나 기업의 경영과 손실에 대하여 出資

135) 「경제사전」, 제2권, p. 570.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기업이윤을 공동분배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의 合作會社運營法(이하 「合營法」이라 함)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 기업소, 개인(특히 조총련 등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등이 북한의 회사, 기업소와 북한 영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같은 합영기업 誘致政策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야기된 外債問題로 서방국가로부터의 外資導入이 불가능하게 되자 債務償還 부담이 없는 새로운 외자유치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1979년 8월에 중국이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제정, 시행한데 자극받은 바 크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관계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합영법 시행세칙(1985. 3. 20), 합영회사 소득세법(1985. 3. 7) 및 同法 시행세칙(1985. 5. 17), 외국인 소득세법(1985. 3. 7) 및 同法 시행세칙(1985. 5. 17)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과의 합작사업 斡旋, 調整, 情報提供 등을 목적으로 1986년 8월에는 북한과 조총련이 각각 60만불씩 출자하여 朝鮮國際合營總會社를 설립하였고, 政務院內에 合營工業部를 신설(1988. 11)하거나 合營企業誘致를 위한 대표단을 해외에 파견(1989. 11)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합영기업의 국내유치뿐 아니라 해외진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1984년 9월 合營法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合營企業 實績은 북한내 유치가 130여건, 해외진출이 80여건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6)</sup> 그러나 이들 중에서 북한의 보도매체나 북경방송, 모스크바방송,

136) 북한의 합영기업 실적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통일원, 「북한 및 공산권 동향」 통권 110호, (1990. 8호), p. 129 이하 및 조선문제연구소, 「월간 조선자료」, (동경: 1990. 5호), p. 45이하를 참조.

기타 국내의 언론을 통하여 會社名, 合營當事者, 資本金, 事業內容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기업(설립계약이 체결된 기업 포함)은 북한내 유치가 67건, 해외진출이 21건 등 88건뿐이다.

북한이 유치한 67개 합영기업중 50건(75%)은 조총련과 이루어진 것이며, 해외 진출한 21개 합영기업중 13건(62%)은 소련과 이루어진 것이다. 88개 합영기업의 설립 연도별 현황을 보면, 1985~86년 기간중에 총 9건(유치 8건)을 비롯하여 1987년에 17건(유치 15건), 1988년에 27건(유치 20건), 1989년에 29건(유치 20건), 그리고 1990년(1~11월)에 6건(유치 3건) 등이다.

합영기업의 업종별 현황은 식당, 관광, 금융, 유통, 정비 등 서비스업분야가 40%, 경공업분야가 25%, 농수산업분야가 15%이며, 소련에 진출한 東醫學 계통의 합영기업에 힘입어 의료분야가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金屬·機械·重化學工業, 기타 첨단과학 기술분야와 관련된 합영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합영기업의 出資金 규모나 合營 당사자간의 出資比率이 알려진 기업은 20여개에 불과한데, 이들을 기준을 볼 때 출자규모는 대부분 100만불 내외의 소규모이며, 북한과 상대국의 출자비율은 50 : 50이 가장 일반적 형태이다.

북한의 합영기업 유치 또는 海外進出政策은 조총련 및 소련과의 관계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外貨不足問題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나마도 1989년도를 고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88년 11월 설치된 이후 합영기업 유치에 그나마대로 기여하였던 合營工業部를 1990년 5월 政務院 組織 개편시 폐지하였다. 그러나 신설 당시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방법으로 “合營工業部の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던 사실이나 그동안의 성과에 비추어볼 때 북한의 합영기업 誘致政策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 유치절차를 對外經濟事業部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3) 對外援助 및 外債

해방 이후 북한은 無償援助 12.8억달러, 有償援助 34.7억달러 등 총 47.5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들여와 戰後復舊事業, 軍事力增強, 經濟開發 등에 투자하였다. 이중 20.4억달러(전체의 43%)는 1960년대 이전에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도입된 有·無償 借款이었으며, 12.4억달러는 1970년대 들어와서 서방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된 有償借款이었다.(<표 III-30>참조)

## 北韓의 受援 및 借款導入 現況

&lt;표 III-30&gt;

(단위: 만달러)

| 期 間      | 合 計     | 蘇 聯     | 中 國    | 기타 共產圈 | OECD國   |
|----------|---------|---------|--------|--------|---------|
| 1949년 이전 | 5,300   | 5,300   | —      | —      | —       |
| 1950~60년 | 165,336 | 71,325  | 50,850 | 43,161 | —       |
| 1961~69년 | 33,668  | 19,668  | 10,500 | 3,500  | —       |
| 1970년    | 9,000   | 8,700   | —      | —      | 300     |
| 1971년    | 26,700  | 25,000  | —      | —      | 1,700   |
| 1972년    | 35,400  | 15,000  | —      | —      | 20,400  |
| 1973년    | 48,400  | 10,900  | —      | —      | 37,500  |
| 1974년    | 52,000  | 12,000  | —      | —      | 40,000  |
| 1975년    | 42,900  | 18,600  | —      | —      | 24,300  |
| 1976년    | 560     | 400     | 160    | —      | —       |
| 1978~84년 | 55,585  | 29,625  | 25,870 | —      | —       |
| 총 계      | 474,849 | 216,518 | 87,380 | 46,661 | 124,200 |

\*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1986).

그러나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1970년대 후반 부터 外債償還 불능상태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借款導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주로 소련·중국 등에서 약간의 차관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소련은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중 약 1억불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sup>137)</sup> 그러나 소련은 최근에 군사장비나 원유 등의 대북한 판매시 적용하던 소위 「友好價格制度」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現物性 援助는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제3세계와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차관을 재공하고 있는데, 1980~89기간중 無償借款은 1억달러, 有償借款은 1.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 北韓의 第3世界 支援現況

〈표 III-31〉

(단위 : 만불)

| 區 分 | 1980~85 | 1986 | 1987  | 1988  | 1989  | 計      |
|-----|---------|------|-------|-------|-------|--------|
| 無 償 | 4,328   | 644  | 2,198 | 1,669 | 944   | 9,783  |
| 有 償 | 10,180  | 248  | 1,272 | 1,062 | 3,846 | 16,608 |
| 計   | 14,508  | 892  | 3,470 | 2,731 | 4,790 | 26,391 |

\* 출처 : 국토통일원 자료종합.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또는 유엔공업기구(UNIDO)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UNDP와는 1979년 6월 북한이 동 기구에 가입한 이래 1단계 사업으로 1980~86년간 農·水産業, 輸送, 通信, 工業分野의 기술 및 연구를 위하여 2,050만불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2단계사업(1987~91)으로 연간 保健, 工業, 科學技術 등 8개 분야에 1,514만달러를 제공받기로 합의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의 대외경제 협조관계와 대외무역 적자에서 비롯된 북한의 외채는 1989년도 말 현재 對西方圈 외채 27.4억달러, 對共產圈 외채 40.4억달러 등 총 67.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II-32〉 참조)

137) 국토통일원, 「한·소간 북한 경제문제 워크샷, 출장보고서」(서울 : 1990. 6), p. 53.

## 北韓의 外債現況

〈표 III-32〉

(1989년말 현재)

| 區 分   |                         | 金 額(億弗) | 發 生 期 間  |
|-------|-------------------------|---------|----------|
| 西     | 西 歐 은 행 단<br>(MG 은행간사)  | 2.40    | 1973년    |
|       | 西 歐 은 행 단<br>(ANG 은행간사) | 6.43    | 1973~74년 |
| 方     | 일 본                     | 5.30    | 1972~75년 |
|       | 프 랑 스                   | 2.27    | 1970~74년 |
|       | 서 독                     | 3.50    | 1973~77년 |
|       | 스 웨 덴                   | 1.46    | 1970~74년 |
|       | 오 스트 리 아                | 1.02    | 1971~75년 |
|       | 기 타                     | 5.04    |          |
| 圈     | 小 計                     | 27.42   |          |
| 共 産 圈 | 소 련 련                   | 31.33   | 1971~89년 |
|       | 중 국                     | 9.03    | 1971~89년 |
|       | 小 計                     | 40.36   |          |
| 總 計   |                         | 67.78   |          |

\* 출처 : 국토통일원 자료종합.





# IV. 科學·技術



# 1. 科學技術 政策

## 가. 政策基調

197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25조에는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와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4조에서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기술발진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 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科學·技術 政策基調를 정리하면 ① 技術革命의 계속적인 추진, ②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 과학연구사업에서 主體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다.

技術革命은 思想·文化革命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階級隔差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重勞動과 輕勞動의 차이, ② 工業勞動과 農業勞動의 차이, ③ 肉體勞動과 精神勞動의 차이를 없앤다는 3大技術革命 사업의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科學者들과 生産者들의 창조적 협조는 과학연구사업의 결과를 직접 생산기술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제건설과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자들과 생산노동자들이 협조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대중적 지혜의 발양과

消極性, 保守主義, 技術神祕主義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主體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은 金日成의 主體思想 및 自力更生 原則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선진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의 연구인력과 독자적인 이론개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며, 연구사업의 중점과업도 국내 원료·연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우선을 두는 것이다.

## 나. 科學技術政策의 展開過程

### (1) 第1段階(1945~53)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그들이 추진해온 경제계획 기간별 목표와 범위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해방 직후부터 6. 25戰爭 期間중의 북한 과학기술 정책은 일제 하에서 일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再稼動하는데 필요한 국내 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배치하는데 목표를 두었다.<sup>1)</sup>

북한은 1946년 8월 1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및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產業局 指令을 통해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 및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서 북한은 당시 전문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기술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기술이 소용되는 기관에서 종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년 8월까지 조사등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國營職場에 배치하였다.

동년 10월 2일에는 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89호로 「공업기술자 사정과 검정규정」을 발표하였다.

공업기술자 사정과 검정규정에서는 당시 공업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크게 기사와 기수 2종으로 분류하고 기사는 다시 고급기사와 기사 2등급으로, 기수는

1)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4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P. 232.

1급·2급·3급으로 기술등급을 구분 관리하였다.<sup>2)</sup>

다음해인 1947년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에 착수하여 1947년 2월 7일에는 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181호를 발표, 中央研究所를 설치하였다.<sup>3)</sup>

당시 中央研究所 구성은 지질학·광업·금속·화학·섬유·기계·전기·서무 등 8개부로 조직하였다.

동년 6월 20일에는 人民委員會 결정 제44호인 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서는 “파행적인 일제 식민지적 경제조직을 숙청하고 자주적인 인민경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기술의 획득과 기술자의 확보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기본 임무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기술교육의 강화, 전문 기술교육자의 移職 禁止, 기술전문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실험기구·기계자료·실습장 등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에 착수토록 하였다.<sup>4)</sup>

다음해인 1948년 11월 12일에는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해 설치하였던 國家 技術資格 檢査委員會를 폐지하고 새로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내각결정 제71호에 의해 신설하고 기술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sup>5)</sup>

전쟁기간중인 1952년 2월 28일에는 내각결정 제38호에 의해 교육성 산하에 있던 각종 技術專門學校들을 關係省과 內閣直屬局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產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전쟁수행과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52년 4월 27일에는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제1회 全國 科學者大會를 소집하고 토의 결과에 따라 동년 5월 7일에는 내각결정 제86호로 科學아카데미를 설치하였다.<sup>6)</sup>

과학아카데미의 창설 목적은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교통·운

2) 위의 책, PP. 234~36.

3) 위의 책, P. 242.

4) 위의 책, PP. 243~44.

5) 위의 책, P. 237.

6) 위의 책, P. 228, 「과학아카데미」의 실제 창립일은 1952년 8월 15일임.

수·체신 등 시설 복구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과학연구사업을 통일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창설된 과학아카데미는 동년 10월 9일 또다시 내각 결정 제183호인 科學院 설립에 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과학원 조직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sup>7)</sup>

당시 과학원의 구성은 과학자들을 院士와 候補院士 자격으로 구분 임명하고 사회과학부문 위원회, 자연 및 기술과학부문 위원회, 農學 및 醫學部門 委員會 등 3개 위원회를 두었다.

## (2) 第2段階(1954~60)

이 기간은 북한이 전후복구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을 추진한 기간이다.

기간중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지원과 함께 기술협조를 획득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전후복구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소련을 비롯한 동독, 체코, 불가리아, 중국,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科學技術協調協定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와 과학기술자의 상호 파견을 통해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 전후복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이 기간중에는 1956년 3월 26일 소련과 「聯合 核研究所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59년 9월 7일에는 「조·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자력 연구의 기반 조성에도 주력하였다.

1960년 8월에는 勞動黨 中央委員會 擴大全會員會議를 개최하고 60년대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첫째 인민경제 전부면에서 기술혁신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둘째, 技術人材 養成事業을 개선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동년

7) 위의 책, P. 229.

11월 30일에는 科學院 직제 변경을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 (3) 第3段階(1961~70)

이 기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과 그 연장기에 해당하며 중공업 우선정책과 4대군사노선이 강화된 시기이다.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과학기술 정책을 보면, 북한은 짧은 기간내에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자원에 입각한 자립적 공업체제 확립에 과학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과학분야의 개척과 원자력을 비롯한 최신과학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수행, 基礎科學部分의 적극적인 발전 추구하고 9년제 技術義務教育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sup>8)</sup>

과학기술 연구의 세부목표는 첫째, 무연탄에 의한 제철방법 연구, 둘째, 무연탄 가스화에 대한 연구, 셋째, 산소열법에 의한 카바이드 생산방법 및 갈탄의 고온 건류와 같은 과제의 완전 해결, 넷째, 방사선·超音波·高周波 등의 연구 및 이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다섯째, 數學·物理學·化學·生物學 등 기초과학 연구 강화, 여섯째, 기간중 46만명의 기수 및 中等專門家와 18만명의 기사 및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당대회 개최 직전인 1961년 7월 28일에 북한은 「기술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시킬데 대하여」 내각 결정 제127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는 첫째, 교수·교양사업에 필요한 교과서·교재 및 출판사업을 뒷받침하는 문제, 둘째, 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과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셋째, 대학교원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들을 工場·企業所에 파견하여 실습을 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sup>9)</sup>

북한은 4차 노동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계획의 과학기술

8) 국토통일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2집 참조.

9) 대륙연구소, 앞의 책, PP. 248~52.

발전 목표에 따라 1962년에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설치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조직·지도기관의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sup>10)</sup>

이 기간중 북한은 과학자·기술자의 대량 양성을 위해 40개의 4년제 공장대학을 북한 각 지역의 대규모 공장·기업소내에 새로이 부설하였으며<sup>11)</sup> 대학 부속의 연구소들을 대대적으로 증설하고 고급 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1961년에는 博士院을 증설하였고, 1964년부터는 學士(석사) 양성기관인 연구원의 연한을 종래의 3년에서 2~4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1963년 12월 17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科學賞을 제정하였는데 수상 대상은 “과학적 조작과 인민경제에 도입된 특출한 발명 및 연구성공으로서 나라의 자립경제 건설과 기술, 문화혁명의 수행 및 과학발전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일군들”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자력 연구부문에서는 1950년대 말에 체결된 「朝·蘇 原子力協定」에 기초하여 소련의 지원을 받아 「寧邊原子力研究센터」를 설치하고, 1965년 6월에는 동 연구센터에 1,000kw급 실험용 원자로 1기를 설치, 본격적인 원자력 연구에 착수하였다.

#### (4) 第4段階(1971~77)

이 기간은 6개년계획과 그 조정기에 해당한다.

1970년 1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는 6개년계획 기간 중 기술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확고히 하고 인민경제 전반에 걸쳐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킨다는 政策目標를 제시하였다.

金日成 總和報告는 60년대중 과학기술분야의 성과를 전반적인 9

10)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1966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회의에서 결정.

11) 40개 공장대학중 24개는 60년대 말에 신설하였음.



년제 과학기술 의무교육의 실시 및 과학기술 교육기관의 확충으로 기사·기술 및 전문가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각종 경제건설에 필요한 과학기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1971년부터 시작될 6개년계획 기간중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낙후된 각종 産業生産技術의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제시하였다.<sup>12)</sup>

특히 1972년 12월에는 「自然科學部分 일군大會」를 소집하고 金日成은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13)</sup>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사회과학과 思想事業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6개년계획 기간중 과학연구사업은 금속·화학공업 부문의 資材와 設備의 질을 제고시키며, 특히 石油化學에 기초한 有機合成工業과 알미늄 등 경금속기지 창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원자력, 전자공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분야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목표에 따라 북한은 기간중 사상·기술·문화의 3大革命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혁명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각종 칭호를 제정하는등 賞勳制度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였다.

1970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인민설계가, 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한 바 있고, 1972년 2월에는 「공훈기계 제작 칭호」를, 1973년 7월과 9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각각 「새 기술혁신 봉화상」과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칭호」를 제정하였다.<sup>14)</sup>

12) 국토통일위,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 참조.

13) 「백과전서」 제6권 (평양: 사회과학원, 1984) 참조.

14)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1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P. 448.

技術人力 養成에 있어서는 기간중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를 60만 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또한 전후복구가 완료된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제국의 對北 經濟支援 감소와 기술협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6개년계획 기간중 서방제국으로부터 설비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 (5) 第5段階(1978~86)

이 기간은 북한이 2차 7개년계획의 추진과 2년간의 調整期에 해당한다.

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과 “기술혁명을 심화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政策目標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중에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의 발전을 확고히 앞세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세부 목표를 보면 첫째, 공업의 主體性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연료 및 원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사업의 추진, 둘째, 북한 실정에 맞는 능률적이며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창안·제작하기 위한 機械工學의 연구발전, 셋째, 벼·옥수수 등 곡물과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연구, 넷째, 과학연구 여건 강화 등이다.<sup>15)</sup>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1978년 2월부터는 金正日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분야별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 「과학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생산 및 건설 현장에 이들을 파견하고 技術革新運動 등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5)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4집 참조.

### (6) 第6段階(1987~현재)

북한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간중의 과학기술정책은 사실상 2차 7개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만 1980년대 중반까지 과학연구사업에서의 주체성이 강조된 결과 기술 낙후가 심화됨으로써 3차 7개년계획에서는 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첨단산업부문에 관심을 돌린 것이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이다.

1987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회의는 2차 7개년 계획 기간중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가 실현되는 등 生産技術 工程과 生産方法 改善에 제기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3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는 과학기술의 고도발전을 기본과업의 하나로 내세워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면적인 技術改造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 기간중 國民所得의 3~4%를 과학연구사업 강화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기술개조와 함께 極小型 電子計算機, 光纖維通信, 生物工學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 2. 科學技術 行政 및 研究體系

### 가. 科學技術 行政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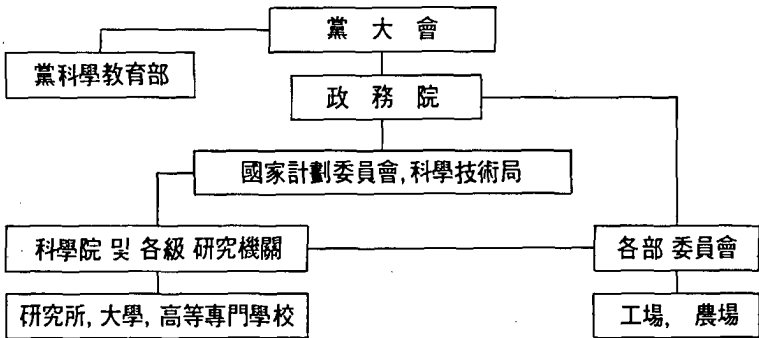
북한의 科學技術 政策은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科學教育部가 중심이 되어 심의 발전된 기본정책이 노동당대회에서 결정 발표되면 政務院의 國家計劃委員會 科學技術計劃局에서 경제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되어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부·위원회에 시달된다.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각부문 위원회별로 수립하여 연구소,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달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한편 各部·委員會는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하여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그림 IV-1>과 같다.

北韓의 科學技術 基本體系

<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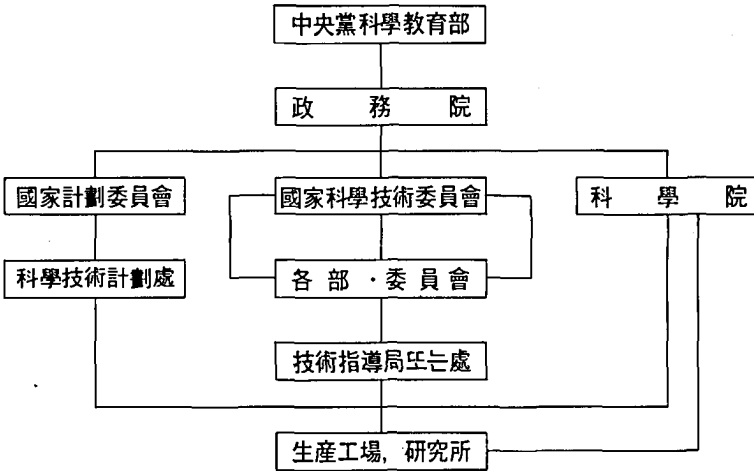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책수립 체제나 계획, 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으며, 정책내용도 국가경제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기술개발에 치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북한의 과학기술 행정제도는 主席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과 행정집행 능력이 집중되어 있으나 경제관련 부서는 세분화되어 있고 가변적이다. 그러나 각 행정부서내의 기술관련 부처만은 존립시켜 각종 생산 및 운용분야의 技術指導는 물론 品質監督, 新技術開發 및 技術革新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북한의 中央技術行政體系는 <그림 IV-2>와 같다.

中央 技術行政 體系

〈그림 IV - 2〉



中央黨 科學教育部는 과학기술연구, 기술지도, 기술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며, 여기서 결정된 과학기술 정책은 도 및 시의 黨 科學교육부로 하달되어 당지도체제를 이루는 한편 정무원내의 계획 및 집행부서로 하달된다.

國家計劃委員會의 科學技術計劃處는 정무원내에서의 과학기술 계획부서로 여기서는 중앙당 科學교육부에서 하달된 내용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등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로 전달된다.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북한 과학기술의 개발정책, 기술도입, 기술통보 및 각 분야의 생산기술에 대한 지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에 기술자문과 문제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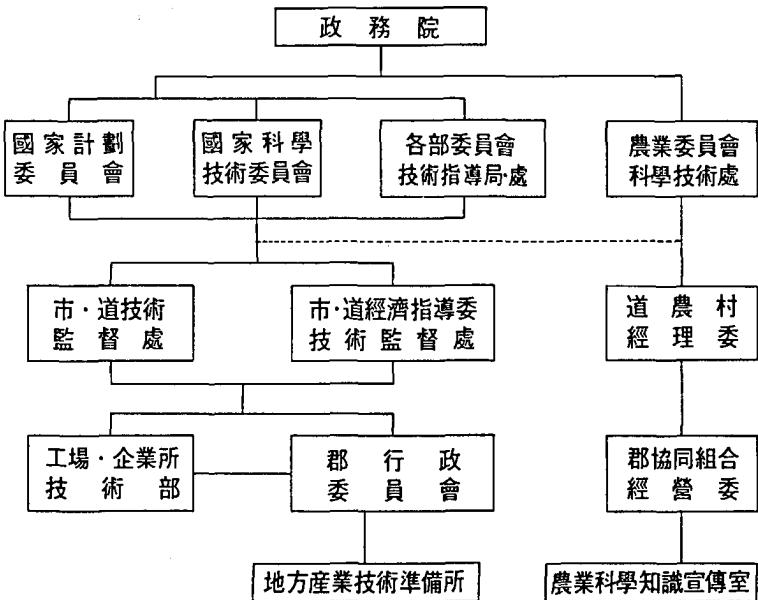
科學院은 국가의 기술정책에 의거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며, 品質監督委員會나 國家技術監督委員會, 國家技術檢

定委員會 등은 행정부서에서의 지시사항이나 생산과정, 생산제품에 대한 기술감독 및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검정을 담당한다.

地方技術行政은 주로 도와 시에서부터 공장, 기업소 등 생산현장과 공업, 농업, 수산업 등의 기술보급체계를 말하며 그 체계는 다음 <그림 IV-3>과 같다.

地方 技術行政體系

<그림 IV-3>



中央技術行政機關에서 수립한 정책과 세부지침, 시행요령 등은 道·市의 經濟指導委員會와 技術監督處에 하달되며 이러한 방침은 직접적으로 지방 공장, 기업소의 기술부에 전달된다.

한편 農業委員會의 科學技術處는 農業科學院의 연구내용과 행정적인 계획을 道 農村經理委員會와 郡 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거쳐 각 협동농장과 농업과학 지식선전실로 지시하여 추진한다.

## 나. 科學技術 教育 및 研究體制

북한의 科學技術 教育體制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正規 教育課程으로서의 고등교육 기관은 2~3년제 고등전문학교, 3~4년제 단과대학, 4~6년제 대학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입학시켜 인민경제 각 부분의 현장 기술간부·전문가·기술자 등으로 교육시키고 있다.<sup>16)</sup>

또한 교육 및 과학부문의 중간 핵심간부 후보를 육성하는 기관으로는 研究院(2~4년)과 博士院(2년)이 있다.

비정규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근로자고등중학교나 공장고등전문학교, 또는 공장대학과 각 대학의 통신 및 定時別教育 綱에서 생산과 사무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는 체계이다.

현재 북한에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 工場大學과 工場高等專門學校가 있고, 각 도에도 1개 이상의 고등전문학교가 있다. 따라서 1987년 현재 북한의 기술자·전문가 수는 질적 수준은 낮다고 하더라도 총 131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인민경제 각 부문 종업원 총수 중에서 기술자와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6년에 19.2%에 달하고 협동농장당 기술자, 전문가의 수도 1982년 현재 57명이라고 발표하고 있다.<sup>17)</sup>

북한의 고급기술자 및 과학자의 양성기관은 김책공업대학, 평양 건설대학, 평양통신대학 등 16개의 공업대학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업지역에 분산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극히 전문화된 공업학과만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공업대학은 所在地域의 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産·學協同體制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博士院과 研究院은 각각 박사과정과 학사과정(한국의 석

16) 방환주,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17) 위의 책.

사과정)을 가지며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원 산하 연구소내에도 설치되어 있다.

연구원은 대학졸업 후 學士論文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2년, 통과하지 못하면 4년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박사원은 대학교원,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 연구소의 고급연구원 등 고급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61년 3월 내각 결정 제124호에 의거 설치되었는데 연구원과는 달리 通信研究生은 없고 專任研究生만 모집하고 있다.

박사원 및 연구원의 입학자격은 당의 唯一思想體系가 확립되어 있고 革命課業遂行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중에서 선발된다. 박사원에는 학사학위 및 學職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자이고, 연구원에는 3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있다.

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밟으려면 박사원 및 연구원에 入籍하여야 하나 교육방법은 강의를 통한 방법은 채택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연구를 수행하고 나면 그 논문이나 학적의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연구과정은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 다. 科學技術 研究機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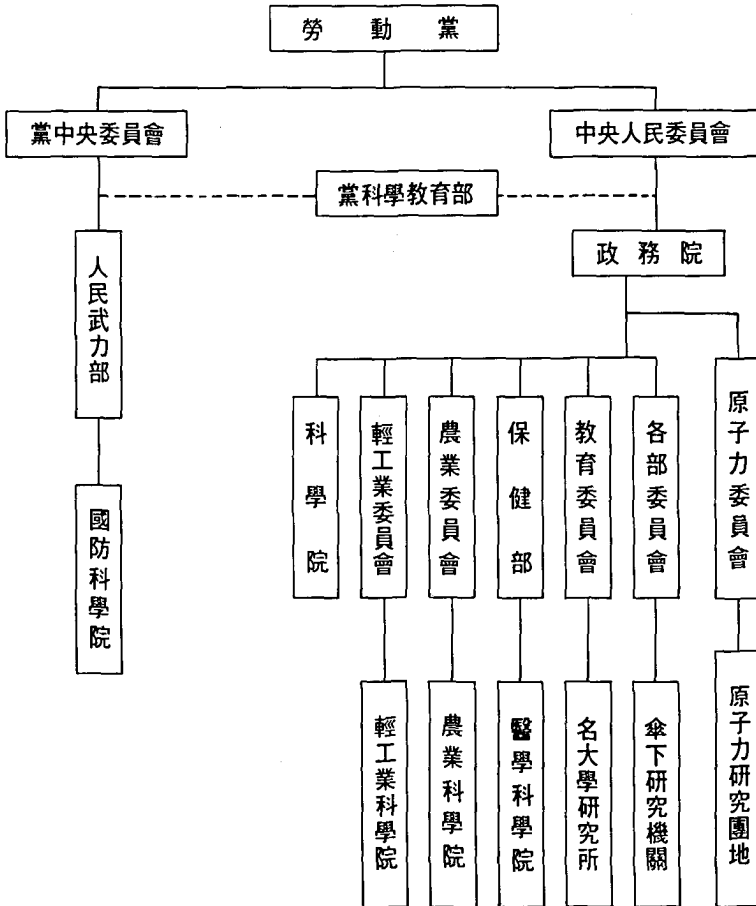
북한의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은 科學院, 輕工業科學院, 農業科學院, 醫學科學院, 國防科學院, 原子力研究團地, 각 대학 연구소와 각 부·위원회 산하 연구소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소는 연구실과 실험실 및 중간 실험공장 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수는 약 300여개로 추산되며 확인된 것은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科學院은 북한의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1982년 4월 政務院의 행정부서로 격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科學技術 研究機關 體系

〈그림 IV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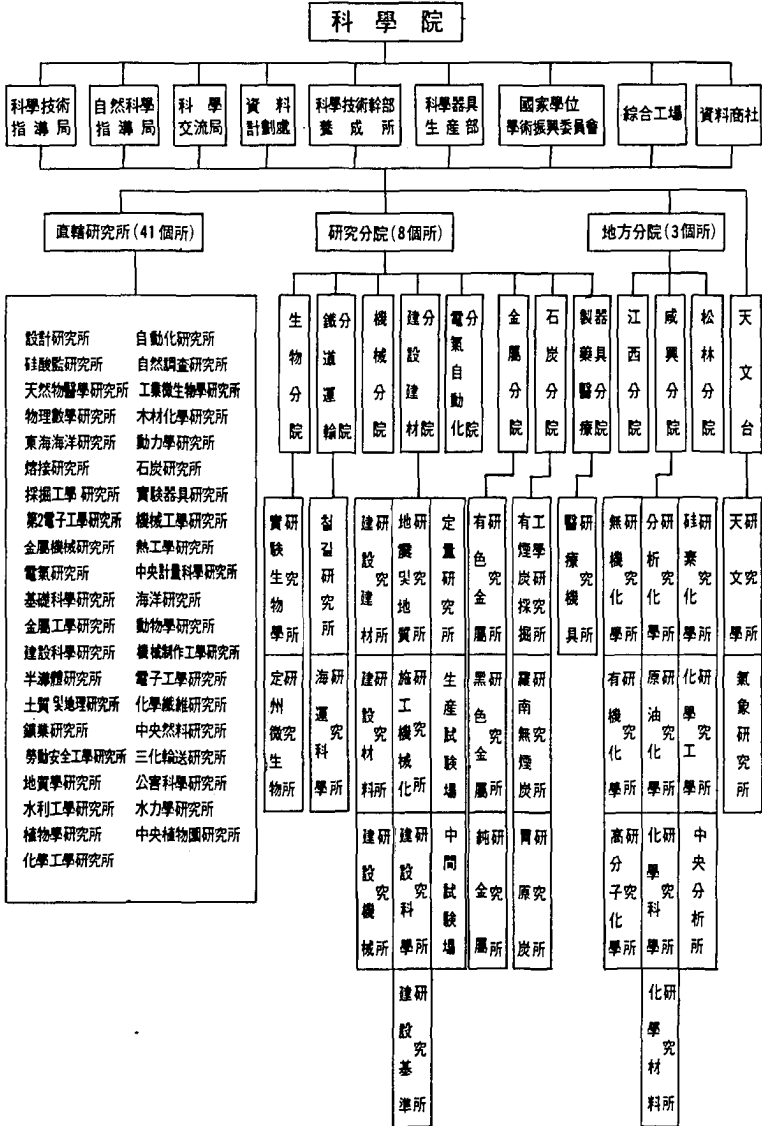
\* 출처 : 1)北韓研究所, 「北韓總覽」83, (1983), p.1364.

2)金鐵煥, 「北韓의 科學技術」(國防大學院, 1989)

과학원의 기구로는 科學技術指導局과 8개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41개의 연구소, 11개의 분원 및 그 산하에 29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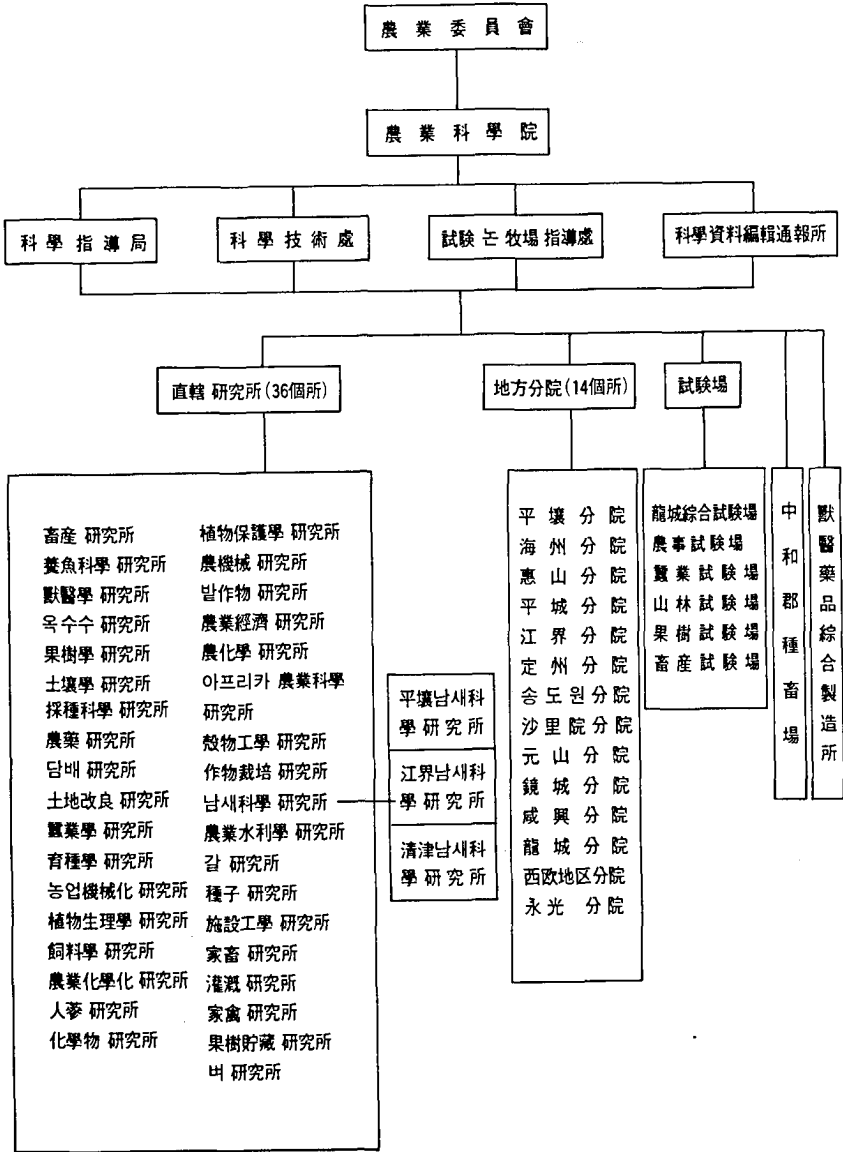
### 北韓科學院體系

(그림 IV-5)



北韓 農業科學院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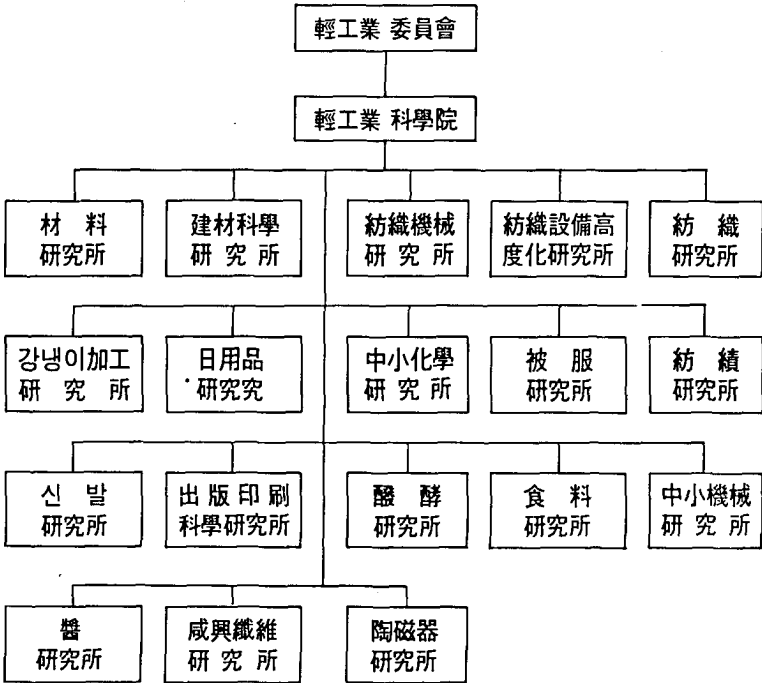
〈그림 IV-6〉



農業科學院은 1952년 3월 농업성 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연구과학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과학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 8월 다시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본원의 기구는 科學指導局 외에 3개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에 36개의 연구소, 14개의 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1개의 중축장과 수의의약품 종합제조소가 있다.

輕工業 科學院 體系

〈그림 IV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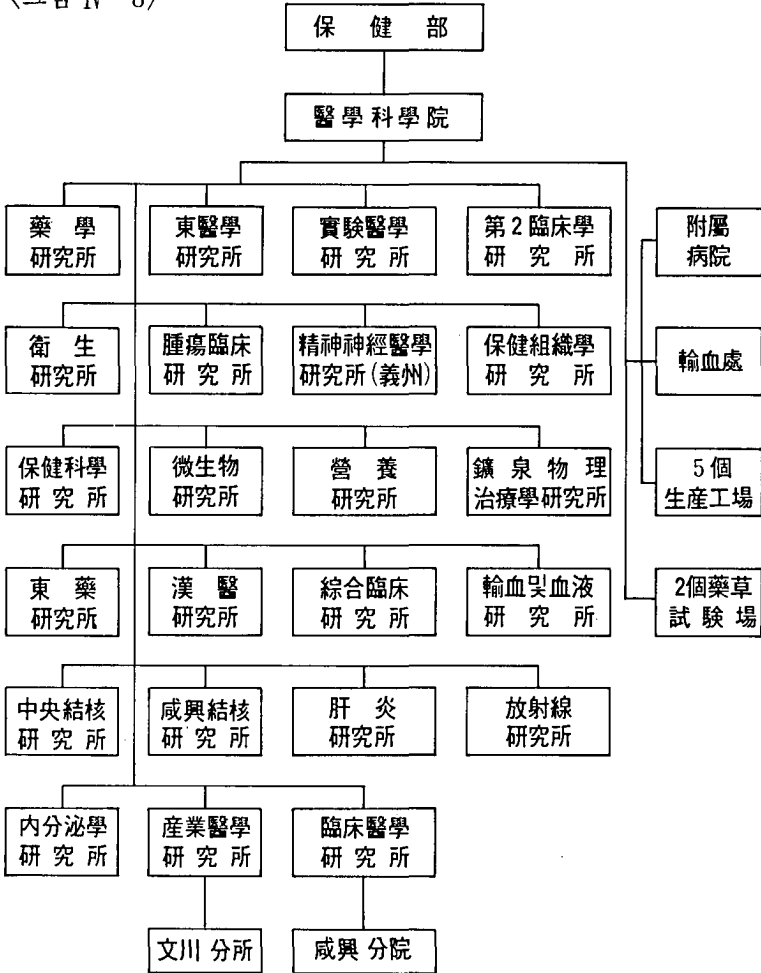


輕工業科學院은 1954년 9월 경공업성 산하 중앙연구소로 발족 되었으며 현재 본원 산하에는 19개의 연구소가 있다.

醫學科學院은 1958년 6월 과학원 산하의 의료과학연구소 및 약초원과 보건성 산하의 의학분야 연구소를 통합하여 의학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한 후 1963년 11월 의학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醫學科學院 體系

<그림 I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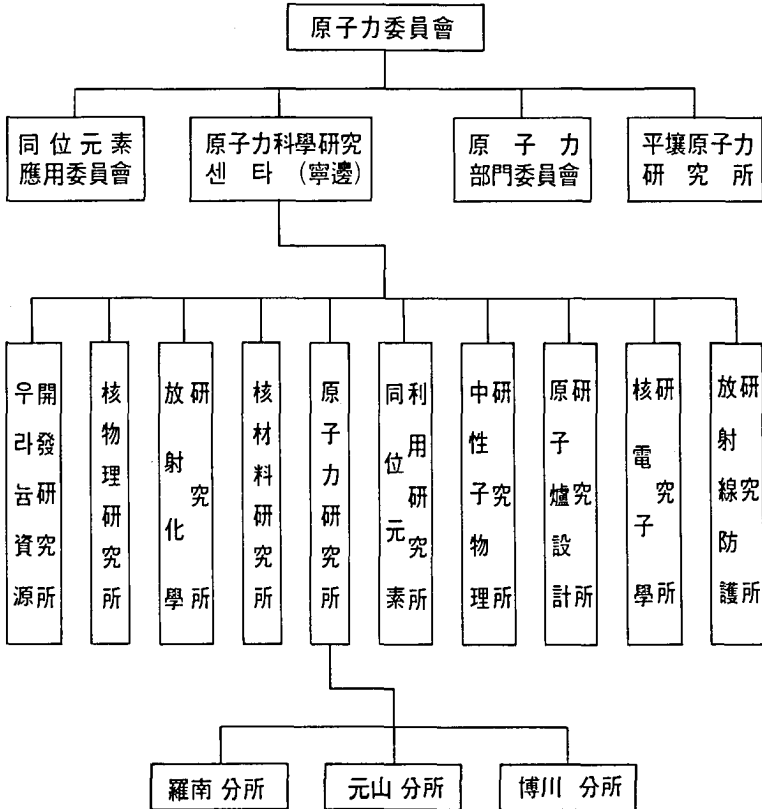


본원은 정무원 보건부 소속이며 산하에 23개의 연구소와 1개의 분원 및 분소, 1개의 부설 병원과 輸血處, 5개의 생산공장, 2개의 약초 실험장이 있다.

國防科學院은 60년대 초에 설립된 것으로 보이며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원은 현재 인민무력부의 통제를 받으며 본원에는 유도무기, 전기 및 전자, 금속 및 화학소재, 기술경제 등 40여개의 부문별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原子力研究所 體系

〈그림 IV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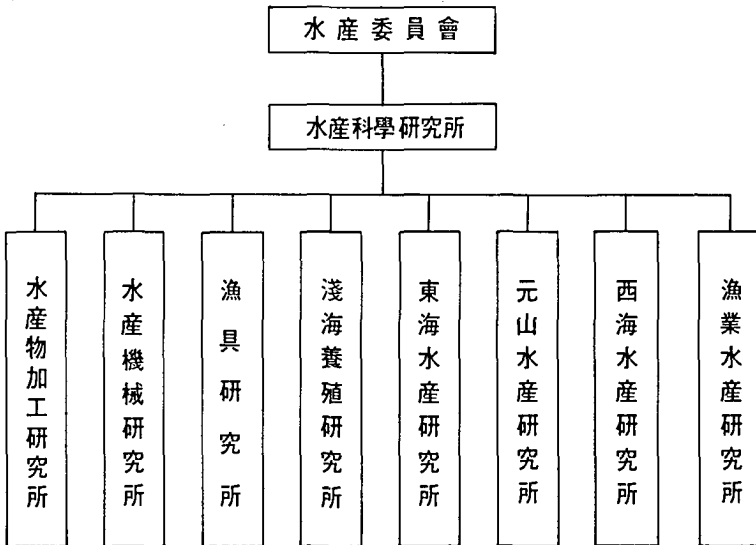
原子力研究所는 1952년 10월 과학원 창설과 함께 부속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초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공업, 농업, 의학분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1964년 4월에 영변 원자력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1965년 6월에는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1기가 도입 설치되었고, 1986년 12월에는 30,000KW급 제2 원자로를 완공하여 현재 가동하고 있다.

연구소 산하에는 2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원, 1개의 연구단지가 있으며 3개의 연구분소가 있다.

기타 주요 연구기관은 水産科學院, 山林科學研究院, 平成研究團地 등이 있는데 수산과학원은 산하에 8개 연구소가 있고 산림과학원은 1964년 6월 창설되었으며, 산하에 4개 연구소와 5개의 시험장 및 3개의 분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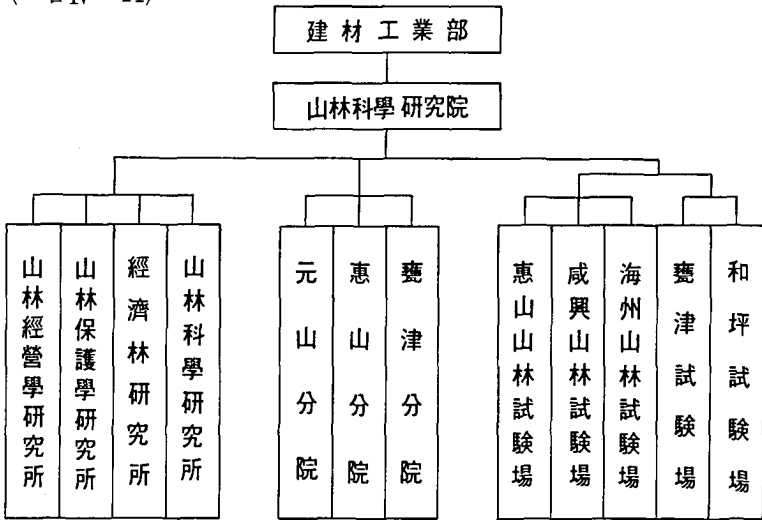
水産科學研究所 體系

〈그림 IV - 10〉



山林科學研究院體系

<그림 IV - 11>



### 3. 對外協力

#### 가. 科學技術 協定

북한의 科學技術 政策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은 대부분 소련, 체코, 동독 등 사회주의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기초를 형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4년 9월 合營法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서방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도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대외협력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국가와



체결하는 「科學技術協助協定」을 기초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 중 전후복구계획을 추진하면서 소련, 중국 및 대부분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 「科學技術協助協定」을 체결하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 중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제3세계 국가들과도 「科學技術協助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과학기술 교류·협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협정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상호간 「科學技術協助委員會」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의 「科學技術協助議定書」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와 기술자의 상호 파견,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기초과학분야의 협력은 주로 북한의 과학원과 상대국의 과학원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여 이 협정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나. 中·蘇와의 協力 實態

### (1) 蘇 聯

북한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최대 협력국은 소련이다.

1989년 3월 모스크바방송에 의하면 소련은 북한의 전후복구기간 중 총 13억루블의 無償援助를 주었으며 기술협조에 있어서는 야금, 화학, 동력공업부문 등의 설계도와 각종 技術資料를 총 3,000건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총 2,000명 이상의 북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련의 숙련기술자 총 6,000명 이상을 북한에 파견하여 工場·企業所의 건설, 설비조립 및 조정·운영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 학생의 소련 유학 실적은 총 20,000명 이상이며 1989년 4월 현재에도 북한의 핵 물리학자 및 전문가 30여명 이상이 두브나 연합핵연구소 실험실에서 연구사업을 수행중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결과 1989년 현재 북한의 산업 생산에 있어서 전력은 60%

이상, 석탄은 50% (1982년 현재), 정유 50% 이상, 강철 30% 이상, 알루미늄 100%, 철광석 40%, 화학비료 14% 이상, 섬유 20%가 소련의 협력으로 건설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중에도 160만K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 김책제철 2단계 확장공사, 순천비날론공장건설, 안주탄광 확장공사 등 총 19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協定이 체결되어 있다.

또한 소련의 프리모리에 太平洋海洋學研究所와 북한 科學院의 지질학연구소간에 1986~90년간 동해 해저자원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되어 해저지도, 동해수역의 有用鑛物에 대한 자료 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다.

## (2) 中 國

中國은 전후복구 기간중 평양 복구에 필요한 건축기술자 770명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技術援助를 제공한 바 있고 북한의 기술자와 기능공을 중국에서 훈련시켰다.

1946년 이후 1985년까지 중국은 약 11억5천만불 상당의 경제원조와 강선제강, 수풍발전소 등 30여개의 공장·기업소를 복구 및 신설하는데 지원을 하였다.

1987년 5월 金日成의 중국 방문 이후 동년 6월 북경에서 열린 조·중 과학기술협조위 제27차회의에서는 첨단과학 기술분야와 자원개발을 위한 지질 및 해양탐사 부문의 기술협력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이며, 1987년 12월에는 향후 10년간(1987~97) 「長期科學技術協助에 관한 合意書」가 조인되었는데 북한은 향후 중국이 開放政策을 통해 서방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과학기술을 재이전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련의 대북지원 감소에 따라 경제 및 과학기술의 對中國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V. 社會



## 1. 社會政策 및 構造

### 가. 社會政策의 基調

북한의 社會政策 基本은 階級政策으로서, 그 내용은 階級路線과 階級教養을 앞세워 金日成 權力體制의 基반을 공고히 하고 政治 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支配體制 확립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階級政策은 북한 社會政策의 骨幹으로서 社會主義革命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북한사회의 階級的 性格은 노동당 規約과 북한의 社會主義憲法에 명시되어 있다. 朝鮮勞動黨 規約 前文에 “조선노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촉진하고……”라고 했으며, 북한 헌법 제2조, 6조, 특히 제1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理念上으로 볼 때,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기본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노동자, 농민, 병사 및 근로 인텔리의 4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이다. 즉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기본정책으로 삼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한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共產主義 社會政策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특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시하며, 階級을 소멸시키기 위한

階級鬭爭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社會政策 基調는 모든 生産手段을 國有化하고, 소위 反黨 反革命分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사회를 共產主義化하고 전 주민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개조해가는 과정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북한은 제반 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① 전 주민에 成分調查事業과 階層區分事業 ② 노동당의 조직적 指導事業과 감시계통의 組織化 ③ 金日成 家系の 偶像化 事業과 教化作業을 통하여 전 사회적 動員體制 및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를 완비하고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나. 社會階層 構造

북한은 분단 이후 수차례 걸친 成分調查事業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成分別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다.

북한사회의 階層構造는 그 生成 자체가 사회적 보수의 정당한 배분과정 속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階級政策에 의한 의도적 산물로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社會移動의 측면에서 본다면 平等社會를 표방하는 북한사회에서 보다 더 큰 계층 차별, 평양과 지방간의 격차 등 불평등 현상이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수차례 걸친 成分調查事業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성분 계층별로 職種과 職位를 맡기고 있다. (<표 V-1>, <표 V-2> 참조)

북한이 이와 같이 주민성분을 철저히 분류하여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金日成과 黨을 반대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데 있을 뿐 아니라 反黨·反革命的 세력의 색출과 思想性を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 住民成分 調査事業

〈표 V-1〉

| 구 분                   | 시 기           | 내 용   |
|-----------------------|---------------|---|
| 中央黨集中指導事業             | 58. 12~60. 12 | ○不純分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
| 住民再登錄事業               | 66. 4~67. 3   | ○100만 赤衛隊의 무장을 위한 주민成分 분류(적계3대·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                       |
| 3階層 51個部類 區分事業        | 67~70. 6      |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주민을 核心階層, 動搖階層, 敵對階層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
| 住民了解事業                | 72. 2~74      | ○南北對話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반신반의자·변절자로 구분                   |
| 公民證檢閱事業               | 80. 1~80. 12  | ○감정일 지시로 公民證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統制機能 강화                             |
| 外國歸化人 및 越北者들에 대한 了解事業 | 80. 4~80. 10  |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監視資料를 체계화                            |
| 北送在日僑胞 了解事業           | 81. 1~81. 4   | ○北送僑胞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감시자료를 과학화                                     |
| 公民證更新事業               | 83. 11~84. 3  | ○公民證 갱신 및 住民文件 정비   |

## 成分 分類 및 待遇

〈표 V-2〉

| 3 계 층                       | 51 개 부 류   | 대 우  |
|-----------------------------|--|--|
| 核 心 階 層<br>(28%)<br>* 598만명 | 노동자, 雇農(머슴), 貧農,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後方家族, 榮譽軍人 등 12개 부류   | ○ 黨·政·軍간부 등용<br>○ 타계층과 분리 특혜 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
| 動 搖 階 層<br>(45%)<br>* 962만명 | 小·中商人,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집객업자, 중산층 집객업자, 무소속, 월남자 가족(1), 중농, 民族資本家, 월남자 가족(2), 월남자 가족(3), 중공귀환민, 일본귀환민,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安逸·附和·放蕩한 者,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 ○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br>○ 극소수 核心階層으로 승격  |
| 敵 對 階 層<br>(27%)<br>* 577만명 | 8·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 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黜黨者, 撤職者, 敵機關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宗派分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등 21개 부류        | ○ 有害, 重勞動에 종사<br>○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br>○ 제재·감시·포섭 대상으로 분류<br>- 제재: 강제이주 격리 수용<br>- 감시: 지정하여 항시 동태 감시<br>- 포섭: 집중적 교양<br>○ 극소수 기본계층으로 재분류(자녀) |



특히 북한은 3階層 51個 部類라는 주민성분 분류에 근거해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 선택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실시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계층에 대한 순종과 아울러 住民들로 하여금 상위 계층으로의 이동을 위한 「김일성 父子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심」 유발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勞力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 2. 社會統制와 社會問題

### 가. 組織生活 統制

북한사회에서 노동당은 行政·司法·立法府의 상위에 위치하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모든 주요 기관의 간부 직위는 노동당 熱誠 黨員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 이들 모든 기관과 단체에는 각기 黨委員會를 조직하여 당의 통제체제를 철저하게 일원화시켜 놓고 있다.

일반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하부조직을 보면 최일선 지도기관으로 市·郡黨委員會가 있고 최말단 조직으로 黨 細胞組織이 구성되어 있다.

黨的 統制외의 주민통제 방법으로서 모든 주민들은 職業總同盟,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農業勤勞者同盟, 民主女性同盟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2~3중으로 반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下部는 무조건 上部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외 각종 查察機關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동태를 은밀히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反黨·反革命的 勢力」의 색출과 사상적 감시를

통해, 소위 「不純分子」를 숙청한다. 북한의 사찰기관으로는 1945년 이래 治安維持 및 反黨·反國家行爲者 색출, 검거와 주민 이동사항을 통제하는 社會安全部和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된 國家保衛部가 있는데 이 국가보위부는 金日成 직속기관으로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첩보활동을 위한 工作員養成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그의 주민통제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1977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6기 1차 회의시 신설된 社會主義法務生活指導委員會가 있는데 이는 관료주의 제거와 엄격한 법적 통제, 전 주민에 대한 사상투쟁 전개임무를 맡고 있다. 기타 6·25 당시의 인민재판제도와 유사한 상호토론과 군중의 박수로 형벌을 결정하는 同志審判制度가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감시하는 人民班制度가 있다.

人民班은 통상 20~30세대로 조직되고 반장, 선동원(인민반 당분조장 겸임) 등이 감시, 감독·역할을 한다. 人民班과 유사한 것으로 5가구를 담당하고 한명의 핵심당원에 의한 통제를 제도화한 5戶擔當宣傳員制가 있는데, 이는 담당 세대들의 각 가정생활 전반과 사상을 감시·지도하게 된다.

## 나. 經濟·社會的 統制

노동당에 의한 經濟統制는 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통제에 이용하는 것이고 社會的 統制는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사회적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다.

經濟的 統制의 일환으로써 북한은 衣食住 生活의 기본수단에 대한 配給制를 실시하고 있다. 衣服配給은 기본의복에 한해 실시하고 나머지는 할당표 구매카드에 의해 판매한다.

食糧配給은 근로자와 비근로자(부양가족)를 구분, 배급량의 차이를 두어 노동의 기피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住宅은 신분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은… 근로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sup>1)</sup> 고 하나 실제로는 국가에서 직장 배정시 개인의 소질, 능력, 희망 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며 職場配置를 자의로 거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직장이동은 계획적인 직장의 조정, 不純分子의 벽지 이주, 도시인의 농촌 이주와 같은 강제조치가 있을 때만이 실시된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 기피, 유희노동력 발생 방지와 주민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私的인 목적의 他地 旅行을 통제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私的 여행시는 職場長이 발행한 旅行證과 糧卷 등을 소지하게 되어 있으며, 출발과 귀착시에는 安全駐在員에게 신고해야 한다.

#### 다. 社會問題

북한사회는 反社會的·非倫理的 현상과 각종 逸脫行爲들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북한의 社會問題 유형으로는 反社會的 不條理, 靑少年非行, 性犯罪, 密入國, 密貿易 등이 있다.

反社會的 부조리 현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우리 내부에 숨어 있던 적대계급 잔여분자들과 반혁명분자들이 경제건설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 보려고 필사적으로 반항해 나르고 있다”<sup>2)</sup>는 것인데, 이러한 언급은 당과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의식과 행동의 존재를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각종 隱語를 통해 사회제도와 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은어는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1) 북한 헌법 제30조.

2) 「제6차 조선로동당 대회」(1980. 10) 토론요지.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의 한 단면을 투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귀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범법행위가 급증하여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폭력조직은 元山, 咸興, 南浦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패싸움 등이 빈번한데 북한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외부 사조의 유입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성범죄중 간음·간통을 특정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미혼인 경우는 사회질서 문란죄를 적용하고 있다. 강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심신상실자나 미성년자를 강제 수행한 경우는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매음한 자는 1년 이하의 教化勞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의 경제개혁·개방조치 이후 평북, 자강도 등 국경지역 주민들이 중국 密入國과 密貿易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발생하고있는 사회적 부조리 등 각종 사회문제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에 의해 초래되는 것인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개혁과 개방 압력, 外來文化流入으로 인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 라. 社會的 不條理

社會的 不條理 현상은 북한이 그동안 채택한 정책이나 김일성이 행한 연설을 통해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의 척결을 누차 강조해 오고 있다.

1973년 농업일꾼 열성자대회, 1975년 공업열성자회의, 1979년 제1회 전국 노동행정 일꾼대회와 1980년 6차 노동당대회에서 각기 지

적된 社會的 不條理들은 그 대표적 사례로 간주된다.

북한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적된 社會的 不條理 事例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김일성 敎示 학습에 대한 기피
- ② 黨組織生活의 태만 및 외면
- ③ 당원과 노동자의 소극성 및 열성부족
- ④ 뇌물수수
- ⑤ 노동력과 원자재 낭비
- ⑥ 노동기피, 勞動規律의 위반

各種 犯罪類型

<표 V-3>

| 區分<br>種類 | 內 容  | 備 考   |
|----------|--|---|
| 政 治 犯    | 반당·반혁명 행위, 金日成 權威毀損, 탈출범, 사상불순                             | 김일성 권위 훼손: 김일성 투쟁역사 비판, 김일성 초상화 파손, 교시 비방 등                             |
| 經 濟 犯    | 공공재산의 횡령, 양곡횡령, 품귀물품의 부정유출, 물품 가격 조작, 정량 미달 출고, 부정계량기 사용 등 |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행정 기관이나 협동단체 간부층 비행  |
| 人身侵害犯    | 폭력, 살인, 강간, 간통 등   | 성범죄는 당 및 협동농장 간부에 의한 경우가 많음   |
| 기 타      | 강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사기, 협잡, 방화 등                             | 농민들의 절도행태: 벼가마 숨기기, 속주머니 만들어 날 알 따내기, 고구마 털 캐기, 달걀 훔치기, 강냉이 따고 흔적 없애기 등 |

⑦ 국가재산 낭비 및 유용

⑧ 技術神祕主義, 保守主義, 經驗主義, 자본주의사상, 봉건 유교 사상 등 낡은 사상 잔재

⑨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

⑩ 청년 인텔리의 반사회적 행동

북한 스스로가 공식 모임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부조리 현상들은 지나친 통제와 黨權 萬能이 빚어내고 있는 결과로 이는 북한주민의 내면적 저항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사회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共產主義 道德」에 위배되는 사회적 탈선행위들이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은 정치범, 경제범, 인신침해사범, 그리고 기타 사회범죄 등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 V-3>과 같다.

#### 마. 特別獨裁對象區域

북한은 1958년 12월 政治犯을 反革命分子로 몰아 투옥·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敵對階層을 特定地域에 집단수용하였다.

金日成과 金正日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 特別獨裁對象區域이라는 정치사상범 수용소를 설치하여 북한의 권력층이 가장 우려하는 危害分子라고 판단되는 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15만 2천여명의 사상범이 12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표 V-4> 참조)

特別獨裁對象區域에 수용된 사람은 적대계층 가운데 反金日成·反黨·宗派分子, 地主, 新日派, 宗教人들과 그 가족들이다. 수용인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류는 실제로 노동당의 간부나 당원으로 있다가 밀려난 자들과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金日成父子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 特別獨裁對象區域 現況

〈표 V-4〉

| 位   | 置             | 收容人員    |
|-----|---------------|---------|
| 咸 北 | 온성군, 회령군, 경성군 | 62,000名 |
| 咸 南 | 요덕군, 정평군, 덕성군 | 33,000名 |
| 平 南 | 개천군, 북창군      | 20,000名 |
| 平 北 | 용천군, 영변군      | 20,000名 |
| 慈 江 | 회천시, 동신군      | 17,000名 |

수용된 자들은 特別獨裁對象區域에 일단 들어가면 公民證을 압류당하고 입소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인 權利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며, 가족·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 연락도 할 수가 없다.

수용자들은 區域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강제노동을 해야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自我批判을 위주로 한 思想改造 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자들의 日課는 區域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새벽 4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 등 모든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6시부터 작업장에 들어가 作業量을 부여받고,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오전 작업은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 오후 작업은 오후 8시에 끝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작업과 벌목, 개간 등 중노동이다.

특별독재대상구역은 국가보위부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색출된 정치사상범의 이송및 경비업무는 사회안전부 산하의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 3. 住民生活

#### 가. 衣食住生活

##### (1) 衣生活

주민들의 衣生活은 기본적으로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單純·劃一性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中央計劃에 따라 규정된 生産 및 供給基準에 의해 배정되기 때문에 다양성과 유행성보다는 노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住民服裝은 1960年代까지 「천리마시대의 생활양식」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남자는 人民服(레닌服)과 勞動服, 여자는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60年代 이후부터 본격화된 북송교포와 1970年代 初 남북적십자회담시 한국 국민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단조로운 의복패턴으로부터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 등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추세는 일상복보다 外出服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기 이후 각종 옷전시회, 옷품평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男性服에 있어서 1984년 9월 合營法 발표를 전후하여 넥타이 양복차림에 이어 잠바차림까지 등장, 과거보다 세련되기 시작하였는데, 金日成 자신도 1984년 5월 소련 및 동구권 순방 이후 인민복 대신에 넥타이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金正日 역시 잠바차림을 많이 보였다.

이와같은 변화추세는 1984년 2월 金正日이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라는 논문<sup>3)</sup>을 발표한데 이어, 1989년 6월 黨 6기 16차 전원회의에서 19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결정하고, 1990년 6월

3)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4)

金日成이 「인민소비품」증산과 관련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생산·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교시<sup>4)</sup>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 北韓의 衣類 供給基準

〈표 V - 5〉

| 對 象      | 回 數       | 品目 및 數量 | 備考 |
|----------|-----------|---------|----|
| 勞 動 者    | 年 1 ~ 2 회 | 작업복 1착  | 무상 |
| 學 生      | 年 2 회     | 교 복 1착  | 엄가 |
| 技 師, 教 員 | 3~4年 1회   | 양복지 1착  | 〃  |
| 4號對象以上   | 2年 1회     | 〃       | 반액 |

\*주: 4호대상은 시·군지역의 당비서, 시·군인민위 부위원장, 2급기업소이상 黨 副秘書, 지배인, 技師長級 이상을 말함.

## (2) 食 生 活

食生活은 食糧配給制<sup>5)</sup>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有償으로, 주로 쌀과 옥수수(옥쌀)이며, 배합비율은 평양과 지방, 그리고 身分, 時期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3 : 7에서 5 : 5 사이이다. 옥수수 대신 감자를 잡곡으로 배급할 때는 4 : 1의 비율이다.

配給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각 里·洞단위로 1개소씩의 配給所를 두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주민은 식량공급이 당국이 정한 배급량에 의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은 暗去來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평양방송」, 1990. 6. 3.

5) 食糧配給制는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해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부터 협동농장원(연말 결산분배)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확대 실시되었음.

또한 북한은 식량배급과 함께 음식점에서의 자유매식마저 금지시키고 있어 출장 또는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권」<sup>6)</sup>을 소지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 糧券제도는 1959년부터 실시되었다. 도시주민들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발행하는 「예비표」나 양권을 소지해야 하며, 주민들이 예비표나 양권없이 갈 수 있는 식당은 평양의 경우 「청류관」을 비롯 수개소의 고급식당인데, 이곳을 이용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한편 북한은 쌀 생산량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극복하기위해 식량증산과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1982년 金日成은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농업부문의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는가 하면 종래의 「衣·食·住」라는 용어를 「食·衣·住」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sup>7)</sup>

## 1人當 1日 食糧配給量

〈표 V-6〉

(單位: g)

| 年 齡                            | 0~4<br>세 | 5 ~<br>14세 | 15세 以上     |             |           |
|--------------------------------|----------|------------|------------|-------------|-----------|
|                                |          |            | 일 반<br>노동자 | 중노동자<br>·군인 | 병·<br>노약자 |
| 配給基準量                          | 300      | 500        | 700        | 800         | 400       |
| 73세 이상 戰爭備蓄米<br>일 4일분 공제       | 260      | 433        | 607        | 695         | 347       |
| 87년 이후 절약미 10%<br>공제(식량사정 악화시) | 234      | 390        | 547        | 624         | 324       |

또한 김정일도 “옷감이나 집 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sup>8)</sup>라고 강조함으로써 食生活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식량증산을 위해 「1,500만톤 알곡

6) 糧券은 출장용·가정용 2종류로서 1kg, 500g, 200g 짜리가 있음.

7) 1986년 12월 7일, 노동당 제6기 12차 전원회의시 金日成 연설.

8) 金正日, 앞의 책, P. 7.

고지점령, 「30만정보 간척지 조성」, 「20만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조 칭호 쟁취운동」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副食의 경우는 된장, 간장, 고추장, 식용유 등을 공급카드에 의해 구입하고, 기타 부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식료품 상점에서 임의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고기류는 명절 特別配給을 통하여 할당되는데 金日成父子生日, 노동당창당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기준으로 배급대상과 시기, 그리고 需給事情에 따라서 供給品目과 數量을 다소 달리하고 있다.

### (3) 住生活

북한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집단적 소유로 규정<sup>9)</sup>하기 때문에 住宅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건축까지도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한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주거양태는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그 구조를 달리한다.

주택형은 크게 보아 副部長級 이상 고급간부 등이 거주하는 特号로 부터 말단근로자와 집단농장원에게 배정되는 1号住宅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住宅配定을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金正日의 등장 이후인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평양의 아파트를 고층화하기 시작했고 1983년부터는 원산의 북망산거리를 비롯한 주요 지방도시에도 10~30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였는데<sup>10)</sup> 최근에는 평양의 광복거리·낙랑거리에 총 5만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비롯 남신의주, 안주, 남청진, 함흥 등지에 총 10

9) 북한 헌법 제20조.

10) 「조선중앙년감」(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88), P. 302.

만세대의 주택을 1991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다.<sup>11)</sup>

## 階層別 住宅構造

〈표 V-7〉

(平壤)

| 區分 | 住宅型            | 家屋構造  | 入 住 者  |
|----|----------------|---|--|
| 特號 | 獨立高級住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獨立式 多層 또는 2層 住宅</li> <li>• 庭園</li> <li>• 수세식변소</li> <li>• 冷溫房裝置</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央黨 副部長級 以上</li> <li>• 政務院 副部長級 以上</li> <li>• 人民軍 少將級 以上</li> </ul>   |
| 4號 | 新型高層아파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2개 以上</li> <li>•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li> <li>• 배란다 冷溫水 施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央黨 課長級 以上</li> <li>• 政務院 局長級 以上</li> <li>• 大學教授</li> <li>• 人民軍 大佐</li> <li>• 文藝團體 幹部</li> <li>• 企業所 責任者</li> </ul> |
| 3號 | 中級單獨住宅 및 新型아파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 2개</li> <li>• 부엌</li> <li>• 창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央機關 指導員</li> <li>• 道單位 副部長級</li> <li>• 企業所 部長</li> </ul>   |
| 2號 | 一般아파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1~2</li> <li>• 마루방1, 부엌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民學校·高等中學校 長</li> <li>• 一般 勞動者</li> <li>• 事務員</li> </ul>  |
| 1號 | 集團公營住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1~2, 부엌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단근로자 및 事務員</li> </ul>  |
|    | 農村文化住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單層 聯立住宅</li> <li>• 방2, 부엌1, 창고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協同農場員</li> </ul>  |
|    | 舊 屋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2~3개의 農村 既存 舊屋</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두리 農民</li> </ul>   |

11) 「중앙방송」, 1990. 2. 4.

## 住宅建立目標

〈표 V-8〉

| 期 間        | 目 標                   |
|------------|-----------------------|
| 1957~1960년 | 都市 1,000만㎡, 농촌 20만 세대 |
| 1961~1970년 | 120만세대(실적 80만세대)      |
| 1971~1976년 | 100만세대                |
| 1978~1984년 | 年間 20~30만세대           |
| 1987~1993년 | 年間 20~30만세대           |

\* 출처: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 (4) 消費生活

북한주민의 생활구조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주민의 家計支出構造를 보면 식료품비가 피복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 식료품에 대한 배급제와 배급품에 대한 저렴한 가격정책, 그리고 책정된 배급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구입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류나 가공식품 등에 대한 高價政策으로 일반주민이 임의로 구입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반면 피복비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북한주민의 衣生活 高級化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배급품 이외의 의복류가 高價로 책정되어 있고 배급량의 절대량 부족에서 온 현상이다.

한편 「11년제 의무교육」실시와 「국가적 사회보장제도」로 教育費나 의료위생비의 부담이 적은 것은 당연하나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문화비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여가시간이 적고 위락 및 문화시설이 빈약함에 따라 오락 및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이한 것은 예비비 및 저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비품 공급이 부족하고 소비생활이 극도로 억제당하고 있으며, 소비품이 비싼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다 당국의 저축 장려가 강조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階層別 家計支出 構成比

〈표 V-9〉

(단위 : %)

| 構 成           | 副部長級  | 8級勞動者 | 事 務 員 |
|---------------|-------|-------|-------|
| 主 副 食 費       | 17.6  | 18.0  | 21.1  |
| 被 服 費         | 27.8  | 19.3  | 22.6  |
| 住 宅  및  光 熱 費 | 6.0   | 3.6   | 3.0   |
| 教 育 費         | 2.1   | 2.3   | 2.7   |
| 文 化  ·  衛 生 費 | 5.6   | 8.6   | 10.1  |
| 公 課 金         | 1.0   | 1.0   | 1.0   |
| 豫 備 費  및  貯 蓄 | 39.9  | 47.2  | 39.5  |
| 計             | 100.0 | 100.0 | 100.0 |

북한 주민의 주요 계층별 기본생활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5인가족의 1개월 생활비는 副部長級이 216.40원이고, 8급노동자는 85.59원, 사무원은 84.63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부장급의 기본생활비는 8급노동자와 사무원의 2배 이상에 달한다.

## 主要階層別 基本生活費 內譯

〈표 V-10〉

(단위 : 북한 원)

| 支出項目 \ 階層     | 副部長級   | 8級勞動者 | 事 務 員 |
|---------------|--------|-------|-------|
| 主 食 費         | 7.20   | 5.48  | 5.48  |
| 副 食 費         | 56.00  | 24.00 | 24.00 |
| 被 服 費         | 100.00 | 31.60 | 31.60 |
| 公 課 金         | 3.60   | 1.64  | 1.40  |
| 燃 料  및  住 宅 費 | 22.00  | 4.92  | 4.20  |
| 教 育 費         | 7.60   | 3.80  | 3.80  |
| 文 化  ·  衛 生 費 | 20.00  | 14.15 | 14.15 |
| 計             | 216.40 | 85.59 | 84.63 |

\*註 : 위 표는 5인가족 1개월 기준임.

그런데 북한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식비와 피복비 지출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私有財産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따라 소비의 최대목적이 衣食住生活에 주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나. 職場生活

### (1) 職場配置

직업선택은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黨과 政權機關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다. 직장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成分과 黨性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표징이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實務的 標徵인 직무수행능력으로서 여기서는 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연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 學歷이 사회적 상승이동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중간계층과 복잡계층의 진학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는 어렵게 되어 있다.

직장배치 과정을 보면 취업대상자는 市·道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의 勞動部(노동자의 경우) 또는 幹部部(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하여 배치장과 소개장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북한의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신임도를 기준으로 직장을 알선하며 이 경우에는 오직 중앙의 需給計劃에 의해 직장배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인 것이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에서는 정권기관의 노동력 흡수계획에 따라 모든 노동능력자를 일정한 직업에 배정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는 외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직장의 선택시



개인의 능력·성향·의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潛在失業率은 그만큼 높은 편이라 하겠다.

## (2) 賃金·分配

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輕勞動보다 重勞動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고, 同一職種에서도 숙련도나 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이 변화한다.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임금수준이 낮고, 黨·政機關에 종사하는 職種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 主要 階層別 賃金水準

<표 V-11>

(단위: 북한원)

| 區 分                  | 職 責                  | 報 酬     |
|----------------------|----------------------|---------|
| 黨 · 政 機 關            | ○黨·政務院 部長            | 300~350 |
|                      | ○政務院 副部長級, 道人民委員長級   | 250~300 |
|                      | ○道人民委 副委員長 및 郡人民委員長級 | 170~200 |
| 工 場 · 企 業 所          | ○特級企業所 支配人           | 250~300 |
|                      | ○1~2級 企業所 支配人 및 技師長  | 150~200 |
| 勞 動 者 · 事 務 員        | ○鑛夫, 製鐵·製鍊工          | 90~100  |
|                      | ○一般機械工, 運轉技師         | 75~80   |
|                      | ○一般勞動者               | 70~80   |
|                      | ○事務員                 | 60~70   |
| 便 宜 施 設 關 聯<br>從 事 者 | ○旅館, 食堂, 理髮所, 商店 등   | 50~80   |

전반적으로 볼 때 賃金도 국가가 계획·장려함으로써 노력에 따른 보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고, 그 결과 노동자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勞動生産性의 저하와 생산목표의 차질을 흔히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獨立採算制의 확대 실시와 물질적 자극수단의 유인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협동농장원들은 도시의 노동자·사무원과 달리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에 의해 現物과 現金을 분배받는다. 分配의 기준은 매 농장원이 1년간 농사에 투자한 노동의 양과 질이 되는데, 이는 매일 3~4명으로 구성된 勞力評價組에 의해 책정된 勞力工數,<sup>12)</sup>의 총계로 결정된다. 협동농장에서 1년간 생산한 總量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가는 농산물과 시설비(탁아소·유치원 등), 사료·종자·비료대, 농기계 임대료, 水利代 등을 공제한 40% 정도를 가지고 농장원들의 勞力工數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하게 된다.

따라서 시설투자, 입지조건, 가족수 등에 따라 분배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분배받는 양곡의 量을 보면 1년분의 기본식량으로 1人當 400kg(양곡 환산 현미로 250~270kg)으로, 이것은 1日 700g 정도가 되어 도시 근로자들의 식량배급 기준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 勞力工數 評價基準

〈표 V-12〉

| 工 數  | 作 業 量 |        | 評 價 方 法                          |
|------|-------|--------|----------------------------------|
| 1.5  | 밭갈이   | 2,000평 | 매일 3~4명으로<br>구성된 노력평가조에<br>의해 채점 |
| 1.5  | 모내기   | 200평   |                                  |
| 1.25 | 퇴비운반  | 10달구지  |                                  |
| 1.25 | 제조작업  | 150평   |                                  |
| 1.0  | 파종    | 400평   |                                  |
| 1.0  | 시비    | 100평   |                                  |
| 0.75 | 새끼꼬기  | 5kg    |                                  |

12) 勞力工數란 생산 또는 작업에 소요된 노력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협동농장의 경우 年間 責任量은 350工數임.

## (3) 休日・休暇

북한은 유사시를 대비해 휴일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달력상 목요일은 경리일, 금요일은 휴식일, 토요일은 작전개시일, 일요일은 작전요일 또는 전투요일로 정해 놓고 있다.

노동자·사무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함북지방과 청진시는 수요일을,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協同農場의 경우는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노력동원 등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水産業에 종사하는 어업노동자에게는 年間 300일 出漁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休暇는 사회주의 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有給 休暇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의 계획과제 완수 및 노력동원 등으로 대부분 휴가를 반납하거나 冠婚喪祭나 김장철 때 주로 휴가를 활용한다.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할 경우, 노동한 대가는 3개월 平均賃金を 일자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法定休暇외에 「사결」이라 하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고 쉴 수는 있으나 勞賃과 配給量은 쉬는 날 만큼 공제한다.

女性の 경우는 産前産後 150일간의 出産休暇가 허용되고 있다.

## 北韓의 休暇制度

〈표 V - 13〉

| 種 別     | 對 象                | 期 間                | 備 考  |
|---------|--------------------|--------------------|------|
| 定期 休暇   | 一般勞動者, 事務員         | 年間 14日             | 有給休暇 |
| 補充的 休暇  | 地下 및 有害職 勤務者       | 定期休暇 14日外<br>7~21日 | 〃    |
| 産前産後 休暇 | 妊産婦                | 150日               | 〃    |
| 臨時 休暇   | 부득이한 特殊事情이<br>있는 者 | 短期間                | 無給休暇 |

\* 출처: 북한 사회주의노동법 규정 내용 정리.

## 다. 家庭生活

북한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마르크스·엥겔스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소가족 형태가 생성 변화해 왔으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私有財産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家族도 소멸해야 한다”<sup>13)</sup>라는데 기반을 둬으로써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集團主義體制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 家族制度的 變化過程

〈표 V - 14〉

| 時 期      | 變 化 內 容                                       |
|----------|---|
| 1945~53年 | ○가족중심의 경제활동 유지<br>○봉건적 유습 청산<br>○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 |
| 1954~60년 |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                     |
| 1961~현재  |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br>○사회주의적 인간주조<br>○가정의 혁명화       |

그리하여 家長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祖上崇拜 관념은 배제되고 그 대신 소위 「社會主義的 家族」의 개념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家族制度的 變形은 호적제도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되었는데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사회의 잔재라고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공민증제도」를 194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이로써 친

13)「가족·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마르크스·엥겔스, 1984년판.

족범위가 6촌까지로 제한되었음은 물론 주민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민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1940~50년대의 사회주의적 개혁정책(토지사유제 폐지, 재산상속제의 소멸 등)과 1960년대의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으로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파괴, 대가족제의 붕괴를 초래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가정이 인간적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黨의 統制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黨의 課業을 촉진하는 매개집단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북한은 「가족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인해 북한의 가족은 「최저생산단위」인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 이론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 가정의 정치화가 더욱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 라. 餘暇生活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일원적인 국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은 계획된 日課表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하루의 日課는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오전작업전 30분간씩 讀報會<sup>14)</sup>로 시작되며, 오후 7~8시경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作業總和라 하여 지배인 및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이어 작업총화가 끝나면 직장별로 40분에서 2시간 가량 黨 세포비서를 중심으로 학습이 있게 되어 있어 퇴근은 통상 8~10시경에 하게 된다.

또한 休日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14) 독보시간에는 노동신문의 사설이나 黨의 지시문을 주로 읽음.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餘暇時間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설령 여가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관람도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보다는 직장과 인민반을 통한 集團觀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보게 된다.

스포츠 역시 “體育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sup>15)</sup>이라는 표현과 같이 체육이 여가선용이란 개인의 취미활동보다는 정치성·혁명성과 결부시켜 국가목표 추구의 수단화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스포츠 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며, 모든 스포츠 활동이 국방력과 노동력의 강화수단으로, 그리고 특정인의 우상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은 주민들에게 餘暇時間을 가급적 주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 여가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하려 한다. 때문에 개인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애초부터 엄두도 낼 수 없는 환경이다.

또한 趣味나 娛樂施設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가끔 공휴일 같은 날 공원지대를 찾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국 북한주민의 여가활동은 여가라는 의미가 부도덕적으로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우선되는 가운데 대개가 정치적·사상적 신임을 얻기 위한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15) 「백과전서」 5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 156.

## 4. 勞動問題

### 가. 勞動政策

북한에서는 노동을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sup>16)</sup>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은 노동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건설된다고 할 만큼 노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발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sup>17)</sup>고 하여 노동을 전 주민의 權利이자 義務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集團主義 原則에 의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1946년 勞動法 및 「事務員에 대한 勞動法令」이 제정되었고, 그 후 內閣決定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왔는데,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6기 2차회의에서 社會主義 勞動法을 새로 제정, 노동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나. 勞動組織과 勞動條件

북한이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적 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협

16) 북한 노동법 제2조.

17) 북한 헌법 제69조.

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sup>18)</sup>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sup>19)</sup>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私生活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시켜 놓은 것이다.

북한은 노동사업을 日別·月別·分期別로 계획화시켜 놓고 과업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속도전,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社會主義 勞動競爭運動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고 8시간의 학습시간도 公的 組織生活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상적 일과시간에 포함된다.

북한 헌법 제29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15조에는 노동년령을 종전의 14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는데, 이것은 「11년제 의무교육제」 실시와 관련, 16세까지는 의무교육기간이므로 직업적인 노동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휴일은 노동자 및 사무원의 경우 주 1일이고, 협동농장원의 경우는 10일에 1일로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社會主義 勞動競爭運動 때문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표 V - 15〉 참조)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시적 보조금의 지급, 일정한 근속노동 연한을 가진 자에 대한 老年年金(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sup>20)</sup>,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노동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여된 노동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극소수의 노동자와 특권층들은 노동법에 명시된 혜택을 받고 있다.

18) 북한 노동법 제26조.

19) 위의 法 제33조.

20) 위의 法 제74,75조.



1970년 11월 개최된 노동당 5차대회에서는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좁히고, “여성을 부업과 가정의 어려운 일부터 해방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으나, 그 역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1979년 9월에 열린 「전국 노동행정 일군대회」에서는 김일성이 직업선택권의 불인정, 직장 강제배치의 合理化策으로서 “로동을 고착시키며 전문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대를 이어 한가지 직종에 정통해야한다”<sup>21)</sup>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자기의 직업을 자식에게까지 물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增産 및 勞力競爭運動

〈표 V - 15〉

| 口 號               | 發 起     | 動 機  | 備 考   |
|-------------------|---------|--|---|
| 千里馬運動             | 1956.12 | 당중앙위 확대전원회의에서 집단적 革新運動으로 전개할 것을 결정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개된 社會主義 노동경쟁운동 |
| 靑山里精神, 靑山里方法      | 1960. 2 |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靑山里協同農場 현지 지도시 강조                      | 노동력의 효율적 통제 및 生産性 向上運動                            |
| 速 度 戰             | 1974. 2 | 당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의 공식 口號로 채택                      | 높은 速度와 質을 동시에 요구                                  |
| 숨은 영웅 模範 따라 배우기운동 | 1979.10 | 植物學研究所 근무 백설희 등 4명의 과학자들과 노력영웅 칭호 수상자들을 본받도록 하는 운동 | 자발적 노력을 강요하는 大衆動員運動                               |

21) 「로동신문」1979. 9. 27.

| 口 號                    | 發 起     | 動 機  | 備 考  |
|------------------------|---------|--|--|
| 80年代速度<br>創造運動         | 1982. 7 | 金正日の 제의에 의해<br>경제개발의 최우선 순위<br>에 두고 있는 金屬部門<br>(김책제철소)에서 발기                  | 경제성장의 부진 타개를<br>위한 계기조성 및 金正日<br>의 지도 역량을 경제성과<br>로 실증시키는 새로운<br>노력경쟁운동                  |
| 새로운 90<br>年代速度<br>創造運動 | 1990. 1 | 80년대 속도창조운동에<br>이어 심각한 경제난 타<br>개를 위한 새로운 90년<br>대 속도창조운동을 金日<br>成이 新年辭에서 제시 | 당조직과 일꾼들을<br>비롯 전주민 勞力動員<br>분위기 조성 및<br>청년학생들의 견인차<br>역할을 강조하여<br>북한 社會主義 體制<br>의 鞏固性 도모 |

\*주: 당·정·군 관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노동·금요노동·농촌  
지원 명목으로 연간 4~14주 무보수 노력동원 실시.

북한지역에는 勞働者區라는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400명 이상 거주하는 농촌, 산간지역에 설치하여 노동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 5. 社會福祉

### 가. 社會保障制度

북한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조항들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국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

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sup>22)</sup>고 하여 노동을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로서 규정하였고, 이어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靜·休養制, 계속 늘어가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sup>23)</sup>고 하여 노동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 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sup>24)</sup>고 하는 등 선진 복지국가의 제도를 모방해 놓았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대원칙을 총망라시키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福祉國家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1일 8시간 노동제,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나. 社會福祉施設

### (1) 託兒所·幼稚園制度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모든

22) 북한 헌법 제56조.

23) 위의 법 제57조.

24) 위의 법 제58조.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사회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출생과 더불어 就學前까지의 모든 아동(동법 제10조)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정치사상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同法 제6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2차적인 목적이 노동력 부족을 여성노동으로 보충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탁아소와 유치원에 관한 주요 조치 및 활동사항은 다음 <표 V-16>과 같다.

### 어린이 保育에 관한 主要 措置

<표 V-16>

|         |  |
|---------|--|
| 1947. 6 | 託兒所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제5호                           |
| 1964. 7 | 幼稚園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內閣決定             |
| 1966.10 |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
| 1968.   | 유치원 敎育課程制度 審議會 구성                              |
| 1972. 5 |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敎育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金日成敎示     |
| 1975. 9 | 11년제 義務敎育을 전면적으로 실시                            |
| 1976. 4 | 최고인민회의 제5기 6차대회, 어린이 保育敎養法 채택                  |
| 1979. 3 | 최고인민회의 제6기 3차회의 敎育부문 보고<br>-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

### (2) 기타 社會福祉施設

북한에는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8세 미만의 고아들을 양

육하는 기관이고, 養生院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씩 두고있으며, 養老院은 부양자나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榮譽軍人病院,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榮譽軍人靜養所·休養所, 7~11년제 과정을 전원 합숙 교육시키는 革命子女學院 등이 있다.

## 다. 社會保險

### (1) 年金制度

북한의 연금제도는 1951년 8월 30일에 제정된 국가 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廢疾年金, 遺家族年金, 老年年金, 榮譽軍人年金 등이다. 임금노동자에게 실시하던 연금제도가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11월부터이다.<sup>25)</sup>

### (2) 産災保險

북한의 산재보험은 상기 국가 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제73조, 75조, 77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다.

보험급여는 취업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급부터 5급까지 구분, 최고 1급은 임금의 75%, 최하 5급은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成分이 좋고 黨에 충직한 열성당원에게는 보험급여를 규정대로 적용하는 경향이지만 성분불량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災害를 노동자의 고의적인 사고로 처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25) 「조선중앙년간」(1987), p. 200.

## (3) 失業保險

「국가 사회보장법」에 의해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는 지급하지 않는다.

## 北韓의 社會保障制度

〈표 V - 17〉

| 區分                    | 種 別    | 保 障 內 容   |
|-----------------------|--------|---|
| 補<br>助<br>金<br>制<br>度 | 일시적보조금 | 월평균 임금액의 50~80%를 3개월한도 지급                               |
|                       | 해산보조금  | 월평균 임금액의 90% 지급   |
|                       | 장례보조금  | 死亡者가 10세 미만인 경우 5원, 10세 이상인 경우 10원 지급                   |
|                       | 의료보조금  | 無償治療 原則<br>*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월급의 1% 공제,<br>치료약은 인민약국에서 별도 구입 |
| 年<br>恤<br>金<br>制<br>度 | 폐질연출금  | 직종별, 질병류에 따라 최종 월평균 임금액의 23~90%를 매월 지급                  |
|                       | 유가족연출금 | 가족수에 따라 40~90%를 매월 지급                                   |
|                       | 양노연출금  | 남 60세, 여 55세 이상 자에게 종신 지급<br>(지급액 불명)                   |

## 6. 保健 · 醫療

### 가. 保健 · 醫療政策

北韓憲法 제48조에 의하면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憲法상의 이런 규정으로 볼 때北韓의 保健政策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적 방침」 등 두 분야로 대별된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사회보험법」과 「노동자·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에 관한 결정서」를 의결하여 1947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북한의 노동자, 사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無償治療제가 실시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이듬해인 1948년에는 이 규정을 개정, 치료비를 낮추도록 조치했다고 하고 있어 당시 무상치료제란 완전 무상치료가 아니라 특정분야에 대한 선별적 무상치료제였음을 말해준다.

1948년도 치료비 규정 개정 내용에는 산모의 解産料, 3세미만의 유아, 혁명가 및 그 가족, 고아원, 양로원 수용자, 정신병자, 구급환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은 무상 치료제의 대상에 포함시킨다<sup>26)</sup>고 하고 있어 실질적인 무상치료 대상범위는 이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후 무상치료제 適用對象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203호」를 발표, 이듬해인 1953년 1월 1일부터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

26) 승창호 · 리복희 편, 「인민보건사업 경험」(평양: 인민보건사, 1985), P. 62.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sup>27)</sup>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는데, 이로 인해 북한의 무상치료 적용대상은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무상치료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의료요원의 부족, 시설의 미비, 계층간의 의료시혜 차별 등이다.

한편 豫防醫學의 方針에 있어서도 1953년부터 실시되었다고 하나 1960년 5개년계획이 끝나 保健施設과 保健要員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예방의학적 방침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각 市·郡에서는 小兒科, 內科, 産婦人科 등의 의사 담당구역제를 실시했고 炭鑛, 鑛山에서는 직장, 갭담당 구역제가 실시되었다.

醫師擔當區域制에 대한 북한측의 설명을 보면 “전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市·郡(區域)病院, 工場病院, 里人民病院 또는 里疹療所들이 이 사업을 직접 맡아 하고 있으며, 區域擔當事業을 맡고 있는 시·군 병원과 공장병원의 외래 임상과 전체 의사들과 리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 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고 검진, 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sup>28)</sup>고 하고 있다.

## 나. 醫療施設

북한의 醫療施設은 一般病院과 特殊病院으로 구분되며, 또한 위

27) 위의 책, P. 63.

28) 「조선중앙년감」(1984) pp. 289~292.



생 · 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가 있다.

일반병원으로서는 中央에 특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진료소와 남산병원이 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십자병원, 평양의대부속병원, 명예전상자병원을 비롯 주요 政務院 산하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안전부중앙병원, 운수중앙병원, 해군 · 공군중앙병원 등이 있고 헝가리의 지원으로 건설된 헝가리병원, 재일 조총련교포가 건설해준 김만유병원 등이 있으며, 전문분야 병원으로 평양중앙결핵병원, 평양임상병원, 동의중앙종합병원 등이 있다.

### 醫療施設 規模

〈표 V - 18〉

| 類 型          | 所在地                  | 醫師數       | 專 門 科  | 病床           | 主要裝備                      |
|--------------|----------------------|-----------|--|--------------|---------------------------|
| 道醫學大學<br>病 院 | 도인민위<br>소 재 지        | 약 200명    | 全 科  | 800<br>~1200 | 기본진료 및<br>치료용전장비          |
| 郡人民病院        | 군인민위<br>소 재 지        | 약 50명     | 내과, 외과, 소아과, 산<br>부인과, 피부과, 안과,<br>이비인후과, 방사선과,<br>실험과, 물리치료과, 결<br>핵과, 간염과, 구강과,<br>동의과(계 14개과) | 100<br>~200  | 앰브란스<br>X - 선<br>현 미 경    |
| 里人民病院        | 리인민위<br>소 재 지        | 10명<br>이내 | 내과, 외과, 이비인후<br>과, 소아과, 산부인과,<br>동의과(계 6개과)  | 5~20         | (규모가클때)<br>X - 선<br>현 미 경 |
| 診 療 所        | 산 업 장<br>협동농장<br>부 락 | 1~2명      | 없 음  | 1~2          | 청진기 등                     |

地方에는 각 道(직할시)에 道중앙병원과 의학대학부속병원이 있고 市 · 郡(구역)에는 市 · 郡인민병원, 里에는 리인민병원 또는 리

진료소가 있다.

특수병원으로서는 중앙에 나병원, 구호병원이 있고 道급에는 도결핵병원, 도만성병병원, 도진염병병원이 있으며 주요 郡급에는 결핵요양소 및 간염병원이 있다.

그외 주요 産業地域에는 産業病院, 産業診療所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漁船團에는 船醫가 배치되어 치료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다. 保健 · 醫療要員 養成

북한에서는 保健 · 醫療要員을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서 전체인민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sup>29)</sup>로 규정짓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保健要員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야 하며 “인민들을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선전교양자의 역할”<sup>30)</sup>을 하여야만 한다.

이처럼 북한은 保健醫療要員을 단순한 치료자라기보다는 革命家로 보고 교육과 양성에 있어 일관되게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保健 · 醫療要員 양성기관으로는 醫學大學, 藥學大學, 道 保健幹部學校 등이 있다.

醫學大學은 豫科 1년, 本科 6년의 7년제로 되어 있고 醫師의 자격은 國家考試制度 없이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중 醫師資格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을 과목종류시 합격해야 한다.

本學部外에 特設學部和 通信學部가 설치된 대학도 있는데, 特設學部에서는 기초학부를 제외한 임상학과가 있어 여기에 準醫師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추천을 받아 입학, 의사가 되는 과정이다.

29) 북한 인민보건법 제38조.

30) 위의 법 제39조~제40조.

通信學部는 本科 6년제로 대학과 근거리에 있는 자는 야간에 2시간씩 등교, 수강하고 원거리 거주자는 通信受講으로 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藥學大學은 北韓 全域에 咸興藥學大學 하나뿐이고 各道 醫學大學 일부에는 藥學部가 있는데 教育期間은 5년이다.

교육내용은 의료기구학부, 약제학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학부에는 수개의 科로 나누어져 있다.

道 保健幹部學校는 간호원 및 의료기사의 양성을 위한 2년제 학교로 간호학과, 조산학과, 보철과, 조제과로 나뉘어 해당 인력을 배출한다.

이외에 간호원 양성을 위해 별도의 1년제 간호양성소가 있으며 교육기간 3개월인 보육원 양성소가 각 市·郡별로 설치되어 있다.

## 라. 東 醫 學

북한은 韓方治療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이 東醫治療를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휴전이후로서 1954년 6월4일 내각결정 제76호 「인민보건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결정이 있는 후 醫師에 대한 資格試驗을 실시하고 醫院을 개원하게 함으로써 1954년부터는 國家治療機關에 醫師를 두게 했고, 규모가 큰 병원에는 東醫科를 설치케 했다.

또한 醫學大學에 東醫學部를 설치하고 藥學大學과 醫學大學 藥學部에 東醫學科를 두어 東醫師와 東藥師를 양성하고 있으며 醫學科學院 산하에 東醫學研究所를 두고 東醫學의 科學化와 體系化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약초재배사업과 채취, 보호, 증식사업을 군중운동으로 추진하여 東藥 生産增大를 도모하고 있다.

북한은 동의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東醫 고전번역사업과 동의학 교과서 및 참고서

들을 출판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수만건의 民間療法을 수집,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 이중 가치있고 실효성 있는 9,000여건의 민간요법을 政務院 보건부에서 책자로 출판, 이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평양의 東醫病院을 비롯한 各級 東醫醫療機關과 醫學科學研究所, 醫學大學 등에서 東醫學의 科學化 研究事業을 추진, 東藥의 成分, 藥理作用, 東醫處方的 治療效果, 동약과 침, 뜸, 부항을 비롯한 가치있는 민간요법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그외에도 북한은 東醫師를 비롯한 모든 醫師들이 新醫學과 東醫學을 병행시킴으로써 치료효과가 높아졌고 病院 및 診療所 등의 의료기관들에서는 임상실험실, 렌트겐실험실과 같은 현대적인 진단설비들과 각종 실험실을 갖추고 현대의학적인 진단하에 동약, 침, 부항, 한증 등의 동의학 치료를 배합시킴으로써 동의의료 봉사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1)</sup>

## 7. 道德 · 風俗

### 가. 道 德

#### (1) 倫理 · 道德

북한은 해방후 공산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대한 그들 나름의 특이한 해석과 의의를 부여하고 소위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道德觀을 형성시켜 놓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는 도덕을 階級鬪爭의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人間本性에서 추출된 순수한 도덕관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31) 「조선중앙년감」(1984), PP. 289~292.

오히려 이를 反動的이며 反社會的인 낡은 도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도덕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공산주의적 인간성과 문화성 등”<sup>32)</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도덕을 전적으로 공산주의 교양에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도덕개념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새로이 형성된 도덕관, 가치관의 개념은 집단주의 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노동애호정신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첫째, 공산주의 도덕교양이 集團主義 精神의 함양에 기여하며, 둘째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근로대중에게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있고, 셋째 勞動愛好精神이라는 새로운 도덕개념을 내세워 노동에 대한 黨의 管理와 토대를 일층 강화하는데 있는 것이다.

## (2) 禮儀凡節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公衆道德이나 질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일반주민의 합의에 의한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 즉 예의범절이라는 도덕적 행위규범까지 「규찰대」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복장을 비롯한 두발, 위생상태에 이르는 모든 생활영역이 黨의 統制下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50대 이상층의 舊世代에는 아직도 전통적 관습과 禮儀凡節을 중요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풍조와 협동의식, 隣保精神에 바탕을 둔 상부상조의식이 남아 있으나, 新世代라 할 수 있는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혁명적 동지의식이 강하고 隣保精神에서도 자기중심적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에게는 祖上崇拜意識대신

32)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58~59.

오로지 金日成을 따르고 숭배하는 충성심으로 가득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冠婚喪祭

### (1) 結 婚

결혼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군복무중에는 결혼이 不許되고, 여자의 경우 여성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연되는데, 통상 男子 27~28세, 女子 24~25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선택은 中媒와 연애가 6 : 4정도의 비율로 병행되고 있고 배우자 선정시 상대자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는데, 특히 黨·政機關의 간부나 軍官 등의 경우는 노동당의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다.

결혼일은 종래와 같이 길흉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생산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택하며, 예식장소는 공공회관이나 음식점 또는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복은 남자의 경우 평상복, 여자는 연분홍색 한복을 주로 입는데 가슴에는 붉은 조화를 단다. 主禮는 대체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상사, 협동농장 간부, 또는 노동당이나 사회단체 간부가 서며, 주례사는 신랑·신부의 새 출발에 대한 격려보다도 김일성의 헌신적 충성에 대한 설교로 끝난다.

新婚旅行은 거의 가지 않고 식당 또는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지며, 지방에 따라서는 결혼식 3일후에 사돈간의 교환방문이 있기도 하다.

### (2) 回甲·生日

회갑연은 195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와 식량절약이라는 명분으로 모두 금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회

갑잔치 및 돌잔치가 묵인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70년대 말부터 다시 黨의 통제로 「60청춘 90환갑」이라는 구호 아래 회갑연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회갑연은 다시 친척·친지 등이 모여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고, 이 외에도 진갑·칠순·팔순 등의 장수잔치가 있기도 하다.

생일은 가족끼리 가정에서 간단히 지내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葬 禮

장례는 3일葬이 일반적이다. 喪服은 따로 만들지 않고 평상복에 검은 완장을 차며, 건은 하지 않는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는 녹화사업소, 편의협동조합등이 맡아서 처리하며, 運柩는 전래의 상여대신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하여 공동묘지까지 간다.

직계존속 사망시 喪主에게는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고, 장례보조금 10원과 쌀 1말이 특별 배급된다.

### (4) 祭 祀

제사는 6·25전까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후부터는 단속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일부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히 제사를 지내왔다. 그후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 오면서 추석에 성묘하는 것과 직계가족에 대한 脫喪까지의 제사는 묵인되었으나 전통적인 祭禮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조상숭배를 復古主義의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는 북한 당국의 시각 때문에 전통적인 제례는 거의 사라지거나 크게 간소화 되었다.

북한의 제례는 紙榜대신 사진을 놓고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지낸다.

최근 한식, 추석, 음력설 등 고유명절 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성묘를 가기도 한다.

## 다. 名 節

북한에서의 명절은 첫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 둘째 지난날에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민속적으로 즐기던 날<sup>33)</sup> 등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두번째 개념의 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왔다.

### 北韓의 名節

〈표 V-19〉

| 區 分 |   |   |   | 日 字 (期 間)      |            |        |
|-----|---|---|---|----------------|------------|--------|
| 설   |   |   | 날 | 1. 1~1. 2(2일간) |            |        |
| 음   | 력 | 설 | 날 | 1. 1(음)        |            |        |
| 金   | 正 | 日 | 生 | 日              | 2. 16(2일간) |        |
| 寒   |   |   | 食 | 4. 6           |            |        |
| 金   | 日 | 成 | 生 | 日              | 4. 15(2일간) |        |
| 國   | 際 | 勞 | 動 | 節              | 5. 1       |        |
| 端   |   |   | 午 | 5. 5(음)        |            |        |
| 解   | 放 | 紀 | 念 | 日              | 8. 15      |        |
| 秋   |   |   | 夕 | 8. 15(음)       |            |        |
| 政   | 權 | 創 | 建 | 日              | 9. 9       |        |
| 노   | 동 | 당 | 創 | 黨              | 日          | 10. 10 |
| 憲   |   | 法 | 節 | 12. 27         |            |        |

\* 출처: 북한자료 종합.

그러나 1972년 南北對話 이후부터는 秋夕을 기해 인근 조상묘소에 성묘를 하고, 증명서 없이도 郡界를 벗어 2일간의 여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1988년 이후부터는 休息日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는 구정과 단오절까지 휴식일로 인정, 민족 고유명절을 부활

33)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936~37.



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은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주민노력동원 등에 따른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명절은 설날,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12개 15일간 인데, 음력설을 비롯하여 한식·단오·추석 등은 休息日이기는 하나 휴식일을 전후한 일요일을 선정하여 補充勞動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休息日을 「代休」라고 한다.

북한의 명절은 傳來名節 부활 추세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思想 고취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새로 설정한 소위 「사회주의 명절」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경축된다. 金日成의 生日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선물 전달, 예술공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정일 생일(2. 16)부터 金日成 生日(4. 15)까지의 두달 동안은 각종 축하 및 우상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라. 民俗놀이

전래의 민속놀이는 없어지거나 群衆的 집단놀이 등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주로 國防體育 등의 명목으로 각종 군사놀이나 씨커스를 통해 공연되고 있다.

農樂은 노동절이나 정권창건일 등 특별한 기념행사 때 극장 또는 야외에서 공연되며, 널뛰기는 곡예의 한 종목으로, 그네뛰기와 활쏘기는 民俗體育의 경기종목으로 바뀌어졌다. 이 같은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특정한 명절과 결부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를 열어 개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民俗놀이의 變形

〈표 V - 20〉

| 時 期          | 內 容   |
|--------------|---|
| 6.25前        | ○ 전통 民俗놀이 존속<br>- 그네, 씨름(단오)<br>-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구정)<br>- 농악무,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등             |
| 1950年代       | ○ 民俗놀이 일부가 生産性 제고 수단으로 활용<br>- 농악을 행사에 이용(8. 15, 5. 1절 등)<br>-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다리기를 장려 |
| 1960年代<br>以後 | ○ 새로운 形態로 變形<br>-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br>- 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이 미군)<br>- 씨름, 그네를 「민족경기」로 채택       |

## 8. 觀 光

## 가. 觀光政策

북한은 觀光産業에 대해 “낭비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고 觀光産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왔다.

북한에서의 觀光事業은 195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것이 최근에 이르러 觀光産業은 가장 적은 투자를 하면서도 가장 많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 觀光産業을 통해 북한을 해외에 선전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점차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84년 9월 合營法을 制定, 외국과의 合營對象 5개 분야중

觀光事業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에는 觀光業 또는 觀光産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서 발행된 사전, 문헌에는 觀光産業 또는 觀光事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觀光事業이란 용어는 쓰지 않더라도 觀光 그 자체는 없을 수 없으므로 觀光政策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觀光政策의 핵심은 김일성 우상화와 김일성의 개인 선전을 위한 史蹟趾 및 혁명전적지 등의 방문인데, 이는 관광을 내세워 북한의 정치사상 교양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고, 黨·政 幹部, 熱誠黨員, 탁월한 노동성적을 올린 노동자들에게 베푸는 恩典으로 이들 지역을 순방토록 하여 관광의 효과를 얻자는데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觀光政策은 당국의 정치 선전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취미, 여가선용, 휴양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觀光政策은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觀光事業 推進實態

북한은 1984년 9월 合營法 制定 이후 외화획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外國觀光客 誘致事業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5년 5월 政務院內에 國家觀光總局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朝鮮國際旅行社, 青年旅行社를 두고 실무를 관장케 하고 있다. 이어 1986년 최초로 홍콩·호주로부터 소규모 海外觀光團을 유치하였고, 1987년 10월에는 世界觀光機構(WTO)에 가입하였다.

1987년부터는 각 商業大學에 觀光學科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그해 10월에는 39명으로 구성된 日本人 觀光團이 방북하기도 하였으나, 1987년말 북한의 KAL 폭파사건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외국관광객 유치사업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후 1989년 7월 북한은 在美 LA 거주 교포와 「金剛山 國際觀

光會社」를 合作으로 설립, 그해 하반기부터는 재미교포 및 일본 관광단의 북한방문을 再開하게 되었다.

1989년 11월에는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북한의 觀光事業을 대대적으로 상세히 소개한 바 있고, 1990년 1월 홍콩의 「조인월드 국제여행사」 주선으로 홍콩,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記者, 企業人 등 115명이 特別機便으로 북한을 관광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蘇·東歐의 改革·開放化 여파에 따라 外國觀光客 誘致事業은 또다시 위축되고 말았다.

### 다. 주요 觀光資源 開發現況

북한은 <표 V-21>과 같이 觀光資源을 平壤圈, 南浦圈, 金剛山圈, 元山圈, 白頭山圈, 妙香山圈, 開城·板門店圈으로 구분, 특색있게

#### 主要 觀光圈

<표 V-21>

| 區 分   | 名 所  |
|-------|--|
| 平 壤 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밀대, 부벽루, 최승대, 대동문, 칠성문, 보통문, 연광정, 대성산성, 남문, 북장대, 안학궁터, 동명왕릉</li> <li>○ 중앙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li> <li>○ 인민문화궁전, 2.8 문화회관, 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국제문화회관,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철, 예술영화촬영소</li> <li>○ 5.1 경기장, 김일성경기장, 빙상관,</li> <li>○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외국어대학, 김형직 사범대학</li> <li>○ 평양산원, 김만유병원, 창광원,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평양교예극장, 능라도 유원지, 반각도 유원지, 대성산 유원지, 만경대 유희장</li> </ul> |

| 區 分     | 名 所  |
|---------|--|
| 平壤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대(김일성 생가), 주체사상탑, 개선문, 만수대(김일성 동상), 혁명열사릉, 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속섬 혁명사적지(김구선생과의 회담장소, 통일전선탑, 원두막 등 설치)</li> <li>○ 봉수교회, 장충성당</li> </ul>  |
| 南浦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갑문, 와우도 유원지, 구월산, 수양산, 석담 9곡</li> </ul>   |
| 金剛山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금강 : 비로봉, 만폭계곡, 명경대바위, 백운대바위, 병풍바위, 무지개다리, 월출봉, 옥녀봉, 천선대, 귀면암, 락상폭포, 옥영폭포, 은실폭포, 와룡폭포, 표훈사, 정양사, 보덕암, 장안사터, 마의태자릉</li> <li>○ 외금강 : 만물상, 구룡폭포, 구룡연, 삼선암, 상팔담, 수정문, 금강문, 금강굴, 성문굴 치마바위, 곰바위, 범바위, 삼단폭포, 오단폭포, 백련폭포, 선하폭포, 십이폭포, 흰비단폭포, 용연폭포, 누운폭포, 금강산온천, 유점사터, 신계사터</li> <li>○ 해금강 : 총석정, 시중호, 삼일포, 해금강문</li> </ul> |
| 元山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사십리, 송도원 유원지, 동방식공원, 송도원 국제소년야영소</li> </ul>  |
| 白頭山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지, 백두산 정계비, 리명수폭포, 삼지연, 삼지연 스키장</li> <li>○ 백두산 밀영, 김일성 혁명사적지(보천보, 무산지구 등)</li> </ul>   |
| 妙香山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폭대, 불영대, 상원암, 금강문, 상원문, 단군굴, 만폭동계곡, 2선남폭포, 천태폭포, 금강폭포, 은선폭포, 비선폭포, 구층폭포, 용연폭포, 은하폭포, 비단폭포, 은실폭포, 만경폭포</li> <li>○ 보현사, 상원사, 묘향산 역사박물관(8만대장경 보관), 국제친선전람관</li> </ul>   |
| 開城·板門店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연폭포, 성균관, 선죽교, 남대문, 만월대, 표충비, 공민왕릉, 관음사, 대홍사, 인삼밭</li> <li>○ 고려역사박물관, 신천박물관(6.25전쟁기념), 판문점</li> </ul>  |

개발하고 있고 100여개의 관광코스를 선정했다고 하나, 현재 그중에서 일부 코스만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관광코스는 평양 및 근교 2박3일 코스에서부터 평양-원산-금강산-개성-묘향산-남포에 이르는 15박16일 코스를 포함하여 7가지 일반관광코스와 골프관광, 태권도 교습관광, 등산관광, 감탕(진흙목욕)치료관광 등 5가지의 특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 라. 觀光 便宜施設 및 交通

### (1) 便宜施設

북한이 소개하고 있는 관광호텔은 평양시내에 高麗호텔, 靑年旅館을 비롯하여 蒼光山旅館, 大同江旅館, 普通江旅館 등이 있고, 건설 중인 것으로 柳京호텔과 羊角島호텔이 있다. 지방에는 妙香山에 香山호텔, 靑春旅館, 元山에 송도원, 金剛山에 金剛山旅館, 開城에 子南山旅館, 惠山에 惠山旅館, 白頭山에 온수봉旅館, 南浦에 港口旅館 등이 있다.

觀光飲食店으로는 평양의 淸流館, 玉流館, 牡丹閣과 南浦의 臥牛島閣 등이 손에 꼽을 정도이며, 관광객 쇼핑을 위해서는 평양 第1百貨店, 第2百貨店, 樂園百貨店 등 5개소와, 지방에 南浦百貨店, 開城百貨店 등이 있을 뿐이다.

그외 元山-海金剛(三日浦)의 여객선, 大同江上에 유람선을 취항시킨 바 있고, 新義州市에 吊橋 建設, 백두산 천지에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索道식 索道(케이블 카)를 건설중이라고 하며, 주요 관광지에 국제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등의 설치와 평양교외 태성호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觀 光 便 宜 施 設

〈표 V - 22〉

| 區 分              | 名 所   |
|------------------|---|
| 宿<br>泊<br>施<br>設 | <p>〈평 양〉</p> <p>○ 고려호텔(45층, 500실), 서산호텔(474실), 양강호텔(330실), 청년여관(465실), 보통강여관(161실), 창광산여관(170실), 평양여관(170실), 해방산여관(83실), 대동강여관(60실)</p> <p>○ 유경호텔(92.4 완공예정, 105층 3,000실), 양각도호텔(건설중, 47층 1,000실)</p> <p>〈지 방〉</p> <p>○ 향산호텔(묘향산, 228실), 청춘여관(묘향산, 33실), 송도원여관(원산, 164실), 금강산여관(금강산, 204실), 조총련관광여관(금강산, 160실), 개성 민속여관(개성, 90실), 자남산여관(개성, 43실), 배개봉여관(백두산, 42실), 혜산여관(혜산, 40실), 온수봉여관(백두산, 21실), 항구여관(남포, 190실)</p> |
| 飲<br>食<br>店      | <p>〈平壤〉</p> <p>○ 청류관, 옥류관, 연못관, 목단각, 선교각, 평천각, 송산식당(만경대), 만경대식당(만경대), 남리식당(만경대), 소문봉식당(대성산), 남문식당(대성산)</p> <p>〈地 方〉</p> <p>○ 와우도각(남포) 송도각(원산), 박연식당(개성)</p>   |
| 쇼<br>핑           | <p>〈平壤〉</p> <p>○ 제1백화점, 제2백화점, 서평양백화점, 낙원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p> <p>〈地 方〉</p> <p>○ 남포백화점, 개성백화점</p>  |

(2) 交通

북한은 관광객의 수송을 위해 1989년 8월 元山-金剛山間 고속도로 건설을 시발로 平壤-熙川間·平壤-開城間 고속도로 공사를 추진하는등 관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한편 북한은 외국관광객 수송을 위해 평양-모스크바間 國際列車 開通(1987. 4), 順安 國際空港 확장(1987), 평양-모스크바 航空路線을 東베를린 및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平壤-瀋陽-홍콩간 中國民航 전세기 航路 開設, 平壤-瀋陽-名古屋-LA間 定期路線 개설을 추진해 왔으나 蘇·東歐 改革·開放化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國際列車 時間表

<표 V-23>

| 區 間         | 距離(km) | 出 發                 | 經 由                    | 到 着                     |
|-------------|--------|---------------------|------------------------|-------------------------|
| 모스크바<br>-平壤 | 8,666  | 00:59 土             | 자바이칼, 만수리,<br>丹東, 新義州  | 15:55<br>다음주 金          |
|             | 10,214 | 15:05 月,水           | 하산, 豆滿江                | 23:15<br>다음주 月, 水       |
| 平壤-<br>모스크바 | 8,666  | 12:00 土             | 新義州, 丹東, 만수<br>리, 자바이칼 | 14:55<br>다음주 金          |
|             | 10,214 | 17:30 月,水           | 豆滿江, 하산                | 15:50<br>다음주 月, 水       |
| 北京-平壤       | 1,347  | 16:48 月,<br>水, 木, 土 | 丹東, 新義州                | 15:55 다음주<br>火, 木, 金, 日 |
| 平壤-北京       | 1,347  | 12:00 月,<br>水, 木, 土 | 新義州, 丹東                | 09:45 다음주<br>火, 木, 金, 日 |



## 國際航空便

〈丑 V - 24〉

| 國家  | 航路名    | 發 - 着               | 時 間               | 曜 日 | 機 種                 | 備 考                         |
|-----|--------|---------------------|-------------------|-----|---------------------|-----------------------------|
| 北 韓 | JS-151 | 平壤 - 北京             | 09 : 30 ~ 11 : 00 | 火   | AN-24               | 59.2 運航開始                   |
|     | JS-152 | 北京 - 平壤             | 15 : 30 ~ 17 : 00 |     |                     |                             |
|     | JS-151 | 平壤 - 北京             | 09 : 30 ~ 11 : 00 | 土   | IL-18<br>TU-134,154 | 87.8 增便運行                   |
|     | JS-152 | 北京 - 平壤             | 15 : 30 ~ 17 : 00 |     |                     |                             |
|     | JS-253 | 平壤 -<br>하바로브스크      | 09 : 00 ~ 11 : 00 | 土   | IL-18<br>TU-154     | 74.9 運航開始                   |
|     | JS-254 | 하바로브스크<br>- 平壤      | 14 : 10 ~ 16 : 20 |     |                     |                             |
|     | JS-215 | 平壤 - 모스크<br>바 - 東伯林 | 10 : 10 ~ 22 : 00 | 水   | IL-62               | 83.4 平壤 - 모스크<br>바간 運航開始    |
|     | JS-216 | 東伯林 - 모스<br>크바 - 平壤 | 01 : 00 ~ 12 : 50 | 木   |                     | 87.11 東伯林까지<br>延長           |
|     | JS-217 | 平壤 - 모스크<br>바 - 소피아 | 07 : 00 ~ 22 : 00 | 木   |                     | 88.4 모스크바 運<br>航 開始         |
|     | JS-218 | 소피아 - 모스<br>크바 - 平壤 | 00 : 30 ~ 15 : 30 | 金   |                     | TU-154<br>89.11 소피아까지<br>延長 |
| 中 國 | CA-903 | 北京 - 平壤             | 10 : 30 ~ 12 : 00 | 金   | TRD                 | 59.2 運航開始                   |
|     | CA-904 | 平壤 - 北京             | 13 : 20 ~ 14 : 50 |     |                     |                             |
| 蘇 聯 | SU-567 | 모스크바 - 平壤           | 03 : 40 ~ 12 : 20 | 月   | IL-62               | 59.12 運航開始                  |
|     | SU-568 | 平壤 - 모스크바           | 10 : 30 ~ 19 : 10 | 火   |                     |                             |
|     | SU-813 | 하바로브스크<br>- 平壤      | 08 : 10 ~ 10 : 10 | 木   | TU-154              | 74.9 運航開始                   |
|     | SU-814 | 平壤 -<br>하바로브스크      | 12 : 00 ~ 14 : 00 |     |                     |                             |

※時差(平壤時間基準) :

「-」모스크바(5시간), 음스크(3시간), 노보시비리스크(2시간), 루마니아·  
불가리아(6시간), 헝가리·유고·체코(7시간)

「+」하바로브스크(1시간)



# VI. 教育·文化



# 1. 教 育

## 가. 教育政策

북한의 教育은 그들의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발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주의적 혁명적 인재”<sup>1)</sup>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은 憲法 第39條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北韓에서 長期 教育政策을 제시한 교육의 종합지침서는 1977년 9월 5일 제정·공포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sup>2)</sup>이다. 이 「테제」는 그간 金日成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敎示와 명령을 일정한 體系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 「테제」에 나타나 있는 教育政策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教育理念과 目標은 후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教育을 하는데 견지해야 할 原則으로서 ① 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주체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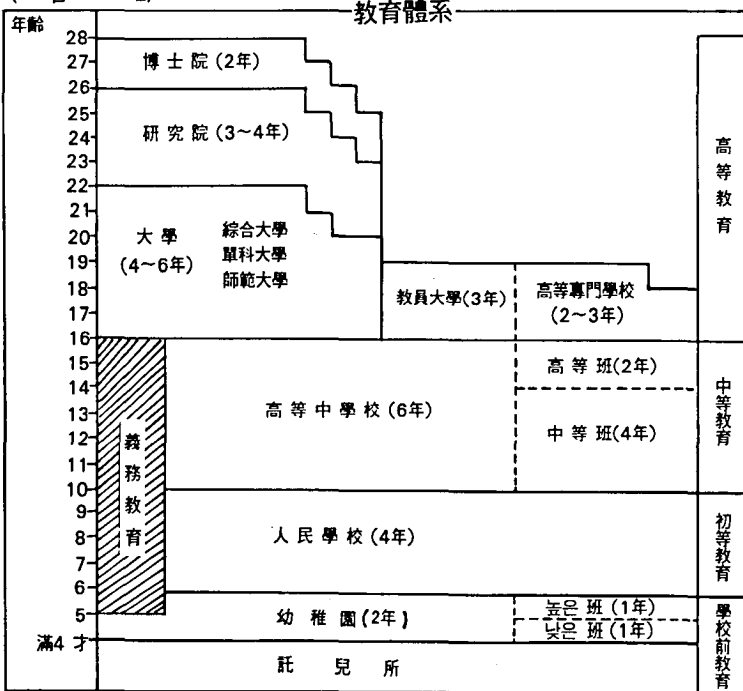
2) 동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教育體系

북한의 교육정책수립과 총괄적 지도·통제는 勞動黨 中央委의 科學 및 教育部에서 하고, 政務院 산하의 教育委員會는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을 통괄한다. 教育委員會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시·도(직할시)에는 人民委員會 教育處가 각급 학교를 분장하여 통괄한다.

학제는 4-6-4(6)制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은 3~6년으로 되어 있으며, 11년제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 1년과 정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림 VI-1>



\* 출처: 「조선개관」

### (1) 義務教育

북한에서의 義務教育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sup>3)</sup>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北韓의 의무교육은 195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즉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가 실시되어 오다가 1958년부터는 3년간 중등교육까지 확대하여 의무화하였다. 9년후인 1967년에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4년제의 人民學校와 5년제의 中學校를 의무제로 한 것으로, 中學校의 5년과정 중 3년간은 일반적인 중학교육을, 그후의 2년간은 한 가지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술교육으로 되어 있다.

1970년 11월 5次 黨大會에서는 의무교육연한을 1년간 연장하여 10년제 의무교육으로 할 것을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1972년 黨 5期 4次 全員會議에서 「10년제 高中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전 의무교육」을 同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75년 9월부터는 이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따라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이 유치원 높은 반 즉 취학전 나이인 만 5세로 1년이 낮아졌다.

북한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교육목표는 이 기간동안 중등일반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결합시켜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의무교육기관은 人民學校 4,790個校, 高等中學校 4,062個校가 있다.

### (2) 高等教育

북한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이 開校된 것은 1946년 9월 1일이다.

1946년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同年 9월 1일 「김일성

3)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內容 참조.

종합대학」을 평양에 건설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1948년 7월 7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157호 결정에 의해 高等教育 확장 시책이 발표되었다.

휴전 후 「3개년복구건설기」(1954~56)에는 政治·經濟分野 大學들이 신설되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계획」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目標을 두고 中等敎員의 대량 양성을 위한 敎員大學과 師範大學 확장에 주력하였다.

1960년 8월에는 勞動黨 확대전원회의를 개최, 6개년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공장대학·야간대학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7개년인민경제계획 (1961~70)기간에도 공장대학의 증설을 결정하였다.

이어 2차 7개년경제계획(1978~84)기간에는 부족되는 각급 학교건설을 당면과업으로 설정하고 소규모의 공장대학·통신대학·전문학교 등의 증설에 주력하였다.

현재 북한의 高等教育機關으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등 2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273개의 大學이 있는데 各道에 工業大學, 農業大學, 醫科大學, 師範大學, 敎員大學, 共產大學 등이 있으며 主要工場과 企業所 및 産業地區에는 工場大學이, 大規模의 協同農場과 水産事業所에는 農場大學, 水産大學 등이 있다.

이외에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600여개 있다.

## 다. 教育内容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政治思想敎育과 技術敎育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人民學校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을 위시하여 「공산주의 도덕」, 「국어」, 「수학」 등 총 10개 과목에 대해 4년동안 14,412時間의 敎育이 실시되고 있다.<sup>4)</sup>

4) 「과정안」 (평양 :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3) p. 6.



高等中學校는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2년동안 「현행 당정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공산주의 도덕」, 「국어문학」, 「기술기능실습」, 「기초기술」 등 총 24개 과목에 39,756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sup>5)</sup>

이외에 모든 인민학교·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김일성·김정일 혁명전적지·사적지들의 답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하루 1~2시간씩 과외체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등중학생들은 견학명목으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어 1주일간 노동을 하여야 한다.<sup>6)</sup>

대학은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공통과목으로 조선로동당투쟁사, 세계공산당투쟁사, 등을 이수해야 하며 정치경제학 전공에 따라 20~23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 라. 教員養成

북한에서의 師範教育 목적과 사명은 후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할 혁명화된 교육자를 양성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北韓의 교원양성기관은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이 있는데 각 道와 市(직할시)마다 2개씩 설치되어 있다.

제1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고등반 교원을, 제2사범대학에서는 고등중학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며, 제1·2교원대학에서는 유치원 교양원과 인민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에서는 부족한 교원충당을 위해 주간의 정규교육과 이외에 통신·야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 재교육 실시 및 단기강습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5) 위의 案, p. 7.

6) 위의 案 pp. 2~3.

북한의 主要 敎員養成機關으로는 「김형직사범대학」<sup>7)</sup>, 「김정숙사범대학」, 「평양敎育대학」 등을 들 수 있다.

### 마. 特殊敎育

북한의 特殊敎育은 과학영재敎育을 위해 各 道에 설립된 「제1고등중학교」, 革命유가족 및 특권층 자제敎育의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의 예체능전문 학교, 외국어의 중점敎育을 위한 「평양외국어학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各 道(직할시)에 설립되어 있는 제1고등중학교는 正規 고등중학교과정으로서 1983년 9월 평양제1고등중학교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에 12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주로 과학·수학·물리 분야의 과학자 양성을 위한 敎育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7年制로서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敎育기관으로 설립, 인민학교 졸업후 입학할 수 있는데 입학 자격은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로서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집단 수용되어 군사조직하에서 敎育을 받는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노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8개 外國語를 중점 敎育시키고 있다. 기타 각 市·道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은 9年制로 운영되고 있다.

---

7) 동 대학은 1946년 10월 1일 설립되어 현재 13개 기본학부에 2,500여명의 학생, 250명의 교원이 있으며 각도의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교원들을 재敎育시키는 「교원 재敎育원」이 설치되어 있다.

## 2. 文學 · 藝術

### 가. 文藝政策 및 理論

#### (1) 文藝政策의 基調

북한은 文學藝術을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sup>8)</sup>으로 규정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은 지구 위에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종국적으로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 · 로동계급화하는 중요한 역할”<sup>9)</sup>을 맡고 있기 때문에 「로동계급의 전위당」인 노동당의 지도에 따라 창작 · 보급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문학의 기본적 원리와 입장을 밝혀내는 文藝理論과 黨의 文藝政策은 동일한 것이 된다.

북한 문예정책의 기본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創作原則과 黨의 指導로 요약될 수 있다.

社會主義的 寫實主義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방법”<sup>10)</sup>으로 설명되는데, 이때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당성 · 계급성 · 인민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民族의 形式이란 “자기나라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구미에 맞는”<sup>11)</sup> 형식을 뜻한다고 설명되지만,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형식이 민족적인가 하는 反論도 있어, 민족적 형식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黨性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 각성이며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당

8)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 사업 총화보고(1970. 11)에서 김일성 연설.

9) 「문학예술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364.

10) 위의 책, P. 497.

11) 위의 책, P. 497.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sup>12)</sup>을 말한다. 이 당성은 원래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서 요구되던 黨派性이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으로 特定化되면서 黨性으로 변화된 것이다.

勞動階級性은 “로동계급의 입장과 관점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옹호함으로써 문학예술로 하여금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게”<sup>13)</sup> 하는 것이다.

북한은 “문학예술의 무계급성, 초계급성에 대한 부르조아반동작가, 예술인들의 주장은 순전히 재능들의 문학예술의 반동적 본질과 반인민적 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 구호”이며, “일정한 계급의 리해관계와 사상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예술을 위한 예술, 그 어떤 계급적 성격도 띠지 않는 초계급적이며 전인류적인 문학예술은 있어본 적이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sup>14)</sup>고 하여 모든 文學藝術은 철저히 노동계급의 입장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人民性은 “당성·로동계급성과 함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기본속성, 그의 가장 본질적 특징”<sup>15)</sup>인데,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생활과 감정을 정당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수백만 근로대중을 위하여 철저히 복무하여야 한다”<sup>16)</sup>는 것이다. 그리고 이 人民性 즉 “인민에 대한 문학예술의 복무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도록”<sup>17)</sup>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原則과 함께 黨의 指導와 統制가

12)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72; 「김일성 저작선집」3권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9), P. 159.

13) 위의 책, P. 79.

14) 위의 책, P. 80.

15) 위의 책, P. 87.

16) 위의 책, P. 88.

17) 위의 책, P. 88.

북한 문예정책의 기본이다. 문학·미술·음악·연극·영화 등 모든 문예활동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또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당의 이익과 당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 (2) 主體文藝理論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는 「현 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제하의 연설을 통해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文藝分野에서 수용, 1967년 이후 전개된 文藝理論이 主體思想에 기초한 文藝理論 즉 主體文藝理論이다.

이 主體文藝理論은 사회주의의 문예이론 源流라 할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黨性·勞動階級性·人民性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黨의 유일적 지도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야 한다고 하여 주체사상(유일사상)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主體文藝理論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작가·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 시키며 그들을 당의 문예정책 관철에로 적극 동원하여 당의 유일사상이 정확히 구현된 문학예술작품을 만들어 낼 것”<sup>18)</sup>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이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 당의 유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고…문학예술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sup>19)</sup>케 하는 근본담보라고 보고 있다. 달리 말해 전통적 사회주의 문예이론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主體思想體系내에서 재해석하여 主體思想을 유일사상으로 하는 사상체계 수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의 특징은 첫째, 주체사상이 人間の 社會政

18) 위의 책, P. 20.

19) 위의 책, 같은 페이지.

治的 생명을 강조함에 따라 주체문예이론에서도 인간의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강조하고 둘째, 문학예술작품에서의 성과를 보장하는 결정적 조건을 思想·意識에 두고 있으며, 셋째, 創作方法論으로 種子論과 速度戰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종자론은 김정일이 창안했다는 것으로, “문예학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인류문예과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불멸의 공헌”<sup>20)</sup>을 하였다고 선전된다.

종자란 文藝作品中 “소재, 주제, 사상의 밀접한 련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단일한 개념”<sup>21)</sup>으로서 作品的 기본 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속도전은 “문학예술창작에서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 것”<sup>22)</sup>이라 한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1967년 이후를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sup>23)</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 나. 文藝團體

職業藝術人の 組織體이자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이 있다. 이에 망라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은 김일성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革命文學藝術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의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20)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P. 172.

21) 위의 책, P. 175.

22) 위의 책, P. 222.

23) 류만·박종원, 「조선문학개관」(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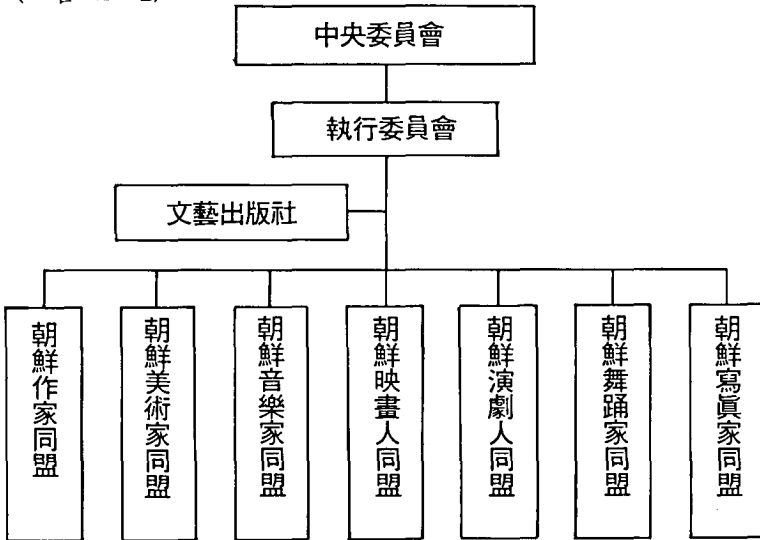
투쟁<sup>24)</sup>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예총은 1946년 3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발족되었다가 1951년 3월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개편된 조선문학예술동맹의 후신이다. 이 조선문학예술동맹은 1953년 9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임화, 이원조, 김남천, 설정식 등 南勞黨系 文藝人들의 숙청으로 해산되고 개별단체로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다 1961년 2월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몇 개의 예술동맹을 다시 망라하여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조직된 것이다.

朝鮮文學藝術總同盟機構

<그림 VI-2>



\* 출처: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698.

\* 주: 각 同盟傘下에는 分科委員會들이 있으며, 各 道에는 總同盟 支部와 部門別 同盟支部가 있다.

24)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698.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이 작가·예술가로 인정받고 이러한 종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文藝總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 하며,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당의 지시에 따라 作品을 창작해야 한다.

주체문예이론의 대두와 주체사상체계의 확립 이후엔 金日成 父子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을 그려내기 위한 집체창작이 문예총 및 각 동맹의 지도와 할당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그림Ⅵ-1>참조)

문예총과는 다른 성격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단체 등에 「예술소조」가 조직되어 있다. 이 예술소조는 思想·技術·文化의 3대혁명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문화혁명의 한 조직체가 된다. 이 예술소조는 문예총과 별개의 群衆團體로 움직이지만, 예술소조원들의 창작품들도 각 동맹의 기관지를 통해 발표되고, 이들중 더러는 동맹에 정맹원으로 가입, 작가·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 다. 分野別 現況

### (1) 文 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黨性·勞動階級性·人民性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북한의 文學은 주민들에게 「革命的 樂觀主義」와 「集團主義的 英雄主義」를 심어주고 혁명발전의 단계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sup>25)</sup> 하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요구받는다.

주체문예이론이 대두된 1967년 이후 북한 문학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령형상창조”문제를 해결한 것이다.<sup>26)</sup> 「수령형상문학」이라 지칭되는

25) 류만·박종원, 「조선문학개관」(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277.

26) 위의 책, 같은 페이지.



일련의 作品들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초인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표작이 총서 「불멸의 력사」 해방 전편 전15권의 완성이다. 이 「불멸의 력사」는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창작집단인 「4. 15창작단」에서 북한의 가장 유능한 작가들을 망라하여 집필량을 할당, 1972년부터 창작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 해방 전편 전15권의 완간을 본 것이다. 이 「불멸의 력사」는 1925~1940년까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그리고 있다.

1990년에는 불멸의 력사 해방 후편의 창작이 진행되어 제1권의 출판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주체문예이론 대두 이후 1970년대 초반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 불리우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장편소설로 개작되었다.

이것은 “은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개조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자면 본보기 작품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상예술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불후의 고전적 명작”<sup>27)</sup>들을 본보기로 내세울 수 있도록 소설로 옮긴 것이라 한다. 이들 3대 고전적 명작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연극으로 공연했던 것이라 하며, 1969~74년 사이에 세 작품 모두 장편소설, 영화, 혁명가극 등 문예의 모든 형태로 개작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북한 문학은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새로운 인간성격창조”로 “긍정적 주인공”에 의한 감화라는 「肯定典型」을 창조하였다.<sup>28)</sup> 이는 종래의 친일지주, 반혁명분자, 일제 등 고정적 惡役들이 현실성을 상실함에 따라 善惡의 二分的 대립구도로부터 긍정전형을 보다 중시하는 구도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시의 경우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수령과 지도자”에

27) 위의 책, P. 278.

28) 위의 책, P. 279.

대한 “다함없는 흙모와 불타는 충성의 마음”이 반영된 「송가」의 전면적 발전<sup>29)</sup>을 보여준다고 북한 문학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 대표작으로는 1972년 김일성의 60회 생일에 집체작으로 발표된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아버이 수령님 만수무강을 축하합니다」, 「60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한덕수) 등이 있다.

또한 1970년대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등장하여 이후,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고요」(1984, 리종렬), 「기억」(1985, 석윤기), 「아끼시는 심정」(1982, 리동후)<sup>30)</sup>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부문에서는 「위대한 탄생」(1984, 오영재), 「백두의 새날」(1982, 김철), 「한평생을 바쳐」(1976, 최영화), 「2월의 꽃바다」(1976, 리영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sup>31)</sup>

이상과 같이 주체문예이론 대두 후 북한 문학은 「수령형상문학」의 전개, 긍정전형의 창조, 김정일 우상화의 심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창작의 특징 외에 文化運動의 전개측면에서는 군중문학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당창건일, 김일성 및 김정일 생일, 김정일·김일성의 연설 등을 기념하여 전국적으로 공모되는 群衆文學賞이 다수 있어 그 입상작을 단행본으로 출판할 뿐만 아니라 입상자들의 문단데뷔에도 특혜를 주는 군중문학운동은 1982년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더욱 활기를 띠어오고 있다. 군중문학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당창건일과 김일성 생일을 기해 제한없이 공모하는 「전국군중문학상」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6.4문학상」을 들 수 있다. 특히 제1회 「6.4문학상」 수상자인 주옥양의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sup>32)</sup>는 김정일 찬양의 극치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외부의 변화요구를 반영하듯이 男女의 애정을 묘사한 작품도 등장한다. 사상과 주제는 黨과 金父子에 대한

29) 위의 책, PP. 326~26.

30) 위의 책, P. 296.

31) 위의 책, P. 334.

32) 주옥양,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평양: 문예출판사, 1984) 참조.

忠誠임에는 변화가 없으나' 줄거리를 男女의 愛情을 중심으로 한 代表作이 남대현의 「청춘송가」(1987)로서, 이는 북한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문단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은 바 있다.<sup>33)</sup>

## (2) 美 術

북한은 미술을 “조형적 언어를 가지고 현실을 사상미학적으로 파악하며 시각적 구체성, 직관적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사상정서 교양에 이바지”<sup>34)</sup> 하는 예술로 본다.

북한에서는 미술의 분야를 社會的 機能에 따라 기념비미술, 영화미술, 무대미술, 장식미술, 산업미술, 건축미술, 일반미술로 나누고 있다. 그 외에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북한은 미술을 노동과정에서 생겨나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의 미술유산에는 착취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이용된 것이 많으며 일제식민지 통치에 의해 왜곡되어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북한은 참된 미술의 전통을 抗日革命美術에서 찾는데, 김일성이 이끈 항일혁명미술이 최초로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미술이었다고 한다.<sup>35)</sup>

북한은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다”<sup>36)</sup>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당의 지도에 충실한 미술을 요구하고 있다.

33) 박용학, “청춘시절은 어떻게 보내야하는가?” 「월간 조선문학」(평양: 문예출판사, 1988. 7호) 참조.

34) 「문학예술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377.

35) 「백과전서」2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p. 866~26.

36) 「김일성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p. 427~473.

때문에 북한의 미술에는 기념비미술이라는 명칭의 目的的 作品이 많고, 선전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추상화·추상조각 등은 ‘추상은 죽음’이라 하여 배척된다. 따라서 “인간성격과 인간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그려낸 寫實畫만 존재한다.<sup>37)</sup>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유화·벽화·출판화 등이 망라되는데,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은 것이지만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을 혼합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각에는 환각·부각·투각 등의 종류가 있는데, 동상으로 대표되는 환각작품들은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많다. 특히 애국 열사릉·혁명열사릉의 군상은 사실주의적이면서도 분노와 비탄, 투쟁의 의식이 선명히 드러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工藝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만년화라고 하는 독특한 공예도 있다. 만년화는 조개껍질을 이용, 모자이크화처럼 그려 일상용품을 장식하는 일종의 자개공예이며, 만년화 작품으로 「만경대 고향집」이라는 장식화가 유명하다.<sup>38)</sup> 공예품의 창작·보급은 각 시·도에 1~2개씩 있는 미술창작사에서 담당하는데, 가장 유명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作品을 제작하는 곳은 평양 「만수대창작사」이다.

### (3) 音 樂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는 북한의 음악은 “생활과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을 따른다.<sup>39)</sup>

북한이 음악을 통한 사상교양을 강조하는 결과,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 가사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한 聲樂曲을 중요시하며,

37) 「주체리론에 기초한 문예리론」(평양: 문예출판사, 1976), P. 146 참조.

38) 「백과전서」2권, P. 639 참조.

39)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p. 1186~1187.

가사의 내용을 중시한다. 이들 노래 가사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혁명성, 노동의욕 등의 고취를 추구하며, 순수서정적인 가사는 없다.

「조선음악 600곡집」에 수록된 노래에는 가곡 아리아 190곡, 가곡 302곡, 영화주제가 108곡이 있는데, 가곡 중 80%에 가까운 232편이 직접 김일성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찬양가요까지 제작되었는데, 「김정일화가»,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노래」 등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들 노래는 주제가 선명한 가사와 따라 부르기 쉬운 평이한 멜로디, 4·4조 혹은 4·3조의 전형적 박자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요구하는 人民性 때문에 북한은 예술가곡과 대중가요를 구분짓지 않고, 영화주제가까지 가곡과 함께 다룬다.

북한의 傳統音樂은 그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다. 전통성악 중 판소리는 김일성이 특유의 탁성을 ‘씩소리’라 하여 비판한 때문에 거의 소멸되었다. 유장하고 애절한 여운을 지닌 「서도소리」도 발성의 난이성 때문에 인민적인 것이 아니라고 거부되고, 전승되는 민요나 기타 노래도 목에서 쉽게 나오는 비성이 섞인 독특한 가성으로 발성하며 부른다. 따라서 전통음악 특유의 거치르고 유장한 맛은 남아 있지 않다.

傳統 器樂에서도 악기 개량으로 음색이 달라졌다. 1962년 이후 종래 악기의 제한성(오음계)을 극복하고 아무리 복잡한 곡도 자유자재로 연주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음계개조운동을 벌여, 전통악기를 12음 반음체계로 변조시켰다. 예컨대 가야금은 명주실로 끈 줄 대신 쇠로 만든 줄을 사용하며, 부들을 없애고 현을 19현으로 늘렸다. 전통악기를 새로이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惡 혹은 와공후를 개량한 것으로 보여지는 옥류금이 제작되어 전통음악에서 필수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전통음악은 손쉬운 민요나 노동요 외에는 대중적으로 연주되지 않는지만,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육된다.

西洋音樂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연주가 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엔 대외용의 연주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외에는 연주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가요는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경제선동가요 등은 경제현장에서 연주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악기는 아코디언이나 멜로디언, 멜로디카, 관악기 등이다.

북한의 音樂家 養成은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된 제1고등중학교의 특기자 영재교육 및 예술전문학교에서 조기교육을 실시, 우수한 소질을 가진 아동은 집중 교육된다. 그 결과 북한 교향악단의 기교는 수준급이라는 평을 받으며,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 유학하는 음악인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동양인으로서서는 최초로 카라얀국제콩쿨에서 1등 없는 2등상을 받은 지휘자 김일진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 (4) 映 畫

북한은 영화를 「直觀藝術」이라 하여 어떤 예술장르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원래 북한 영화는 肯定典型과 否定典型의 대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서, 악역은 미군·일제·반당분자·지주·자본가 등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전형이 시대적 공감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김정일의 지시 아래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sup>40)</sup> 이후 절대적 악역은 없어지고 제한적 오류를 범한 사람이 긍정적 주인공의 感化로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40) 최윤섭, “부정인물형상에서 도식성을 극복하자,” 「청년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88. 4호)

북한 영화는 1950년대 千里馬運動 이후 대형화하여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시리즈 등 방대한 작품제작에 치우쳤으나, 대작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해외영화제에서 외면받자 1984년 이후 스케일은 다소 줄이는 대신 서정성·사실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인다. 신필름의 「소금」이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1987년 북한은 비동맹국가들을 대상으로 「발전도상국 나라들의 평양국제영화제」를 개최기로 결정, 그해에 개최된 제1회 영화제에서 북한영화 「도라지꽃」으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주요 映畫社로는 극영화 전문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 8예술영화촬영소, 기록영화제작사인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아동과학교육영화제작의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등이 있다. 각 촬영소내에 2~3개의 제작진이 「創作團」이란 이름으로 거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

## (5) 演 劇

북한의 연극은 영화의 등장으로 한때 쇠퇴하였지만 여전히 혁명 교양의 강력한 도구이다.

북한 연극은 항일혁명시기에 김일성이 오가자·무송 등지에서 공연했다는 「피바다」(血海),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등 항일혁명연극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41)</sup> 3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1969~74년 사이에 대규모 革命歌劇으로 각색되어 공연되기 시작한 후 더이상 연극으로는 공연되지 않는다. 그대신 1978년 6월 14일 김정일이 연극 「성황당」을 대규모 무대에다 음악·무용 등을 가미,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이후 새롭게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발전을 보게 된다.<sup>42)</sup>

41) 「문학예술사전」, p. 1078.

42) 「조선중앙방송」, 1988. 6. 14.

“김정일의 지도 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주체예술의 새전성기”<sup>43)</sup>를 열게 한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5대혁명연극으로 「성황당」, 「3인1당」, 「경축대회」, 「혈분만국회의」, 「딸에게서 온 편지」를 자랑한다.

이와같이 새롭게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꾸며진 연극들은 기존의 연극내용에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원작에 밝혀진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시켰다”<sup>44)</sup>고 선전된다.

5大革命演劇 외에 1980년대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새롭게 창조된 현대극으로는 「초석」, 「조국의 품을 찾아서」, 「이길을 간다」, 「어머니와 아들」 등이 유명하다.

#### (6) 歌 劇

영화와 더불어 북한당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公演藝術分野가 가극이다.

북한의 革命歌劇은 서양 오페라와는 약간 다르다. 우선 가극은 아리외와 함께 「節歌」라는 형식의 노래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데, 節歌란 여러개의 절로 나누어진 정형시를 하나의 곡에 맞춰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로서, 반복에 따른 강조의 효과가 크다. 이 절가가 북한 혁명가극의 기본적인 표현수단으로 되어 있다. 혁명가극은 西洋 오페라의 대화창과 대화, 레시타티브 등을 모두 절가로 바꾸었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방창이라 하여 배경합창단이 주인공의 입장, 상대자의 입장, 군중 및 관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 해석하면서 극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합창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창과 절가가 혁명가극의 表現上의 큰 특징이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무용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는데, 일반 오페라에서는 극의 효과를 위해서 혹은 줄거리 전개상 어느 정도

43) 위의 방송, 같은 날.

44) “민족자주정신을 지닌 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 혁명연극 경축대회에 대하여,” 「로동신문」, 1988. 6. 4



무용이 사용될 뿐이지만, 혁명가극에서는 무용도 합창과 마찬가지로 비중으로 사용되어 중요한 構成要素가 되어 있다.

북한 혁명가극의 시초는 항일혁명기의 연극이라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金正日의 지시로 개작한 혁명가극 「피바다」가 열었다. 이후 북한은 이 「피바다」의 제작을 기준으로 하여 웅장한 규모의 혁명가극을 속속 공연하였는데, 이로부터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피바다는 1971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初演되어, “오늘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참된 교과서가 되고 있으며 혁명적 가극예술의 불멸의 가치로, 고전적인 본보기로 되고 있다”<sup>45)</sup>고 선전된다.

「꽃파는 처녀」 역시 1972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初演하였는데, 서경·7장·중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80년대에 국내 1,000회, 국외 370회의 공연을 기록하였고, 곧 국내 1,500회 공연을 기록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sup>46)</sup>

그 외에 「한 자위단원의 운명」,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등이 대표적 혁명가극이다.

### 主要 演劇團

〈표VI-1〉

(中央)

| 團 體 名           | 人 員  |
|-----------------|------|
| 國 立 演 劇 團       | 180명 |
| 平 壤 演 劇 團       | 120명 |
| 平 壤 青 年 演 劇 團   | 80명  |
| 中 央 放 送 演 劇 團   | 60명  |
| 人 民 軍 演 劇 團     | 80명  |
| 社 會 安 全 部 演 劇 團 | 80명  |
| 鐵 道 部 演 劇 團     | 80명  |

45) 「문학예술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 901.

46) 「평양방송」, 1989. 9. 26.

(地方)

| 團 體 名             | 人 員      |
|-------------------|----------|
| 平 城 市 연 극 단       | 60명      |
| 新 義 州 市 연 극 단     | 60명      |
| 沙 里 院 市 연 극 단     | 60명      |
| 海 州 市 연 극 단       | 60명      |
| 開 城 市 연 극 단       | 60명      |
| 元 山 市 연 극 단       | 60명      |
| 咸 興 市 연 극 단       | 80명(직할시) |
| 清 津 市 연 극 단       | 80명(직할시) |
| 江 界 市 연 극 단       | 60명      |
| 惠 山 市 연 극 단       | 60명      |
| 人 民 軍 各 軍 團 연 극 단 | 30~40명   |

## 主要 歌劇·歌舞·藝術團

〈표VI-2〉

(중앙)

| 團 體 名         | 內 容   |
|---------------|---|
| 피 바 다 가 극 단   | 1971년 7월 17일 창립,<br>인원380명                                    |
| 萬 壽 臺 예 술 단   | 1946년 평양가극단으로 창립,<br>1969년 9월 27일 만수대 예술단<br>으로 개칭, 인원 약 300명 |
| 平 壤 예 술 단     | 1972년 모란봉예술단을 개칭,<br>인원 약 300명                                |
| 平 壤 青 年 가 극 단 | 인원 약 200명   |
| 國 立 가 무 단     | 인원 약 200명   |
| 國 立 가 극 단     | 인원 약 200명   |
| 鐵 道 部 예 술 단   | 인원 약 150명   |
| 人 民 軍 협 주 단   | 1947년 창립, 인원 약 180명   |

| 團 體 名             | 內 容       |
|-------------------|-----------|
| 社 會 安 全 部 예 술 단   | 인원 약 150명 |
| 國 立 교 향 약 단       | 인원 약 150명 |
| 國 立 예 술 영 화 예 술 단 | 인원 약 160명 |
| 放 送 예 술 단         | 인원 약 160명 |
| 平壤學生少年예술단         | 인원 약 300명 |

(地方)

| 團 體 名         | 人 員    |
|---------------|--------|
| 平 安 北 道 가 무 단 | 80~90명 |
| 平 安 南 道 가 무 단 | 80~90명 |
| 黃 海 北 道 가 무 단 | 80~90명 |
| 黃 海 南 道 가 무 단 | 80~90명 |
| 江 原 道 가 무 단   | 80~90명 |
| 咸 境 南 道 가 무 단 | 80~90명 |
| 咸 境 北 道 가 무 단 | 80~90명 |
| 慈 江 道 가 무 단   | 80~90명 |
| 兩 江 道 가 무 단   | 80~90명 |
| 開 城 市 가 무 단   | 80~90명 |
| 海 軍 협 주 단     | 80명    |
| 空 軍 협 주 단     | 80명    |

### 3. 言論 · 出版

#### 가. 言論政策

북한에 있어 言論은 “金日成의 교시와 金正日의 방침을 해설 선

진하고 옹호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sup>47)</sup>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북한 憲法 第53條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고 언론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 言論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sup>48)</sup> 하여야 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밑에 대중의 지도자 및 안내자 또는 교사로서만이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北韓의 모든 언론매체에 부과된 으뜸가는 임무는 黨 정책 및 혁명사업을 선전·옹호하는데 있다.

## 나. 言論現況

### (1) 新聞

北韓에는 우리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문은 없고 다만 勞動黨·政權機關·社會團體들이 發行하는 機關紙가 있을 뿐이다. 즉 勞動黨의 機關紙로서 노동신문, 最高人民會議와 政務院의 機關紙인 민주조선, 社勞靑의 機關紙인 노동청년등 3個 中央紙와 各 道黨委員會에서 發行하는 10個 地方紙가 있다.

이상의 13個 日刊紙외에 공장·기업소 발행의 공장신문과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등의 하급신문과 해외홍보용인 영·불어版 Pyong Yang Times가 있다. 그 밖에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과 같은 政務院의 各部에서 발간하는 기관지들이 있다.

47) 「백과전서」6권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292.

48) 위의 책, p. 293.

주요 신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노동신문

勞動黨 中央委員會 기관지로 노동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946년 1월 1일 북조선공산당 기관지인 「정로」와 신민당 기관지인 「전진」을 합쳐 발간되었다.

북한 言論의 「총참모부」라 지칭되고 있는 이 신문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며 당 건설의 기본노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진당에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강화하고 당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sup>49)</sup>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신문은 金日成의 혁명사상을 선전하며 주민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지도해가는 주체사상 일색화 사업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되고 따라서 黨의 철저한 지도·통제를 받는다. 노동신문은 편제상 黨의 선전선동부와는 별도로 구성되어 黨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다.

노동신문은 현재 연중무휴로 發行되며 하루 걸지 4면과 간지 2면 등 總 6면을 발행하고 있다.

노동신문사의 기구와 편제는 최고책임자로 책임주필이 있으며 책임주필은 자동적으로 朝鮮記者同盟 委員長職을 겸한다. 책임주필 밑에 3명의 副主筆이 있고 그 아래 편집국과 논평원실이 있으며 또 책임주필 밑에 편집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주필, 부주필, 편집국장, 부국장, 부장 등 12~15명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신문제작에 따르는 방향을 논의하고 논평·사설·기사의 결정 및 신문사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임무 및 책임주필이하 社의 간부를 형식상으로나마 선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노동신문사는 신문발행 뿐만 아니라 주요사설논집, 국내국제주

49) 위의 책, p. 450.

요일지, 노동통신원 등의 출판물을 發刊하고 있다.

#### (나) 민주조선

北韓의 最高主權機關인 最高人民會議 상설회의와 최고주권기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政務院의 기관지이다.

민주조선은 1945년 8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직속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후 1948년 9월부터 현재의 위치로 고정되었다.

민주조선은 행정부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그 편집내용에 있어 黨 관계기사 보다는 行政面의 기사가 비교적 많이 실리고 있다.

민주조선은 “인민정권 일군들과 국가경제기관일군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sup>50)</sup>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민주조선사에는 책임주필, 부주필 2~3명과 편집국, 인민행정부, 문화예술부 등 12개 부서와 논설위원실이 있다.

민주조선에 실리는 기사들은 朝鮮中央通信社와 노동신문 보도부,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 (다) 노동청년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中央委員會의 기관지인 노동청년은 1946년 11월 1일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창립과 함께 발간하기 시작한 「민주청년」이라는 명칭의 신문을 1964년 5월 17일 朝鮮民主青年同盟 第5次大會에서 동 연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도 지금의 「노동청년」으로 정했으며 「금성청년출판사」에서 日刊紙로 발간하고 있다.

50) 위의 책, pp. 902~903.

노동청년은 “자라나는 새세대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그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고무 추동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세계사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는데”<sup>51)</sup> 그 임무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년은 청소년들이 당의 방침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의 일부를 담당할 당의 도구이다.

#### (라) 도 일 보

각 道黨委員會 기관지로 道内の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지방신문이다.

도일보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제때에 널리 소개 선전함으로써 道안의 근로자들을 보다 큰 노력적 성과와 위훈에로 고무 추동하는 것”<sup>52)</sup>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도일보는 일간지로 4면이 발간되고 있으며 발행부수는 대개 4~5萬部 정도이다.

道日報의 記事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黨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사무적·기술적인 면에서는 政務院 出版總局의 지시를 받는다.

北韓에서 發刊되는 도일보는 평남일보(1950. 12. 12), 평북일보(1945. 11. 27), 함남일보(1945. 11. 15), 함북일보(1945. 11. 20), 자강일보(1949. 3. 11), 량강일보(1955. 1. 1), 강원일보(1945. 12. 28), 황남일보(1945. 9. 6), 황북일보(1945. 9. 6), 개성신문(1952. 2. 19) 등 10개가 있다.

#### (2) 放 送

##### (가) 라디오 放送

1945년 10월 14일 북한은 金日成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한 「조

51) 위의 책, p. 453.

52) 「백과전서」 2권, pp. 212~213.

국개선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방송하기 위해 일제하의 평양 방송국 기능을 정비하여 조선중앙방송국이라 개칭하고 500W의 출력으로 일부 북한지역에 방송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북한에 있어 放送事業의 시발이었다.

1955년 4월 9일에는 방송시설 확장계획의 일환으로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평양중앙방송의 出力을 150KW로 대폭 강화하고 다시 300KW로 증강시켰으며 전후 평양시의 주요 가로들과 직장구락부, 각도 시군소재지와 노동자가구 등지에 유선방송을 설치했다.

또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그 산하에 평양을 비롯하여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신의주, 개성 등지에 방송위원회를 두고 평양 방송의 중계방송과 해당지역 방송을 진행했다.

1957년에는 각 방송국들의 시설정비와 기술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사리원, 강계, 해산방송국의 무선방송출력이 증대됨에 따라 방송의 청취지역이 확장되었다.

유선방송시설도 확장되어 234개의 농촌과 뚝가 새로 유선망에 망라되었고 2만대의 스피커가 증가되었다.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道·市·郡까지 연결되어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평양 방송을 중계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이와 같은 放送體系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를 회수하여 다이얼을 고정시킴으로써 평양에서 방송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송도 들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1967년 12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제1중앙방송(300KW), 제2중앙방송(500KW)으로 분리하여 「제1중앙방송」은 대내방송을, 「제2중앙방송」은 대외와 대남방송을 담당하도록 했다.

1970년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방송, 제2방송, TV방송, 대외방송을 조직하여 각 道(직할시)와 市·郡에 지방방송위원회를 설치했고 다시 1972년 11월 10일 새벽 5시를 기해 조선중앙제1방송은 조선중앙방송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正規放送인 中央放送이나 평양방송과는 달리 黨 비서국 대남사



업부에서 관장 운영하고 있는 대남흑생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은 1967년 3월 평양 순안에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으로 개설되는데 이어 1969년 들어와서는 南韓에 「통일혁명당」이 결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의 명칭을 「통일혁명당목소리방송」으로 개칭했으며 1985년 7월 현재의 방송 명칭으로 다시 고쳤다.

1989년 1월 1일부터 방송이 시작된 「평양FM방송」은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 방송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현재 北韓은 이 4종류의 라디오방송 이외에 10개의 지방방송국<sup>53)</sup>과 10개의 유선방송국, 200개의 郡 · 區域방송국과 4,300여개의 방송실이 있다.

#### (나) TV放送

北韓은 1961년 9월 11일 勞動黨 第4次 黨大會 이후 7개년계획의 일환으로 TV방송국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1963년 8월 15일 완공 목표하에 1962년 착공했으나 소련의 원조부진으로 지연돼 1963년 3월 시험방송만을 실시했다.

1966년 8월 이후 소련으로부터 7개년계획에 대한 원조가 재개되어 건설이 활발해짐으로써 1969년 4월에 「조선중앙TV방송국」을 완공 · 개국하여 5KW출력으로 정규 黑白放送을 방영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1971년 4월 15일 對南宣傳用으로 설립한 「개성TV방송국」을 개국했다.<sup>54)</sup>

TV방송국을 개국한 북한은 TV수상기의 보급과 방송요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日本, 프랑스 등지에 기술자를 파견, 기술을 습득하게 한 후 연간 TV수상기 1萬여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추게 된 이후 1989년말 현재 24萬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1970년 4월 最高人民會議 第4期 4次會議는 1969年度 예산결산과

53) 10개의 지방 방송국은 해주, 사리원, 개성, 원산, 강계, 혜산, 남포, 신의주, 함흥, 청진 등이다.

54) 「조선노동년감」(1972), p. 350.

1970年 예산정책에서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생활을 위해 많은 TV수상기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1970년 11월 5次 黨大會에서 金日成은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TV방송망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의 텔레비전화를 실현하도록 할 것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sup>55)</sup> 그후 1971년에 北韓은 全國의 텔레비전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식령, 황해, 원산, 자강도일대에 중계탑 건설을 벌여 黨 5次大會 이후 1年内에 TV수신 가능지역을 전국적으로 76%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체신부문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앞으로 3년내에 100%가 TV를 볼 수 있게 중계소 건설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

北韓은 1973년에 제작 착수하여 1974년 4월 15일 金日成의 63回生日을 계기로 북한 유일의 對內用 TV방송인 조선중앙TV방송의 컬러방송을 실시했다.

1980年代들어와 평양지방방송인 「만수대TV방송국」을 개국, 현재 3개의 TV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다.

#### (다) 放送體系 및 組織

북한의 放送은 黨과 政務院의 二元體制로 되어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政務院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黨과 政務院의 지도·감독에 따라 북한의 放送을 관장하고 있는 방송기관으로 同 委員會의 委員長은 黨에서 임명하고 조직편제상으로는 政務院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 放送의 內容에 대해서는 黨 선전선동부와 대남사업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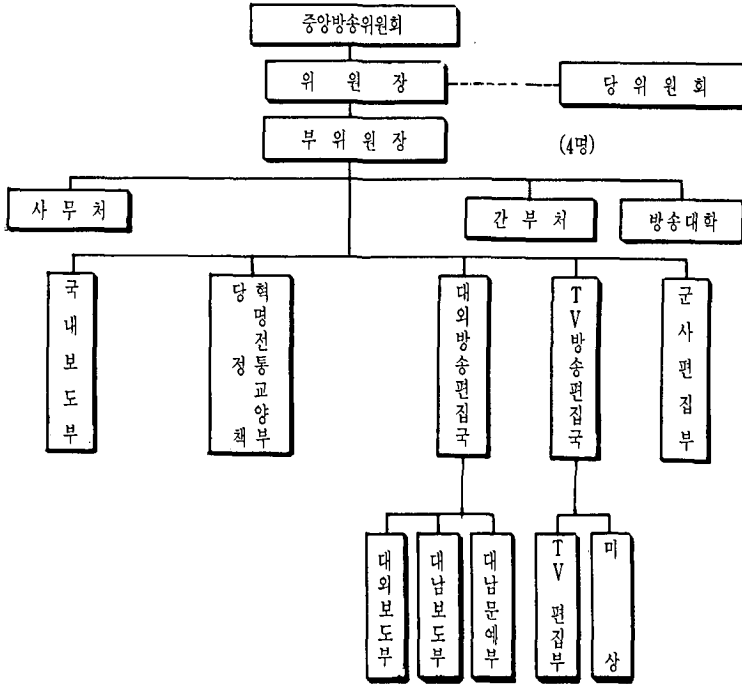
北韓의 放送이 二元體制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政務院에 속해 있고 政務院의 체신부가 주관하여 각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관리 및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放送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는 黨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55) 「로동신문」 1970. 11. 14.



朝鮮中央放送委員會 組織

<그림 VI-4>



(3) 通 信

북한 유일의 國營 通信社인 「조선중앙통신사」는 1946년 12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으로 「북조선통신사」로 발족했다.

그후 1948년 10월 12일 內閣의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勞動黨 및 政務院의 대변기관으로 존속해 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여타 언론매체와 같이 그 임무에 있어서도 “모든 사회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수적인 임무로서는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과 정부의 로선과 정책, 수령님의 영도의 혁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내외에 광범위하게 소개 선전하는데”<sup>56)</sup>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통신사 자체의 책임자는 사장이나 통신사내에는 黨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政治局이 있어서 사실상 통신사내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통제하고 黨의 政策과 지시에 합치되도록 지도·감독한다.

부사장은 해외 및 각 도의 지부관계 업무와 사무적인 분야만을 책임지고 있고 통신내용은 주필이 담당하고 있다.

주필은 2명의 부주필의 도움을 받아 對内外 보도기사의 취재, 편집, 제작을 지도·감독하고 그밖의 통신사가 발행하는 출판물의 내용 작성에 책임진다. 통신사의 편제상 특이한 점은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처럼 「남조선 보도편집국」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통신사는 일간 조선중앙통신, 사진통신, 영어통신, 러시아어통신, 프랑스어통신, 스페인어통신 등의 통신과 「조선중앙연감」을 비롯한 대내외 선전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른 매스미디어에 뉴스를 공급하는 한편 매일 노동신문개관 또는 노동신문편집소개라는 것을 내보내고 있다.

## 다. 出 版

북한의 출판사업은 勞動黨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의 무기인데 金日成은 出版物의 성격에 대해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sup>57)</sup>라고 規定하고 있다.

北韓은 金日成의 이러한 「敎示」에 따라 出版活動에 있어 다음 3

56) 「백과전서」4권, p. 568.

57) 「김일성저작선집」10권, p. 296.

가지 原則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 당의 지도 밑에 출판보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며,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다.<sup>58)</sup>

北韓은 이상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出版物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발양할 수 있고 보도성과 정론성, 과학성과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出版社로서는 사상혁명과 관련된 圖書出版을 주로 하는 조선노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등과 科學技術圖書를 출판하는 사회과학출판사, 과학원출판사, 문예작품의 도서만을 취급하는 문예출판사, 사전을 출판하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이 있다. 또한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教育委員會 산하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와 해외 선전책자의 출판을 하고 있는 외국문출판사가 있다.

雜誌로는 勞動黨의 理論誌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문학, 조선무역, 대중과학, 조선예술등 각 분야별로 30여종을 발행하고 있다.

이중今日の 朝鮮, 조선무역, 천리마 등 8종은 外國語版으로서 해외에 배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문제 시사전문 월간지인 국제생활을 창간, 발행하고 있다.

## 4. 體 育

### 가. 體育政策

북한의 체육은 주민의 思想教養의 일환으로, 또한 軍事力 강화의

58) 「백과전서」 5권, p. 108.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sup>59)</sup>

즉 북한은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sup>60)</sup>으로 정의하고 있어 手段的 價値 측면에서 체육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에 따라 북한의 體育政策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통한 노동과 국방에의 기여,<sup>61)</sup> 학교체육의 전문화 및 1인1技의 소유,<sup>62)</sup> 체육에서의 「사상·투지·속도·기술전」 방침 관철<sup>63)</sup> 등에 基調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육의 기본정책은 체육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그리고 국민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指導·養成機關

북한의 체육정책은 國家體育委員會에서 전반적으로 지도·통제·관장하고 있다. 국가체육위원회는 1945년 10월 교육성 산하 「조선체육동맹」으로 발족하여, 1954년 11월 내각 직속 「조선체육지도위원회」로 독립한데 이어 1989년 6월에는 현재의 「국가체육위원회」로 개칭되었다.

국가체육위원회는 黨의 지도하에 국내외 체육경기 조직 및 각종

59) 북한 헌법 제47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60)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604.

61) 1946. 10. 6 전국체육인대회에서 金日成 연설.

62) 「로동신문」, 1972. 7. 11.

63) 「근로자」(평양: 근로자사, 1986. 12호)





북한의 專門體育人 養成機關으로는 중앙체육학원과 평양체육대학, 각도의 체육전문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체육학부 등이 있으며, 기타 체육과학 연구기관도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앙체육학원은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며, 기타 각급 체육학교도 졸업후에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할 능력과 한가지 이상의 경기심판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 北韓 體育團 및 選手團 現況

〈표 VI-3〉

| 體 育 團       |       | 選 手 團      |       |
|-------------|-------|------------|-------|
| (1) 4·25    | 體 育 團 | (1) 平 壤 市  | 選 手 團 |
| (2) 2·8     | 體 育 團 | (2) 開 城 市  | 選 手 團 |
| (3) 제 비     | 體 育 團 | (3) 兩 江 道  | 選 手 團 |
| (4) 매 봉 산   | 體 育 團 | (4) 慈 江 道  | 選 手 團 |
| (5) 월 비 산   | 體 育 團 | (5) 함 북    | 選 手 團 |
| (6) 갈 매 기   | 體 育 團 | (6) 함 남    | 選 手 團 |
| (7) 鋼 鐵     | 體 育 團 | (7) 平 南    | 選 手 團 |
| (8) 機 關 車   | 體 育 團 | (8) 평 북    | 選 手 團 |
| (9) 勞 動 者   | 體 育 團 | (9) 黃 南    | 選 手 團 |
| (10) 압 륜 강  | 體 育 團 | (10) 황 북   | 選 手 團 |
| (11) 오 성 산  | 體 育 團 | (11) 강 원 도 | 選 手 團 |
| (12) 豆 滿 江  | 體 育 團 | (12) 체육대학  | 選 手 團 |
| (13) 반 룡 산  | 體 育 團 | (13) 大 同 江 | 選 手 團 |
| (14) 묘 향 산  | 體 育 團 | (14) 독 로 강 | 選 手 團 |
| (15) 초 병    | 體 育 團 | (15) 송 악 산 | 選 手 團 |
| (16) 번 개    | 體 育 團 | (16) 봉 화 산 | 選 手 團 |
| (17) 千 里 馬  | 體 育 團 | (10) 장 수 산 | 選 手 團 |
| (18) 普 通 江  | 體 育 團 | (18) 대 덕 산 | 選 手 團 |
| (19) 해 양    | 體 育 團 |            |       |
| (20) 인민군중경기 | 體 育 團 |            |       |

한편 직업적인 체육인들은 각각 體育專門機構인 각종 체육단 및 선수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현재 이같은 體育團 및 選手團은 북한내에 약 38개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다. 主要 體育大會

북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體育大會는 김일성·김정일 생일, 노동당 창건일, 정권창건 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체육행사를 통해 소위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黨의 方針을 구현시키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주요 체육대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主要 定期體育大會

〈표 VI-4〉

| 大會名                    | 目的                          | 創設 및 開催                 | 規模 및 種目   | 備考(87년도개최현황)                           |
|------------------------|-----------------------------|-------------------------|---|--|
| 「白頭山賞」<br>체육축전         | 김정일<br>생일(2.16)<br>기념       | • 1977년 창설<br>• 매년 2~3월 | • 각도·시 체육선수단<br>• 축구·복싱 등 30여<br>종목<br>* 동계종목 포함                        | • 2.3~3.10<br>• 평양, 함흥, 남포,<br>원산, 삼지연 |
| 「萬景臺賞」<br>體育祝典         | 김일성<br>생일(4.15)<br>기념       | • 1969년 창설<br>• 매년 4~5월 | • 각도 및 중앙체육<br>선수단<br>• 육상·수구 등 30여<br>종목                               | • 4.7~5.28<br>• 평양, 함흥, 원산,<br>남포      |
| 「보천보해불<br>상」체육경기<br>대회 | 보천보전투<br>승리(1937.<br>6.4)기념 | • 1960년 창설<br>• 매년 6~7월 | • 각도·시 체육선수단<br>및 각지 체육구락부원<br>• 무선통신·낙하산 등<br>국방체육과 육상·<br>씨름 등 30여 종목 | • 6.4~7.31<br>• 혜산                     |

| 大會名                      | 目 的              | 創設 및 開催                   | 規模 및 種目                                     | 備考 (87년 개최 현황)                               |
|--------------------------|------------------|---------------------------|---|--|
| 전국체육 구<br>락부생 체육<br>경기대회 | 신인선수<br>발굴       | • 1982년 창설<br>• 매년 8월     | • 전국체육구락부생<br>• 축구·무선통신 등<br>200여 종목        | • 8.10~8.14<br>• 평양, 남포                      |
| 공화국창건<br>기념 체육<br>경기대회   | 정권창건<br>(9.9)기념  | • 1977년 창설<br>• 매년 9월     | • 각도·시 체육선수단<br>• 사격·수영 등 30여<br>종목         | • 9.1~9.25<br>• 평양, 신의주, 함흥<br>청진            |
| 黨創建紀念<br>體育競技<br>大會      | 당창건<br>(10.10)기념 | • 1975년 창설<br>• 매년 10월    | • 각도·시 및 중앙<br>체육선수단<br>• 육상·축구 등 40여<br>종목 |  |
| 종목별<br>공화국선수<br>권대회      | 우수선수<br>발굴       | • 1979년 창설<br>• 매년 10~11월 | • 축구·수영 등<br>40여 종목                         | • 10.3~11.22<br>• 평양, 남포, 신의주,<br>해주, 개성, 함흥 |

\* 출처: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및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8) 등에서 발췌 정리.

## 라. 體育施設

북한은 체육의 大衆化·生活化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의 건설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평양의 청춘거리에 綜合體育團地인 안골체육촌을 건설한데 이어 능라도, 양각도 등에도 국제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체육시설은 평양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그 밖에도 남포를 비롯 각도에 3~5만명 수용능력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5년 3월 삼지연에서 개최되는 제3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남포태산·북포태산에 「동계체육촌」을 건설중

에 있다.

현재 북한의 주요 室內體育館 및 屋外競技場 그리고 종합체육단 지인 안골체육촌의 시설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室內體育館

〈표 VI-5〉

| 名稱                           | 施設内容   | 備考   |
|------------------------------|--|--|
| 平壤體育館<br>(평양시 모란봉구<br>역 신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1973.4.8</li> <li>• 좌석 : 20,100석</li> <li>• 용도 : 배구·농구·축구·탁구·체조 등 11개 종목의 실내경기 및 군중집회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최대의 실내 체육관</li> <li>• 1979년 4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개최</li> </ul> |
| 平壤水上館<br>(평양시 보통강<br>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1982.4.7<br/>(1981.12.6 완공)</li> <li>• 좌석 : 6,000석</li> <li>• 용도 : 스케이팅·아이스하키·피겨 스케이팅, 기타 배구·농구·탁구장으로 활용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층 원추형 건물</li> </ul>  |
| 蒼光院水泳場<br>(평양시 보통강<br>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장 : 1980.3.21</li> <li>• 좌석 : 2,000석</li> <li>• 용도 : 수영·수구·다이빙 등 국제 경기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기록은 1/1,000초까지 측정 가능</li> </ul>                               |

\* 출처 : 「백과전서」(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참조.

### 屋外競技場

〈표 VI-6〉

| 名稱                            | 施設内容  | 備考  |
|-------------------------------|---|---|
| 金日成競技場<br>(평양시 모란봉<br>구역 개선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1982.4.11<br/>(1981.10.20 완공)</li> <li>• 수용능력 : 10만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래의 「모란봉 경기장」을 확장 개축후 1982년</li> </ul> |

| 名 稱                       | 施 設 內 容  | 備 考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축구·육상·집단체조 및 각종 군중집회 장소로 활용</li> <li>• 기타 : 인조잔디시설 및 야간경기 가능, 나이트시설</li> </ul>   | 4월 10일부로 「김일성경기장」으로 개칭       |
| 5월1일 競技場<br>(평양시 능라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1989.4.30</li> <li>• 수용능력 : 15만명</li> <li>• 용도 : 육상·축구, 기타 각종 체육 행사의 메인스타디움</li> <li>• 기타 : 인조잔디, 야간경기 가능, 대규모 전광모니터 설치, 프레스시설 구비</li> </ul> | • 「평양축전」에 대비 건설, 평양축전 개·폐회식장 |
| 羊角島蹴球競技場<br>(평양시 양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 1989.4.</li> <li>• 수용능력 : 3만명</li> <li>• 용도 : 축구·육상경기장으로 활용</li> <li>• 기타 : 인조잔디, 기자실 등 시설구비</li> </ul>                                      | • 「평양축전」에 대비 건설              |
| 東平壤競技場<br>(평양시 동대원 구역 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 1960.</li> <li>• 수용능력 : 4만명</li> <li>• 용도 : 축구·육상 등 종합경기장</li> </ul>   |                              |

\* 출처 : 「백과전서」 및 「북한방송」에서 발췌 정리.

#### 綜合體育團地

〈표 VI-7〉

| 名 稱                      | 施 設 內 容   | 備 考                       |
|--------------------------|---|---------------------------|
| 안골체육촌<br>(평양시 만경대 구역 안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 1988.8.</li> <li>• 수용능력 : 5만명</li> <li>• 용도 : 육외종합운동장 1개, 실내체육관 9개로 구성<br/>〈육외종합운동장〉<br/>- 청춘거리경기장(25,000명 수용)<br/>〈실내체육관〉</li> </ul> | • 「평양축전」에 대비하여 건설된 종합체육단지 |

| 名 稱                         | 施 設 内 容   | 備 考   |
|-----------------------------|---|---|
| 안골체육촌<br>(평양시 만경대<br>구역 안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핸드볼경기장(2,500명 수용)</li> <li>- 탁구경기장(3,000명 수용)</li> <li>- 경경기장(2,000명 수용)</li> <li>- 중경기장(4,000명 수용)</li> <li>- 배트민턴경기장(3,000명 수용)</li> <li>- 수영경기장(2,100명 수용)</li> <li>- 역도경기장(2,000명 수용)</li> <li>- 농구경기장(2,000명 수용)</li> <li>- 배구경기장(2,000명 수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축전」에<br/>대비하여 건설<br/>된 종합체육<br/>단지</li> </ul> |

\* 출처 : 「북한방송」 보도내용 종합 정리.

## 5. 宗 教

해방전 북한에는 基督教, 天主教 등 西方宗教가 먼저 전래되었고, 佛敎, 天道敎 등 傳統宗教도 敎勢가 성하여 住民들의 意識과 生活 속에 宗教의 영향이 깊숙이 미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해방 이후 북한에는 金日成의 그릇된 宗教觀과 이에 따른 왜곡된 宗教政策으로 宗教活動이 서서히 위축되어 갔고 1958년까지 완결되었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개혁과 함께 종교가 말살되고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宗教 자체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북한 宗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金日成의 宗教觀은 김일성 자신이 “宗教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들을 기만하고 착취·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sup>64)</sup>라고 발언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 해방당시 北韓 宗教實態

〈표 VI-8〉

(1945)

| 區 分 | 教 會 數                                | 信 者 數 | 備 考                        |
|-----|--------------------------------------|-------|----------------------------|
| 基督教 | 1,400여개<br>(평양 70개)                  | 12만명  | 평양인구 40만명중<br>2만명 신자       |
| 天主教 | 3개 교구, 50여개<br>성당·수도원 등<br>(전국 8개교구) | 5만명   | 3개 교구: 평양교구,<br>함흥교구, 덕원교구 |
| 佛 教 | 9개 대본산, 400여개<br>말사                  | 3만5천명 | 승려 1,600명                  |
| 天道教 |                                      | 286만명 | 전국 440만 신자의 66%            |

\* 출처: 「조선중앙년감」(1946), 참조.

또한 북한의 宗教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는 그들이 출판한 政治辭典에 수록된 宗教에 관한 해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표 VI-9〉와 같다.

북한의 宗教政策 전개과정에는 당국의 대대적인 反宗教 선전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북한은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sup>65)</sup>라는 반종교책자를 수십만부 발간, 이를 북한전역에 배포하였고 「성화당」, 「종치기 노인의 생애」, 「김복사의 일가」 등 反宗教 연극·영화를 대대적으로 공연 또는 상영하여 北韓 住民意識속에 宗教는 미신일 뿐 아니라 反人民的 독소임을 주입시킨 것이다.

64) 「김일성저작선집」 1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P.173.

65) 정하철,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해야 하는가」(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9)

## 北韓 政治辭典의 宗教 解說

〈표 VI-9〉

| 區 分             | 解 說   |
|-----------------|---|
| 宗 教             | 自然 및 社會的 힘이 사람들을 支配한다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그릇되게 반영된 意識形態, 즉 인간의식에 현실이 幼想的으로 歪曲되어 反映된 것이다.   |
| 基 督 教           | 現實世界에 대한 幼想的이며 왜곡된 초자연적 힘에 대한 信仰에 기초하고 있다. 基督教은 被搾取勤勞 大衆의 解放鬭爭을 抹殺하고 搾取制度를 永久化하기 위한 搾取階級の 精神的 道具이다.   |
| 佛 教             | 佛敎은 階級社會에서 大衆에게 가해지는 社會的 고통의 원인을 階級的 壓迫과 搾取에서 찾는 대신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에 있다고 함으로써 지배계급의 搾取의 本性을 가리우고 인민대중의 鬭爭意識을 마비시키고 있다. 오늘 佛敎은 共和國 북반부에서는 이미 없어졌으나 南朝鮮에서는 地主, 地主, 地主, 親日親美派, 反動官僚 輩들의 비호밑에 인민들의 反美鬭爭意識을 마비시키는 데 적지않은 害毒의 作用을 높고있다. |
| 天 道 教<br>(東學思想) | 社會가 腐敗하게 된 원인을 인간의 道德的 타락에 귀착시키며 社會를 구원하는 길을 모든 사람들이 東學思想을 믿고 自己修養을 하여 道德的으로 완성하는데서 찾는 觀念論的이며 宗教的인 社會歷史觀이다.   |

\* 출처 :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그런데 北韓에 다시 宗教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 7. 4南北共同聲明이 발표되고 南北會談과 상호방문이 실시된 것과 때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 당시 北韓의 宗教政策은 南韓 宗教人과의 統一戰線을 형성하기 위한 宗教團體의 結成 및 活動에 목적을 두었지 宗教活動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 北韓의 宗教 現況

〈VI-10〉

(1990년 現在)

| 區 分 | 團 體  | 信者數       | 教職者                                       | 宗教施設  | 備 考   |
|-----|--|-----------|---|---|---|
| 基督教 | 朝鮮基督教徒<br>聯盟(委員長<br>: 강영섭)                 | 1萬<br>餘名  | • 牧師 :<br>20명                             | • 1988. 11<br>봉수교회<br>완공<br>• 칠골교회건<br>설중<br>* 500여 개의<br>가정 교회 | • 1989. 3<br>復活節예배<br>(봉수교회)<br>• 1989. 4<br>南北教會雙方<br>協議會 開催<br>(美國워싱턴)  |
| 天主教 | 朝鮮天主教人<br>協會(委員長<br>: 장재철)<br>* 1988. 6 결성 | 800<br>餘名 | • 神父·修<br>女 없음<br>• 信者代表<br>박경수<br>(장충성당) | • 1988. 10<br>장충성당<br>완공  | • 現在 로마에<br>2명이 留學·<br>司祭授業중  |
| 佛 教 | 朝鮮佛教徒<br>聯盟(委員長<br>: 박태호)                  | 1萬<br>餘名  | • 僧侶 :<br>300명<br>• 모두<br>帶妻僧             | • 寺利<br>60餘個  | • 1989. 1<br>成道節紀念法會<br>• 1989. 3<br>열반절기념법회<br>• 1989. 8<br>祖國統一祈願<br>法會 |
| 天道教 | 朝鮮天道教會<br>中央指導委員<br>會                      |           |   |   | • 1989. 4<br>天道教創道<br>129돌 천일절<br>行事 進行                                   |

이 무렵 북한에서 새로 제정한 憲法 第54條를 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신앙의 자유보다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宗教가 부활되지 못했다고 여겨진다. 北韓에 미미하나마 다시 宗教 활동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인데, 그 계기는 海外僑胞 宗教人들의 빈번한 訪北, 國內 宗教人의 對北 宣敎의 영향이었다.

최근 北韓은 僑胞 宗教人을 적극 초청하는 가운데, 이들과 宗教人會談을 개최하고 海外에서 反韓宗教人集會를 갖는 등 統一戰線 戰略에 치중하는 한편 사찰복원과 법회 개최, 성당·교회의 건립과 宗教行事を 벌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北韓의 宗教는 住民들과는 관계가 먼 하나의 명분상, 형식상의 宗教에 불과한데, 실례를 들면 박경수 「朝鮮天主教人協會」 事務總長은 訪北 宗教人과 外信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수령을 통해 우리 생활에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고, 장충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봉수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나 北韓의 목사가 설교나 의식을 몰라 재미교포 목사에게 설교 테이프를 요구하며 그대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佛敎行事에서도 宗教儀式을 몰라 法會는 政治集會式으로 하고 있었고 스님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 「중선생」으로 부르고 있었다 한다.

1990년 현재 北韓의 宗教는 基督教 신자 1만명, 佛敎信者 1만명을 비롯하여 800여명의 天主教信者, 약간의 천도교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宗教現況은 <표 VI-10>과 같다.

## 6. 歷 史

北韓에서의 歷史인식은 北韓의 政治狀況變化와 맞물려 변화해

왔다. 歷史란 그 자체가 현실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므로 歷史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주도적 政治勢力的 판단과 利害에 직결된다. 특히 북한은 歷史認識에 있어 맑스-레닌적 唯物史觀의 적용을 둘러싸고 「宗派性」을 분쇄하는 反宗派鬭爭을 수차 경험하였으며, 이 종파투쟁은 反金日成세력 숙청과 평행되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시기별로 출판된 歷史書의 史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 歷史認識 변화에 따라 북한 歷史思想史를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해방~1950년까지로, 이때까지 북한 역사학계는 김일성의 지배력이 약했고 최창익·백남운 등 좌익 인텔리들의 주도하에 있었으므로 맑스의 史觀인 史的 唯物論을 歷史研究의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이 시기의 代表作이 1949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이다.

제2기는 1950~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심각한 思想鬭爭과 숙청의 시기로서 최창익·백남운이 反宗派鬭爭으로 숙청되고 歷史認識기초는 맑스-레닌의 唯物史觀에 덧붙여 抗日武裝鬭爭의 革命傳統이 추가된 것으로 確立된다. 이리하여 이 시기의 투쟁을 결산하고 김일성의 혁명전통에 입각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정리한 것이 19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 1962년의 개정 「조선통사」이다.

제3기는 196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主體思想이 唯一思想으로 심화·확립되어감에 맞추어 歷史認識의 기초를 主體思想에 두는 것이다. 1970년의 「력사사전」, 1977년 「조선통사」 2차개정판, 1977년 「조선로동당 략사」, 1982년의 「조선전사」, 1987년 「조선통사」 3차개정판 등은 주체사상의 심화를 반영한다.

북한 歷史認識의 출발점이 되는 맑스-레닌주의적 역사학은 “인류력사를 무엇보다도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의한 사회제도의 합법적 교체과정으로 보며, 인민대중을 역사의 창조자로 규정하고 계급사회 이후의 사회력사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을 계급투쟁”<sup>66)</sup>이

66) 「력사사전」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622.

라고 보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역사학이 북한에서 구현된 것은 “김일성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역사학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sup>67)</sup>고 평가하고 있다.

즉 북한의 역사학은 맑스-레닌의 사적유물론과 계급투쟁론을 기본으로 하되,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혁명 역사를 중심에 놓고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 7. 言 語

북한은 언어를 “사람들이 사상을 나타내며 서로 교제하는데 쓰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족을 이루는 共通性的의 하나이며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언어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서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힘있게 복무한다”<sup>68)</sup>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같이 언어를 思想交換의 수단, 革命·建設의 중요한 무기로 보는 唯物論的의 言語觀, 言語道具觀의 관점에서 있다. 따라서 북한은 언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非革命的·非文化的」요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文化語」라 부르는 표준어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서울말 중심의 표준말 대신, 평양말과 김일성이 사용하던 방언들을 중심으로 문화어를 제정한 것이다.

북한은 “서울 표준어가 부르조아적 요소와 복구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인민들의 의식속에 반동적 부르조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고 김일성이 몸소 쓰는

67) 위의 책, 같은 페이지.

68) 「현대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P.2703.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9)</sup>

이리하여 제정된 文化語는 비문화적·비혁명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목 아래 다소 공격적이고,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짓는 적대적 용어와 어법으로서 革命性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문화어는 서울 표준말보다 경성 및 파열음이 많고 용어가 전투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나아가 소련 외래어 등의 차용으로 다소간 언어의 異質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북한은 1966년 6월 이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에서 어휘선정, 사전 편찬작업을 하고 있으며, 해방 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오다가 1949년부터는 한글을 전용하고 있다. 다만 1958년 이후 고등중학교에서는 초보적 필수한자를 교육하고 있으나, 신문·잡지·교과서 등 모든 출판물이 한글로 제작되어 일반주민은 자신의 이름도 한글로만 쓸 수 있다.

맞춤법은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으로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이는 1954년 「조선어 철자법」, 1966년 「조선말 규범집」, 1988년 「조선말 규범집」으로 이어져 왔다.

북한 맞춤법의 특징은 頭音法則을 무시하여 단어의 첫음절에 ㄴ·ㄹ이 올 경우 그대로 ㄴ·ㄹ로 표기·발음한다는 것과, 띄어쓰기에 있어 의미단위별로 띄어쓴다는 것이다. 이 띄어쓰기는 1988년 「조선말 규범집」에서 띄어쓰기를 조금 강화, 남한의 띄어쓰기 원칙인 단어별로 띄어쓰는 것에 조금 가까워졌다. 즉 1988년 이전에는 「아침 10시」, 「음력3월」 등으로 표기하던 것을 「아침 10시」, 「음력 3월」 정도로, 「국기훈장제1급」은 「국기훈장 제1급」 정도로 띄어쓰기로 한 것이다.

문장부호의 표기는 남북한이 많이 다르다. 마침표, 물음표, 쉼표 등 기본부호 외에는 통상 사용되는 부호가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書名에 사용하는 〈 〉부호는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한에서 사용하는 『 』부호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69) 「문화어학습」(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1. 3호)

言語 異質化의 몇 가지 事例

〈표 VI - 11〉

| 區 分               | 改造 또는 新造語  | 備 考   |
|-------------------|--|---|
| 形容詞, 動詞<br>副詞의 變質 | 얼뻘한<br>숨새다<br>무어주시고<br>은을 내다<br>무연하다<br>이악하게든            | 얼빠진<br>조금씩 새다<br>조직하여 주시고<br>효과를 내다, 빛을 발하다<br>무질서하다<br>악착스럽게       |
| 好戰的, 선동적<br>용어    | 각을 뜨다<br>까부시다<br>계급투쟁, 비타협적 투<br>쟁, 모내기전투, 전투적<br>과제 등   | 四肢를 도려내다<br>쳐부시다<br>운동→鬪爭<br>일, 과업→戰爭                               |
| 적개심 고취용어          | 개, 승냥이, 주구, 원수 등   |   |
| 勞力 擄取 용어          | 평양속도, 천리마속도<br>80년대 속도창조운동, 90년대 속도창조운동<br>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   |
| 漢 字 語 改 造         | 교편물<br>밝힘표<br>이신작칙<br>직관물<br><br>만부하 만가동                 | 교육보조자료<br>明細表<br>솔선수범<br>전시물(포스터나 현수<br>막 등)<br>풀가동, 모든 능력을<br>쏟아 냄 |
| 導 入 外 來 語         | 그룹빠<br>깜빠니아<br>뜨락또르                                      | 단 체<br>군중운동<br>트랙터  |

## 한글 맞춤법과 조선어규범집의 부호법 비교

〈표 VI-12〉

| 맞춤법(南)     |           | 규범집(北)    |           | 맞춤법(南)       |        | 규범집(北)      |     |
|------------|-----------|-----------|-----------|--------------|--------|-------------|-----|
| 온<br>(고리점) | 점 ·       | 점 ·       | ·         | 소 괄 호 ( )    | ( )    | 반달 묶음 표 ( ) | ( ) |
|            |           | ×         |           | 중 괄 호 { }    | { }    | ×           |     |
| 물 음 표      | ? 물 음 표 ? | 물 음 표 ?   | ? 물 음 표 ? | 대 괄 호 [ ]    | [ ]    | 격쇠 묶음 표 [ ] | [ ] |
| 느 낄 표      | ! 느 낄 표 ! | 느 낄 표 !   | ! 느 낄 표 ! | 줄 표 -        | -      | 풀 이 표 -     | -   |
| 반 점        | , 반 점 ,   | 반 점 ,     | , 반 점 ,   | 불 임 표 -      | -      | 이 음 표 -     | -   |
| (모 점)      | 、         | ×         |           | 물 결 표 ~      | ~      | 물 결 표 ~     | ~   |
| 가 운 데 점    | ·         | ×         |           | 드 러 념 표 ;    | ;      | 밀 점 ...     | ... |
| 쌍 점        | : 두 점 :   | 두 점 :     | : 두 점 :   | 숨 김 표 ××, ○○ | ××, ○○ | 숨 김 표 ○○    | ○○  |
| 빗 금        | /         | ×         |           | 빠 짐 표 □      | □      | ×           |     |
| 큰 따 음 표    | “ ”       | 인 용 표 < > | < >       | 줄 임 표 ……     | ……     | 줄 임 표 …     | …   |
| (겹낫표)      | 「 」       |           | ×         | ×            |        | 반 두 점 ;     | ;   |
| 작은 따 음 표   | ‘ ’       | 거듭인용표 < > | < >       | ×            |        | 갈 음 표 〃     | 〃   |
| (낫표)       | 「 」       |           | ×         |              |        |             |     |

\*註: ×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

## 8. 文化施設

북한의 문화시설은 文化·藝術政策의 기본목적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노동당 정책의 선전 및 金日成 1인 독재체제 및 父子世襲體制의 합리화와 우상화를 위해, 그리고 「전인민의 노동계급화·혁명화」를 위해 건립된 것들이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大型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의식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우월

성을 과시하고 외형적 발전상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金父子 세습체제의 구축을 위한 상징조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施設物들은 그 명칭만 보아도 건립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종류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博物館·紀念館·展覽館

〈표 IV-13〉

| 名 稱                            | 設立日        | 內 容  | 備 考   |
|--------------------------------|------------|--|---|
| 朝鮮革命博物館<br>(평양시 만수대 언덕)        | 1948. 8. 1 | 김일성의 항일혁명 활동 및 사회주의혁명 투쟁과정의 사적물 및 자료 전시      | 1960.8 「국립중앙 해방투쟁박물관」을 개칭<br>1972.4.24 만수대로 신축 이전 |
| 黨創立 史蹟館<br>(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 1970.10    | 노동당 창립과 관련된 자료 및 사적물 전시                      | 해방직후 김일성이 사용하던 노동당 중앙위 건물                         |
| 祖國解放戰爭勝利 紀念館<br>(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 1953.8.17  | 항일혁명기의 자료, 6·25 당시 인민군 자료·병기류 전시 및 김일성 업적 선전 | 1974. 4. 11 「조국 해방기념관」을 개칭, 확장 건립                 |
| 朝鮮中央歷史 博物館(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 1945.12.1  | 원시사회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적 유물과 문헌자료 전시             | 1978. 2. 12 김일성 현지교시                              |
| 朝鮮美術博物館<br>(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 1954.9.28  | 기원전 3~4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품 진열                     | 65. 3. 11 김일성 현지교시                                |
| 國際親善展覽館<br>(묘향산)               | 1978.8.26  | 김일성에게 보내온 146개국 인사들의 선물 28,000여점 중 일부 전시     | 건물내부의 천정, 벽에 「김일성화」 치장                            |



| 名 稱                          | 設 立 日      | 内 容   | 備 考   |
|------------------------------|------------|---|---|
| 普天堡革命博物館<br>(양강도 보천군<br>보천읍) | 1955.8.7   | 1937. 6. 4 「보천보전투」<br>관련자료 및 김일성의<br>현지지도 사적자료 전시 | 1963. 6 구건물옆<br>에 현대적 고층건<br>물 신축, 77년 진<br>열체계 및 자료<br>보충 정비 |
| 王在山革命博物館<br>(함북 온성군<br>왕재산)  | 1975.10.19 | 김일성의 1930~40년대<br>「항일투쟁」활동 자료 전시                  | 당원 및 노동자<br>들에게 김일성의<br>「혁명역사」를 학<br>습시키는 정치<br>학교 기능         |
| 朝鮮民俗博物館<br>(평양시 중구역<br>대동문동) | 1956.2.10  |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br>으며, 연구사업 및 군중<br>교양사업도 전개         | 1960. 6. 10 김일성<br>현지교사                                       |

\* 출처: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및 「조선개관」  
(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에서 발췌 정리.

### 會館・宮殿・學習黨

〈표 VI-14〉

| 名 稱          | 設 立 日     | 内 容   | 備 考   |
|--------------|-----------|---|---|
| 2·8文化會館      | 1975.10.7 | 노동자 및 인민군의 사상<br>·문화 교양장소                   | 극장(6,000석·1,100석)<br>영화관(600석)                                    |
| 人民文化宮殿       | 1974.1.1  | 문화·오락시설을 구비한<br>북한주민들의 휴식, 학습,<br>문화, 교양 장소 | 대회의장(3,000석),<br>원탁회의장(930m <sup>2</sup> ),<br>휴게실, 영화관,<br>당구장 등 |
| 平壤學生少年<br>宮殿 | 1963.9.30 | 평양시 청소년들의 특별<br>과외활동 장소                     | 장서(5만여권),<br>극장(1,100석),<br>체육관(500명수용),<br>도서관 등                 |

| 名稱     | 設立日     | 內 容                   | 備 考                            |
|--------|---------|-----------------------|--------------------------------|
| 人民大學習黨 | 1982.4. | 「전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한 종합도서관 | 장서능력(3,000만 권) 1일수용능력(12,000명) |

\* 출처: <위의 표>와 동일.

### 劇 場

<표 VI-15>

| 名稱      | 設立日       | 收 容 能 力   | 備 考              |
|---------|-----------|---|------------------|
| 만수대예술극장 | 1977.1.1  | 관람석: 4,000석   | 북한최대의 극장         |
| 平壤大劇場   | 1960.8.13 | 관람석: 2,200석<br>최대 무대출연인원: 2,000명<br>소극장(종합리허설실)<br>수용인원: 7,000명 | 가극공연의 각종 기념행사 개최 |
| 平壤씨커스劇場 |           | 관람석: 1,640석   | 자동전진무대 설치        |
| 巧藝劇場    | 1989.5.1  | 관람석: 3,500석   | 평양축전 시설          |
| 東平壤大劇場  | 1989.5.18 | 관람석: 3,500석   | 평양축전 시설          |
| 국제영화회관  | 1989.5.18 | 관람석: 3,150석   | 평양축전 시설          |
| 봉화예술극장  | 1985.6.   | 관람석: 2,000석   | 현대적 무대공연 설비      |
| 咸興大劇場   | 1984.4.15 | 관람실: 2,500석<br>소극장: 700석<br>방: 800개                             | 김정일 지시로 건설       |

\* 출처: <위의 표>와 동일.

### 動·植物園 및 기타 慰樂施設

<표 VI-16>

| 名稱    | 設立日       | 內 容               | 備 考              |
|-------|-----------|-------------------|------------------|
| 中央動物園 | 1959.4.30 | 400여종 4,000여마리 사육 | 편의봉사시설 및 오락시설 구비 |

| 名 稱    | 設 立 日     | 内 容   | 備 考             |
|--------|-----------|---|-----------------|
| 中央植物園  | 1959.4.30 | 2,000여종의 식물 재배  | 「김일성화 온실」<br>설치 |
| 蒼光院    | 1980.3    | 목욕탕(1만명수용), 물<br>놀이장, 수영장(관람석<br>2,000)으로 구성                    | 종합적인 문화<br>위락시설 |
| 清流館    | 1982.4.15 | 1,000여석의 실내좌석과<br>6,000여석의 야외좌석 및<br>39개의 봉사실 구비                | 종합음식점           |
| 玉流館    | 1960.8.15 | 250석의 좌석과 20여개<br>의 기본실 및 50여개의<br>부속실, 600여명 수용<br>능력의 대연회장 구비 | 종합음식점           |
| 萬景臺유희장 | 1982.4.8  | 5만명 수용규모로 29종<br>의 유희시설 구비                                      | 종합오락시설          |

\* 출처 : <위의 표>와 동일.



# VII. 外交



# 1. 外交政策

## 가. 政策基調

### (1) 國際政治觀

1980년대 후반부터 蘇聯을 비롯한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이 급속히 改革과 開放 그리고 民主化를 추진하고 東西 兩大陣營이 交流와 協力을 통해 새로운 和解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시점에 와서도 北韓은 여전히 국제정치를 解放과 革命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는 金日成이 아직도 “오늘의 국제무대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sup>1)</sup>고 말하는 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정치를 世界革命의 과정으로 보는 입장은 北韓의 勞動黨 規約과 憲法에도 나타나 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한다”<sup>2)</sup>는 것이다.

### (2) 政策目標 및 方向

이러한 입장에서 北韓의 모든 정책활동은 韓半島 전체의 共產化라는 궁극목표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外交政策도 이 범주내에서

---

1) 金日成 신년사, 1990. 1. 1.

2) 北韓 노동당 規約前文 및 北韓헌법 제16조.

추진되고 있다.<sup>3)</sup>

즉 북한 외교정책의 1차목표는 正統性 추구, 安保 추구, 經濟發展 추구라고 할 수 있으나 최종목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sup>4)</sup>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70년 11월 북한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外交部長 許鎔이 북한 외교정책의 基本目標을 “미제를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시키는데 있다”<sup>5)</sup>고 언급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6차대회 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은 북한 대외정책의 基本理念을 「자주·친선·평화」라고 표방하면서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基本目標을 “반제자주의 력량의 단결 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과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對外活動의 方向으로서는, ① 自主성과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原則에 기초한 사회주의 諸國과의 단결강화 및 親善協調관계 발전, ② 非同盟 第3世界諸國과의 국가관계의 발전 및 政治·經濟·文化의 모든 분야에서의 團結과 協調의 강화, ③ 友好的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諸國과의 友好關係의 형성 및 經濟·文化交流의 발전, ④ 地理的으로 가까이 있는 아시아제국과의 善隣關係 발전을 위한 내왕과 접촉의 강화 및 經濟·文化 交流와 協調의 발전

3) 1970. 11. 金日成은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남조선 혁명은 전조선 혁명의 구성 부분이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혁명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제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0), p. 57

4) 1964. 2. 27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제3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3대혁명역량(북한혁명기지, 남한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강화를 통일전략의 기본방침이라고 함.

5) 북한 노동당 제5차대회 허담토론, 「로동신문」, 1970. 11. 6.



등을 주장하였다.<sup>6)</sup>

이후 북한 外交政策의 방향은 대내외상황 변화에 따라 여러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 基本目標와 原則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sup>7)</sup>

위와 같은 외교정책의 目標와 原則에 따른 북한 外交活動의 地域과 對象에 대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社會主義 諸國과의 관계에서는 이들 국가들을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하고 黨的 차이, 정책상의 차이, 이데올로기상의 마찰과는 관계없이 관계유지와 유대강화에 주력해 왔다. 중·소간의 이념분쟁과 상호 霸權競爭의 와중에서도 등거리 외교를 전개하면서 중·소 양국으로부터 경쟁적인 지원을 유도해 왔으며, 東歐共產圈 국가들과도 그들의 獨自路線 선언과 관계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sup>8)</sup>

② 非同盟 諸國, 第3世界 諸國에 대해서는 간접적이고 보조적인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들과는 反帝國主義 共同戰線의 형성과 유대강화를 위해 초청·방문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③ 資本主義國家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서구, 기타 資本主義諸國을 우회적, 예비적 革命支援力量으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내의 左翼團體와 人士 등 친북세력을 이용하여 문화적·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人民外交」방식의 접근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sup>9)</sup>

6) 「로동신문」 1980. 11. 1.

7) 1990. 1. 1 金日成 新년사 참조.

8)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東歐社會主義 국가들의 大變革과 對韓修交로 이 地域에서 북한의 國際革命力量이란 이제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9) 1972. 12. 10 金日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 대해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표방하였다.

요컨대 북한의 外交政策은 겉으로는 비록 「自主·親善·平和」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基底에서는 한국의 고립화와 北韓政權의 正統性 확보를 위해 「하나의 조선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國際革命力量의 강화를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여 왔다. 이같은 목적을 위해 北韓은 끊임없이 駐韓美軍撤收와 미·일·중·소에 의한 南北韓交叉承認 反對, 南北韓 UN同時加入 反對 등의 주장을 펴오고 있다.

## 나. 政策變遷 過程

### (1) 陣營外交期：1948년 정권수립~1950년대 초

북한의 외교관계는 政權樹立時期부터 1953년 休戰이 성립될 때까지만 해도 陣營內的 외교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당시의 外交活動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으며 修交國도 소련, 중공, 東歐 諸國 등 12個國에 불과했다.

특히 6·25전쟁의 도발로 UN에서 侵略者로 규탄된 북한은 전적으로 소련에 추종하면서 중·소로부터 전쟁수행을 위한 軍事的, 經濟的 지원과 외교적 지원 획득에 치중하였다.

### (2) 多邊外交期：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休戰協定이 성립되자 북한은 戰後復舊計劃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중·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관계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들어 서면서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新生獨立國 29個國이 참가한 「반둥會議」에서 平和5原則<sup>10)</sup>이 발표되고, 뿐만아니라 후루시초프가 平和共存政策을 거론하게 되자 북한은 中·蘇·東歐 등 共產國家에 국한하였던 陣營外交를 탈피하여 多邊外交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다.

10) 平和5原則이란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 공존 등이다.

북한이 中立國들과의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多邊外交로의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sup>11)</sup> 이와 동시에 1956년 4월 대외문화연락협회라는 「人民外交」수행담당 기관을 노동당 外廓團體로 만들어 對中立國 外交活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58년에는 알제리, 기니 등과 修交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對中立國外交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亞阿地域의 新生獨立國家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고 1960년 제15차 UN총회에서 南北韓 同時招請問題가 제기된데서 비롯되었다.

1961년 9월 북한 노동당 제4차대회에서 金日成은 ① 社會主義國家와의 단결, ② 帝國主義陣營에 대한 反對鬭爭, ③ 新生中立國家에 대한 접근<sup>12)</sup> 등을 강조하였으며, 같은해 6월과 7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朝蘇友好協調 및 相互援助條約」과 「朝中友好協調 및 相互援助條約」을 각각 체결하여 사실상의 軍事同盟關係를 형성하였다.<sup>13)</sup>

그러나 1962년 中·蘇 國境紛爭과 쿠바事態 이후 中·蘇紛爭이 격화되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였다가 1965년 2월 코시킨 소련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소련 편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中蘇 등거리 외교에서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활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內政 不干涉과 相互平等」을 표방한 自主路線을 선언하고<sup>14)</sup> 이를 對中立國外交의 지침으로 삼았다.

11) 金日成은 總和報告에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래년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라고 발언함.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주요문헌집」(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56), p. 12.

12) 「金日成 저작선집」 제3권(1968), pp. 195~196.

13) 軍事篇의 군사동맹 부분 참조.

14)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사설, 1966. 8. 12.

### (3) 實利外交 追求期 :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 북한의 외교정책은 實利的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이 실리외교를 政策路線으로 채택한 것은 1971년 1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全員會議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sup>15)</sup>라는 議題가 토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북한이 1970년대에 제3세계 中立諸國에 대한 多邊外交를 확대하고 西方諸國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實利外交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 데에는 대외적으로는 1971년 9월 중국의 UN加入과 1972년 닉슨 美大統領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 美·中의 관계 개선, 日·中國의 國交正常化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그리고 UN 및 기타 國際機構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으며 對內的으로는 새로운 6個年計劃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西方諸國과의 經濟協力の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다.

1973년 6월 한국의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이 발표되자 북한은 남북한의 共存을 “두개의 조선을 고정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한다”<sup>16)</sup>는 구실로 반대하면서도 西方 여러나라들과의 外交關係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sup>17)</sup>

1970년대 중반에 들어 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人民外交」를 시도하는 한편 1974년 3월에는 對美 平和協定체결을 제의하였고, 中立國外交를 적극 전개한 결과 1975년 8월에는 非同盟會議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 해 제30차 UN總會에서도 처음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 西方側 案과 共產側 案이 동시에 통과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對南戰略, 그리고 外債償還問題, 外交官의 密輸事件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

15) 「조선중앙년감」(1972), pp. 269~270.

16) 「로동신문」사설, 1974. 1. 26.

17) 北歐 諸國등 많은 中立國들과의 수교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sup>18)</sup>

#### (4) 對西方外交 強化期 : 1980년 이후

북한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外交目標을 변함 없이 견지하는 입장에서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는 對外政策의 기본이념을 「自主·親善·平和」라고 표방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共產國家와의 단결강화를 강조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資本主義國家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對西方外交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은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폭파사건으로 西方諸國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平和攻勢의 한 수단으로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聯合會議을 열고 “조선문제 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라는 의제를 토의하고 南北韓·美國의 3者會談을 제의하는 한편 이를 통해 對美接近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19)</sup>

한편 1984년 9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制度的 조치로 合營法을 채택하고 西方國家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sup>20)</sup>

이와같은 변화과정을 거처온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對外環境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18) 北韓外交官의 密輸事件의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76년 10월 15일에는 마약·술·담배 密輸事件으로 덴마크주재 北韓大使와 外交官 4명이 駐在國政府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목받아 추방되었고, 1976년 10월 18일에는 노르웨이 駐在 北韓大使代理와 外交官 4명이 駐在國政府로부터 밀수관련 혐의로 추방되었으며, 또한 1976년 10월 26일에는 스웨덴 駐在 北韓大使 등 4명이 駐在國政府로부터 추방되었다. 이밖에도 스위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이란,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에서도 마약 및 보석 등 免稅品 密輸行爲 혐의로 있어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內査를 받은 바 있다.

19) 「로동신문」, 1984. 1. 13.

20) 「북한자료」(서울 : 국토통일원, 1984. 10호), pp. 46~50 참조.

타개하기 위해 對日關係 正常化와 적극적인 對美接近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2. 外交活動

### 가. 政策決定 및 執行機構

북한 外交政策의 기본원칙은 憲法上으로는 입법기관인 最高人民會議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sup>21)</sup> 실제로는 노동당에서 결정되며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 審議·決定할 뿐이다.<sup>22)</sup> 노동당에서는 中央委員會 政治局이 심의·결정하나 對外問題를 관장하는 祕書局의 國際部가 중심이 되며 여기서 결정된 문제는 最高人民會議에 通告·追認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같은 決定過程을 거쳐 그 執行은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감독 아래 政務院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그 최고의 책임은 國家主席의 관장하에 있다.<sup>23)</sup> 그러나 國家主席은 노동당 總祕書인 金日成이 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外交政策의 결정이나 집행은 金日成 1인에 의해 지휘·감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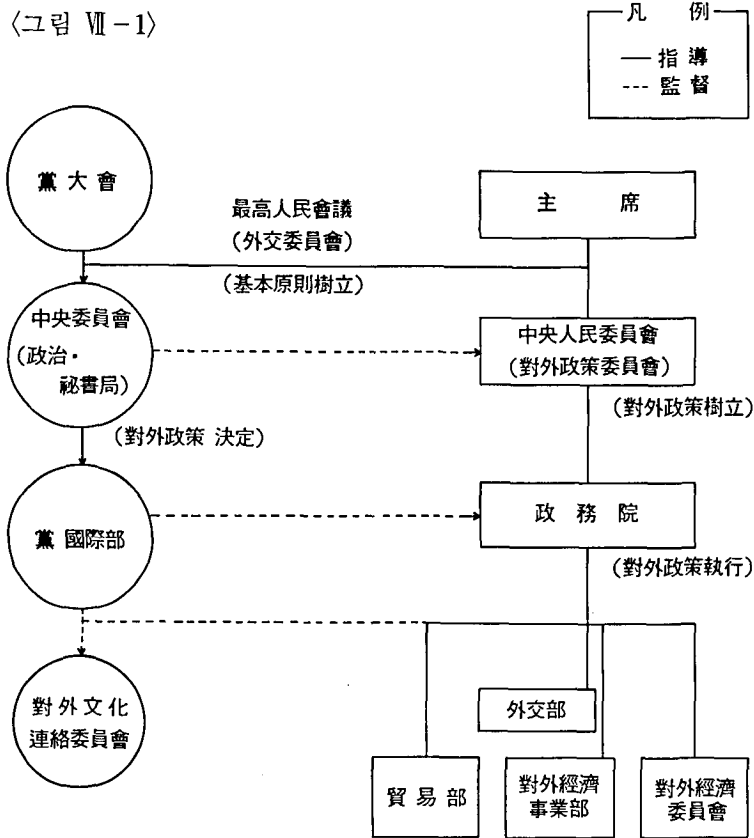
21) 북한헌법 제76조 2항.

22) 북한은 1989. 11. 최고인민회의 내에 「외교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원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3) 북한헌법 제96, 97, 98조.

外交政策의 決定 및 執行機構表

〈그림 V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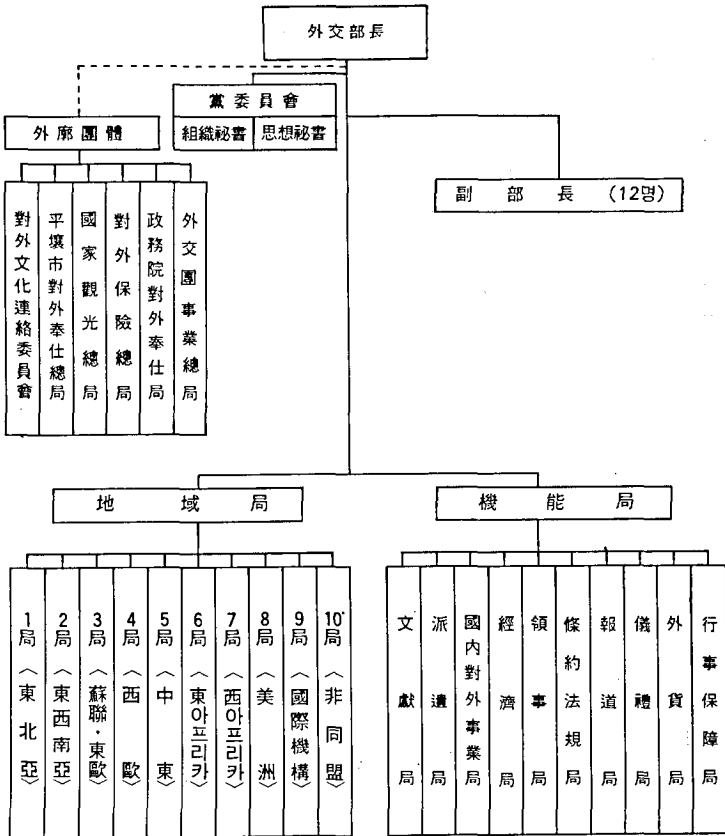


外交部는 외교집행의 실무부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對外業務는 매우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對外經濟事業部도 對外活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民間外交는 노동당 소속의 對外文化連絡委員會가 맡고 있다.<sup>24)</sup>

24) 대외관계 주요 외관단체로는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직위원회」, 각국과의 「친선협회」 등이 있고, 기타 「사로청」·「여맹」·「직맹」·「농근맹」·「체육지도위」·「문예총」 등도 각각 대외사업에 참여한다.

外交部 機構表

〈그림 VII-2〉



나. 主要 外交活動

북한의 주요 외교활동은 주로 金日成의 訪問外交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金日成은 1949년 3월 약 1개월간에 걸쳐 6·25南侵을 협의키 위해 소련을 방문한 이래 1990년 10월 현재 26차례에 걸쳐 외국을



방문하였다. 金日成의 방문국은 주로 중·소였으며, 그 밖에 동구권 국가와 아프리카 순방이 있었다. 金日成이 그동안 소련을 10회, 중국을 11회 방문한 것으로 보아도 北韓의 대외활동이 주로 중·소의 후원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金日成의 外國訪問 現況

〈표 VII-1〉

| 區分 | 時 期                | 國 家     | 備 考                          |
|----|--------------------|---------|------------------------------|
| 1차 | 1949. 3. 4~4. 7    | 소 련     | 6·25전쟁 협의, 10개년경제·문화 협조협정 결정 |
| 2차 | 1953. 9. 1~29      | 〃       | 경제기술원조협정 체결                  |
| 3차 | 1953. 11. 10~27    | 중 국     | 1954. 4 제네바회의의 대비 공동전략 협의    |
| 4차 | 1956. 6. 7~6. 12   | 동 독     |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원조 획득차    |
|    | 1956. 6. 13~17     | 루 마 니 아 | 〃                            |
|    | 1956. 6. 17~20     | 헝 가 리   | 〃                            |
|    | 1956. 6. 21~25     | 체 코     | 〃                            |
|    | 1956. 6. 25~29     | 불 가 리 아 | 〃                            |
|    | 1956. 6. 29~7. 1   | 알 바 니 아 | 〃                            |
|    | 1956. 7. 2~6       | 폴 란 드   | 〃                            |
|    | 1956. 7. 6~15      | 소 련     | 〃                            |
|    | 1956. 7. 16~19     | 몽 갈     | 〃                            |
| 5차 | 1957. 11. 7        | 소 련     | 소련 10월혁명 40주년기념식 참가          |
| 6차 | 1957. 11. 28~12. 2 | 월 멩     | 반미공동전선 결속                    |
| 7차 | 1959. 1. 21~       | 소 련     | 소련공산당 제21차대회 참가              |
| 8차 | 1959. 10. 1~       | 중 국     | 중국창건 10주년기념행사 참가             |
|    | 1961. 6. 29~7. 10  | 소 련     |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
| 9차 | 1961. 7. 10~7. 15  | 중 국     | 조약 체결(방위조약)                  |

| 區 分 | 時 期   | 國 家  | 備 考   |
|-----|---|--|---|
| 10차 | 1961. 10. 14  | 소 련  | 소련공산당 22차 대회 참가   |
| 11차 | 1965. 4. 10~20  | 인 니  | 친선방문, 공동성명 발표(반미<br>공동전선 구축)  |
| 12차 | 1966. 5. 7~23   | 소 련<br>(블라디보스톡)  | 「브레즈네프」와 비밀회의<br>※비공식 방문  |
| 13차 | 1975. 4.18~26   | 중 국  | 한반도에서 第2印支戰 계획을 위한<br>지원 획득차  |
| 14차 | 1975. 5. 22~26<br>1975. 5. 26~30<br>1975. 5. 30~6.1<br>1975. 6. 2~5<br>1975. 6. 5~9             | 루 마 니 아<br>알 제 리<br>모 리 타 니 아<br>불 가 리 아<br>유 고                  | 쌍방관계 강화, 공동성명 발표<br>〃<br>〃<br>〃<br>〃  |
| 15차 | 1980. 5. 7~9<br>1980. 5. 9~12   | 유 고<br>루 마 니 아   | 「티토」장례식 참석<br>친선방문  |
| 16차 | 1981. 3   | 중 국  | 비밀방문설   |
| 17차 | 1982. 9. 15~26  | 〃  | 쌍방관계 강화   |
| 18차 | 1983. 8. 12~19  | 〃  | 등소평과 회담(비밀방문)   |
| 19차 | 1984. 5. 23~26<br>5. 27~29<br>5. 29~6. 4<br>6. 4~7<br>6. 7~9<br>6. 9~11<br>6. 12~17<br>6. 18~21 | 소 련<br>폴 란 드<br>동 독<br>체 코<br>형 가 리<br>유 고<br>불 가 리 아<br>루 마 니 아 | 경제·군사협력문제 협의<br>친선협조 강화<br>우호 및 협력조약 체결<br>경제·과학·기술협조 강화<br>〃<br>〃<br>우호 및 협력조약 체결<br>경제·과학·기술협력 및 합작협정체결 |
| 20차 | 1984. 11. 26~28   | 중 국  | 경제개발정책시행관련, 의견교환<br>※등소평·호요방과 3차례 회담  |
| 21차 | 1985. 12  | 중 국  | 비밀방문설   |
| 22차 | 1986. 10. 22~27   | 소 련  | 유대강화 및 경제지원 요청  |

| 區分  | 時 期            | 國 家 | 備 考                              |
|-----|----------------|-----|----------------------------------|
| 23차 | 1987. 5. 21~26 | 중 국 | 유대강화 및 88서울올림픽 불참 요구             |
| 24차 | 1988. 6. 24~27 | 몽 골 | 친선방문                             |
| 25차 | 1989. 11. 5~8  | 중 국 |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에 공동대처               |
| 26차 | 1990. 9. 11~13 | 중 국 | 한·소수교 이후 한·중수교 및 한국의 UN가입에 반대 요청 |

## 다. 外交現況

### (1) 共產圈外交

북한의 대외관계 특히 공산권외교는 對中·蘇關係가 그 중심을 이루어왔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는 대소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다가 중국의 6·25참전을 계기로 대중관계에도 같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對中·蘇關係가 항상 안정되고 균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北方三角關係의 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것은 中·蘇間의 잦은 紛爭이었으며 북한이 외교에서 自主를 선언하고 나선 것도 결국은 中·蘇紛爭으로부터의 自救策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蘇聯共產黨 제20차대회에서 후루시초프가 스탈린 格下運動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소련 관계가 멀어졌으나 1961년 7월에 북한이 소련·중국과 각각 軍事同盟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對中·蘇關係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1962년 10월의 쿠바事件과 中·蘇國境紛爭은 中·蘇關係를 크게 악화시켰고 여기서 북한은 중국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1964년 후루시초프의 실각과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文化革命은 북한을 다시 소련쪽으로 기울게 하였다.

북한은 1962년 이후 7個年計劃이 차질을 빚어 3년씩이나 계획이 연장되고 1965년 이후 越南戰이 확대되는 등 對内外情勢가 변화하는

가운데 1965년 2월 소련의 코시긴首相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은 한동안 親蘇的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親蘇期間 동안 中國을 비난<sup>25)</sup> 해오던 북한은 1966년 8월 12일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sup>26)</sup> 그러다가 1969년 7월 1일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하여 “세계평화 및 안전을 위하여 중국인민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對中國 관계개선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文化革命의 종식과 第3世界와 國際社會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고려하여 취해진 政策의 변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의 對中·蘇關係는 과거와 같이 불안정해지지 않고 自主路線도 점차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사회주의 제국과의 단결 강화 및 친선협조관계의 발전”을 표방하면서 중·소와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理念的 結束을, 소련으로부터는 經濟, 軍事的 실리지원을 추구하는 등 對中·蘇 줄타기외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소련이 1985년부터 改革과 開放을 추진하고 마침내 1990년 9월 韓·蘇間에 國交正常화가 이뤄지게 되자 북한은 소련에 대해 “배신행위”,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이익과 신의를 팔아 먹은 행위” 등의 극렬한 표현으로 비난하고<sup>27)</sup>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이 급속히 중국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社會主義體制의 고수를 주장하는 유일한 後見國인 중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國際的 孤立感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金日成과 延亨默 總理등 黨·政高位人物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고<sup>28)</sup>, 1990년 11월

25) 예컨대 1964. 12. 3 「로동신문」은 중국의 교조주의 노선 추종압력을 비난하는 사설을 게재하였다.

26) 「로동신문」사설, 1966. 8. 12.

27) 「로동신문」논평, 1990. 10. 5

28) 金日成은 韓·蘇 修交가 발표되기 직전인 1989년 11월과 1990년 9월 두차례, 그리고 延亨默總理는 1990년 11월 각각 中國을 訪問하였다.

압록강다리를 「조·중친선의 다리」로 개칭하는가 하면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불멸의 조·중친선관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朝·中」關係의 긴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쉽사리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북한의 對蘇 貿易규모는 1989년만 해도 23억9,800만弗로 全體 貿易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武器와 原油 등을 國際市場의 30% 수준인 이른바 「友好價格」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經濟·軍事의 對蘇依存度가 높은 북한은 內外環境의 변화에도 소련과의 友好關係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물론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이 1991년부터는 對北韓 友好價格制를 폐지하고 1990년 11월 2일 체결된 協定에 따라 貿易代金を 硬貨로 決済기로 함으로써 북한의 經濟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겠으나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가 현저히 소원하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北韓의 對中·蘇 高位級 外交活動

〈표 VIII-2〉

| 日 字         | 北 韓      | 中 國      | 北 韓 | 蘇 聯     |
|-------------|----------|----------|-----|---------|
| 1949. 2.22  |          |          |     | 김일성(수상) |
| 김일성<br>(수상) |          | 최용건(民保相) |     |         |
| 1953. 7.    |          |          |     |         |
| 1953. 9 1   |          |          |     | 김일성(수상) |
| 1953.11.10  |          | 김일성(수 상) |     |         |
| 1954. 9.28  |          | 김일성(수 상) |     |         |
| 1955. 8.15  | 朱 德(부주석) |          |     |         |

| 日 字        | 北 韓             | 中 國            | 北 韓                   | 蘇 聯            |
|------------|-----------------|----------------|-----------------------|----------------|
| 1956. 2.14 |                 |                |                       | 최용건(부수상)       |
| 1956. 6. 1 |                 |                |                       | 김일성(수 상)       |
| 1956. 9.12 |                 | 최용건(부수상)       |                       |                |
| 1956.10.17 |                 |                |                       | 김일성(수 상)       |
| 1957.11. 3 |                 |                |                       | 김일성(수 상)       |
| 1958. 2.14 | 周恩來(수 상)        |                |                       |                |
| 1958. 5. 3 |                 |                |                       | 정일용(부수상)       |
| 1958.11.21 |                 | 김일성(수 상)       |                       |                |
| 1959. 1.27 |                 |                |                       | 김일성(수 상)       |
| 1959. 4. 3 |                 |                |                       | 최용건(人民會議常任委員長) |
| 1959. 9.25 |                 | 김일성(수 상)       |                       |                |
| 1961. 5.30 |                 |                | 코시긴(부수상)              |                |
| 1961. 6.29 |                 |                |                       | 김일성(수 상)       |
| 1961. 7.10 |                 | 김일성(수 상)       |                       |                |
| 1961.10.17 |                 |                |                       | 김일성(수 상)       |
| 1963. 6. 5 |                 | 최용건(人民會議常任委員長) |                       |                |
| 1963. 9.14 | 劉 少 奇<br>(國家主席) |                |                       |                |
| 1965. 2.11 |                 |                | 코시긴(수 상)              |                |
| 1966. 3.29 |                 |                |                       | 최용건(人民會議常任委員長) |
| 1966. 5    |                 |                |                       | 김일성(수 상)       |
| 1967. 2.13 |                 |                |                       | 김 일(부수상)       |
| 1967. 3.   |                 |                | 노비코프(부수상)             |                |
| 1967.10.17 |                 |                |                       | 최용건(人民會議常任委員長) |
| 1969. 5.14 |                 |                | 포 드 고 르 니<br>(幹部會議議長) |                |
| 1969.10. 1 |                 | 최용건(人民會議常任委員長) |                       |                |
| 1969.12. 8 |                 |                |                       | 박성철(부수상)       |

| 日 字        | 北 韓      | 中 國                  | 北 韓       | 蘇 聯                            |
|------------|----------|----------------------|-----------|--------------------------------|
| 1970. 4. 5 | 周恩來(수 상) |                      |           |                                |
| 1970. 4.29 |          |                      |           | 최용건(人民會議<br>常任委員長)<br>박성철(부수상) |
| 1971. 1. 1 |          |                      | 노비코프(부수상) |                                |
| 1971. 3.28 |          |                      |           | 김 일(부수상)                       |
| 1971. 7.   | 李先念(부수상) |                      |           |                                |
| 1971. 8.   |          | 정준택(부수상)             |           |                                |
| 1971. 11.  |          |                      |           | 정준택(부수상)                       |
| 1972. 6    |          |                      | 노비코프(부수상) |                                |
| 1972. 8    |          |                      |           | 정준택(부수상)                       |
| 1972.10.17 |          |                      |           | 최용건(부수상)                       |
| 1973. 2.   |          |                      |           | 강양욱(부주석)                       |
| 1973. 3.   |          | 강양욱(부주석)             |           |                                |
| 1973. 4.   |          |                      |           | 최재우(부총리)                       |
| 1973. 9.11 |          |                      | 노비코프(부수상) |                                |
| 1973. 9.   | 李德生(부주석) |                      |           |                                |
| 1974. 3.   |          | 정준기(부총리)             |           |                                |
| 1974. 5.   |          | 허 담(부총리)             |           | 허 담(부총리)                       |
| 1974. 7.   |          |                      |           | 최재우(부총리)                       |
| 1975. 1.   |          |                      | 노비코프(부수상) |                                |
| 1975. 2.   |          | 강양욱(부주석)             |           |                                |
| 1975. 3.   |          | 박성철(총 리)             |           |                                |
| 1975. 4.17 |          | 김일성(주 석)             |           |                                |
| 1975. 7.   |          | 강양욱(부총리)<br>허 담(부총리) |           |                                |
| 1975. 9.21 | 張春橋(부수상) |                      |           |                                |
| 1976. 2.24 |          |                      |           | 박성철(총 리)                       |
| 1976. 3    |          |                      |           | 박성철(총 리)                       |

| 日 字        | 北 韓                             | 中 國      | 北 韓                | 蘇 聯               |
|------------|---------------------------------|----------|--------------------|-------------------|
| 1977. 1.24 |                                 |          |                    | 박성철(총 리)          |
| 1977. 3.   |                                 | 계응태(부총리) |                    |                   |
| 1977. 8.   |                                 |          | 아르히보브<br>( 부 수 상 ) |                   |
| 1978. 5. 5 | 華國鋒(당주석)                        |          |                    |                   |
| 1978. 9. 9 | 鄧小平(부수상)                        |          |                    |                   |
| 1979. 1    |                                 |          |                    | 박성철(주석)           |
| 1979. 5.26 | 題領超(全人代<br>常務委副委員長)             |          |                    |                   |
| 1979. 8    |                                 |          |                    | 공진태(부총리)          |
| 1979. 9. 8 | 鄧小平(당부주석)                       |          |                    |                   |
| 1980. 1.18 |                                 |          |                    | 공진태(부총리)          |
| 1980. 2.13 |                                 |          |                    | 공진태(부총리)          |
| 1980. 3.22 |                                 |          |                    | 임춘추(中央人<br>民委書記長) |
| 1980.10. 9 | 李先念(黨부주석)                       |          |                    |                   |
| 1980.10    |                                 |          | 카투세프(부수상)          |                   |
| 1980.11.   |                                 |          |                    | 강희원(부총리)          |
| 1980.12    |                                 |          |                    | 박성철(부주석)          |
| 1981. 1.10 |                                 | 이종옥(총 리) |                    |                   |
| 1981. 2.21 |                                 |          |                    | 이종옥(총 리)          |
| 1981. 3    |                                 | 김일성(주 석) |                    |                   |
| 1981. 9. 6 |                                 |          |                    | 이종옥(총 리)          |
| 1981.12.17 |                                 |          |                    | 공진태(부총리)          |
| 1981.12.20 | 趙紫陽(수 상)<br>陳慕華(부수상)            |          |                    |                   |
| 1982. 3.16 |                                 |          |                    | 허 담(부총리)          |
| 1982. 4.15 | 鄧 小 平<br>( 당군사위주석)<br>胡耀邦(당총서기) |          |                    |                   |
| 1982. 5.25 |                                 |          |                    | 허 담(부총리)          |
| 1982. 6. 1 |                                 |          |                    | 김복신(부총리)          |



| 日 字         | 北 韓                        | 中 國               | 北 韓                   | 蘇 聯      |
|-------------|----------------------------|-------------------|-----------------------|----------|
| 1982. 6.25  |                            |                   |                       | 이종옥(총 리) |
| 1982. 9.16  |                            | 김일성(주 석)          |                       |          |
| 1982.11.14  |                            |                   |                       | 박성철(부주석) |
| 1983. 5.16  |                            |                   | 탈리진(부수상)              |          |
| 1983. 6. 2  |                            | 김정일(당비서)          |                       |          |
| 1983. 9. 6  | 彭 眞 ( 전 인 대<br>상 무 위 원 장 ) |                   |                       |          |
| 1983. 7. 5  |                            | 양형섭(최고인<br>민회의의장) |                       |          |
| 1984. 2. 7  |                            | 김영남(부총리)          |                       |          |
| 1984. 2.13  |                            |                   |                       | 박성철(부주석) |
| 1984. 2.13  |                            |                   |                       | 공진태(부총리) |
| 1984. 5. 4. | 胡耀邦(당총서기)                  |                   |                       |          |
| 1984. 5.23  |                            |                   |                       | 김일성(주 석) |
| 1984. 8. 5  |                            | 강성산(총 리)          |                       |          |
| 1984. 9.12  |                            |                   |                       | 공진태(부총리) |
| 1984.10.16  |                            |                   |                       | 김영남(부총리) |
| 1984.11.26  |                            | 김일성(주 석)          |                       |          |
| 1985. 1.13  |                            | 공진태(부총리)          |                       |          |
| 1985. 3.12  |                            |                   |                       | 강성산(총 리) |
| 1985. 4.16  |                            |                   |                       | 김영남(부총리) |
| 1985. 5. 4  | 胡耀邦(당총서기)                  |                   |                       |          |
| 1985. 5. 7  |                            |                   |                       | 박성철(부주석) |
| 1985. 8.13  |                            |                   | 알리에프<br>( 제 1 부 수 상 ) |          |
| 1985.10.24  | 李 鵬(부총리)                   |                   |                       |          |
| 1985.12.24  |                            |                   |                       | 강성산(총 리) |
| 1985.12     |                            | 김일성(주 석)          |                       |          |
| 1986. 2.23  |                            |                   |                       | 강성산(총 리) |
| 1986.10. 3  | 李先念(국가주석)                  |                   |                       |          |
| 1987. 5.21  |                            |                   |                       | 김일성(주 석) |

| 日 字        | 北 韓       | 中 國      | 北 韓                                  | 蘇 聯      |
|------------|-----------|----------|--------------------------------------|----------|
| 1987. 8    |           |          |                                      | 김영남(부총리) |
| 1987.11    |           |          |                                      | 이근모(총 리) |
| 1988. 9. 6 |           |          | 체브리코프<br>( K G B 의 장 )               |          |
| 1988. 9. 7 | 楊尚昆(국가주석) |          |                                      |          |
| 1988.12.22 |           |          | 세 바르드나 제<br>( 외 무 장 관 )<br>리가효프(부수상) |          |
| 1989. 4.24 | 趙紫陽(당총서기) |          |                                      |          |
| 1989.11. 5 |           | 김일성(주 석) |                                      |          |
| 1990. 3.14 | 江澤民(당총서기) |          |                                      |          |
| 1990. 9. 2 |           |          | 세 바르드나 제<br>( 외 무 장 관 )              |          |
| 1990. 9.11 |           | 김일성(주 석) |                                      |          |
| 1990.11.23 |           | 연형묵(총 리) |                                      |          |

한편 북한의 東歐政策은 中蘇關係의 변화 속에서 對蘇關係와 함수 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다. 中蘇紛爭 이전 북한의 對東歐關係는 國際共產主義運動에의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하여 戰後復舊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sup>29)</sup>

中·蘇紛爭에서 동구국가들과 북한이 서로 다른 共產大國을 추종함으로써 북한과 동구와의 관계는 다소 소원하였으나 북한의 對中·蘇關係가 균형적 관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에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가 급진전되었고 中蘇紛爭시기부터 對蘇 自主路線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은 外交部長 許鎡을 단장으로 하는 政權代表團을 소련, 루마니아, 유고,

29) 동구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소련·중국에 비하면 규모면에서는 월등히 적은 것이었으나, 대부분이 1954~56년 사이의 전후복구 3개년계획기간과 1957~60년 사이의 5개년경제계획 기간중에 제공되었다.

체코,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에 순방시켜 東歐諸國과의 상호 政策支持를 다짐하였다.

1975년 베트남의 共產化 직후 金日成은 中國을 방문한 다음 계속해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를 찾아갔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은 루마니아와 長期貿易協定(1976~80)을 체결하였고, 불가리아와는 10年 經濟 및 科學技術協調議定書(1976~85)를 조인하였으며, 유고와는 相互經濟協同委員會 설치에 합의하였다.

특히 1984년 5월 金日成은 소련 방문을 마친 뒤 곧이어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東歐 7個國을 순방하고 동독 및 불가리아와 友好 및 協力條約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와의 경제·과학·기술협조강화에 합의하였다.

金日成의 同 순방을 계기로 정치면에서는 3者會談 지지확보 등으로 東歐國家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였으며 경제면에서는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앞으로 있게 될 3차7개년 경제계획의 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소련보다도 경제사정이 나은 동독, 체코, 유고, 루마니아 등 東歐諸國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도입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 東歐諸國이 改革과 民主化를 추진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1990년에는 폴란드, 유고,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東歐國家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동안 누려온 독점적 外交舞臺는 사라지게 되었다.<sup>30)</sup> 1989년 12월에 발생한 루마니아사태로 차우체스쿠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은 북한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30) 북한은 한국·헝가리 수교 다음날인 1989년 2월 2일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의 배신행위에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다”고 극단적으로 비난한 다음, 헝가리와의 대사급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후 연이은 다른 동구국가들의 대한수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 (2) 第3世界外交

북한의 第3世界外交는 「反帝反美共同戰線」의 형성과 이에 따른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다.<sup>31)</sup>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第3世界國家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 ① 平和共存路線 標榜
- ② 反帝·反植民主義 및 民族解放鬭爭支援 宣傳
- ③ 國際共產主義 宣傳機構 加入
- ④ 人民外交
- ⑤ 文化 및 經濟交流

1955년 반둥會議가 있는 후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를 계기로 第3世界國家들과의 關係設定에 눈뜨기 시작하여 對外文化連絡協會 등 노동당 外廓團體를 통한 친선 및 문화교류형태의 접근을 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성격의 접근은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대회 이후였다. 제2차 반둥會議를 앞두고 중국 지도자들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을 순방할 때 북한에서도 高位代表團을 파견, 이 지역 여러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중국에 文化革命이 일어나던 시기에 북한은 소련쪽으로 기울면서 1966년부터는 아시아·아프리카·中東지역의 親蘇的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친선사절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1964년 11월 닷세르 統一아랍共和國 대통령을 초청한 이후 각국의 首腦級 人士들을 대거 초청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북한이 第3世界國家들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한 것은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비동맹회의의 구성국가들이기 때문이었다. 즉 한반도 문제의 UN문제화와 관련하여 非同盟會議 國家들과의 國際統一戰線을 형성함으로써 UN對策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리마에서 열린 非同盟外相會議에서 회원국

31) 1974. 8. 11 「로동신문」에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 제1 지지세력은 제3세계국가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으로 가입된 이래 非同盟會議에 지속적으로 한반도문제를 상정, 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1978년부터는 非同盟會議이 열리기 전에 黨中央委員會와 中央人民委員會의 연석회의를 열어 非同盟會議에 임하는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방침까지 취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非同盟會議 會員國間에 路線紛糾가 생기자 북한은 非同盟國家들의 “통일단결과 경제협력 및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투쟁의 방향을 反帝自主化로 돌리려 하였다.<sup>32)</sup>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非同盟國家들이 대결보다는 협조를, 그리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대폭 향상됨에 따라 非同盟會議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9년 9월 유고에서 개최된 제9차 非同盟 頂上會議에서는 「한반도문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수정안 조차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北韓의 非同盟會議 關聯 主要動向

〈표 VII-3〉

| 會議名     | 日字 및 場所                         | 活 動 內 容  |
|---------|---------------------------------|--|
| 第4次頂上會議 | 1973. 9. 5~ 9<br>알 제 리<br>알 제 이 | ◦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br>- 통일 후 또는 연방정부 수립 후 남북한<br>유엔가입<br>- 주한외군 철수, 외세간섭 중지 |

32) 1979. 7. 18 노동당중앙위·중앙인민위 연석회의결정; “1979. 9. 6 제6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의 이종욱의 연설” 「로동신문」(1979. 7. 19) 노동당중앙위정치국과 중앙인민위간 당정연합회의 토의 의제(1986. 6. 20.)

| 會 議 名   | 日 字 및 場 所                         | 活 動 內 容   |
|---------|-----------------------------------|---|
| 非同盟外相會議 | 1975. 8.25~30<br>페 루<br>리 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맹회원국 가입</li> <li>◦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li> <li>- 7·4공동성명에 규정한 평화통일 3대원칙 준수</li> <li>-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li> </ul> </li> <li>※ 한국 가입 거부</li> </ul>                         |
| 第5次頂上會議 | 1976. 8.16~19<br>스 리 랑 카<br>콜 롬 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4공동성명에 의한 南北韓民의 통일투쟁 지원</li> <li>- 주한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li> <li>- 핵무기 및 모든 전쟁수단 제거</li> <li>- UNC해체</li> <li>-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li> </ul> </li> <li>※ 박성철총리 참석</li> </ul> |
| 非同盟外相會議 | 1978. 7.25~30<br>유 고<br>베오그라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li> <li>- UNC 해체</li> <li>- 7·4공동성명에 규정한 평화통일 3대원칙 준수 및 한국민의 통일 염원 환영</li> <li>-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li> </ul> </li> <li>※ 허담외교부장 참석</li> </ul>           |
| 第6次頂上會議 | 1979. 9. 3~ 9<br>쿠 바<br>아 바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맹조정위원국에 피선</li> <li>◦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한외군 철수 및 외군기지 철폐</li> <li>- UNC 해체</li> </ul> </li> </ul>  |

| 會議名                          | 日字 및 場所                       | 活動內容  |
|------------------------------|-------------------------------|---|
| 第6次頂上會談                      |                               | - 7·4 공동성명에 규정한 평화통일<br>3대원칙 준수<br>-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br>※이종옥총리 참석                         |
| 非同盟外相會議                      | 1981. 2. 9~13<br>인도<br>뉴델리    | ◦ 한국문제 결의안 채택기도 좌절<br>※식량 및 농업분야 심포지움<br>평양개최 유치(1981.8.16~31)                            |
| 非同盟食糧 및<br>農業分野 調整國<br>會議    | 1981. 6.10~12<br>평양           | ◦ 비동맹국의 식량증산을 위한 회원국의<br>협조문제 토의  |
| 開途國 및 非同盟<br>國의 食糧問題<br>심포지움 | 1981. 8.26~31<br>평양           | ◦ 식량증산을 위한 기술·경제교류<br>◦ 농업연구센터, 교육기구 등 설치문제<br>◦ 식량 및 농업증산을 위한 '평양선언'<br>채택               |
| 第7次非同盟<br>通信社聯合調整<br>委員會 會議  | 1982. 5.12~14<br>평양           | ◦ 비동맹 통신사연합을 강화<br>◦ 비동맹국간 보도교환 확대를 위한<br>대책 토의   |
| 非同盟調整委<br>外相會議               | 1982. 5.31~6.6<br>쿠바          | ◦ 허담, 기조연설<br>- 경제협조문제 논의를 위한 비동맹 및<br>개발도상국가들의 '남북 수뇌자회의'<br>개최 제의<br>- 비핵평화지대 설치 필요성 역설 |
| 非同盟調整委<br>外相會議               | 1983. 1.12~15<br>니카라과         | ◦ 허담, 3가지의 비동맹운동과업 제시<br>- 반미투쟁을 위한 비동맹국들의<br>행동통일 호소                                     |
| 第7次頂上會談                      | 1983. 3. 7~3. 12<br>인도<br>뉴델리 | ◦ 비동맹조정위원국 재선<br>◦ 한국문제 조항<br>- 7·4 공동성명의 원칙에 의한 통일                                       |

| 會 議 名                        | 日 字 및 場 所                           | 活 動 內 容  |
|------------------------------|-------------------------------------|--|
| 節7次頂上會談                      |                                     | 달성:지지 확인<br>- 한반도에서의 외군철수 촉진 희망<br>※박상철부주석 참석  |
| 제1차 非同盟 및 發展途上國 教育 및 文化部長 會議 | 1983. 9.24~28<br>평 양                | ◦ 공동교육기관 및 기술협조기관 창설을 통한 협조체제 구체화<br>◦ 평양에 「민족악기 박물관」을 창설하여 「민족문화」의 국제적 협조다짐   |
| 非同盟 關係專門 家會議                 | 1984.10. 1~ 3<br>뉴 욕                | ◦ 김영남 연설<br>- 3자회담의 정당성 역설<br>- 비동맹정상회의 평양 유치 지지 도모  |
| 非同盟外相會議                      | 1985. 9. 4~ 7<br>앙 골 라<br>루 안 다     | ◦ 김영남 참석, 연설<br>- 86년 비동맹 정상회담 평양유치 계획 좌절<br>- 북한의 일방적인 한반도조정 채택 시도 실패<br>- 88올림픽 남북공동주최안 제안받기<br>※제2차 체육장관회의 평양개최안 채택 |
| 第8次頂上會議                      | 1986. 9. 1~ 7<br>짐 바브 웨<br>하 라 레    | ◦ 박상철 부주석 참석<br>◦ 주한외군 철수 및 88올림픽 공동주최 지지 내용 채택  |
| 軍縮에 관한 特別 各料會議<br>閣僚         | 1988. 5.25~27<br>쿠 바<br>아 바 나       | ◦ 김영남 외교부장 참석<br>◦ 최중선언문에 “동북아 비핵 지대화 지지 및 아·태지역의 군축요망”내용 채택   |
| 全體 外相會議                      | 1988. 9. 7~ 9<br>키 프 러 스<br>니 코 시 아 | ◦ 최수헌 외교부 부부장 참석<br>◦ 최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UN이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 會議名      | 日字 및 場所                        | 活動內容  |
|----------|--------------------------------|---|
| 調整委 外相會議 | 1989. 5. 7~19<br>짐바브웨<br>하 라 레 | ◦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참석<br>◦ 한반도 조항 채택                     |
| 第9次頂上會議  | 1989. 9. 4~ 8<br>유 고<br>베오그라드  | ◦ 연형묵 총리 참석<br>◦ 북한, 부의장국에 피선<br>◦ 한반도 분열상태에 우려 표시  |
| 特別關係會議   | 1990. 4.24~25<br>뉴 욕           | ◦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참석<br>◦ 한반도문제에 관한 토의내용을 요약,<br>각국에 배포 |

### (3) 西方外交

북한이 對西方 接近을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서 닉슨 美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미·중관계, 미·소의 화해 등 東西和解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터였다. 북한은 이와같은 國際情勢의 흐름에 자극 받아 19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에서의 對西方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재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sup>33)</sup>

북한의 對西方 外交方式은 민간수준의 「人民外交」방식과 정권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對象國家의 저명인사나 사회단체를 개별적으로 초청하거나 방문하고, 民間貿易代表部와 公報館등을 설치하여 準政府次元으로 끌어올렸다가 공식적인 外交樹立으로 발전시켜가는 방식을 도모하여 왔다.<sup>34)</sup>

북한의 對西方 外交의 중심은 對美·日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美國과 日本의 對韓 유대가 共產革命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美·日外交의 기본목표는 美·日의 對韓 유대를

33) 金日成은 이러한 전술적 전환이 제국주의와의 타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지작선집」(평양: 인민출판사, 1968) p. 338.

34) 대표적인 경우가 스칸디나비아제국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중립국에 대한 접근방법이다.

## 北韓의 西方 未修交國內 代表部 設置現況

〈표 VII-4〉

(1990. 12 현재)

| 機 構 名 稱     | 所 在 地     | 設 置 日   |
|-------------|-----------|---------|
| 쿠웨이트통상대표부   | 쿠 웨 이 트   | 1970.11 |
| U N 대 표 부   | 미 국(뉴욕)   | 1973. 9 |
| UNESCO 대표부  | 프 랑 스(파리) | 1976.11 |
| F A O 대 표 부 | 프 랑 스(파리) | 1977.11 |
| 駐佛일반대표부     | 프 랑 스(파리) | 1984.12 |

약화시키거나, 美·日과 한국과의 유대를 離間시킨다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며, 또 다른 목적은 美·日과 北韓과의 개선을 통한 기술 및 자본도입 등이라는 경제적 성격의 것이다.

북한의 對美接近 시도는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치시키자는 문제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sup>35)</sup>

특히 최근에 와서 美國外交官과의 공식접촉, 6·25참전 실종 美軍遺骸의 반환, 미국내 학술회에 대표단 파견 및 미국학자 평양초청 학술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대미 접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sup>36)</sup>

35) 이러한 직접접촉 시도로서 북한은 파키스탄의 부토 대통령을 통해 카터에게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1976. 9), 유고의 티토 대통령(1977. 8)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1978. 5)의 북한방문이 대미 접근책 강구의 일환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1984. 1 조자양 중국 수상의 방미시 「3자회담」을 제의, 대미 접근을 위한 중공의 주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은 동년 4월 레이건 미국대통령 방중시 「3자회담」을 통한 미국과 북한의 접촉을 권유한 바 있다. 특히 1985. 4 제40차 유엔총회 참가자 방미한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은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미국 병사의 생사 확인·유품·유물 반환문제와 관련, “만약 미정부가 정식으로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미군의 조사를 의뢰해 줄 경우, 이를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최초로 긍정적 반응을 표명함으로써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인 대미 접촉 의지를 표출하였다.

36) 미국과 북한은 1988년 12월부터 1990년 10월 사이에 북경에서 13차례의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가졌다. 그리고 북한은 1990년 5월 28일 미군유해 5구를 판문점을 통해 반환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 조지워싱턴大(1990. 5. 11~19) 및 스탠포드大(1990. 7. 5~7)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스탠포드大 국제안전 및 군비통제연구소장 존 루이스 교수 일행을 평양에 초청(1990. 6. 8~16)하기도 하였다.

## 北韓의 招請・訪問外交 現況

〈표 VII-5〉

(대표단수/국가수 : 1980~89)

| 區分       |    | 政治       | 經濟      | 軍事     | 社會       | 體育     | 科學     | 計        |
|----------|----|----------|---------|--------|----------|--------|--------|----------|
| 亞洲       | 초청 | 364/28   | 150/16  | 2/2    | 945/19   | 48/9   | 19/7   | 1531/30  |
|          | 방문 | 144/22   | 138/10  | 3/3    | 151/21   | 38/10  | 24/5   | 498/22   |
| 中東       | 초청 | 280/22   | 67/14   | 21/7   | 317/17   | 19/13  | 1/1    | 705/22   |
|          | 방문 | 135/15   | 63/9    | 8/3    | 73/11    | 13/6   |        | 292/17   |
| 阿洲       | 초청 | 691/41   | 97/30   | 28/13  | 659/39   | 36/23  | 1/1    | 1512/42  |
|          | 방문 | 339/38   | 41/18   | 12/7   | 64/26    | 3/3    | 6/5    | 465/39   |
| 西歐       | 초청 | 373/27   | 71/14   |        | 593/23   | 5/5    |        | 1042/27  |
|          | 방문 | 202/20   | 50/11   |        | 139/18   | 43/11  | 9/4    | 443/23   |
| 美洲       | 초청 | 330/38   | 24/12   | 2/2    | 545/30   | 10/8   |        | 911/38   |
|          | 방문 | 193/25   | 22/11   | 4/1    | 93/20    | 7/4    | 7/5    | 326/27   |
| 東歐       | 초청 | 618/15   | 310/13  | 59/10  | 1611/14  | 614/12 | 74/10  | 3286/15  |
|          | 방문 | 530/13   | 316/12  | 53/11  | 1131/14  | 265/11 | 68/10  | 2383/14  |
| 國際<br>機構 | 초청 | 92/1     | 24/1    | 4/1    | 229/1    | 86/1   | 7/1    | 422/1    |
|          | 방문 | 111/1    | 41/1    | 10/1   | 85/1     | 20/1   | 3/1    | 270/1    |
| 計        | 초청 | 2748/172 | 746/100 | 116/35 | 4899/143 | 818/71 | 102/20 | 9429/175 |
|          | 방문 | 1654/132 | 671/72  | 90/26  | 1736/111 | 386/46 | 117/30 | 4654/143 |

日本과는 그동안 日本 社會黨과 1971년 11월에 구성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交流를 추진하면서도 공식관계 수립은 交叉承認 및 두개조선 반대원칙을 내세워 회피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소수교, 한국의 UN단독가입 분위기 성숙 등으로 국제적 고립에 대한 강박관념이 커지고 내부의 경제난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일본측에 國交正常化를 제의하고 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국제적 고립탈피와 일본의 자본과 기술, 특히 일본으로부터 과거 식민통치시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

과국직전에 있는 경제문제를 희생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sup>37)</sup>

#### (4) UN外交

북한은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唯一合法政府로 승인되고 1950년 安全保障理事會에서 북한과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UN의 권위와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 왔다.

1953년 韓國戰 休戰會談에서 북한은 UN軍사령관과 휴전협정을 체결한 뒤 UN을 미국과 동일시하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有關國會議을 제의하는 등 한국문제를 UN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이 이른바 自主外交를 강조하면서부터 UN에 대한 자세는 경색되어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UN의 권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 동서해빙 분위기의 형성과 함께 중국이 UN에 가입하고 남북한 동시초청안이 제기되는 한편, 1973년 한국이 남북한동시가입 불반대를 선언한 6. 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발표하자, 북한도 같은날 祖國統一 五大綱領 발표로 맞서 「單一國號에 의한 유엔 加入」을 내세우면서 UN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3년 9월 5일 UN본부에 常駐代表部를 개설하였고 제네바에 있는 UN事務局에도 상임 僑居代表部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시기부터 각종 UN산하 및 專門機構, 정부간 국제기구 등에도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 제30차 UN총회에서는 중·소와 친북 제3세계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한반도문제에 대한 共產側 결의안과 西方側 결의안이

37) 金日成은 1990년 9월24일부터 9월28일까지 訪北한 日本 自民·社會黨의 합동 대표단 단장 金丸信 前副總理와 3차례의 회담을 갖고 쌍방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으며, 북한 노동당과 일본의 自民·社會黨 등 3黨대표단은 日·北韓修交 추진에 합의하는 내용의 「8개항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통과되는 기현상을 보였다.<sup>38)</sup> 이후 남북한은 UN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게 되었다. 1970년대에 나타난 북한의 UN정책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1973년을 기점으로 UN동시가입을 거부한 것이라 하겠다.<sup>39)</sup>

1980년대에 한국의 급속한 經濟力 신장을 바탕으로 외교역량이 강화되고 東西 데탕트 무드와 소련 및 東歐改革·開放물결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은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對UN戰略도 크게 위축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의 UN外交를 강화하기 위해 「單一國號에 의한 UN加入」 또는 「單一議席下의 共同加入」 등 UN가입 방식에 있어 戰術的 변화를 보여왔다.

특히 金日成이 1990년 5월 24일 最高人民會議 제9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單一議席共同加入案<sup>40)</sup>은 의견상 종래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 같은 인상을 주나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연방공화국 단일국호 가입」안 즉 「先統一 後加入」안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한국 單獨加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초조한 나머지 이를 저지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여진다.

한편 북한은 1990년 10월 현재 12개의 UN기구와 10개의 政府間 國際機構 등 모두 22개의 國際機構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가입한 22개의 機構에 대부분 한국이 먼저 가입해

38) 북한은 제30차 UN총회에서 공산측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공산측안의 일방적 승리라고 주장하고, 서방측案과 종래 UN내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諸決議의 무효화와 UNC의 즉시해체, 미군철폐 및 대미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통일문제가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9) 북한은 1949년 2월 9일과 1952년 1월 2일 등 두차례에 걸쳐 UN단독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1957년과 1958년에 소련을 통해 「남북한동시가입안」을 제출한 바 있다.

40) 金日成은 이날 발표한 「조국통일 5개방침」 제3항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우선 단일의석아래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있던 점을 감안해 보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일국호에 의한 UN가입"주장이나 두개조선 반대정책은 그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 南北韓 國際機構加入 對比表

〈표 VII-6〉

(1990. 10. 현재)

| 區分 | UN傘下機構 | UN專門機構 | 政府間機構 | 合計 |
|----|--------|--------|-------|----|
| 韓國 | 2      | 15     | 36    | 53 |
| 北韓 | 1      | 11     | 10    | 22 |

### 南北韓 UN傘下機構 加入現況

〈표 VII-7〉

(1990. 12. 현재)

| 일련번호 | 機 構 名                  | 韓國加入 | 北韓加入 |
|------|------------------------|------|------|
| 1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1957 | -    |
| 2    |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 1965 | 1973 |

### 南北韓 UN專門機構 加入現況

〈표 VII-8〉

(1990. 12. 현재)

| 일련번호 | 機 構 名                 | 韓國加入 | 北韓加入     |
|------|-----------------------|------|----------|
| 1    | 세계 보건기구(WHO)          | 1949 | 1973. 5  |
| 2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 1949 | 1977. 11 |
| 3    | 만국 우편연합(UPU)          | 1949 | 1974. 6. |
| 4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 1950 | 1974. 10 |
| 5    | 국제 전기통신연합(ITU)        | 1952 | 1975. 9  |
| 6    |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 1952 | 1977. 9  |
| 7    | 국제 통화기금(IMF)          | 1955 | -        |
| 8    | 국제 부흥개발은행(IBRD)       | 1955 | -        |

| 일련번호 | 機 構 名            | 韓國加入 | 北韓加入     |
|------|------------------|------|----------|
| 9    | 세계 기상기구(WMO)     | 1956 | 1975. 4  |
| 10   | 국제 해사기구(IMO)     | 1961 | 1986. 4  |
| 11   | 국제 개발협회(IDA)     | 1961 | -        |
| 12   | 국제 금융공사(IFC)     | 1964 | -        |
| 13   | 유엔 공업개발기구(UNIDO) | 1967 | 1980. 1  |
| 14   | 세계 지적소유권기구(WIPO) | 1979 | 1974. 8  |
| 15   |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  | 1978 | 1986. 12 |

\*註: 16개 UN 전문기구중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이 미가입한 유일한 기구임.(북한도 미가입)

### 南北韓 政府間機構 加入現況

〈표VII-9〉

| 일련번호 | 機 構 名  | 韓國加入 | 北韓加入 |
|------|--|------|------|
| 1    |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                        | 1974 | 1974 |
| 2    | 아프리카·아시아 농촌재건기구(AARRO)                         | 1963 | -    |
| 3    | 아시아 개발은행(ADB)                                  | 1965 | -    |
| 4    | 아프리카 개발기금(AFDF)                                | 1980 | -    |
| 5    |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터(APDC)                             | 1961 | -    |
| 6    | 아시아 생산성기구(APO)                                 | 1962 | -    |
| 7    | 아시아 태평양지역 식물보호위원회(APPPC)                       | 1981 | -    |
| 8    |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APPU)                             | 1962 | -    |
| 9    | 아시아 태평양 전기통신 협의체(APT)                          | 1979 | -    |
| 10   |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ASPAC)                             | 1966 | -    |
| 11   | 아시아 채소 개발연구센터(AVRDC)                           | 1971 | -    |
| 12   | 관세협력 이사회(CCC)                                  | 1968 | -    |
| 13   | FAO/WHO 공동식품 규격화 위원회(CODEX)                    | 1970 | 1981 |
| 14   | 남부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경제개발 협력을 위한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 1962 | -    |
| 15   | 동부지역 공공 행정기구(EROPA)                            | 1962 | -    |

| 일련번호 | 機 構 名                     | 韓國加入 | 北韓加入 |
|------|---------------------------|------|------|
| 16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1967 | —    |
| 17   | 국제도량형국(IBWM)              | 1959 | 1981 |
| 18   | 국제면화 자문위원회(ICAC)          | 1970 | —    |
| 19   | 대서양 참치 보존위원회(ICCAT)       | 1954 | —    |
| 20   | 국제 문화재 보존 복구 연구센터(ICCROM) | 1968 | 1986 |
| 21   | 동남대서양 수산위원회(ICSEAF)       | 1981 | —    |
| 22   | 국제수로기구(IHO)               | 1972 | 1987 |
| 23   |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 1985 | —    |
| 24   | 국제전기통신 위성기구(INTELSAT)     | 1972 | —    |
| 25   | 정부간 해양학 위원회(IOC)          | 1961 | 1979 |
| 26   | 국제수역국(IOC)                | 1953 | —    |
| 27   |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 1978 | 1974 |
| 28   | 국제포플러 위원회(IPC)            | 1973 | —    |
| 29   | 인도·태평양 수산위원회(IPFC)        | 1950 | —    |
| 30   | 국제사탕기구(ISO)               | 1972 | —    |
| 31   | 국제소맥이사회(IWC)              | 1953 | —    |
| 32   | 국제 포경위원회(IWC)             | 1979 | —    |
| 33   | 세계관광기구(WTO)               | 1974 | 1987 |
| 34   | 정부간 이주 위원회(ICM)           | 1988 | —    |
| 35   | 국제원자력기구(IAEA)             | 1957 | 1974 |
| 36   | 국제교육국(IBE)                | 1962 | 1975 |



## 時期別 對UN關係 變化過程

〈표 VII-10〉

| 時 期                            | 年 度         | 主 要 立 場  | 備 考   |
|--------------------------------|-------------|--|---|
| 韓半島問題<br>에 관한 유<br>엔 간섭<br>拒否期 | 1948<br>~5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간섭거부</li> <li>- 유엔에 의한 남한지역<br/>단독선거 반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9, 1952 유엔가입신청</li> <li>◦ 1950.6.25 안보리, 북한과<br/>중공을 침략자로 규정</li> <li>◦ 1953.7.27 유엔군사령관과<br/>휴전협정 체결</li> </ul>  |
| 韓半島問題<br>의 유엔상정<br>拒否期         | 1954<br>~7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을 미국과 동일시</li> <li>◦ 통일을 위한 남북한 포함<br/>유관국회의 제의</li> <li>◦ 유엔권능 부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8.14 김일성, 남북<br/>연방제 제의</li> <li>◦ 1966.8.12 〈자주로선〉선언</li> <li>◦ 1969.10.29 서독 할슈타인<br/>원칙 폐기</li> </ul>  |
| 한반도문제<br>의 선별적<br>유엔上程期        | 1971<br>~현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과 미국 분리시도</li> <li>- 미군에게서 유엔모자<br/>벗기기</li> <li>◦ 한반도 문제의 유엔문제화<br/>시도</li> <li>◦ 「고려연방국」국호로 유엔<br/>가입 제의</li> <li>◦ 「교차승인」 및 남북한<br/>「유엔동시가입」반대</li> <li>- 유엔의 목적과 원칙<br/>존중</li> <li>◦ 단일의석 공동가입<br/>제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1.4.12 허담 8개항<br/>제시</li> <li>◦ 1972.7.4 남북한 공동성명</li> <li>◦ 1973.9.5 유엔대표부 개설</li> <li>◦ 1974. 29차 총회 UNC,<br/>URK 해체안 결의</li> <li>◦ 1975. 30차 유엔총회,<br/>남북한 지지 두개 결의안<br/>동시 통과</li> <li>◦ 1976.9. 공산측 결의안<br/>철회</li> <li>◦ 1977~현재 공산측<br/>결의안 불상정</li> </ul> |

### (5) 修交現況

북한은 1990년 12월 현재 105개국과 外交關係를 맺고 있는데 한국의 145개국에 비하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南北韓修交關係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기의 남북한은 각기 政治體制의 정비와 전쟁 수행 등으로 인해 외교활동이 극히 저조한 채 陣營內 國家들과의 수교에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1953년까지의 남북한의 수교현황은 한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 및 아시아의 自由陣營國家 6개국과, 그리고 북한은 소련·중국 및 東歐 등의 10개 共產圈國家와 수교하였다. 그러나 1953년 8월 休戰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에 韓國은 反共路線의 고수와 「할슈타인 原則」의 준수 등으로 中立國과의 수교는 제한하고 親美 自由陣營國家와의 관계발전에 주력하여 1960년에는 16개국과 수교하였다. 북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共產圈外交에만 노력하여 1960년에는 한국과 같이 16個國과 外交關係를 맺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대립의 심화, 아시아·아프리카 新生國家들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한국은 中立國들과의 외교 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외관계를 급격히 신장시켜 나아갔다.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에 한국은 아프리카 21개국 및 美洲圈을 비롯하여 總 67개국과 새로 수교함으로써 1971년에는 總修交國이 83개국에 달해 1960년의 16개국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르렀다.

같은시기에 북한은 이른바 「反帝·反植民地解放」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아프리카·中南美 諸國에 대한 浸透外交를 강화하고 1966년 8월에는 外交에서의 自主路線을 선언하며 多邊外交에 치중 하였다. 이 기간동안에 북한도 對外活動에 많은 성과를 보여 1971년에는 總修交國이 37개국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와서 國際社會에서 第3世界國家들의 영향력 증대, UN의 성격 변화 등으로 한국의 修交國 확대에는 커다란 증가는 없었으나 데탕트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힘입어 1973년 6월에는 非敵性國家에 대한 문호개방을 밝히는 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천명하는 등 理念을 초월한 實利外交에 박차를 가하여 1980년말에는 112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북한도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세계각국에 여러 형태의 代表團을 파견하는 등의 對外活動을 강화하여 1980년말에는 總修交國이 100개국에 달하였다.

1980년대의 한국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7·7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꾸준히 北方政策을 추진하여 때마침 民主化改革을 추진하고 있던 東歐社會主義國家들과 연달아 國交를 열고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총 145개국과 外交關係를 맺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修交國 확대에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을 뿐아니라 1983년의 버마 아웅산폭파사건 등 잦은 國際테러행위와 北韓外交官들의 밀수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斷交措置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中南美地域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시도하여 1988년 콜롬비아, 1989년 페루, 1990년 안티과 바브다 등과 새로이 수교를 하였다.

總 修交國面에서 남북한의 시기별 外交力量을 요약하면 1950년대 초에는 한국이 약간 열세였으나 북한의 南侵 戰爭挑發을 계기로 UN會員國중 17個國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參戰하는 등 UN을 중심으로 한 國際社會에서의 한국에 대한 支持가 급증하여 1960년대에는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한 우세를 보였고, 1970년대 초에는 北韓이 어느정도 열세를 만회하였으나 한국이 역시 압도적으로 북한을 능가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남북한의 격차가 좁혀졌으나 1980년대 이후 韓國의 외교강화로 또 다시 北韓의 外交力量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를 보인 결과 1990년 12월 현재 남북한의 總修交國 대비는 145 : 105로 한국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南北韓의 地域別 修交現況

<표 VII-11>

(1990. 12 현재)

| 地域<br>區分 | 地域     |     |     |    |      |       |
|----------|--------|-----|-----|----|------|-------|
|          | 亞洲·太平洋 | 美 洲 | 歐 洲 | 中東 | 아프리카 | 計     |
| 韓 國      | 28     | 34  | 28  | 18 | 37   | 145個國 |
| 北 韓      | 19     | 14  | 17  | 13 | 42   | 105個國 |
| 同 時      | 15     | 13  | 16  | 10 | 35   | 89個國  |

南北韓의 國別 修交現況

<표 VII-12>

(1990. 12. 현재)

| 地域區分          | 國 家 名       | 修 交          |              |
|---------------|-------------|--------------|--------------|
|               |             | 韓 國          | 北 韓          |
| 亞洲 및<br>太平洋地域 | 오스트레일리아     | 1961.10.31   | 1974. 7.30   |
|               | 방글라데시       | 1973.12.18   | 1973.12.16   |
|               | 부  탄        | 1987. 9. 25  |              |
|               | 브루나이        | 1984 1. 1    |              |
|               | 중국(대륙)      |              | 1949. 10. 6  |
|               | 중화민국        | 1948. 8. 13  |              |
|               | 피  지        | 1970. 10. 11 |              |
|               | 인  도        | 1973. 12. 10 | 1973. 12. 10 |
|               | 인도네시아       | 1973. 9. 18  | 1964. 4. 18  |
|               | 일  본        | 1965. 12. 18 |              |
|               | 캄푸치아        |              | 1964. 2. 28  |
|               | 키리바티        | 1980. 5. 2   |              |
|               | 라 오 스       |              | 1974. 6. 24  |
|               | 말레이시아       | 1960. 2. 23  | 1973. 7. 2   |
|               | 말 디 브       | 1967. 11. 30 | 1970. 6. 14  |
|               | 몽  골        | 1990. 3. 26  | 1948. 10. 15 |
| 미 안 마         | 1975. 5. 16 |              |              |

| 地域区分           | 国家名        | 修 交          |              |
|----------------|------------|--------------|--------------|
|                |            | 韓 國          | 北 韓          |
| 亞洲 및<br>太平洋 地域 | 나 우 루      | 1979. 8. 20  | 1982. 3. 5   |
|                | 네 팔        | 1974. 5. 15  | 1974. 5. 15  |
|                | 뉴질랜드       | 1962. 3. 26  |              |
|                | 파키스탄       | 1983. 11. 7  | 1972. 11. 9  |
|                | 파푸아뉴기니     | 1976. 5. 19  | 1976. 6. 1   |
|                | 필 리 핀      | 1949. 3. 3   |              |
|                | 싱가포르       | 1975. 8. 8   | 1975.11. 8   |
|                | 솔로몬제도      | 1978. 9. 15  |              |
|                | 스리랑카       | 1977. 11. 14 | 1970. 6. 25  |
|                | 태 국        | 1958. 10. 1  | 1975. 5. 8   |
|                | 통 가        | 1970. 9. 11  |              |
|                | 투 발 루      | 1970. 11. 15 |              |
|                | 바누아투       | 1980. 11. 5  | 1981. 10. 1  |
|                | 베 트 남      |              | 1950. 1. 30  |
|                | 서사모아       | 1972. 9. 15  |              |
|                | 國家數 : 32개국 | 28개국         | 19개국         |
| 美洲地域           | 안티과 바르다    | 1981.11. 1   | 1990.11.27   |
|                | 아르헨티나      | 1962. 2. 15  |              |
|                | 바 하 마      | 1985. 7. 8   |              |
|                | 바르바도스      | 1977. 11. 15 | 1977. 12. 5  |
|                | 벨 리 제      | 1987. 4. 14  |              |
|                | 볼리비아       | 1965. 4. 25  |              |
|                | 브 라 질      | 1959. 10. 31 |              |
|                | 카 나 다      | 1963. 1. 14  |              |
|                | 칠 레        | 1962. 6. 12  |              |
|                | 콜롬비아       | 1962. 3. 10  | 1988. 10. 24 |
|                | 코스타리카      | 1962. 8. 15  |              |

| 地域區分       | 國 家 名       | 修 交          |              |
|------------|-------------|--------------|--------------|
|            |             | 韓 國          | 北 韓          |
| 美洲地域       | 쿠 바         |              | 1960. 8. 29  |
|            | 도미니카(연)     | 1978. 11. 3  |              |
|            | 도미니카공화국     | 1962. 6. 6   |              |
|            | 에콰도르        | 1962. 10. 5  |              |
|            | 엘살바도르       | 1962. 8. 30  |              |
|            | 그레나다        | 1974. 8. 1   |              |
|            | 과테말라        | 1962. 10. 24 |              |
|            | 가이아나        | 1968. 6. 13  | 1974. 5. 18  |
|            | 하 이 티       | 1962. 9. 22  |              |
|            | 온두라스        | 1962. 4. 1   |              |
|            | 자마이카        | 1962. 10. 13 | 1974. 10. 9  |
|            | 멕 시 코       | 1962. 1. 26  | 1980. 9. 9   |
|            | 니카라과        | 1962. 1. 26  | 1979. 8. 21  |
|            | 파 나 마       | 1962. 9. 30  |              |
|            | 파라과이        | 1962. 6. 15  |              |
|            | 페 루         | 1963. 4. 1   | 1989. 11. 21 |
|            | 세인트키츠네비스    | 1983. 9. 19  |              |
|            | 세인트루시아      | 1979. 2. 23  | 1979. 9. 13  |
|            | 수 리 남       | 1975. 11. 28 | 1982. 10. 11 |
|            | 세인트 빈센트     | 1979. 10. 28 | 1981. 4. 3   |
|            | 트리니다드토바고    | 1985. 7. 23  | 1986. 1. 22  |
|            | 우루과이        | 1964. 10. 17 |              |
|            | 미 국         | 1948. 8. 13  |              |
| 베네즈엘라      | 1965. 4. 29 | 1974. 10. 28 |              |
| 國家數 : 35개국 | 34개국        | 14개국         |              |
| 歐洲地域       | 알바니아        |              | 1948. 11. 29 |
|            | 오스트리아       | 1963. 9. 18  | 1974. 12. 17 |

| 地域區分   | 國 家 名        | 修 交          |              |
|--------|--------------|--------------|--------------|
|        |              | 韓 國          | 北 韓          |
| 區洲地域   | 벨 지 음        | 1961. 5. 2   |              |
|        | 불가리아         | 1990. 3. 23  | 1948. 11. 19 |
|        | 싸이프러스        |              |              |
|        | 체코슬로바키아      | 1990. 3. 22  | 1948. 10. 21 |
|        | 덴 마 크        | 1959. 3. 31  | 1973. 7. 20  |
|        | 핀 랜 드        | 1973. 8. 24  | 1973. 6. 1   |
|        | 프 랑 스        | 1949. 2. 15  |              |
|        | 독 일          | 1955.12. 1   |              |
|        | 그 리 스        | 1961. 4. 5   |              |
|        | 헝 가 리        | 1989. 2. 1   | 1948. 11. 11 |
|        | 아이슬랜드        | 1962. 10. 10 | 1973. 7. 23  |
|        | 아일랜드         | 1983. 10. 4  |              |
|        | 이탈리아         | 1956. 11. 24 |              |
|        | 룩셈부르크        | 1962. 3. 16  |              |
|        | 말 타          | 1965. 4. 2   | 1971. 12. 23 |
|        | 네덜란드         | 1961. 4. 4   |              |
|        | 노르웨이         | 1959. 3. 2   | 1973. 6. 22  |
|        | 폴 란 드        | 1989.11. 1   | 1948. 10. 16 |
|        | 포르투갈         | 1961. 4. 15  | 1975. 2. 22  |
|        | 루마니아         | 1990. 3. 30  | 1948. 11. 3  |
|        | 스 페 인        | 1950. 3. 17  |              |
|        | 스 웨 덴        | 1959. 3. 11  | 1973. 4. 6   |
|        | 스 위 스        | 1960. 12. 19 | 1974. 12. 20 |
|        | 터 키          | 1957. 3. 8   |              |
| 영 국    | 1949. 1. 18  |              |              |
| 소 련    | 1990. 9. 30  | 1948. 10. 12 |              |
| 바 티 칸  | 1963. 12. 11 |              |              |
| 유고슬라비아 | 1989. 12. 27 | 1971. '9. 2  |              |

| 地域區分   | 國 家 名      | 修 交                                       |                             |
|--------|------------|---|-----------------------------|
|        |            | 韓 國                                       | 北 韓                         |
|        | 國家數 : 30개국 | 28개국                                      | 17개국                        |
| 中東地域   | 아프가니스탄     |   | 1973. 12. 26                |
|        | 알제리아       | 1990. 1. 15                               | 1963. 4. 18                 |
|        | 바 레 인      | 1976. 4. 17                               |                             |
|        | 이 집 트      |   | 1963. 8. 25                 |
|        | 이 란        | 1962. 10. 23                              | 1973. 4. 19                 |
|        | 이 라 크      | 1989. 7. 9                                |                             |
|        | 이스라엘       | 1962. 4. 9                                |                             |
|        | 요 르 단      | 1962. 7. 26                               | 1974. 6. 30                 |
|        | 쿠웨이트       | 1979. 6. 11                               |                             |
|        | 레 바 논      | 1981. 2. 12                               | 1981. 2. 12                 |
|        | 리 비 아      | 1980. 12. 29                              | 1974. 1. 30                 |
|        | 모리타니아      | 1978. 11. 19                              | 1980. 3. 19                 |
|        | 모 로 코      | 1962. 7. 6                                | 1989. 2. 13                 |
|        | 오 만        | 1974. 3. 28                               |                             |
|        | 카 타 르      | 1974. 4. 18                               |                             |
|        | 사우디아라비아    | 1962. 10. 16                              |                             |
|        | 수 단        | 1977. 4. 13                               | 1969. 6. 21                 |
|        | 시 리 아      |   | 1966. 7. 19                 |
|        | 튀니지아       | 1969. 3. 31                               | 1975. 7. 16                 |
|        | 아랍에미리트     | 1980. 6. 8                                |                             |
|        | 예 멘        | 1985. 8. 22(북)<br>1990. 5. 18(남)<br>※통일예멘 | 1963. 3. 9(북)<br>1968. 2(남) |
|        | 國家數 : 21개국 | 18개국                                      | 13개국                        |
| 아프리카地域 | 앙 골 라      |   | 1976. 4.15                  |
|        | 베 닌        | 1990. 10. 3                               | 1973. 2. 5                  |
|        | 보츠와나       | 1968. 4. 18                               | 1974. 12. 5                 |



| 地域區分   | 國家名         | 修 交          |               |
|--------|-------------|--------------|---------------|
|        |             | 韓 國          | 北 韓           |
| 아프리카地域 | 부르키나파소      | 1962. 4. 20  | 1972. 10. 11, |
|        | 부 룬 디       |              | 1967. 3. 11   |
|        | 카 메 룬       | 1961. 8. 10  | 1972. 3. 3    |
|        | 베르데잡        | 1988. 10. 3  | 1975. 8. 18   |
|        | 중앙아프리카      | 1963. 9. 5   | 1969. 9. 4    |
|        | 차 드         | 1961. 8. 6   | 1969. 5. 8    |
|        | 코 모 로       | 1979. 2. 19  | 1989. 11. 20  |
|        | 콩 고         | 1990. 6. 16  | 1964. 12. 24  |
|        | 코트디브와르      | 1961. 7. 23  | 1985. 1. 9    |
|        | 지 부 티       | 1977. 12. 8  |               |
|        | 적도기니        | 1979. 9. 14  | 1969. 9. 20   |
|        | 에치오피아       | 1963. 12. 23 | 1975. 6. 5    |
|        | 가 봉         | 1962. 10. 1  | 1974. 2. 1    |
|        | 감 비 아       | 1965. 4. 21  | 1973. 3. 2    |
|        | 가 나         | 1977. 11. 14 | 1964. 12. 28  |
|        | 기 니         | 1978. 1. 6   | 1960. 6. 14   |
|        | 기니비소        | 1983. 12. 22 | 1974. 3. 10   |
|        | 케냐          | 1964. 2. 7   | 1975. 5. 12   |
|        | 레 소 토       | 1962. 12. 7  | 1980. 7. 22   |
|        | 라이베리아       | 1964. 3. 18  | 1975. 7. 3    |
|        | 마다가스카르      | 1962. 6. 25  | 1972. 11. 16  |
|        | 말 라 위       | 1965. 3. 9   | 1982. 6. 25   |
|        | 말 리         | 1990. 9. 27  | 1960. 10. 31  |
|        | 모리셔스        | 1971. 7. 3   | 1973. 3. 20   |
|        | 모잠비크        |              | 1975. 6. 25   |
|        | 나미비아        | 1990. 3. 21  | 1990. 3. 21   |
|        | 니 제 르       | 1961. 7. 27  | 1974. 9. 6    |
| 나이지리아  | 1980. 2. 22 | 1976. 5. 25  |               |

| 地域區分    | 國 家 名      | 修 交          |              |
|---------|------------|--------------|--------------|
|         |            | 韓 國          | 北 韓          |
| 아프리카地域  | 루 안 다      | 1963. 3. 21  | 1972. 4. 22  |
|         | 상토메프린시페    | 1988. 8. 20  | 1975. 8. 9   |
|         | 세 네 갈      | 1962. 10. 19 | 1972. 9. 12  |
|         | 세 이 셸      |              | 1976. 8. 24  |
|         | 시에라레온      | 1962. 6. 25  | 1971. 10. 18 |
|         | 소말리아       | 1987. 9. 26  | 1967. 4. 13  |
|         | 남아프리카      |              |              |
|         | 스와질랜드      | 1968. 11. 19 |              |
|         | 탄자니아       |              | 1965. 1. 4   |
|         | 토 고        |              | 1973. 1. 13  |
|         | 우 간 다      | 1963. 3. 26  | 1963. 3. 2   |
|         | 자 이 레      | 1963. 4. 1   | 1972. 12. 5  |
|         | 잠 비 아      | 1990. 9. 4   | 1969. 4. 12  |
|         | 짐바브웨       |              | 1990. 4. 18  |
|         | 國家數 : 45개국 | 37개국         | 42개국         |
| 總 國 家 數 | 163 개국     | 145 개국       | /105 개국      |

### (6) 對外宣傳

북한의 對外宣傳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國際革命力量과의 連帶性」을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아래 북한은 ① 駐韓美軍撤收등 韓半島에서의 共產化革命을 달성하기 위한 國際的 與件造成, ② 북한의 國際的 地位향상과 한국의 孤立化, ③ 社會主義建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國際協力の 강화, ④ 金日成偶像化 및 父子世襲體制的 常爲性 선전, ⑤ 북한 統一方案의 정당성 주장 등을 對外宣傳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對外宣傳活動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地域別의 외교목표에 맞춰 전개되고 있다. 共產圈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의 견지」와 「社會主義運動의 統一團結강화」를 주장하고, 非同盟圈에 대해서는 「反帝·反植民主義」와 「民族解放鬪爭」에서의 連帶性을 표방하면서 金日成의 主體思想과 북한 統一方案의 정당성 선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西方國家들에 대해서는 「相互平等과 主權존중」을 내세워 人民들의 단결을 주장하면서 평화이미지 부각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41)</sup>

#### (7) 對外宣傳活動組織

對外宣傳 활동도 外交活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노동당의 指導와 統制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對外宣傳 활동의 총체적인 계획은 黨宣傳煽動部가 담당하며 집행은 黨國際部가 지휘·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宣傳活動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親北團體들을 주로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海外親北團體 조직은 ① 親善協會, ② 金日成研究小組, ③ 連帶性委員會로 크게 나뉘는데 親善協會는 상대국의 左傾 또는 親北人士들로 구성된 人民外交의 前衛團體로서 집회, 성명, 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친북정책 유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金日成研究小組는 「金日成勞作」에 대한 학습과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金日成선전과 主體思想의 해외전파에 이용하고 있다. 連帶性委員會는 親北反韓 활동을 위한 政治團體로서 집회·성명 등을 통해 북한統一案 선전과 지지획득에 활용하고 있다.

親善協會는 1951년 6월 日·朝協會의 결성을 시발로 하여 조직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인 1950년대에는 아시아와 공산권지역 5個

41) “한국전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북한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의 허담보고(1971. 11. 15)참조.

國家에 13개가 조직되는데 불과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 全地域에 걸쳐 45개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급속히 늘어나 1990년 12월 현재 107個國 397個에 이르고 있다.

金日成研究小組는 1969년 4월 말리에서 처음 조직되어 金日成勞作研究所, 金日成革命歷史研究室, 主體思想研究小組 등의 형태로 조직되고 있는데, 북한이 1970년대초의 國際的平和共存 무드에 편승하여 外交活動을 강화하던 시기인 1970년에 66개, 1971년에 106개로 증가하였고, 폭력혁명수출, 외교관밀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國際的 輿論이 극히 비판적이었던 1970년대 중반까지는 새로운 조직 結成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1977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主體思想에 관한 國際討論會」를 계기로 다시 활발하여져 1990년말 현재 93개국 877개에 이르고 있다. 金日成研究小組는 아시아·아프리카·中南美 등 주로 非同盟圈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는 국가는 主體思想國際研究所(1978년 발족)가 설치되어 있는 日本이다. 그러나 중·소와 東歐 등 공산권지역에는 第3世界國家의 유학생들로 구성된 것 이외에는 조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는 金日成個人崇拜에 대한 국제사회의 좋지 않은 지적 때문에 金日成研究小組를 主體思想研究小組로 개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連帶性委員會는 1971년 모리셔스에서 처음 조직되었는데 그 목적은 통일문제에 대한 대외선전을 더욱 강화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1990년말 현재 73개국 413개조직에 달한다. 金日成研究小組가 非同盟圈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비해 連帶性委員會는 아시아·西歐·美洲 등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西方地域에 중점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各國에 산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朝鮮統一支持連帶性委員會의 활동을 조정·통제하고 국제적 규모의 북한 지지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1977년 6월 프랑스 파리에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國際連絡委員會」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는 1977년 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지지를 위한

世界大會」에서 設立決議文이 채택되었고 이 결의에 따라 1977년 6월 25일~26일 알제리의 알제이에서 개최된 同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규약이 채택되어 常設 事務局의 설치가 결정됨으로써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북한의 배후조종하에 주한미군철수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및 3자회담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呼訴文, 聲明, 談話 등을 발표하는가 하면 「조선은 하나다」라는 機關誌를 통해 親北 反韓宣傳을 전개하고 있다.

### 北韓의 對外宣傳活動組織

〈표 VII-13〉 (團體數/國家數 : 1990. 12. 30 현재)

| 地 域   | 團 體 名   |        |          | 計        |
|-------|---------|--------|----------|----------|
|       | 親善協會    | 連帶性委員會 | 主體思想研究小組 |          |
| 亞 細 亞 | 197/14  | 252/7  | 247/109  | 696/20   |
| 中 東   | 22/13   | 17/8   | 96/11    | 135/14   |
| 아프리카  | 35/22   | 31/20  | 247/29   | 340/34   |
| 西 歐   | 64/21   | 64/18  | 182/18   | 310/22   |
| 美 洲   | 49/22   | 42/17  | 61/18    | 152/25   |
| 共 産   | 30/15   | 7/3    | 17/7     | 54/17    |
| 計     | 397/107 | 413/73 | 877/93   | 1687/132 |

또한 북한의 主要 對外活動組織의 하나로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朝總聯)<sup>42)</sup>를 들 수 있다. 1955년 5월 25일에 조직된 朝總聯은 在日僑胞들을 북한 지지로 전향시키고 한반도의 共產革命을 위한 前進基地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北韓은 朝總聯을 통해 「金日成著作選集」과 「革命傳統教養」 자료들을 各國語로 번역출판하고 新聞, 雜誌, 定期刊行物들을 발간하여

42) 「朝總聯」은 1990년 12월 현재로 48개의 地方本部和 300개의 支部, 1,550개의 分會, 18개의 傘下團體, 23개의 事業體를 가지고 있다.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宣傳活動을 전개하고 있다.<sup>43)</sup> 뿐만 아니라 朝總聯에 대해서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대를 이어 충성시키기」 위한 思想敎養事業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朝總聯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1957년부터 1990년 6월까지 教育費로 401억 2,568만엔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朝總聯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거액의 資金과 物品을 다시 헌납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朝總聯系 實業人들과의 合營을 통해 적지 않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朝總聯을 통해 1959년 12월 14일부터 在日同胞 北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87회에 걸쳐 93,342명을 북한지역으로 보냈다.<sup>44)</sup> 그런가하면 1962년 第3期 最高人民會議부터는 朝總聯대표를 代議員으로 참가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과 政治·思想·經濟적으로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朝總聯은 북한의 對外宣傳機構로도 활용되고 있다.

43) 朝總聯의 간행물로는 한글판 「조선신보」, 「조국」, 일어판 「조선시보」, 「조선화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민조선」 등의 정기간행물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세계각국에 배포되고 있다.

44) 북한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25년간 187회에 걸쳐 10만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기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1985), p. 210.

# VIII. 軍事





# 1. 政策基調

## 가. 軍事政策

북한의 軍事政策 基調는 國防에서 國防自衛原則을 표방하면서 對韓國 優位의 軍事력을 건설함에 있다. 북한헌법 제14조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여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金日成의 해석에 따르면 國防에서의 自衛는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保衛하는 것이며 군사분야에서 黨의 主體思想이 구현된 것이라고 한다.

김일성은 自衛的 國防建設이란, 주권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國防建設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라고 하면서 자위노선의 본질은 自力更生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북한의 軍事自衛路線을 강조하고 있다.

中·蘇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自衛原則을 주창하기 시작한 때는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5차 全員會議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軍事力을 강화

1) 「김일성저작집」 28권, p. 534 및 32권, p. 513.

하여야 한다”<sup>2)</sup>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그 실질적 의미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實踐方途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大軍事路線<sup>3)</sup>이다. 북한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로 제시되는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 北韓의 4大軍事路線

〈표 VIII-1〉

|          |  |
|----------|--|
| 全人民의 武裝化 |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武裝              |
| 全地域의 要塞化 |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
| 全軍의 幹部化  | 인민군 대열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모두가 한 등급 이상의 높은 職務를 수행        |
| 全軍의 現代化  |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며,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現代的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 |

그리하여 1970년 11월 노동당 5차대회의 總和報告에서 金日成은 “4대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쏠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옹성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2) 「조선중앙년감」(1963), pp. 157~160

3) 방문권·허종호,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pp. 260~284.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 軍事政策의 主要 實踐方向

〈표 VIII-2〉

| 區 分    | 內 容   | 備 考  |
|--------|---|--|
| 1960年代 | <p>〈4大軍事路線의 貫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濟建設과 軍事建設의 併進<sup>1)</sup></li> <li>◦ 戰爭을 위한 戰略物資의 備蓄<sup>2)</sup></li> <li>◦ 全黨과 全人民의 動員된 戰爭態勢確立<sup>3)</su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蘇와 集團安保 體制 構築</li> <li>◦ 1969년 특수8군단 창설</li> </ul>                                  |
| 1970年代 | <p>〈4大軍事路線의 完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經濟建設과 軍事建設의 併進<sup>4)</sup></li> <li>◦ 自立的 軍事工業基地를 完成하여  획기적인 自衛力의 育成<sup>5)</sup></li> <li>◦ 긴장되고 動員된 태세의  견지<sup>6)</su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獨自的 革命戰爭 遂行 能力 향상</li> <li>◦ 全戰線 南侵用 地下 坑道 掘設</li> </ul>                              |
| 1980년대 | <p>〈4大軍事路線의 強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動員態勢 強化<sup>7)</sup></li> <li>◦ 豫備戰力의 正規軍 水準化<sup>8)</sup></li> <li>◦ 現代戰 能力 補強<sup>9)</su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화군단, 지구사령 부 설치</li> <li>◦ 1988.4 民防衛部 설치</li> <li>◦ SCUD미사일 등 고도 정밀무기 개발</li> </ul> |

\* 출처: 1) 1966, 1967년 「로동신문」신년호 사설.

2) 1965. 11. 노동당중앙위원회 4기 12차 전원회의 결의.

3) 1967년 김일성 신년사.

4) 1970. 11. 2 노동당 5차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5) 1971년 김일성 신년사.

6) 1974, 1976, 1977년 김일성 신년사.

7) 1980. 10. 5 노동당 6차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

8) 1988. 4. 24 인민군 창건 56돌 기념보고.

9) 1989. 4. 24 인민군창건 57돌 기념보고.

되었다.”<sup>4)</sup>고 말하였다.

이러한 4大軍事路線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大軍事路線 채택 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주요실천 방향은 〈표 VIII-2〉와 같다.

그리고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 總和報告에서 김일성은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하고 1980년대 人民軍의 當面課業으로서, ① 군대내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② 전투·정치훈련의 강화, ③ 군사기술수준의 향상, ④ 부대의 전투력과 戰鬥準備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sup>5)</sup>

## 나. 軍事戰略

북한의 군사전략은 金日成의 戰爭觀에서 출발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革命戰爭論을 전개하였으며 6·25기습남침도 「조국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처음에는 速攻機動戰略과 包圍殲滅戰略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련군의 「野外敎令」에서 출발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6·25경험을 응용하여 現代戰과 革命戰의 배합이라는 기본전략전술을 설정하였다.

1950년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3차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6·25南侵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戰略的課題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북한 軍事戰略의 근간이 되고

4) 「로동신문」 1970. 11. 3 ; 「김일성저작선집」5권(1972), pp. 437~475.

5) 「로동신문」, 1980. 10. 11.

6) 6.25전쟁의 기원을 놓고 北侵說은 북한만이 주장하고 있다. 유교學術院 발간 대백과사전(1978), 중국어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986. 10), 후루시초프회고록(2집, 3집) 등에 南侵謀議와 선제공습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련 역사학자 미하일 스미로노브의 證言 「모스크바방송」(90.4.20)과 중국국제전략연구소 ‘자이지하이’(懼志海)의 논문(제2차 한국전쟁 국제학술회의, 1990. 6. 14, 서울)에서도 남침을 인정함.

있다.<sup>7)</sup>

1958년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까지는 중국군과 인민군의 聯合作戰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人民軍의 독자적인 전략을 확립하였다.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 당위원회 4기 4차전원회의 연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現代戰과 遊擊戰을 배합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방어전과 정규부대·유격부대의 配合作戰, 소부대와 대부대의 필요성, 輕步兵部隊 조직과 무기의 輕量化, 곡사포와 저공비행의 증강, 산악전의 중시 등을 강조하였다.<sup>8)</sup>

또한 김일성은 1970년 노동당 5차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地形條件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행하며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正規戰과 遊擊戰을 옹계 배합한다면 실령 최신 기술로 무장한 적일 지라도 얼마든지 섬멸할 수 있다. 조국해방전쟁 경험과 오늘의 越南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sup>9)</sup>고 주장함으로써 군사전략전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 7) 「조선중앙년감」(1953), pp. 23~37. UN軍의 반격으로 후퇴중이던 김일성이 자강도 만포시 別午里에서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3차회의에서 폐퇴의 원인을 검토하고 전략전술상의 재평가를 하였다. 別午里會議라고도 부르는 동회의에서는 폐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① 民兵隊와 같은 예비부대의 부족 ② 敵空軍의 우세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 ③ 현대전 수행에 있어 군사령관의 능력있는 指導力 결핍 ④ 군장비의 落後 ⑤ 부대의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한 점 ⑥ 山地戰과 야간전투에 대한 訓練이 부족하고 준비를 못한 점 ⑦ 후방 공급활동과 防衛를 위한 불충분한 조직 ⑧ 부대에 대한 不滿足한 정치교육
- 8) 이후에도 북한은 배합작전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4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8), p. 226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군사행동시대가 대부분 산악지대이고 적들이 산악전과 야간전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을 적의 수직 기술적 우세를 격파하는 기본전법의 하나로 내세우시였습니다.”
- 9) “조선노동당 5차대회 보고” 「로동신문」, (1978. 11. 3.)

김일성의 군사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1971년 人民軍창건 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의 韓益洙의 보고이다. 즉 한익수는 동 보고에서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배후교란의 배합, 대소 부대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시적 반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 배후의 제2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탱크사냥 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전술법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sup>10)</sup>고 강조했다.

요컨대 北韓의 軍事戰略戰術은 결정적 시기 도래시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運用으로 대량선제기습과 속전속결방식으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여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쟁초기의 돌파구 형성과 주도권장악을 위해 이미 1960년대 초부터 生化學 武器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최전방의 연대급까지 化學小隊를 운영하고 있다.<sup>11)</sup>

## 2. 人民軍의 形成과 特徵

### 가. 軍의 形成過程

人民軍의 창설작업은 평양주둔 소련군 25군사령부의 비호아래 해방직후부터 「建黨·建軍·建國」이라는 3대과제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10) 「로동신문」, 1971. 2. 8.

11) “The Search for A poison Antidote” *Time*(January 16. 1989) p. 22. 북한은 8개의 生化武器 생산시설을 갖추어 세계3위의 生化戰 能力을 보유 하고 있는데, 1980년 11월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에서 김일성은 “현대는 과학시대로서 전투시 효과적인 毒가스 및 細菌武器를 많이 생산하여 사용할 것”을 교시함.

당시 소련군사령부는 1945년 10월 12일에 “북한지역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탄약·군용물자들을 군경 무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臨時道委員會들은 소련군사령부와의 협의하에 기정된 인원수의 이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sup>12)</sup>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 따라 해방직후 북한지역의 治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민족진영의 自衛隊, 국내파 공산계열의 治安隊 등 이미 조직된 武裝隊는 해산시키고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韓人들로 구성된 赤衛隊를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 保安隊를 조직하였던 것이 바로 人民軍의 모체이다.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각지역에 조직된 보안대를 통합,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保安幹部訓練大隊部를 창설하고 1개월 후에는 人民集團軍 總司令部로 개칭하였다.

1947년부터는 소련의 군사원조로 신형무기로 무장하면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져 1948년 2월 4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내에 「民族保衛局」을 신설하였으며 정권수립 7개월 전인 2월 8일에 인민집단군을 朝鮮人民軍으로 개칭하고 正規軍으로 창설을 선포하였다.

한편 海軍과 空軍의 창설과정은 다음과 같다. 海軍은 1946년 7월에 水上保安隊司令部를 元山에 창설(東海水上保安隊：元山, 西海水上保安隊：南浦)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어 1946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였고 1947년 6월 元山에 海岸警備隊幹部學校를 두었는데 이것이 후에 海軍軍官學校가 되었다. 1948년 9월 북한공산정권의 수립으로 해안경비대는 海軍總司令部로 개칭되면서 해군으로 발전하였다.<sup>13)</sup>

空軍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新義州航空隊가

12) “소련군 25군 사령관의 성명”(1945. 10. 12), 「조선중앙년간」(1949), p. 58.

13) 북한의 해안경비대는 처음에는 내무성관할에 속하였으나 1948. 8. 28자로 민족보위성으로 이관되었는데, 1972. 6. 3 政令에 의해 이날을 海軍節로 정함.

그 효시로서 1947년 8월 20일 소련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출신 약 300여명을 중심으로 비행대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인민군창설과 함께 航空聯隊로 증편함으로써 規定空軍으로 발전하였다.<sup>14)</sup>

民兵組織으로는 전후 복구과정에서 1959년 1월 14일 勞農赤衛隊를 창설하였고 1970년 9월 12일에는 붉은 青年近衛隊를 조직하여 북한의 全社會를 병영화하였다. 1988년 4월에는 民防衛司令部를 설치하여 직장과 연령에 따라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민병조직을 綜合指揮토록하였다.

## 나. 軍의 性格과 特徵

북한의 인민군은 노동당규약에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黨의 革命的 성격은 金日成의 유일체제와 연결되어 「金日成의 軍隊」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sup>15)</sup>

지난 1977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오던 것을 1978년부터 김일성이 1932년에 抗日遊擊隊를 창설했다는 4월 25일로 변경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는 것은 인민군의 성격을 항일 빨치산투쟁전통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며 군대의 金日成 私兵化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金日成은 노동당의 總祕書 겸 黨 軍事委員會 위원장으로서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의 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14) 비행대를 창설한 날을 1972. 5. 25 政令에 의해 空軍節로 정함.

15) 「조선중앙년감」(1984), p. 194. 인민군창건 51돌기념 중앙보고대회시 총참모장 오극렬 보고 “조선인민군은 당의 령도밑에 전군을 主體思想化하는 장기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섰으며 김일성동지의 군대, 로동당의 군대로서 혁명적 품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고 그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다.”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의 조직, 군사력의 指導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권의 主席인 동시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있다.<sup>16)</sup>

최근에는 金日成-金正日 세습체제구축과 관련 人民軍의 강화, 발전을 金正日의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sup>17)</sup> 金日成은 全軍의 主體思想化를 실현하는데 있어 열 가지 공산주의 전투도덕적 품성으로 ① 용감성, ② 강인성, ③ 책임성, ④ 규율성, ⑤ 조직성, ⑥ 인내성, ⑦ 낙천성, ⑧ 단결성, ⑨ 혁명성, ⑩ 충실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黨의 군대, 革命의 군대, 金日成의 군대로서의 인민군의 성격은 군사제도나 군사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3. 軍事制度

#### 가. 軍事機構

북한의 군사기구는 黨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政權機關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二元化되어 있다. 인민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는 군사간부의 당내의 정치적 지위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主席은 노동당의 제1인자인 總祕

16) 북한 노동당규약 제3장 27조; 북한 헌법 제93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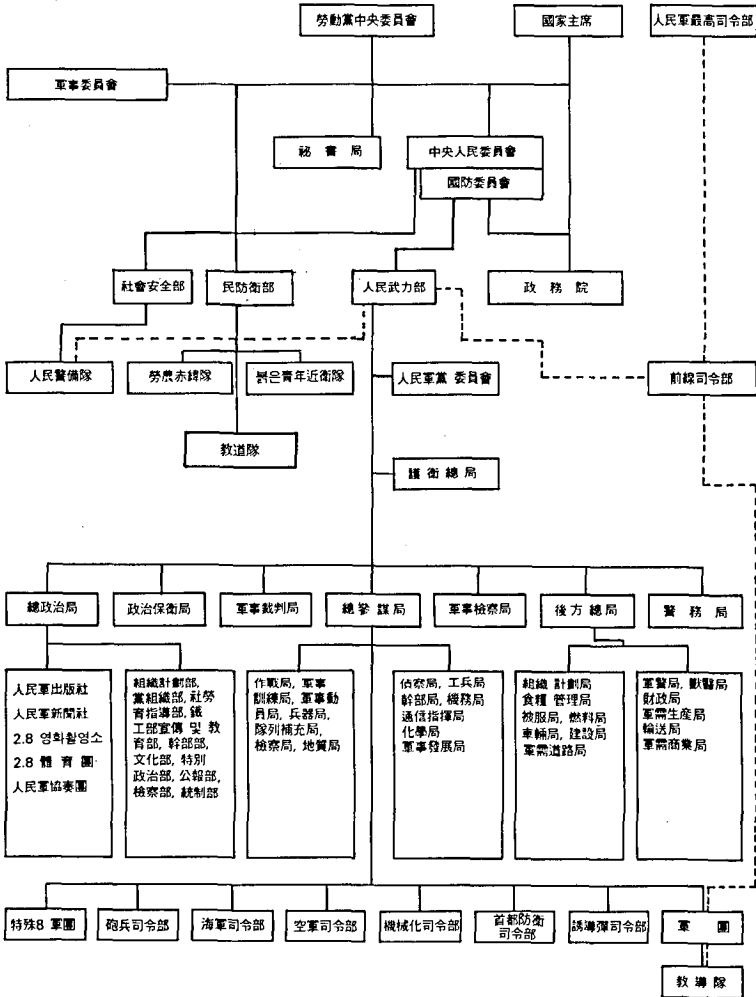
17) 「로동신문」사설, (1986. 4. 25.) “김정일동지가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로동신문」사설, (1990. 4. 25.) “김정일동지께서는 진군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군대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총을 쏘는 병사들의 신념이 흔들리게 되면 사회주의위업의 무력적 기초가 흔들리게 되며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書이다. 그리고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등 주요군사간부는 勞動黨 政治局委員 또는 勞動黨 軍事委員會 委員을 겸직하고 있다.

軍事組織體系

〈그림 VIII-1〉

—平時  
---戰時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원회 위원중에는 軍事幹部의 비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정책의 수립에 있어 軍部の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勞動黨內 軍事幹部 變化推移

〈표 VIII-3〉

| 區分    | 期別   | 1次大會  | 2次大會   | 3次大會    | 4次大會    | 5次大會    | 6次大會 <sup>2)</sup> |
|-------|------|-------|--------|---------|---------|---------|--------------------|
| 政治局   | 委員   | 0(5)  | 0(8)   | 1(11)   | 1(11)   | 3(10)   | 7(19)              |
|       | 候補委員 | 0(0)  | 0(0)   | 0(4)    | 0(4)    | 0(5)    | 3(15)              |
|       | 計    | 0(5)  | 0(8)   | 1(15)   | 1(15)   | 3(15)   | 10(34)             |
| 中央委員會 | 委員   | 7(43) | 9(64)  | 7(71)   | 19(85)  | 24(117) | 26(145)            |
|       | 候補委員 | 0(0)  | 1(20)  | 9(45)   | 8(50)   | 4(55)   | 16(103)            |
|       | 計    | 7(43) | 10(84) | 16(116) | 27(135) | 28(172) | 42(248)            |

\* 주: 1) ( )는 정원임.

2) 1, 2, 3, 4, 5次大會에서는 政治委員會, 3次大會에서는 常務委員會임.

3) 6次大會에서 선출된 政治局 委員 중 軍事人物은 委員에 오진우, 최현, 서철, 오백룡, 전문섭, 오국렬, 백학림 등이고, 候補委員에 최광, 김철만, 김강환 등임.

1972년 12월에 개정된 北韓憲法에 따르면 주석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장인 동시에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武力의 사실상의 최고지휘를 보장받고 있다.<sup>18)</sup> 또 主席의 제의에 의해 人民武力部長, 總參謀長, 민병조직의 책임자등이 最高人民會議에서 선출·소환하게 되어 있고 기타 위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해임하게 되어 있다.

18) 북한헌법 제93조; 북한헌법 제96조.

主權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는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하며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將領 軍事稱號를 수여하게 되어 있다.

북한은 196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5차 전원회의 이후 4大軍事路線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의 각급 지방 당위원회에 軍事委員會를 설치하였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의 관철, 대책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와 모든 武力의 강화를 위한 사업조직, 全武力의 통솔 등 실질적인 북한의 軍事最高指導機構이다.

각급 지방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노동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회의 지도를 받아 戰時 動員體制의 검토, 민병조직의 운영관리, 민병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1984년 2월부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군사정책결정 및 지도에서 軍 指揮가 가능토록 하여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人民武力部는 主席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군사업무를 집행하는 政務院 산하의 부서였으나 현재는 정무원 소속에서 벗어나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人民軍 總政治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하에 있으며 군대내 각 단위의 정치부 등 정치기관을 통하여 군대내 黨 政治事業을 조직·지도하는 기관이다.

人民軍內에는 노동당조직과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직으로 이루어진 政治機構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黨이 軍을 통제하고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군대내 노동당조직은 6·25 사변기간에 조직되기 시작하여<sup>19)</sup> 1958년에 이르러 人民軍 黨委員會로 정식 조직이 완료되었다. 1961년 노동당 4차대회에서는 黨規約에 군대내의 당조직에 관한 사항을

19) 「조선로동당 력사교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 265. 1950. 10 노동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대내의 당조직이 착수되었음.

명시하게 되었다. 구성을 보면 중앙에 인민군대내의 전체 당조직을 唯一的으로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大隊級 이상에는 黨委員會가, 중대·소대 단위에는 黨細胞와 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데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되어 있다.

人民軍 黨委員會는 노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군대내 각급 노동당 조직은 唯一思想體系 確立, 黨隊列의 확대강화, 군사사업의 黨指導 강화, 당의 군사노선 관철, 社勞靑組織의 강화·指導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sup>20)</sup>

또 군대내에는 당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당의 政治事業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人民軍 總政治局이 있고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는 政治部가 있다. 이 정치기관은 당의 정책,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노동당의 부서로서 참모부와는 관계가 없다.<sup>21)</sup>

1969년부터는 인민군내에 政治委員制를 도입하였는데 師團과 聯隊 단위에는 政治委員, 大隊와 中隊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중앙당에서 직접 파견 배치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정치사업을 조정 감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민군내 노동당 조직은 여러 조직으로 중첩되어 있는데 예컨대 사단의 경우, 사단 당위원회 책임비서, 정치위원, 정치부장 등이 있다. 군대내의 모든 교육계획, 命令書는 軍事幹部에 이어 政治委員의 서명이 있어야 效力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sup>22)</sup> 또 軍事幹部 동향에 대한 근무평정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軍隊내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政治·軍事 二元化體制는 정치간부와 군사간부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김정일은 軍事指揮部와 政治部, 3大革命小組를 각각 활용

20) 북한 노동당규약 제7장 47조, 48조, 50조 참조.

21) 1969. 1. 6~14 조선인민군당 4기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발언.

22) 상기회의에서 김일성 지시.

하는 「3日3線 報告」組織을 통해 보고 감시체제를 빈틈없이 구사함으로써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3)</sup>

인민군내에는 부대단위에 따라 社勞靑도 조직되어 있는데 사로 청조직은 각급 노동당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하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대내의 非勞動黨員을 노동당의 지도아래 결속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sup>24)</sup>

## 나. 軍事編制

북한의 인민군은 地上軍, 海軍, 空軍을 人民軍 總參謀長이 총괄 지휘하는 單一綜合軍體制이다.

平時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인민무력부가 軍政을, 인민군 총참모부가 軍令權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政務院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國防委員會와 黨 軍事委員會의 통제를 받는다.

戰時에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軍事委員會를 조직하고 人民軍 最高司令部가 직접 인민군총참모장을 통해 인민군은 물론이고 농적위대 등의 예비병력을 포함한 全武裝力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인민군의 편제는 1990년 초 현재 총참모장 예하에 전·후방의 16개 軍團, 輕步教導指導局, 砲兵司令部, 機械化司令部, 海軍司令部, 空軍司令部, 平壤防衛司令部로 되어 있다.

軍團은 기본전술사령부로서 전술 및 지원 병과부대가 協同된 최대규모의 부대로서 전술 및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sup>25)</sup> 예하에는 보병사단/여단, 기계화사단,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교도대 등이 있다. 특수8군단은 정규군과의 配合作戰, 비정규전인 遊擊戰, 특공대작전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예하에는

23) 1983. 1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3일내내 3개 계통에서 軍관련 활동 일체를 보고토록 하였다.

24) 사로청 규약 제7장 48조.

25) 6. 25전쟁시 북한은 師團作戰은 가능했으나 軍團급 이상의 작전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敗戰原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정보병여단, 항공침투여단, 해안상륙여단, 정찰여단이 있다.

機械化司令部 예하에는 전차사단/여단, 독립전차연대, 기계화 보병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차부대는 여러 병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협동작전은 물론이고 機動部隊로서의 독자적인 作戰遂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砲兵司令部 예하에는 야포군단, 고사포사단, 해안포대대, FROG대대 등이 있으며 誘導彈司令部 예하에는 SAM여단, 기술지원대대 등이 있다.

海軍은 해군사령부 아래 동해함대사령부와 서해함대사령부가 있으며 각 함대사령부 예하에는 戰隊와 基地로 편성되어 있다.

空軍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전투기사단, 폭격기사단, 수송사단, 헬기연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파탐지기, 통신, 건설연대 등과 공군기지 등이 있다.

인민군편제상의 특징은 戰時에 전쟁지도기구로서 軍事委員會가 조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시에도 총력전개념에 따라 부대가 배치되고 병력이 운용되고 있어 兵營國家(Garrison State)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부대 운용면에서는 행정 및 지원인원을 극소로 줄이고 전투인력을 최대한으로 늘려 활용하고 있다.<sup>26)</sup>

## 다. 軍事教育

북한의 군사교육은 「당에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치사상교육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개별능력보다는 集團能力的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新兵은 통상 1개월(보병)훈련기간을 거치나 성적이 미달한 경우

26) 1986.9.6 인민군최고사령부는 15만명의 병력을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보도. 북한의 군대는 정권존립의 기반이 되면서 건설노동력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년감」(1987) p. 318.

에는 1개월을 다시 연장하며 신병교육이 종료되면 5~6명씩 組를 편성하여 김일성초상화, 석고상 앞에서 軍人宣誓를 한뒤 군인 신분증을 발급받는다.<sup>27)</sup>

下士官은 당성이 강한 현역사병이나 실무교육(고등중학교)을 이수한 자들 중에서 하사관 차출지시에 의해 선발된다. 이론보다 實習위주로 6개월(공병하사관은 10개월)동안 교육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하사관 결원시에 보직과 동시에 진급한다.

### 新兵 政治學習 內容

〈표 VIII-4〉

| 項 目          | 內 容   |
|--------------|---|
| 革命傳統學習       | 1. 金日成 혁명과정(27권)암기<br>2. 抗日鬪爭<br>3. 군의 사명 암기  |
| 共產主義<br>思想學習 | 1. 마르크스-레닌주의<br>2. 변증법적 유물론<br>3. 경제학         |
| 階級教養學習       | 1. 사회주의의 우월성<br>2.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               |
| 黨政策學習        | 1. 국방력 강화책<br>2. 金日成 유일사상체계의 확립<br>3. 군당회의 문헌 |
| 金日成敎示學習      | 1. 청산리지도, 대안의 사업체계<br>2. 당대표자회의 金日成 연설문       |

27) 인민군 군인선서 : ①정부와 인민에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할 것, ② 사회주의제도와 戰取物을 헌신적으로 보위하고 혁명투쟁에서 모든 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것, ③ 고상한 전우애와 일치단결의 정신을 백방으로 발양, ④ 자기무기와 군대재산을 수호하고 비밀엄수 및 명령을 절대적으로 집행, ⑤ 선서에 끝까지 충실할 것을 당과 혁명동지들 앞에 굳게 맹세함.



| 項 目     | 內 容  |
|---------|--|
| 國內外情勢學習 | 1. 國內의 정세를 계급투쟁의 필연성으로 유리하게 해설<br>2. 적개심을 높이고 희생 및 단결 호소 |
| 敵 軍 學 習 | 1. 사단이하 편성·장비<br>2. 부대전면의 배치 현황<br>3. 국군의 취약점            |

軍官候補生은 3년 이상 근무한 士兵중(혁명유자녀학원출신은 1년 이상)에서 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자를 선발하고 政治·技術·藝能보유자는 민간에서도 선발한다. 우수한 하사관은 直拔軍官이라 하며 현지에서 선발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개 3년간의 軍官양성기간을 거치나 해·공군은 4년교육과정을 거친다. 金日成軍事綜合大學, 姜建軍官學校에서는 이러한 正規 軍官양성과정의 1년 정도의 단기양성과정도 있고 6~12개월간의 補修教育課程을 두어 지휘관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第1綜合軍官學校 教育內容

〈표 VIII-5〉

| 課程別  | 군관양성과정   | 군관양성과정          | 단기양성과정   | 군관보수과정            |
|------|--|-----------------|----------|-------------------|
| 教育性格 | 보병,정치,통신,공병, 화학후보생 교육  | 후방(식량,피복반) 인원교육 | 필요시 단기양성 | 군관보수교육(포, 전,의 제외) |
| 期 間  | 3년   | 2년              | 1년       | 6개월               |
| 教育內容 | 軍事學 進술학,병기학,사격,공병학,통신학,지형학,갱도학,자동차학,戰史,위생학<br>政治學 당정치학, 조선로동당투쟁사, 공산주의발전사<br>一般學 조선역사학, 세계정치지리, 수학, 문학, 러시아어<br>現地學習 실무부대 사단에 파견, 소대장 직무 견습<br>專 門 各과정별 전문과목 |                 |          |                   |

## 라. 軍隊服務

북한에서는 군의 입대여부가 政治保衛部에서 결정된다.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하고 고등중학을 졸업하는 만16세가 되면 모든 남자는 軍入隊를 위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7세에 사단 또는 군단에 現地入隊를 하게 된다. 정세가 긴장될 때에는 16세로 인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이외 특수분야종사자(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예술, 교육, 행정요원 등)는 정책적 배려로 징집에서 제외하고 있다.<sup>28)</sup>

勤務年限은 內閣決定 148호에 의거, 地上軍은 3년6개월, 海·空軍은 4년으로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5~10년씩 근무하고 있다. 사병은 27세, 위관급은 35~40세에 이르러 제대할 수 있고 그중에도 特殊部隊(경보병부대, 저격부대)요원은 10~13년간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軍服務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紀律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5기10차 전원회의에서, ① 強毅한 혁명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규율등 「戰鬪力強化 5大方針」을 제시하였다.<sup>29)</sup>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인민군최고 사령관의 이름으로 ① 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 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黨 및 政治組織들에게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⑤ 국가기밀·군사기밀·당조직비밀의 엄숙한 유지, ⑥ 사회주의적 法과 秩序의 철저한 준수, ⑦ 군사정치훈련에의 어김없는 참여, ⑧ 인민에 대한 사랑 및 人民財産의 침해금지,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⑩ 군대안의 一致團結 등

28) 북한은 징집이란 말 대신 「招募」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李朝時代 兵曹에서 軍兵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다.

29) 「로동신문」, (1975. 2. 8).

「軍務生活10大遵守事項」을 제시하였다.<sup>30)</sup>

전투력강화5대방침과 군무생활10대준수사항은 가장 중시되는 人民軍의 服務規律이 되고 있다.<sup>31)</sup> 이와 아울러 1980년도에 들어와서는 인민군대내의 主體的 革命思想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sup>32)</sup>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제대와 동시에 직장에 배치를 받게 되며 배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를 해야 大學進學이 허용된다. 또 복무중에는 전 복무기간을 통해 1~2회(1회 15일)의 定期休暇가 허용되고 있고 결혼이나 父母사망시는 10일간의 特別休暇가 있다.

人民軍의 급여는 전시에는 평시의 2배 지급을 제도화하고 있고 前方勤務時에는 1인당 軍관 30%, 하전사 100%의 봉급에 준하는 手當을 지급하고 있다.

給食은 병사에서 중좌까지는 1日分 백미 700g, 잡곡 50g, 고기 75g(물고기는 200g) 등이 보급되나 상좌이상은 고기가 200~300g 더 지급된다. 또 피복중에서 양말, 메리야스, 외투 등은 일반부대에는 배급치 않고 民警中隊같은 특수부대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 4. 軍事現況

### 가. 兵 力

30) 「김일성저작선집」 7권(1978), pp. 418~423.

31) 노동당 6차대회에서의 총참모장 오극렬의 토론. “70년대는 우리 혁명무력건설 역사에서 軍의 전투력강화 5대방침과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의 관철로 새로운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인민군대는 이제 無敵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었고 우리의 국방력은 사실상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32) 1977. 11. 30 조선인민군 제7차대회에서 김일성지시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데 대한 全軍主體思想化 方針 제시” 「로동신문」논설, 1983. 2. 15. 참조.

북한은 1962년부터 4大軍事路線을 채택하여 군비를 증강시켜 현재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제5위의 대규모 軍事力을 보유하고 있다. 총병력은 90년 초 현재로는 전체인구의 4%가 넘는 99만여명(지상군 86.5만, 해군4.2만, 공군8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인구 對比 총병력수에 있어서 세계 1위인 이스라엘 水準에 이어 제2위에 해당하는 것이다.<sup>33)</sup>

북한 地上軍은 戰車 약 3,600대, 장갑차 약 2,300대, 야포 및 放射砲 약 9,400문, K-16 수륙양용차량 약 500대, S형 浮橋 약 2,30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海軍은 對艦攻擊 및 水中作戰 능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전력증강을 계속하여 현재 잠수함 24척, 誘導彈艇 38여척, 魚雷艇 약 200척, 고속상륙정 약 130척 등 총 69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空軍은 전투기 약 760대와 폭격기 80여대, AN-2기를 포함한 수송기 약 300여대, 헬기 약 280대 등의 支援機 약 770대 등 항공기 총보유수는 약 1,6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최신예 전투기인 MIG23, MIG29기 60대를 導入했고 美 휴즈社 500계열 헬기 87대를 밀반입한 바 있다.<sup>34)</sup>

그리고 FROG 3/5/7 및 SCUD-B 장거리 地對地미사일 69기, SA 2/3/5 地對空미사일 200여기도 갖추고 있다. 또한 電子戰 支援(ESM), 電子戰 妨害(ECM), 電子戰 妨害 防禦(ECCM) 등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 1990년대에는 이들의 시설 및 장비까지 자체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化學武器는 저렴한 생산비에 비해 가공할 殺傷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前方에 배치시키고 있고, 비축량도 180~250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地上軍 兵力配置 실태를 보면 1980년까지 45%수준이던 平壤-

33) 兵力 및 裝備 數值의 출처는 「국방백서」(1990), *IISS Military Balance*(1990~91), 일본 防衛白書(1990), 미국 국방부 年例報告書(1989), 정부기관연구자료 등.

34) USA Dept. of Defence *Soviet Military power* (1986), p. 140

元山이남의 전방배치 병력규모가 1990년부터는 70% 수준으로 전환되었고, 전략부대를 재편성하여 9~12개 사단으로 구성된 4개 機械化軍團과 2개 砲兵軍團을 휴전선 80Km이내에 배치하였으며 평양-원산선 이남의 30개 항공기지의 휴전선 가까이 2개의 비행장을 신설, 우리의 수도권 기습공격시간을 8분대로 단축해 놓고 있다.

또 20개의 作戰基地에는 지하격납고를 완성하였으며 전투기의 40%를 전방배치하고 해군 함정의 59%도 전방배치하였다. 그중에서도 잠수함(24척)과 미사일탑재 고속정(29척)은 우리에게 아주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北韓의 最近 軍事力 增強趨勢<sup>35)</sup>

〈표 VIII-6〉

| 區 分             | 1984     | 1986     | 1988     | 1990       |
|-----------------|----------|----------|----------|------------|
| 軍 事 費           | 20.38억불  | 42.77억불  | 41.3억불   | 41.5억불     |
| 總 兵 力           | 784,500명 | 840,000명 | 842,000명 | 1,111,000명 |
| T-34/54/55/62탱크 | 2,200    | 3,275    | 3,000    | 3,300      |
| FROG-3/5/7 SSM  | 18       | 54       | 69       | 69         |
| 야포(방사포포함)       | 4,100    | 4,750    | 6,400    | 8,100      |
| 장 감 차           | 1,000    | 1,690    | 1,690    | 4,340      |
| 잠 수 함           | 21       | 25       | 21       | 24         |
| 고 속 공 격 정       | 361      | 335      | 365      | 364        |
| MIG-21/23/29    | 160      | 210      | 206      | 196        |
| 헬리콥터            | 60       | 170      | 170      | 270        |
| SA-2/3/5 SAM    | 250+α    | 830      | 500      | 176        |

\*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1984~85, 1986~87, 1988~89, 1990~91.

35) 북한의 군사적 증가추세에 있어 탱크, 야포, 장갑차, 헬기의急增이 주목되고 있다. MIG기와 SAM미사일의 감소는 신예장비로 교체되면서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Washington post* 1989. 1. 26자 참조.

## 나. 豫備兵力

북한은 人民을 무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軍事觀에 기초하여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sup>36)</sup>

주민의 軍事動員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에 勞農赤衛隊가 창설되고 1962년 1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4기 5차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이 제기되고부터이다. 곧이어 敎導隊가 조직되었고 1970년 9월 김일성의 지시로 학생조직인 붉은 靑年近衛隊가 창설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채택과 함께 국방위원회의 설치 등 軍事動員機構의 강화로 전인민의 무장화 추진을 목표로 軍事人力 동원의 극대화에 따르는 제도적 보완을 이루었다.

### (1) 敎導隊

북한의 민간군사조직중 가장 핵심체로서 만17세이상 40세까지의 주민(여자17~30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행정단위)과 직장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당해지역 위수담당 정규군 군단장 관할하에 있으며 대학생을 정규군의 兵種·兵科의 초급장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분야별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정규보병사단과 여단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을 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모두 노동당의 통제하에 人民武力部の 직접지휘를 받는다. 교도대의 총병력은 124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전쟁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後方防禦 및 豫備隊로 투입된다.

36) 1950. 12. 21 別午里會議에서 김일성은 “예비대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후방공급사업들이 잘 조직되지 못하였다”고 예비대의 부족과 남침 실패를 자인하였다.

## (2) 勞農赤衛隊

41세이상 60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 梯隊로 편성되어 있으며 梯隊別 지휘관은 당해직장 또는 지역의 노동당 책임비서가, 부지휘관은 사회안전부장이, 참모장은 노동당군사부장이 當然職으로 겸직하여 노동적위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노동적위대의 기본적 임무는 民防衛業務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는 물론 지역방어, 對空防禦任務를 수행한다.

## (3) 붉은 青年近衛隊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들(14~17세)로 조직되며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노동당 비서국 軍事部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放學時間을 이용하여 7일간의 붉은青年近衛隊 야영소에의 입영훈련과 反航空訓練 등을 받는다.

주요 임무는 反革命的 要素를 제거하여 북한 지배층을 死守하는 親衛隊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대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後備隊·決死隊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 (4) 人民警備隊

군에서 제대한 靑壯年중에서 일정한 인원을 15일간씩 교대조로 동원·조직하고 있고 주요임무는 중요지역 및 철도, 해안의 警備를 담당하고 있다. 인민경비대의 하전사는 정규군 招募對象者중에서 선발되어 사회안전부 신병훈련소에서 3~4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군관은 경비대 하사관중에서 선발되어 인민경비대 군관학교의 正規教育을 이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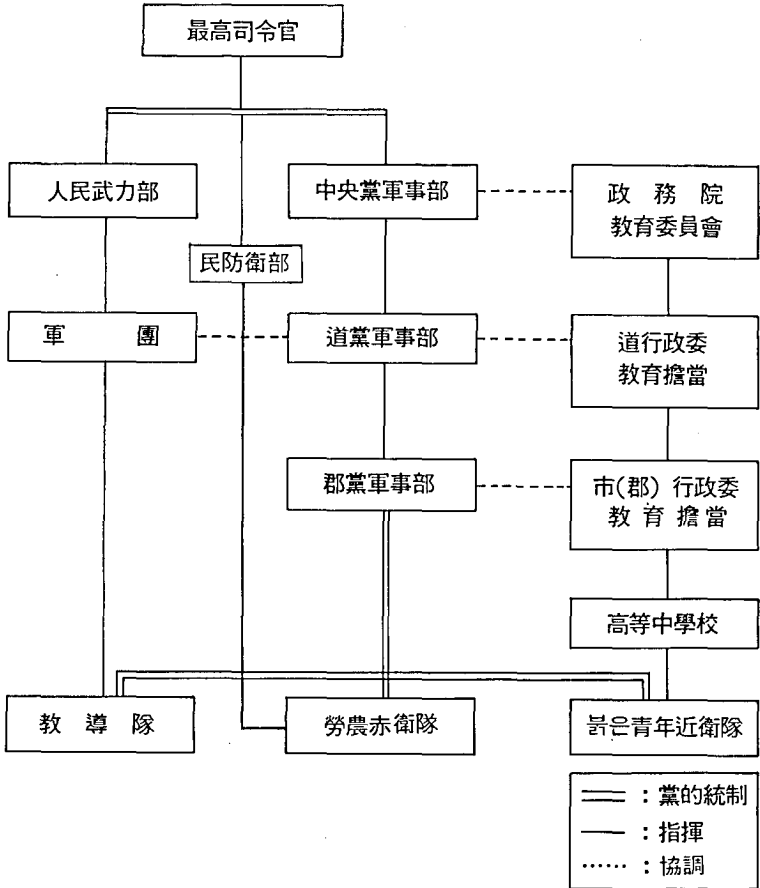
인민경비대는 社會安全部 5局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철도경비처, 12개도(직할시) 警備處가 있으며, 철도경비처 예하에는 철도경비대가 있고, 각도(시) 경비처에는 국경경비대대, 시설경비대대, 海岸警備基地 등이 있다.

(5) 民間反航空機構

6·25전쟁에서 후방의 制空權을 빼앗김으로써 당한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 1961년 內閣決定으로 조직하였다.

北韓 民間軍事組織 指揮體系<sup>37)</sup>

<그림 VIII-2>



37) 민방위부는 1988년 4월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교도대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反航空對策委員會는 중앙·도(직할시) 시(구역)·군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각 企業所별로 反航空部를 조직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보통 25~40세의 건강한 근로자들로 구성되며 방공호와 갱도를 이용하여 주로 야간에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할 때에는 한세대가 10일간 취식할 수 있는 식량, 의복, 김일성초상화, 학습장등을 常備하고 공군, 지상군의 지원을 받는 전반적 훈련과 화재방 훈련, 등화관제, 分散, 疎開, 구조 및 응급조치 훈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豫備兵力 現況

〈표 VIII-7〉

| 區分   | 教導隊                  | 勞農赤衛隊               | 붉은青年近衛隊               | 人民警備隊   |
|------|----------------------|---------------------|-----------------------|---------|
| 兵力數  | 124만명                | 380만명               | 81만명                  | 14만명    |
| 年 齡  | 17~40세<br>(여자17~30세) | 41~60세<br>(남자위주 편성) | 14~17세<br>(고등중학 5~6년) | 17세~24세 |
| 小火器  | 100%                 | 100%                | 100%                  | 100%    |
| 共用火器 | 70~80%               | 일부                  | 일부                    | 100%    |
| 訓練時間 | 年 500시간              | 年 160시간             | 年 300시간               | 정규군과 동일 |

\* 출처: 韓國研究機關 資料.

## 다. 軍事費

북한은 이미 1962년부터 4대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4% 内外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다. 또 북한은 社會主義體制의 특성상 군사비중에 인건비, 시설비, 장비유지 등 軍의 一般運營費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군사비의 평균 48%까지를 戰力 증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 北韓의 歲出構成 推移

〈丑 VIII-8〉

(單位：%)

| 會計年度 | 總 額   | 人民經濟費 | 社會文化施策費 | 軍事費  | 機關管理費 |
|------|-------|-------|---------|------|-------|
| 1966 | 100.0 | 68.1  | 17.3    | 12.5 | 2.1   |
| 1967 | 100.0 | 50.1  | 17.5    | 30.4 | 2.0   |
| 1968 | 100.0 | 48.9  | 17.2    | 32.4 | 1.5   |
| 1969 | 100.0 | 47.6  | 19.7    | 31.0 | 1.7   |
| 1970 | 100.0 | 49.2  | 19.7    | 29.4 | 1.7   |
| 1971 | 100.0 | 48.0  | 19.2    | 31.1 | 1.7   |
| 1972 | 100.0 | 57.3  | 23.9    | 17.0 | 1.8   |
| 1973 | 100.0 | 59.0  | 23.8    | 15.4 | 1.8   |
| 1974 | 100.0 | 58.6  | 23.5    | 16.1 | 1.8   |
| 1975 | 100.0 | 58.9  | 23.0    | 16.4 | 1.7   |
| 1976 | 100.0 | 58.5  | 23.7    | 16.7 | 1.1   |
| 1977 | 100.0 | 58.3  | 24.1    | 15.7 | 1.9   |
| 1978 | 100.0 | 58.4  | 23.4    | 15.9 | 2.3   |
| 1979 | 100.0 | 60.4  | 22.4    | 15.1 | 2.1   |
| 1980 | 100.0 | 60.5  | 22.2    | 14.6 | 2.7   |
| 1981 | 100.0 | 61.3  | 22.0    | 14.8 | 1.9   |
| 1982 | 100.0 | 62.5  | 20.9    | 14.6 | 2.0   |
| 1983 | 100.0 | 62.5  | 20.2    | 14.8 | 2.5   |
| 1984 | 100.0 | 62.3  | 21.1    | 14.6 | 2.0   |
| 1985 | 100.0 | 62.3  | 21.1    | 14.6 | 2.0   |
| 1986 | 100.0 | 63.5  | 20.3    | 14.0 | 2.2   |
| 1987 | 100.0 | 64.3  | 20.5    | 13.2 | 2.0   |
| 1988 | 100.0 | 65.0  | 20.8    | 12.2 | 2.0   |
| 1989 | 100.0 | 67.4  | 18.9    | 12.0 | 1.7   |
| 1990 | 100.0 | 67.2  | 18.9    | 12.1 | 1.8   |

\* 출처 : 최고인민회의 각기별 예산결산 보고.

북한이 1966년도부터 공식발표하고 있는 세출구성의 推移를 보면 1967년과 1972년에 대폭적인 군사비의 변동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軍事路線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군사비를 다른 항목에다 은폐시키거나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확정된 1990년도 豫算案에 의하면 세출총액은 북한 「원화」로서 356억 5,610만원(159.9억불 상당)이며 그중 12%인 43억 1,439만원(19.3억불 상당)이 군사비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實質軍事費는 총예산의 30% 내외인 58.0억불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8)</sup>

## 라. 兵器生産

북한은 휴전후부터 兵器의 自給自足を 위해 많은 병기생산공장을 건설해오다가 1960년대 中·蘇關係가 악화되자 더욱 병기산업에 주력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4대군사노선을 실천하면서 軍需工場을 더욱 확장시키는 한편 주요 급속공장, 공작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 자동차공장, 트랙터공장, 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體制로 개편했다.

1970년대부터 그동안의 모방생산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武器開發에 주력하는 한편 병기산업의 확충에 치중하여 戰車를 비롯한 장갑차, 火炮, 共用火器 및 각종 탄약을 量産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고 함정은 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戰艦을 건조할 수 있으며 주요 정밀전자 機器와 부품을 제외하고는 무기의 대부분을 自給體制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38) 최고인민회의 각 기별(1987~90년) 예산결산보고를 종합하면 실제 총예산의 약 30%를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北韓의 主要兵器生産 年表

## 〈표 VIII-9〉

| 年度           | 主要兵器生産 内容   | 備考                                  |
|--------------|---|-------------------------------------|
| 1950年前       | 평양 舊 日本陸軍造兵廠, 鴻南화학공장 등 30여개의 병기<br>병창 복구, 소련의 자재·기술원조로 소화기·탄약 초보적<br>생산<br>기관단총(PPSH), 수류탄, 소총탄, 박격포, 구잠정(130톤)                                 | 基本的인 個人<br>火器生産始作                   |
| 1950年代       | 자강도 前川에 65호 공장을 건설 가동하여 AK소총<br>(58式 7.62mm) 양산체제 돌입,<br>대전차로켓포 (RPG-2)   | 地上軍 中隊<br>단위 基本武器<br>調達             |
| 1960年代<br>前半 | RPD 경기관총(62式, 64式 7.62mm), SG 중기관총<br>B-10 무반동포(82mm), KPV 중기관총(14.5mm)<br>시모노프소총, SGM중기관총, 고사기관총(14.5mm)<br>82mm·120mm 박격포, RPG-2 대전차로켓포(40mm) | 地上軍 聯隊級<br>火力 維持                    |
| 1960年代<br>後半 | 방사포(107mm, 132mm, 140mm 발사관12개)<br>AK소총(68式), 평사포(130mm), 곡사포(122mm),<br>소형어뢰정(P-4, 67.6톤급), 고속경비정, 포함(PGM)                                     | 地上軍 師團<br>作戰能力 保有,<br>海軍沿岸 作戰<br>가능 |
| 1970年代<br>前半 | T-59전차, RPG-7대전차 로켓포, 자주포(130mm, 180mm)<br>152mm곡사포, M-1973 장갑차, 유도탄 경비정<br>호위구축함(1,500톤급) R급잠수함(1,400톤급)                                       | 本格的인<br>軍需産業 土臺<br>構築               |
| 1970年代<br>後半 | 130mm, 180mm 자주포, K-61 수륙양용장갑차,<br>T-62 전차(T-55 개량형), MIG Licence생산추진<br>고속상륙정, Frog5/7모방생산   | 外國과의<br>技術提携로<br>戰術單位作戰<br>可能       |
| 1980年代       | 쌍동함. 水中翼艇, 空氣浮揚艇.<br>SA-7 지대공미사일, SCUD 지대지미사일<br>MI-2 헬기, MIG-15,21, YAK-18조립공장   | 北韓型 武器<br>開發<br>航空機 組立 生産<br>基盤構築   |

1980년대에 들어 북한은 무기의 自體開發段階에 돌입하여 양적 확장만이 아닌 質的 改善에도 힘을 기울여 일부 電子 및 精密誘導 武器, 최신형 戰車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自體 生産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강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兵器 工場은 현재 120여개소가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병기제품의 수준은 서방권의 제품에 비해 加工精密度가 낮아 부품의 互換性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1978년부터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T-62전차를 생산하여 아랍 등의 紛爭地域에 수출한 바가 있고 MIG기의 기술제휴에 의한 생산, 일부 新素材, 部品를 도입하여 잡수합까지 量産할 수 있다. 그러나 高速 디젤엔진은 아직 試製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의 군수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은 電子·通信으로 아직도 진공관식 통신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中·蘇製의 有無線 통신장비의 모방생산을 시도하여 연대급이하 小部隊用的 교환대 및 전화기, 저출력 무전기는 量産體制가 확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9)</sup>

## 마. 軍事同盟

북한은 1961년 金日成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7월6일에는 「朝·蘇友好協力 및 互相援助條約」을, 7월 11일에는 「朝·中友好協力 및 互相援助條約」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締約一方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締約相對國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軍事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軍事同盟條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39) 국제문제연구소, 「防衛年鑑」(1945~89), pp. 247~249.

朝·蘇條約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조약체결 一方이 시한만료 1년전에 解約 希望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朝·中條約은 계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無期限 效力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외에 북한은 1978년 5월 조선·모잠비크 親善協調條約을 체결하여 방위력 강화에 상호협조를 다짐하였으며, 1982년 11월 리비아 원수 카다피가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는 「朝鮮·리비아 友好 協力同盟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쌍방은 군사문제에 있어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군사자료·군사전문가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을 승意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다.

1986년 3월 쿠바수상 카스트로의 訪北時에는 20년 時限의 「朝鮮·쿠바 親善 및 協調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역시 쌍방간의 정치·경제·문화·기술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軍事的 支援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sup>40)</sup>

1986년 11월 몽골과도 군사적 성격을 지닌 「朝鮮·몽골 親善 및 協調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제7조에서는 “남조선에서 외국 군대와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철거시키며 조선의 통일문제가 조선인민 자신에 의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이 조약은 前文과 本文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쌍방은 제국주의 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어느 일방에 대해 그 어떤 위협이나 침략을 감행하는 경우 이것을 다른 일방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으로 인정하고 가능한 모든 지지와 원조를 준다”고 規定하고 있다.

# IX. 統一





# 1. 對南戰略

## 가. 對南戰略의 基調

### (1) 戰略目標

북한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全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을 대남전략의 기본목표로 삼고, 그들의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 前文에 當面目的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 완수”에 두고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sup>

또한 북한 憲法 第5條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南朝鮮革命의 實踐方途와 관련하여 南朝鮮革命의 성격을 “미제침략에 반대하는 반제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와 그들의 파쇼적 통치에 반대하는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sup>2)</sup>이라고 밝힘으로써 북한은 적화통일의 근본적 장애요소<sup>3)</sup>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한의 현체제 타도에 의한 소위 人民政權의 수립에 그들의 對南革命戰略의 목표가 있음을

1) 조선노동당규약 前文.

2)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 p. 198.

3) 위의 책 제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 389.

분명히 하고 있다.

### (2) 平和의 方法과 非平和의 方法

북한은 조국통일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平和의 方法과 非平和의 方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 강구하고 있다.<sup>4)</sup>

平和의 方法이란 남한내에서 남한 주민에 의한 人民民主主義革命이 수행된 다음, 남한의 革命政權을 흡수하거나 또는 남한의 현 체제가 聯共政權 또는 容共政權으로 교체된 후 이 政權과 合作統一을 실현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평화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심고리 전술이 바로 聯邦制 統一論이다.

非平和의 方法이란 무장력을 동원하여 전쟁의 방법으로 남한을 共產化 統一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非平和의 方法을 적용하기 위한 중심고리 전술이 바로 주한미군철수 주장이다.

북한이 이처럼 통일의 방도로서 平和의 方法과 非平和의 方法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으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統一方案으로 앞세우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平和의 方法에 중점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先 南朝鮮革命, 後 南北合作統一이 바로 平和의 方法과 표리를 이루고 있으며, 1964년 이래 3大革命力量 強化路線은 대남혁명 추진상의 기본적인 戰略基調이다.

### (3) 3大革命力量의 編成

북한은 南朝鮮革命을 완성하는 실천적 요소로서 이른바 3大革命力量, 즉 북한 자체의 革命基地力量과 南韓革命力量, 그리고 國際的 革命支援力量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 3大革命力量 強化路線은 1964년 2월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統一方針으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1965년 4월 14일 金日成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알리 아르함

4)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64~270.

社會科學院에서의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천명되었다.<sup>5)</sup>

“우리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력량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3大革命力量 強化路線이란 대내적으로는 民主革命基地路線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기지로써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 内部 革命力量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로는 主體思想體系에 의한 북한 주민의 政治思想的 武裝 강화, 정치력·국방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經濟力量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國防力量의 강화 등 세 가지 방도<sup>6)</sup>가 강조되고 있다.

대남차원에서서는 남한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키고 地下黨 組織의 확대, 반미구국통일전선과 반파쇼민주연합전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統一戰線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하고 反革命力量을 약화시킴으로써 남한 내부에서 人民革命이 일어날 수 있도록 南朝鮮革命力量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sup>7)</sup>

대외적으로는 혁명 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한간의 共產化 統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외교적 투쟁과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김일성저작집」 제19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p. 327~328.

6) 허종호, 앞의 책, pp. 277~280.

7)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pp. 91~93.

## 나. 對南戰術의 變遷過程

북한은 解放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非政府次元의 남북연석회의 및 政治協商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으나,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 (1) 8·15光復-6·25南侵

이 기간동안 북한은 民主基地路線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식 정치·경제적 體制改革을 단행하고 소련의 지원하에 軍事力을 강화하면서 남한 각지에서 무장유격전과 軍部隊內 叛亂, 10·1 大邱폭동, 4·3 濟州道폭동 등을 일으키는 한편, 南北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를 제안하는 등 양면전략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이 戰術的 중심고리로 삼은 것이 주한미군의 철수였는데, 주한미군의 철수가 실현되기만 하면 그동안 준비해 온 압도적인 軍事力으로 남한 정부를 전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48년 12월 북한 주둔 소련군을 先制撤收시킴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平和攻勢를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군은 1949년 6월 남한에서 철수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남한까지 확대하기 위한 6·25南侵을 감행할 수 있었다.

### (2) 休戰-4·19革命

남한전역을 강점하기 위한 북한의 전무장력을 동원한 正面攻擊이 좌절되자 북한은 革命을 위한 主·客觀的 여건이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여, 일차적으로는 戰後復舊 및 社會主義的 改造에 주력하는 한편, 6·25 이후 케멸된 남한내의 地下黨을 재건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사회주의적 개조기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과 남한 공산화의 迂廻基地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북한은 1955년 5월 기존의 在日本 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이라는 親北組織을 在日本 朝鮮人總聯合會(朝總聯)라는 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켰다.

### (3) 4·19革命-5·16革命

4·19 이후 남한 정치가 표류하였던 시기는 북한에게는 사실상 무력 재남침의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골적인 정면공격을 하기에는 6·25남침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막심하였으며 間接侵略을 전개하기에는 地下黨 등의 역량이 미처 축적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통일논의를 매개로 하여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聯邦制 統一方案(1960. 8. 14)을 제의하는 등 平和攻勢를 취하는 한편 祖國平和統一委員會를 결성(1961. 5. 13)하고 조선민주주의청년동맹(1964. 5 「사로청」으로 개칭)내의 학생조직을 조선학생위원회로 개편하여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동·공작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용공세력의 扶植을 위하여 간첩을 대량으로 남파하였다.

### (4) 5·16革命-南北對話 이전

5·16군사혁명 이후 남한에서 반공태세가 강화되는 시기에 북한은 4大軍事路線을 채택(1962. 12)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고, 강화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북한은 1966년부터 폭력적인 대남도발 공작으로 戰術方向을 전환하였다. 청와대 습격기도(1968. 1. 21)에 이은 대규모 무장공비의 울진·삼척 침투사건(1968. 10) 등은 재침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와 같은 역량의 시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서울의 심장부까지 그들의 게릴라를 침투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고무된 북한은 약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수 훈련요원들로 구성된 特殊8軍團(一名 輕步教導指導局)을 창설하여 非正規戰的인 폭력에 의존하려 하였다.

### (5) 1次 南北對話期

1960년대에 시도되었던 폭력적인 對南挑發을 통한 南朝鮮共產化가 여의치 않자 金日成은 제5차 노동당대회(1970. 11)에서 북한의 革命基地 강화만으로는 朝鮮革命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시 南朝鮮革命力量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즉 남한에서

자체 革命力量을 육성, 강화시키고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鬭爭과 半合法·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등을 배합하여 혁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金日成이 이른바 昂揚期 戰術로 불리우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1969년도 말, 1970년대 초의 국제정세가 해빙기로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남조선혁명에서의 滿潮期를 조성하기 위하여 迂廻的인 전술을 구사하기 위해서였다. 즉 1970년대 초의 남북대화를 계기로 합법적 방법으로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북한은 대화의 지속·진전의 조건으로 「法律的·社會的 條件環境改善論」을 들고나와 反共法·國家保安法의 철폐와 사상범의 석방을 주장하는 한편 통일혁명당을 포함한 각 정당·사회단체들의 남북대화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남한내에서의 聯共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조건·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자 對話 시작 2년여만인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金英柱의 聲明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였다.

#### (6) 對話中斷—버마事件

이 기간은 북한이 대화에 의한 南朝鮮革命의 여건조성을 단념하고 남한이 제의하는 대화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大民族會議, 全民族大會, 政治協商會議, 100人政治人聯合會議 등 군중집회성 남북대화를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남한의 당국간회담 논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비록 10·26 직후 북한이 總理會談을 제의, 실무접촉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국론분열 및 남한의 정치정세 탐색용에 불과하였을 뿐이었다.

북한이 이처럼 당국간회담을 부정하고 群衆集會性 남북대화를 주장하게 된 까닭은 남한내에서 反體制運動이 확산되는 한편, 주한미군문제를 둘러싸고 카터 行政府에서 레이건 行政府에 이르기까지 美國의 대한반도 정책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레이건 行政府의 출범으로 對共強硬路線이 확실해지면서 주한

미군의 철수계획이 백지화되고, 남한내에서 唯新體制에 대한 저항의 증폭과 아울러 新政府에 대한 정통성 시비가 일게 되자, 북한은 주한미군문제는 잠시 덮어두고 當局間 對話를 외면하면서 聯邦制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은 남한정권 타도쪽으로 돌려진 공격을 가속화하여 급기야는 버마暗殺 爆破事件까지 자행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을 포함한 남한의 수뇌부를 살해함으로써 社會變亂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7) 버마사건 이후—서울올림픽

버마暗殺 爆破事件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북 強硬 입장을 불가피하게 하였을 뿐이다. 한편 남한 사회 내부적으로는 運動圈 학생들의 소요가 暴力化·左傾化되기 시작하였고 노사분규가 政治鬭爭化·階級鬭爭化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을 만회하면서도 남한내의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3者會談과 水災物資提供 제의를 택하였다.

3者會談 제의는 북한이 마치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한편, 남한내의 反政府 기세를 활용함으로써 주한미군 문제를 새롭게 쟁점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수재물자제공 제의에 연이은 우리의 赤十字會談, 經濟會談제이에 일시 호응해 나왔던 것은 남한내의 부정적인 대북 이미지 개선과 동시에 서울올림픽 개최 저지에 목적이 있었을 뿐 근본적으로 이러한 남북대화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는 북한이 1986년도에 접어들면서 팀스피리트訓練을 핑계로 기존대화를 사실상 중단시킨 뒤 팀스피리트訓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軍事當局者會談(1986. 6. 17), 南北高位級政治軍事會談(1987. 1. 11), 多國籍軍縮會談(1987. 7. 23), 3者外務長官會談(1987. 8. 6), 南北連席會談(1988. 1. 1), 南北國會連席會議(1988. 7. 20) 등을 제의하여 주한미군문제와 서울올림픽 共同開催를 主議題로 내세운 데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의 對南戰略 특히 基調가 3大革命力量 強化에 있다는 것은

이미 전술한 바 있지만 서울에서의 올림픽 개최는 이러한 3大革命力量強化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軍事會談, 3者會談 등 일련의 남북대화를 제의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고 오히려 소련을 포함한 東歐圈이 대거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 확실해지자 올림픽 共同開催를 들고나옴으로써 서울에서의 올림픽 개최를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마저 좌절되자 마침내 북한은 1987년 11월 30일 그들의 工作員으로 하여금 KAL858 민간여객기를 공중 폭파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지막 전술을 실천에 옮겼다.

#### (8) 서울올림픽 이후—現在

盧泰愚대통령의 7·7특별선언(1988. 7. 7)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北方政策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이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國際革命力量을 만회하기 위하여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의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6·29선언 이후의 民主化 조류와 7·7특별선언 이후의 대공산권 開放政策을 활용하기 위한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즉 南朝鮮革命力量 強化를 통해 남한의 우세를 저지하거나 그 속도를 감속시킬 방안이 필요해진 것이다.

1989년 金日成이 신년사에서 제의한 南北政治協商會議에 이어 全民族大會(1989. 7. 9), 民族統一協商會議(1989. 9. 28), 南北當局·各政黨 首腦들의 協商會議(1990. 1. 1 金日成 新年辭) 등 군중집회성 대화 제의나 平和統一5個方針(1990. 5. 24 金日成 施政演說), 10個項軍縮方案(1990. 5. 31) 및 南北不可侵宣言(1990. 10. 16) 提議 등은 주한미군문제를 전술적 중심고리로 삼고 當局間·非常局間 대화를 통한 兩面戰術, 즉 上·下層 統一戰線戰術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내부의 運動圈學生과 在野人士들을 密入北시키는 한편 남북통일축구팀 교류, 平壤에서의 범민족음악회 개최 등 民間對話·交流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6·29宣言이나 7·7特



別宣言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본전술인 統一戰線戰術 차원에서 성과를 기대해 보려는 기도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對南政策은 社會主義革命의 전단계 혁명인 人民民主主義革命단계의 戰略的 指導에 따라 戰術的 次元에서 전개 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對南戰略基調가 되어 있는 3大革命力量 強化 방침중 國際革命力量과의 연계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對南戰略基調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상황에 처해 있다.

## 2. 北韓의 統一政策

### 가. 統一政策의 基調

북한의 統一政策은 主體思想에 기초한 「하나의 조선」 정책을 토대로 한 南朝鮮革命(解放) 노선을 견지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세우고 있다.<sup>8)</sup>

북한의 統一觀과 統一政策의 基調는 그들 체제의 최고 規範인 조선노동당규약의 前文과 북한헌법 제5조에 잘 나타나고 있다.<sup>9)</sup>

黨規約 前文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憲法 제5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

8)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12 참조.

9) 「北韓概覽」(서울: 평화통일연구소, 1986), P. 339 및 P. 355.

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全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을 목표로 한 先 南朝鮮革命, 後 共產化統一이 북한의 祖國統一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 하겠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金日成은 1968년 7월 8일 당간부들에 내린 비밀교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조국통일은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단순한 재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거족적인 사업입니다. 남조선혁명은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조선혁명의 일부분으로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서로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집니다.”<sup>10)</sup>

한편, 북한은 그들 스스로가 발간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1975년판)에서 金日成의 말을 인용하여 통일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이,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입니다.”<sup>11)</sup>

“평화적 통일도 결국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에 맞는 원칙에서만 가능합니다.”<sup>12)</sup>

이는 북한이 남북한에 걸친 勞動者·農民階級을 解放하고 이들을 이름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시되는 階級社會를 건설하는 것을 통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계급투쟁을 통해서 계급해방을 성취한 뒤 계급간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내외논총」 제4집 (서울: 내외정책연구소, 1982), pp. 118~119.

11) 허중호, 앞의 책, P. 186.

12) 위의 책, P. 207.

그리고 북한이 이상과 같은 개념의 조국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내놓은 戰略은 3大革命力量 強化方針이다. 이 統一戰略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金日成의 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의된 바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 즉 조선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는 결국 3대혁명력량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sup>13)</sup>

한편, 북한이 남한의 현 상태를 미국 및 일본의 식민지적 從屬國이라고 규정하면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平和的 方途와 非平和的 方途라는 조국통일을 수행하는 두 가지 방도이다.

非平和的 方途란 큰 전쟁으로 인하여 제국주의 세력이 弱화되는 조건하에서 民族을 완전 解放하기 위해 전쟁의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이다.<sup>14)</sup>

平和的 方途란 남한 자체내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된 다음 南北政權을 통합하거나 또는 남한의 現政權이 聯共政權으로 교체된 다음 남북간의 합작을 통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統一方案으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位相은 이 平和的 方途의 추진선상에 위치한 전술적 배치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13)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 239.

14)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950~953.

15) 金學俊, “통일정책: 지속성과 변화추세,”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 575.

## 나. 統一政策의 變遷

북한의 統一政策은 시대적인 適應性和 환경적인 戰略性을 가지고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1940년대는 구체적 통일방안의 제시가 없는 가운데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남북한총선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휴전 이후 1950년대 후반에는 平和統一論, 1960년대는 聯邦制 주장, 1970년대는 5大綱領, 1980년대는 高麗聯邦制 주장, 1990년대는 軍縮과 聯邦制 재주장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 (1) 1950年代

북한은 휴전 이후 공식적인 통일정책으로 平和統一論을 1954년 4월에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서부터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평화공세를 늦추지 않고 最高人民會議 第1期 8次會議(1954. 12)에서 또다시 政黨·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통해 통일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어서 남북조선간의 경제·문화교류와 通行·書信交換을 위한 南北代表者會議를 소집하자고 주장했다.<sup>16)</sup>

1955년 8월 14일 8·15해방 1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김일성은 外軍撤收, 軍隊의 縮小, 平和保障을 위한 極東會議 소집, 武力不行使 協定締結 등을 제안했으며,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武力不行使 선포 및 軍隊縮小, 韓·美 相互防衛條約의 폐기, 國際會議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宣言을 채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1957년 9월 20일 最高人民會議 第2期 1次會議, 1959년의 最高人民會議 第2期 6次會議에서도 外相인 南日의 보고를 통하여 平和統一論을 제시하였다.<sup>17)</sup>

요컨대 1950年代는 平和統一論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그

16) 「정치사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994~995.

17)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P. 30~36.

내용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外軍撤收 및 減軍, 武力不行使 宣布
- ② 南北代表者會議와 國際會議 開催
- ③ 經濟·文化 交流 및 通行·書信 交換
- ④ 自由選舉 實施

이상과 같이 북한이 1950年代에 平和統一論을 주장한 것은 전후 상황에서 自體力量을 길러나가기 위해 일정기간의 평화유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金日成이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외부조건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5년 내지 1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다면, 소련은 물론이고 6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대해질 것이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sup>18)</sup>라고 한 1955년 12월 28일 「노동당의 선전선동 일군들 앞에서의 연설」은 1950년대의 平和統一 제의가 지니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2) 1960年代

1960년대는 南北聯邦制가 통일방안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로서 이것은 金日成이 1960년 8월 14일 8·15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南北總選舉를 주장하면서 “아직 남조선당국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고 함으로써 비롯되었다.

당시 제의한 聯邦制는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兩政府 代表로 구성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聯邦制를 제의한 데에는 1960년 4월 19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18) 「김일성저작선집」 제1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8), P. 575.

변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는 自主·平和·民主라는 3개의 원칙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여하튼 196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8차회의에서는 金日成의 8·15聯邦制 제의를 구체화시켜 다시 제시했다.<sup>19)</sup> 그후 1962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金日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聯邦制를 재차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1960년 8·15의 제의와는 달리 外軍撤收와 南北間의 交流 및 相互協調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sup>20)</sup>

1963년 12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 祖國平和統一委員會 합동회의에서는 南北聯邦制 실시를 위해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南北朝鮮代表者會議을 개최 하자는 제의를 하였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1960年代 전반 기에는 聯邦制 제의가 없었다. 그리고 1960年代 후반기에는 대남 무력 도발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통일정책에서 특기할 만한 제의는 없었다.

### (3) 1970年代

1970년대는 平和統一論을 다시 부각시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 했으나, 이를 집약해 볼 때 3大原則과 5大綱領을 통일방침으로 표 방한 시기라 하겠다.

3大原則은 종전의 自主·平和·民主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1972년 7월 4일 南北共同聲明에서 남북한간에 합의한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을 뜻하나 종전의 3大原則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sup>21)</sup>

5大綱領은 1973년 6월 23일 金日成에 의해 발표된 고려연방공

19) 「조선중앙년감」(1961), PP. 27~42.

20) 「조선중앙년감」(1963), PP. 32~34.

21) 「조선중앙년감」(1976), P. 45에서는 「자주, 평화, 민주」를 들고 있으나, P. 83에서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지칭.

화국의 수립을 내용으로 한 5개항목에 걸친 제의를 말한다.<sup>22)</sup>

이러한 방침을 내세우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1960년대 초의 聯邦制案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1971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는 外相인 許鏞이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보고를 통해 統一8個項을 제시했다.

8個項으로 제안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外軍撤收·減軍, 外國과의 조약폐기, 남북총선거, 각 정당·사회단체의 활동보장,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 실시, 광범위한 교류 주장 등,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南北政治協商會議를 개최하자는 것이었다. 1971년 8월 6일에 金日成은 캄보디아 民族統一戰線委員長인 노르돔·시아누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南北協商 제의와 더불어 종전의 8개항을 재확인하였다.<sup>23)</sup>

이러한 北韓의 平和攻勢에 대응하여 197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는 이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옴으로써 1971년 9월 20일부터 南北赤十字會談이 판문점에서 열리게 되고, 나아가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南北調節委員會가 마련되었다.

남북조절위, 남북적십자회담 등 南北對話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許鏞의 8個項 등 종전에 제의하였던 통일정책을 종합하여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후사크 환영대회에서 金日成의 연설을 통해 ① 南北韓間 군사적 대치 및 긴장해소, ② 남북한간 다방면적인 合作과 交流 실현, ③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석하는 大民族會議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 실시, ⑤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平和統一5大綱領」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22) 「조선중앙년감」(1974), P. 91.

23) 「조선중앙년감」(1972), P. 12.

북한의 소위 5大綱領은 그 구성면에서 許鍊 8個項을 단순화시킨 것이며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은 1960年代의 聯邦制에 「高麗」라는 國號를 첨가하였다는 점과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주장이라 하겠다.

#### (4) 1980年代

1970年代까지 5大綱領을 통해 統一까지의 과도적 조치로 聯邦制 실시를 주장해 오던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보다 구체화된 「聯邦制」 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번에는 통일까지의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完成된 統一國家 形態」로서의 연방제라고 주장하였다.

그후 金日成은 정권창건 35돌 기념연설(1983. 9. 9)에서 연방기구 운영 방안으로 共同議長과 共同委員長의 輪番制 운영을 제의하기도 하였다.<sup>24)</sup>

1984년 1월 11일에는 中央人民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연합회의 명의로 對美 「3者會談」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에서는 먼저 美國과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그후에 한국과 不可侵宜함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軍事問題의 先決을 주장하였다.

金日成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1986. 12. 30) 시 그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제안하였고, 그후 1987년 1월 11일 북한측은 정식으로 政務院 總理와 人民武力部長 名義의 대남편지를 통해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하였다.<sup>25)</sup>

북한은 1987년 7월 23일 이례적으로 정부성명을 통하여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多國의 軍縮協商」을 제의하였고, 다음해인 1988년 11월 7일에는 中央人民委·最高人民會議·政務院의 3者 聯合會議 명의로 이른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24) 國土統一院, 「南北韓 統一·對話提議 比較(1)」(1990), P. 259.

25) 위의 책, P. 451.



平和保障方案」과 「平和保障 4原則」을 발표하였다.

平和保障 4原則은 ① 統一指向, ② 外軍撤收, ③ 軍縮, ④ 當事者協商 등이 그 주요 골자이며, 平和保障方案으로서는 단계적 美軍武力撤收와 南北間 軍縮, 당면한 政治·軍事의 대결상태 완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sup>26)</sup>

또한 金日成은 1989년 新年辭에서 南北政治協商會議를 제의하였고 1989년 7월 許鎔의 범민족대회 제의를 비롯해서 1989년 9월 28일 當局·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 명의를 民族統一協商會議를 제의하는 등 群衆集會性 대화제의를 하면서 남한내부의 運動圈 學生代表와 在野人士들을 평양에 밀입북시키는 등 統一戰線戰術을 구사하였다.

### (5) 1990年代

金日成은 199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한 당국 및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를 주장하면서 남북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新年辭에서 金日成은 南側의 對戰車 障礙物을 동서 베를린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간주하고 이 장벽의 철거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7)</sup>

金日成은 또한 最高人民會議 제9기 1차회의(1990. 5. 24)에서 施政演說을 통하여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그리고 「不可侵宣言」을 채택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祖國統一 5個方針」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IX-1>과 같다.

1990년 5월 31일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정무원의 3者 聯合會議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을 채택하였다.<sup>28)</sup> 이 내용은 1990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時 북측 대표단장 延亨默 政務院 總理의 基調發言에서 재확인되었다.

26) 國土統一院, 「南北韓 軍縮관련 主要提議」, (1990), PP. 23~26.

27) 「로동신문」, 1990. 1. 1.

28) 國土統一院, 위의 책, PP. 26~28.

## 祖國統一 5個方針

## 〈표 IX-1〉

| 方 針  | 細 部 內 容   |
|--|---|
| 1. 朝鮮半島에서 緊張狀態緩和와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간 不可侵宣言 채택</li> <li>◦ 朝·美間 平和協定 체결</li> <li>◦ 북남무력 段階的 縮減 (10만명 이하 유지)</li> <li>◦ 核武器와 美軍撤收</li> </ul> |
| 2. 分斷의 장벽 허물고 북남간 自由來往과 全面開放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장벽 제거</li> <li>◦ 악법 폐지</li> <li>◦ 밀입북자 석방</li> </ul>   |
| 3.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마련 원칙하에 대외관계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議席으로 유엔 공동 가입</li> </ul>   |
| 4. 祖國統一을 위한 대화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當局間·非當局間(政黨, 社會團體, 各계각층) 의사를 반영하는 전민족적 對話분위기 조성 노력</li> </ul>  |
| 5. 祖國統一을 위한 全民族的 統一戰線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 및 해외 政黨, 社會團體, 各계각층의 전민족적 統一戰線形成과 협력 및 연합</li> </ul>  |

\* 출처: 「김일성 시정연설」 (국토통일원, 1990)

北側이 제안한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방안의 요지는 〈표 IX-2〉와 같다.

북한은 또한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政治的 對決狀態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9)</sup>

- ① 상호비방을 중지하며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 금지
- ② 민주적 단합과 통일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의 제거

29)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북측 수석대표 연형묵의 기초연설문, pp. 10~11.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方案

〈표 IX-2〉

| 區 分    | 方 案   |
|--------|---|
| 北南信賴造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軍事訓練과 軍事練習 制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外國군대와의 合동군사 演習·훈련  금지</li> <li>② 사단급 이상 규모의 軍事훈련·演習  금지</li> <li>③ 軍事分界線 일대에서 軍事演習  금지</li> <li>④ 자기 영내에서 外國군대의 軍事演習  불허</li> <li>⑤ 軍事演習 사진 상호  통보</li> </ol> </li> <li>2. 軍事分界線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DMZ 안의 모든 軍事인원과  장비 철수</li> <li>② DMZ 안의 軍事시설물  해체</li> <li>③ DMZ를 民間인에게 개방하고 平和적 목적에 이용</li> </ol> </li> <li>3. 偶發的 衝突과 그 擴大防止를 위한 安全措置 講究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위 軍事당국자간 直通전화  설치 운영</li> <li>② 軍事分界線 일대에서의 軍事도발행위  금지</li> </ol> </li> </ol> |
| 北南武力縮減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段階的 武力縮減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兵력축감 : 軍축안  합의 후 3~4년  동안에 3단계 구분 실시<br/>(30만명→20만명→10만명 이하 兵력 유지)</li> <li>② 軍事장비의  축소 폐기</li> <li>③ 民間군사조직과 民間무력  해체(1단계에서 실시)</li> </ol> </li> <li>5. 軍事裝備의 質的 更新 中止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 軍事기술장비 도입과 무장장비  개발 중지</li> <li>② 外國으로부터 신 軍事기술과  무장장비  반입 금지</li> </ol> </li> <li>6. 軍縮定型的 相互通報 및 檢證 實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력축감  정형을 상호  통지</li> <li>② 상호  현지시찰을 통하여  軍축합의  이행  정형  검증</li> </ol> </li> </ol>   |

| 區 分            | 方 案  |
|----------------|--|
| ◦ 外國武力撤收       | 7. 朝鮮半島의 非核地帶化<br>① 남조선의 핵무기 철수를 위한 공동 노력<br>② 핵무기의 생산·구입 금지<br>③ 핵무기 적재 외국 비행기·함선의 조선 경내로의 출입·통과 금지<br><br>8. 朝鮮半島에서의 外國軍隊의 撤收를 위한 共同努力<br>① 남조선 주둔 미군·장비의 단계적 완전 철수<br>② 남조선에 설치된 미 군사기지의 단계적 철폐 |
| 軍縮과 그 以後의 平和保障 | 9. 軍縮과 그 以後의 平和保障 措置<br>① DMZ에 중립국 감시군 배치<br>② 군비통제와 군사상의 분쟁문제를 협의 및 해결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책임자: 군총참모장급)  |

\* 출처: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연형묵 북측 대표단장의 기조연설문.

- ③ 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의 자유와 상대방의 사상을 신용하는 사상의 자유 보장
- ④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물리적 장벽 제거
- ⑤ 각 정당·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
- ⑥ 국제정치무대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진출하고 협력

그후 북측은 제2차 고위급회담(1990. 10. 16~19, 평양)에서 7개항의 南北不可侵에 관한 宣言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1990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政治·軍事問題를 거론하면서 駐韓美軍撤收를 위한 韓半島「軍縮」, 남북한「不可侵宣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上層部 統一戰線戰術 차원에서 한국의 6·29 宣言과 7·7特別宣言을 역이용하여 보려는 속셈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3大革命力量 強化중 「國際的 革命支援力量 強化」 문제는 한국의 北方政策의 結實로 결정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고 革命支援力量은 와해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1990年代에 있어서 북한의 기존의 統一政策의 基調는 그 수정이 不可避한 狀況에 이를 것으로 評價된다.<sup>30)</sup>

#### 다.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북한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하여 현재까지 그들의 통일방안으로 견지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전제 조건 부분, 기본내용 부분, 10대시정방침 부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제조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1)</sup>

첫째, 소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조선에서 군사 파쇼통치 청산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등 「파쇼적 악법」들을 폐지하고 「폭압통치기구」들을 제거하며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와 이들 단체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또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고 駐韓美軍을 撤收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분열주의적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고 조선의 內政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基本前提下에서 金日成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원칙으로는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3대원칙을

30)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정책비교」, (1990), P. 50.

31) 國土統一院,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第IV輯, (1988), PP. 57~58.

내세웠다.

둘째, 통일정부 수립방안으로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sup>32)</sup>을 주장하였다.

셋째, 聯邦形式의 통일국가는 北과 南의 同數代表와 적당한 數의 海外同胞들로 最高民族聯邦會議을 구성하고 거기에 聯邦常設委員會를 조직하여 北과 南의 地域政府를 지도한다고 하고 最高民族聯邦會議와 그 상임기구인 聯邦常設委員會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政治, 防衛, 對外關係 문제 등을 토의·결정하여 모든 분야에서 團結과 合作을 실현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며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독자적인 政策을 실시한다는 것을 내세웠다.<sup>33)</sup>

넷째, 연방국가의 國號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으로 하며 中立國家로서 어떠한 政治·軍事的 同盟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祖國이 통일된 후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이 시행할 10大 施政方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sup>34)</sup>

-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 견지 및 자주정책 실시
- ②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적 대단결 도모
- ③ 북남간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 ④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남간 교류·협조 실현과 과학기술,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32) 위의 책, P. 120.

33) 위의 책, PP. 59~60.

34) 위의 책, PP. 120~121.

- ⑤ 북남간 끊어졌던 교통·체신 연결과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⑥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
- ⑦ 북남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외래 침략으로부터 민족 보호
- ⑧ 모든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및 보호
- ⑨ 통일이전의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정
- ⑩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이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平和統一方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赤化革命 策略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 앞에 주장하고 있는 당면한 基本前提 내용들이다.

과거의 南北對話가 북한의 일방적인 前提條件들 때문에 번번이 유산되었던 것처럼 聯邦制 方案도 한국이 수락할 수 없는 사실상의 先決條件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合作」과 交流를 운운한 10大 施政方針의 기만성이다. 즉 10大 施政方針은 특히 남북한간의 合作과 交流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추진은 聯邦制式 統一이 이루어진 뒤에만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聯邦制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북한 간의 어떠한 交流와 協力도 사실상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82년 2월 1일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個 示範實踐事業」 제의에 대한 북한의 각종 宣傳團體와 機關 名義로 발표한 거부 성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盧泰愚 대통령이 1989년 9월에 제안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을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南北韓 統一方案 比較

〈표 IX-3〉

| 區 分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
| 統 一 原 則            | 자주, 평화, 민주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
| 前 提 條 件            | 없 음  | 국가보안법 폐지<br>공산주의활동 합법화<br>주한미군 철수  |
| 過 渡 體 制            | 남북연합   | 없 음  |
| 過 渡 機 構            | 남북정상회의<br>남북각료회의<br>남북평의회                                    | 없 음  |
| 統 一 國 家<br>實 現 節 次 | 통일헌법에 의거 총선거   |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br>실현방법 협의, 결정   |
| 統 一 國 家<br>機 構     | 국회는 양원제  | 최고민족연방회의<br>연방상설위원회  |
| 統 一 國 家<br>政 策 基 調 | 민주공화체제,<br>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br>민족의 항구적 안전보장,<br>대외 선린우호 관계의 유지 | 10대시정방침시행 : 자주적<br>정책실시, 민족경제 발전보<br>장, 민족문화·교육의 통일<br>적 발전, 민족연합군 조직,<br>평화에호적 대외정책 등 |
| 統 一 國 家<br>未 來 像   | 자유·인권·행복이<br>보장되는 민주국가                                       | 없 음  |

\* 출처 : 「통일정책해설자료」 (서울 : 국토통일원, 1989), P. 35.

북한은 최근들어 한국의 統一方案을 「制度的 統一方案」으로 규정하고, 制度的 統一方案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먹거나 먹히우는 통일방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制度上 統一을 이룩하려면 南北總選舉의 방법에 의거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 정세하에서 總選



舉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選舉結果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sup>35)</sup>

반면에 북한의 高麗聯邦制 統一方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한반도의 현실에 가장 合理的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 방안의 대원칙이며 民族的 統一方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統一을 위해서는 美軍과 核武器 撤收, 停戰協定の 平和協定 代替, 不可侵宣言 채택 등으로 南北 및 朝·美間關係를 새로운 기초위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 3. 南北對話

#### 가. 北韓의 對話戰略과 運用

北韓은 그들의 궁극적 목표가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에 있기 때문에 南北對話 또는 對南 協商戰略 역시 그들의 혁명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투쟁수단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 중국의 國共合作이나 베트남의 협상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공산주의자들의 協商觀은 타협의 개념이 아니라 鬭爭과 爭取의 개념을 위장한데 불과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35) 북한의 사회과학자협회 제1부위원장 김철명은 1990년 8월 3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조선학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90년대 조국통일의 전망과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남북한 통일방안을 「제도적 방안」과 「민족적 방안」으로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안의 반민족 분열주의적 본질” 제하의 노동신문 논설(1990. 9. 11)에서 한국의 새 통일방안을 한반도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통일의 복잡한 단계를 설정해 놓은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도 통일론”으로 매도하였다.

따라서北韓의 對話戰略 내지 對話戰術은 韓半島 共產化 統一의 선결조건인 「南朝鮮革命」을 이루기 위해 시기와 여건에 따라 그들의 혁명투쟁노선을 적절히 구사해 나가는 술책이라 하겠다.

결국北韓은 “남조선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성취하기”<sup>36)</sup> 위해서 남한내의 반정부세력과의 통일전선 형성과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南北對話를 이용해 왔다.

즉 그들은 南北韓間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온갖 구호와 주장을 표방하면서도, 그들의 입장이나 처지가 불리할 때면 거의 예외없이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하였다.

특히 북한은 상대측을 기만하거나 자기측의 저의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해 왔으며, 표면상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뒤에서는 무력도발을 감행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교란을 기도하는 기만·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반공정권 퇴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다분히 내정간섭적 선결조건을 내세우면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선전·선동공세를 전개, 실질적인 남북한 관계개선보다는 대남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소 수교 등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 따라 북한도 보다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현재北韓內에는 대남공작기구와 함께 남북대화를 직접 담당하는 기구로서 祖國平和統一委員會가 있고, 기타 통일전선기구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과 대남위장 조작단체로 韓國民族民主戰線(舊 統革黨) 등이 있다

특히 1961년 5월 급조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인 祖國平和統一委員會(祖平統)는 실질적인 남북대화 주관기구인데, 그 주요조직은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서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36) 1980년 10월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당규약에 명시.

## 對南 擔當機構

## 〈丑 IX-4〉

| 機 構            | 區 分             | 內 容  |
|----------------|-----------------|--|
| 祖國平和統一<br>委員會  | 沿 革             | ◦ 1961. 5. 13. 4. 19直後 南韓社會 混亂時期에 「南北協商」의 窓口로서 北韓의 政黨·社會 團體, 各界人士를 網羅하여 급조   |
|                | 機 能<br>및<br>任 務 | ◦ 南韓住民·海外同胞들을 金日成 革命思想으로 武裝시키고 自主的 統一 實現을 위한 政治宣傳 事業 組織<br>◦ 北韓의 社會主義力量과 南韓의 「愛國的 民主主義力量」을 自主的 統一偉業 達成을 위한 鬭爭에로 組織·動員  |
|                | 組 職             | ◦ 委員長 許 談(黨政治局員, 最高人民會議 外交委員長)<br>◦ 副委員長 尹基福(黨祕書), 金永南(外交 部長)등 12名<br>◦ 書記局長 白南俊(政務院 參事室 室長)                           |
| 祖國統一民主<br>主義戰線 | 沿 革             | ◦ 1949. 6. 27 「南朝鮮 民主主義 民族統一 戰線」을 擴大(越南 南韓社會團體 包含) 하여 結成   |
|                | 機 能<br>및<br>任 務 | ◦ 勞動黨을 指導力量으로 삼고 黨의 路線· 政策을 옹호·관철하여 自主的 統一을 위해 積極 鬭爭<br>◦ 金日成 領導밑에 北韓의 社會主義力量과 韓國의 反帝愛國力量을 團合시켜 革命的 全國的 勝利를 위한 鬭爭에 이바지 |

| 機 構               | 區 分             | 內 容   |
|-------------------|-----------------|---|
| 社國統一民主主義戰線        | 組 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議長團：楊亨燮(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議長) 등 7名</li> <li>◦ 書記局長：유호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議長)</li> <li>◦ 中央委員會：24個 政黨·社會團體 代表로 構成</li> </ul>   |
| 韓國民族民主戰線(舊 統一革命黨) | 沿 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4. 3. 15 「統一革命黨」 創建準備委 組織</li> <li>◦ 1969. 8. 25 黨中央委 結成(創黨宣言, 綱領 採擇)</li> <li>◦ 1985. 7. 27 「韓國民族民主戰線」으로 改稱 (黨綱領 및 規約 改正)</li> </ul>   |
|                   | 機 能<br>및<br>任 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主體思想을 指導理念으로 삼는 南朝鮮 革命家들과 人民들의 政治的 參謀部」라고 主張하는 對南 地下偽裝組織</li> <li>◦ 「救國의 소리放送」(舊 統革黨放送) 등 黑色宣傳媒體를 통하여 情勢 變化에 따라 運動圈·在野團體를 대상으로 反美·反政府 鬭爭을 鼓舞·煽動</li> </ul>  |
|                   | 組 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代表：오세일 등 10名</li> <li>◦ 海外代表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日本, 쿠바, 시리아, 平壤, 마다가스칼 등 設置</li> </ul> </li> <li>◦ 黑色宣傳媒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救國의 소리 放送(1970. 6. 1 開設, 黑色放送)</li> <li>－ 救國戰線(1970. 7 創刊, 日本代表部 機關誌)</li> <li>－ 靑脈(1972. 9 創刊, 機關雜誌)</li> </ul> </li> </ul> |

대남관계에서 주요 사건 또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祖平統書記局 聲明·報道 등을 통해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나. 會談推進 背景과 過程

南北韓은 1945년 분단된 이래 적지 않은 접촉과 교류를 가져왔지만 民族의 宿願을 풀기에는 미흡하였고 실질적이지 못하였다. 1970년대나 1980년대의 대화도 겉으로 보기는 활발한 듯하였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남북고 위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南北關係 개선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어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北韓은 해방 이후 정치적 공백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기본목표를 수립하였다. 6·25전쟁을 도발하기 직전인 1949년부터 北韓은 南北協商을 주창하면서 위장평화공세를 일층 강화, 武力南侵計劃을 은폐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1948년 3월 25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全朝鮮 諸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의 개최를 주장하였으며, 공산정권 수립 이후인 1949년 6월 28일에는 71개 남북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하여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을 결성하고, 立法機關 구성을 위한 南北韓 總選舉 實施 등 8個項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195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北韓은 표면상 남북간의 평화적 제휴를 크게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무력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평화공세를 계속하였다.

1960年代에는 南韓에서 4·19가 일어나고 국론분열 현상이 고조되자 北韓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각종 선전공세를 전개하였다. 특히, 北韓은 평화통일 논의의 확산과 南韓內 청년학생들의 반체제 운동에 고무되어 平和統一路線을 표방하면서 「南北聯邦制」 및 경제·문화교류를 실시하자는 선전공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무성한 통일논의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은 실질적 접촉이나 교류면

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對美·日 접근 움직임과 제3세계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정세가 긴장완화 조류를 형성하자, 북한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화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聯邦制 統一方案」을 제시하고 1972년 南北共同聲明이 공동발표된 이후로는 「自主·平和·民族大團結」 원칙에 입각한 대남공세를 강화하면서, 對南關係에서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1973년 우리정부의 6·23선언이 발표되자 이를 구실로 그나마 이어져 오던 몇 갈래의 대화마저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말았다.

1979년 1월 어렵게 속개된 남북한간의 變則對坐에서도 북한은 대화를 정치선전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남북대화는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1970년대의 남북대화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과 합의사항의 불이행, 내정간섭적인 對南 前提條件 先決을 주장함에 따라 「對話있는 競爭時代」라는 특징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南北對話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우리 政府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천명과 北韓의 南北政治協商會議 제의 등에 힘입어 서서히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 9월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남북한간에는 새로운 관계개선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이래 1984년 11월부터 1985년말 사이에는 赤十字會談 3회, 經濟會談 5회, 國會會談 豫備接觸 2회 등이 열렸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南北離散家族 故鄉訪問 및 藝術公演團」 교류가 1985년에 이루어짐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발표, 다시금 소강상태에 빠졌다. 또, 1988년 8월 남북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몇 차례의 예비접촉을 가졌으나 역시 北韓의 일방적 대화중단 성명으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이와같이 1980年代에 이르러 남북한간에는 「交流있는 對決時代」에 부응하는 듯한 각종 접촉이 있어 왔으나, 북한은 여전히 南朝鮮革命路線의 추구라는 낡은 태도에 얽매어 政治優先에 따른 조건부 주장을 내세우는가 하면, 합의사항을 수시로 번복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특히 北韓은 南韓의 在野團體를 대상으로 한 5개의 회담(정치협상회의, 범민족대회, 학생회담, 작가회담, 노동자회담) 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내 국론분열 조장과 사회혼란 기도를 남북대화의 주요 전략목표로 삼아 온 종전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南北韓關係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 분단 45년 만에 최초로 정부 공식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南北高位級會談, 體育會談 등 各種 會談이 재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정부의 北方政策과 「7·7선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으로 인해 한국의 동구권과의 수교, 한·소수교, 한·중 무역사무소 개설 등이 성사되었으며, 북한의 對日협상이나 對美접근도 구체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남북통일추구대회, 범민족음악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각종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도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1990년대 초반의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대 양상은 蘇·東歐圈의 개혁과 독일 통일로 인한 전세계적 화해 분위기, 북한에 대한 중·소의 경제협력 제한, 북한 자체의 격심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등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 여건에 기인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對話 戰略基調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남북대화의 성과나 남북간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지는 않겠으나 한반도 통일환경과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문제가 북한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 다. 分野別 對話進行

### (1) 南北赤十字會談

1971년 8월 12일 大韓赤十字社의 남북한 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에 의해 시작된 南北赤十字會談은 25회의 예비회담을 거쳐 이산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확인하여 알려주는 문제 등 5개 항의 본회담 의제에 합의하였다.

국토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대화라는 벽찬 기대속에 출발한 1970년대의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예비회담에서 합의한대로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모두 7회 개최되었으나, 1973년 8월 20일 北韓側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중단」성명에 의해 제8차 本會談이 유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본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태도를 보면, 韓赤側이 1千萬 離散家族들을 하루속히 만나게 하려는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데 비해, 北赤側은 「人道主義의 最高目標은 祖國統一」이라는 주장하에 反共法規 撤廢, 反共活動 中止, 反共團體 解體, 了解 解說人員 派遣 등 “남북에서의 법률적 조건개선과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면서 政治優先 태도를 보였다.

北韓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성명으로 인해 유산된 제8차 본회담을 속개시키려는 韓赤側의 노력에 의해 7회의 南北赤十字 代表會議과 25회의 南北赤十字 實務會議가 개최되었으나, 北赤側의 政治優先主張에 따라 南北赤十字會談은 교착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던중 1984년 8월 全斗煥大統領이 남북한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北韓同胞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물자의 무상제공 용의」를 밝힌데 이어, 1984년 9월 북한이 남한지역 수재민을 위한 수재물자 제공을 제의해 옴에 따라 南北赤十字間의 접촉이 재개되었다.

水災物資 引導·引受를 계기로 시작된 1980년대의 南北赤十字 本會談은 3차례나 열려 議題 5個項 事業의 토의에 적잖은 진전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제한된 규모이긴 하나 「南北離散家族



故郷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流」가 실현됨으로써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차원의 인적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또다시 1986년 1월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제11차 본회담을 무기연기하였으며, 1989년 9월 이후 北赤의 제의로 열린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위한 7회의 南北赤十字 實務代表 接觸과 1회의 首席代表 個別接觸도 北韓側이 1990년 2월 팀스피리트훈련을 내세워 중단시키고 말았다.

특히 1989년의 赤十字 實務代表 接觸에 있어서는 방문단 규모(총 571명), 공연내용의 TV·라디오 실황중계, 본회담 개최일정까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이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革命歌劇을 공연하겠다고 고집함에 따라 회담이 결렬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처럼 이산가족 재회 등 인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赤十字會談에서조차 北韓側이 政治宣傳에 치중함으로써 會談 自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의 쌍방 합의에 따라 90년 11월 제8차 南北赤十字 實務代表 接觸이 재개되었으나, 또다시 革命歌劇의 공연문제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 赤十字會談 經過

〈표 IX-5〉

| 區 分          | 回 數 | 日 字                         | 特記事項  |
|--------------|-----|-----------------------------|---|
| 派遣員<br>接 觸   | 5   | 1971. 8. 20~<br>9. 16       |   |
| 豫備會談         | 25  | 1971. 9. 20~<br>1972. 8. 11 | 本회담 場所, 代表團 구성, 전화선<br>보장 등 합의                            |
| 議題問題<br>實務會議 | 13  | 1972. 2. 21~<br>6. 5        | 議題 5個項 合意 이산가족의 住所·<br>生死 확인 및 이산가족의<br>自由訪問과 상봉, 書信 왕래 등 |

| 區 分                   | 回數 | 日 字                          | 特 記 事 項                            |
|-----------------------|----|------------------------------|------------------------------------|
| 進行節次<br>實務會議          | 3  | 1972. 6. 27~<br>8. 9         | 본회담 개최장소, 進行節次 협의                  |
| 本會談                   | 7  | 1972. 8. 29~<br>1973. 7. 13  | 남북赤十字 共同委員會와 남북적십자 板門店 共同事業所 설치 협의 |
| 代表會議                  | 7  | 1973. 11. 28~<br>1974. 5. 29 | 실무회담 운영 및 절차문제 협의                  |
| 實務會議                  | 25 | 1974. 7. 10~<br>1977.12. 9   |                                    |
| 水災物資引<br>受 實務接觸       | 1  | 1984. 9. 18                  | 북측이 제의한 수재물자 인수문제를 협의했으나 북측 일방 퇴장  |
| 本會談再開<br>를 위한<br>豫備接觸 | 1  | 1984. 11. 20                 | 본회담 재개, 의제 5개항 등 종전 협의사항 재확인       |
| 本會談<br>(재개)           | 3  | 1985. 5. 27~<br>12. 5        | 의제 5개항 일괄 토의                       |
| 故鄉訪問團<br>및 藝術團<br>會議  | 3  | 1985. 7. 15~<br>8. 22        |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공연협의 (총 151명)   |
| 實務代表<br>接觸            | 7  | 1985. 9.27~<br>11.27         | 본회담재개 및 제2차 방문단 교환 협의              |
| 首席代表<br>個別 接觸         | 1  | 1989.12. 4                   |                                    |
| 實務代表<br>接觸            | 1  | 1990. 11. 8                  | 혁명가극 공연문제로 걸릴                      |

## (2) 南北調節委員會

南北赤十字會談이 板門店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南北實務者間的

비밀막후교섭이 성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大韓民國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金英柱간 비밀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쌍방간의 서울·평양 상호방문과 이를 통해 이루어진 高位 會談을 토대로,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南北 共同聲明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쌍방은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이라는 「祖國統一 3大原則」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기 위해 南北調節委員會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南北對話의 章을 열었다.

共同委員長會議 3회, 調節委員會會議 3회, 幹事會議 3회 및 副委員長會議 10회가 연속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특히 北韓側은 남북한간의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 상호 불신 및 적대감의 상존 등 韓半島의 현실을 무시한 채, 군대감축, 무기·군수물자 반입금지, 對美 平和協定 체결 등 軍事問題優先解決을 주장함으로써 韓國의 防衛力 弱화와 駐韓美軍撤收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북한은 60~70개 정당·사회단체에서 각각 5~20명의 대표와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되는 南北調節委員會의 확대 개편을 주장하는 한편, 南北調節委員會와 병행하여 「南北政治協商會議」와 「南北政黨·社會團體連席會議」의 소집을 강조함으로써 南北調節委員會의 변질을 기도하였다.

결국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 副委員長會議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책 중지, 6.23선언 취소, 구속자 석방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南北調節委員會의 정상화를 외면해오다가 1975년 5월 회담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더욱이 북한은 1979년에 진행된 「南北變則對坐」에서 南北調節委員會의 存續意義 상실을 선언하면서, 동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南北韓間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979년 1월 南北韓間의 대화단절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韓國이

## 南北調節委員會 會議經過

〈표 IX-6〉

| 區 分         | 回 數 | 日 字                          | 特記事項  |
|-------------|-----|------------------------------|---|
| 共同委員長<br>會議 | 3   | 1972. 10. 12~<br>11. 30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br>합의서 서명 교환 쌍방 조절위 기구<br>구성 발표 |
| 調節委員會<br>會議 | 3   | 1972. 11. 30~<br>1973. 6. 14 | 간부회의의 구성, 공동사무국설치,<br>조절위 운영세칙 작성                   |
| 幹事會議        | 3   | 1973. 3. 10~<br>5. 23        | 조절위 운영세칙 및 공동사무국<br>운영세칙 초안 토의                      |
| 副委員長<br>會議  | 10  | 1973. 12. 5~<br>1975. 3. 4   | 북측의 일방적 거부로 중단                                      |
| 南北變則<br>對坐  | 3   | 1979. 2. 17~<br>3. 14        | 대표의 성격차이로 결렬  |

南北韓 當局間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北韓은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내세워 「全民族大會」 소집을 위한 實務級 代表豫備會談을 제의하고 나섰다.

또한 南北調節委員會 韓國側 共同委員長代理가 南北調節委員會의 운영정상화를 제의한데 대하여, 北韓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南北調節委員會의 존속의미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신에 「民族統一準備委員會」를 발족시킬 것과 이를 위한 南北連絡代表接觸을 제의하였다.

결국 南北調節委員會 韓國代表와 北韓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連絡代表間에 이루어진 「南北變則對坐」가 3회나 진행되었으나, 대표의 성격이 서로 달라 회담이 결렬되고 말았다.

회담에서 韓國側이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南北韓當局 實務代表會議를 제의하자, 北韓은 「民族統一準備委員會」구성을 위한 政黨·社會團

體 및 當局 連絡代表 집착을 제의함으로써 韓國側의 當局間 對話 提議를 계속 거부하였다.

또한 1979년 3월 韓國이 비생산적인 「南北變則對坐」를 지양하고 당국간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國土統一院次官을 수석대표로 하는 大韓民國當局 實務代表團을 파견하였으나, 北韓의 불참으로 회담이 열리지 못하였다.

이처럼 南北調節委員會 會議은 완전 중단된 상태로 있으나, 1990年代에 들어 南北高位級會談과 軍縮會談 등을 통해 비슷한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 (3) 南北體育會談

北韓의 體育指導委員會와 卓球協會는 1979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불과 3주일 앞두고 韓國側에 「남북한 탁구단일팀」구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 회의」를 갖자고 제의해왔다.

이에 대해 大韓體育會와 大韓卓球協會는 이미 우리가 여러차례 체육교류를 비롯한 남북한간의 제반 교류협력을 제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 제의를 수락함에 따라 4회의 南北韓 卓球協會 代表會議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同 會議에서 韓國은 단일팀 구성문제에 조속 합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단일팀 구성이 지연될 경우, 韓國選手團이 國際卓球聯盟의 會員國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참가기득권을 존중하여 북한이 한국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한 탁구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외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선수단의 참가보장을 계속 외면함으로써, 탁구단일팀 구성문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선수단의 평양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측의 지연작전에 의해 南北韓 卓球協會 代表會議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데 이어, 북한이 한국선수단에 대한 비자발급마저 거부함으로써 北韓의 탁구단일팀 구성제의를 한국선수단의 세계탁

구선수권대회 참가저지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1981년 6월 大韓體育會는 북한에 대해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참가하기 위한 南北體育人會談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웅산폭파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1984년 3월 LA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출전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 대남평화공세를 전개해 왔다.

이에 大韓體育會는 이미 한국측이 단일팀 구성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수락함에 따라 南北體育會談이 판문점에서 3차에 걸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1984년 5월 북한이 제3차회담 하루 전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공산권 11개국 체육관계자회의에 참가하여 LA올림픽에 불참키로 한 결정에 동의한데 이어, 제4차회담 개최마저 기피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을 결렬시켜 버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측의 남북체육회담 제의는 처음부터 LA올림픽 단일팀 출전에 그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올림픽에의 불참명분을 확보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88서울올림픽과 관련하여 IOC가 중재하는 남북체육회담을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사마란치의 제안을 남북한이 수락함에 따라 4차에 걸쳐 로잔느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대회명칭·공동주최·경기종목 할당문제 등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한국은 북한을 서울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해 탁구·양궁·여자배구 전경기와 축구예선 1개조, 싸이클 남자 도로개인경기 등 6개 종목을 북한측에 할애하겠다고 양보를 하였으나, 북한측은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와 별도 개·폐회식, 북한개최 경기종목에 대한 TV방영권 및 축구·탁구·양궁·여자배구 등 6개종목 할애를 주장하는 등 사실상 분리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산권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북한올림픽위원회는 1987년 9월 제12회 서울올림픽대회에 불참할 것을 공식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한데 이어, 88서울올림픽에서도 종합 4위를 차지하게 되자,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에서의 한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북한측은 1988년 12월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9차에 걸친 남북체육회담과 6차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쌍방은 1920년대의 「아리랑」을 단가로 하고, 선수단의 영문표기는 「KOREA」로 하며,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단기로 하고 선수선발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 토의를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북한측은 단일팀 출전을 내외에 선언할 것 등 3개항 전제조건을 제시하고는 회담을 결렬시켜 버렸다.

그렇지만 이때의 남북체육회담은 1년여 기간동안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북경아시안게임 참관차 북경을 방문한 남북체육관계자들은 자연스럽게 접촉(실무접촉 3회)한 끝에 중단된 남북체육회담의 빠른 시일내 재개와 축구경기의 교환개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제1차 「남북통일축구대회」가 평양의 5·1경기장에서 개최(1990. 10. 11)된데 이어, 제2차대회가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속개(1990. 10. 23)됨으로써 중단된 京平축구가 중단 50여년만에 다시 열렸고, 최초의 남북체육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북경아시안게임과 남북통일축구대회 기간중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쌍방 체육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 체육분야의 교류와 국제대회 단일팀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또다시 2차례나 열리게 되었다. 비록 남북통일축구대회의 정례화 등에 관한 논의 끝에 남북체육회담이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남북체육인간의

교류와 이해가 일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4) 南北經濟會談

북한의 수재물자 인도를 계기로 1984년 10월 한국의 經濟企劃院長官이 南北經濟會談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이 동의함에 따라 판문점에서 南北經濟會談이 개최되었다.

1984년 11월 제1차회담에서 남북쌍방은 경제협력과 교역문제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여 交易品目, 自然資源 開發, 南北共同漁撈區域 設定, 南北鐵道(京義線)連結, 南北經濟協力委員會 設置問題 등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어 밝은 전망을 예측하기도 하였으나, 1985년 1월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제2차회담을 무기연기시켰다.

1985년 5월 속개된 제2차회담에서 韓國側이 제1차회담에서의 공통점을 기초로 하여 실질문제 토의를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南北經濟協調委員會 설치문제만을 토의하자고 주장,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85년 6월 비공개로 열린 제3차회담에서 한국측은 1, 2차회담에서의 쌍방 제안을 토대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의하였고, 북한측도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여 「南北韓間 物資交流 및 經濟協力 推進과 南北經濟協力機構 設置에 관한 合意書」를 채택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제4차회담 이후에는 쌍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중심으로 합의서 명칭문제, 사업추진의 원칙문제, 교류대상품목, 무연탄과 철강재의 시범적 물물교환 문제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북한의 일관된 지연작전으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 (5) 南北總理會談

1979년 10.26사태이후 한국의 국내정국 혼란기에 편승, 북한은 이종욱 정무원 총리와 김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대남편지 공세를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남북한총리회담을 제의한 이종욱 명의의 편지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하였고, 북한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10회의 실무대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이종욱 편지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南北韓 當局間對話를 제의해온 사실을 감안, 南北韓 總理會談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막상 南北實務代表 접촉과정에서 북한측은 한국의 南北韓 總理會談이라는 명칭에 대해 굳이 외면하면서 實務代表 接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總理會談이 政黨·社會團體의 다각적 접촉의 일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남북한의 책임있는 當局間會談이 아닌 群衆集會式的 政治協商會議의 일환으로 이끌어 가려는 저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의제문제에 있어서 한국측이 ① 南北韓間 信賴造成問題 ② 韓半島의 平和定着問題 ③ 祖國의 平和統一問題 등 현실적 문제를 제의한데 반하여, 북한측은 「북과 남이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단일의제를 고집하였다.<sup>37)</sup>

그러나 제10차 실무대표접촉(1980. 8. 20) 회의석상에서 북한측은 의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측 國務總理 署理에 대한 자격을 시비한데 이어, 한국의 내정문제를 전제조건화 하면서 실무접촉을 연기하자고 주장, 회담에 임하는 북한측 태도를 의심케 하였다.

결국 북한은 한국의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그들의 의제토의 거부구실중의 하나가 자동적으로 해결

37) 북한은 공식문헌을 통해 「합작」은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그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수령께서 가르키는 길을 따라 조국통일 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주요한 조건”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의 「합작」이라는 개념이 주체사상 기치하의 통일 즉 공산화통일의 수단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합작과 관련하여 정치협상회의와 대민족회의 개최,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단결」을 주장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반공정책 중지, 외세배제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합작」과 「단결」을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남북대화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조건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되기에 이르자, 제11차 실무대표접촉 이틀전에 동 접촉을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하는 성명을 발표(1980. 9. 24)함으로써 대화창구를 폐쇄하였고, 한국의 지속적인 회담속개 제의도 끝내 외면하였다.

남북대화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뒤에도 韓國政府는 끊어진 대화통로를 잇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全斗煥 大統領은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相互訪問」(1981. 1. 12) 및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會談」(1981. 6. 5)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6共和國 들어 李賢宰 國務總理는 적극적인 대화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北韓側에 쌍방의 각료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개최하자고 제의(1988. 6. 3)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서한의 접수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南北連席會議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형식으로 南北當局者會談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sup>38)</sup>고 주장, 사실상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다가 姜英勳 國務總理가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에게 서한을 보내 다시 한번 「南北高位當局者會談」개최를 촉구(1988. 12. 28)하자, 88서울올림픽으로 인해 국제적 고립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측은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개최에 동의(1989. 1. 16)하고, 예비회담 개최를 제의해 왔다. 2차 예비회담이후 팀스피리트훈련으로 회담을 중단시켰던 북한측은 회담 실현을 위한 실무절차문제 토의는 외면한 채 「북한출판물 단속중지」, 「콘크리트장벽 철거」 등 「대화분위기」조성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우리측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회담을 중단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후 속개된 3차의 예비회담을 거쳐 공식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3차례나 열리게 되었다.

1차 高位級會談에서 한국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의 합의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 체제인정및 존중을 포함한

38) 북한은 서한접수 대상자인 정무원총리 대신에 「남북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라는 위장단체의 성명(1988. 6. 6)을 통해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는 한편, 정치협상회의를 제기함으로써 남한내 학생회담 제의등 통일논의 확산에 편승하였다.

8개항의 합의서(案)을 제시하였으며, 정치·군사적 대결상황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병행·토의하자는 입장에서 실천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한 반면, 북측은 회담에서 준수해야 할 3개원칙과 3개항의 긴급의제를 제1차회담에서 해결하고자 주장하면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군축 등 정치·군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제2차회담에서는 제1차회담에서 쌍방이 제시한 입장과 방안들을 합의서 형태로 만들자는데 대해서 일치된 입장을 보였으며, 북측이 우리측 기본합의서 내용 일부를 수용한 不可侵宣言案을 제시한데 비해, 우리측은 북측이 제시한 통일 3원칙과 불가침선언 내용을 수용하여 「南北間의 和解와 協力을 위한 共同宣言」案을 제시하였다.

분단 45년만에 이루어진 남북총리간의 회담은 회담을 통해 쌍방의 입장이 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회담방식에 있어 상호 합의점 도출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쌍방 총리가 상대측을 방문하는 기간중 국가원수를 예방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타진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남북협력시대의 개막을 예고해 주었다고 하겠다.

이어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3차례의 예비접촉에 있어서는 합의서 내용을 둘러싸고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3차회담에서도 한국측이 「南北關係 改善에 관한 基本合意書」의 수정안을 제시한데 대해, 북측은 불가침선언 채택, 대미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를 주장하면서 「남북불가침과 화해협력 선언」을 제시하는 등 쌍방이 기본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6) 南北國會會談

北韓은 1985년 4월 제7기최고인민회의 4차회의에서 채택한 서신을 통해 「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南北國會會談의 개최와 이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해 왔다.

이에 한국측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對北回信文을 통해 불가침선언문제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南北韓常局間의 회담을 거쳐 협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南北國會會談에서는 統一憲法을 제정하기 위한 南北協議機構구성에 따르는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하였다.

1~2차 예비접촉에서 會談形式, 代表團規模, 會談場所, 會談日時, 報道·記錄, 往來節次·便宜保障問題는 합의되었으나, 불가침선언과 관련된 의제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북한의 南北國會會談 제의는 시기와 회담과정을 볼 때, 우리측 12대 국회의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론분열을 획책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與野가 통일문제에 대하여 초당적인 단결된 태도를 과시하게 되자, 북한은 南北國會會談을 처음부터 진전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金在淳 國會議長이 제142회 臨時國會에서 채택(1988. 7. 9)한 「서울올림픽에의 北韓參加 促求 決議文」을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長에게 보내자(1988. 7. 18), 북한은 남북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南北國會連席會議」를 평양에서 개최하자면서 「南北不可侵에 관한 共同宣言」草案을 동봉해 왔다.

1988년 8월부터 1990년 1월까지 1년5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10차례의 南北國會會談 準備接觸을 통해 본회담 진행순서, 개·폐회 모임 형태, 회담장소 등에 합의하였으나, 본회담 형식과 의제에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북측은 또다시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로 준비접촉을 거부해 버렸다.

결국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한국측이 「대표회담」을 「쌍방향의 제」로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쌍무적 성격을 강조한데 반하여, 북한측은 「대표회의」의 운영을 「일치합의제」로 하자고 고집함으로써

連席會議方式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일치합의제」란 다수결에 의한 합의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내부의 교란작전, 예컨대 야당의 반발 등을 예상한 전술이라 하겠다.

## 라. 南北韓 交流·協力實態

### (1) 對北政策의 轉換

1980년대의 남북관계는 교착과 좌절이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부분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남북대화도 다방면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6공화국에 들어서는 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일방적 조치라는 한계는 있으나,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대상으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에 따라, ① 남북동포간의 적극적인 상호교류 추진과 해외동포의 남북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②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서신왕래, ③ 남북한 교역 문호개방, ④ 우방국과 북한간의 비군사적 물자교역에 불반대, ⑤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자유접촉과 협력 희망, ⑥ 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용의 등 6개항의 「7·7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1988. 7. 7)하였다.

이처럼 「7·7선언」은 남북한관계와 북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룸으로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통합과 번영을 추구하고 나가려는 한국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정부는 이 선언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실천적 후속조치들을 강구하여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1988. 7. 15), 전향적 대북 외교정책 시행(1988. 7. 15),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개방(1988. 9. 3), 대북 비난방송 중지(1988. 7. 19), 대북 경제개방 조치(1988.

10.7) 등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의 새시대를 대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특별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한데 이어, 이에 부속되는 각종 시행규칙들을 마련하였다. 이는 통일문제를 정책적·전략적 접근에 의존해 왔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실천적·현실적 차원으로 눈을 돌린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민족대교류 선언(1990. 7. 20)에 따라 광복절을 기해 남북한간의 대대적인 인적교류가 시작될 수도 있었으나, 북한측이 61,355명의 방북신청자의 명단조차 접수하지 않아 교류자체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 (2) 人的·物的 交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국회심의로 지연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표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1989. 6. 12) 시행 이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간 성사된 인적교류 실적은 1990년 12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25건과 북한주민 접촉신청에 대한 승인건수가 200여건에 이르렀고 352명의 인적왕래가 이루어져 짧은 기간에 비해 성과는 적지 않았다고 하겠다.

또한 「7. 7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자유왕래가 허용된 재외국민의 경우, 400여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특히 한·소정상회담(1990. 6. 4)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의 냉전 질서가 급격히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남북교류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오던 북한측은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 9. 4~7) 이후 남북 교류에 대해 표면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경아시안게임 기간중에는 남북한이 공동응원을 했는가 하면, 뉴욕에서 개최된 제1회 「남북영화제」(1990. 10. 10~15)에는 남북

영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평양의 「범민족통일음악회」(1990. 10. 18~23)에는 남한측 국악인·취재진 17명이 참가하였으며,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10. 11. 10. 23)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개최된데 이어, 서울에서 열린 90송년 통일 전통 음악회(1990. 12. 8~13)에는 북한의 음악인 33명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특히 이러한 민간차원의 체육·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한 쌍방의 인원들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왕래함으로써 순수 민간인의 교류가 비정치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제3국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남북한 학자간 접촉빈도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상봉도 늘어나고 있어 한민족공동체의 회복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대북 경제개방 조치(1988. 10. 7) 이후 남북한간 물자교역 실적은 3,278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재·아연괴 등의 중간원자재와 한약재·수산물 등 1차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일본·중국 등을 통한 간접교역 단계에 머물고 있다.

### 南北間 物資交易 推進實績

<표 IX-7>

| 區 分 | 承認品目(種) | 承認額(千달러) | 通關額(千달러) |
|-----|---------|----------|----------|
| 搬 入 | 59      | 32,618   | 23,033   |
| 搬 出 | 4       | 162      | 152      |
| 計   | 63      | 32,780   | 23,185   |

## 南北體育會談 經過

〈표 IX-8〉

| 區 分         | 日 字                               | 韓 國   | 北 韓   |
|-------------|-----------------------------------|---|---|
| 卓球協會<br>會議  | 1979. 2. 27~<br>3. 12<br>(4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 선보장 요구</li> <li>• 대회대진 추첨일 이전에 「단일팀구성」에 합의토록 시한 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팀구성」에 관한 합의서 우선채택 주장</li> <li>• 제반절차문제 우선토의 요구</li> </ul>   |
| 板門店<br>體育會談 | 1984. 4. 9~<br>5. 25<br>(3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올림픽·86아시아안계임·88서울올림픽 등 國際大會單一팀 構成과 南北間體育交流에 대한 具體案 提示</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의 아웅산事件糾彈에 대한 反駁 및 우리側에 대한 誹謗中傷으로 一貫</li> </ul>  |
| 로잔느<br>體育會談 | 1985.10.8~<br>1987. 7. 15<br>(4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회명칭: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li> <li>• 주최권: 공동주최 불가</li> <li>• 경기종목 북한배정: 양궁·탁구·여자배구 전 경기, 축구예선 1개조, 싸이클 남자도로개인경기</li> <li>• 개·폐회식: 서울 단독 개최</li> <li>• 조직기구: 모든경기 조직은 SLOOC관할</li> <li>• TV방영권: SLOOC소유</li> <li>• 단일팀구성문제: 남북한이 직접해결</li> <li>• 기타: 남북한 동시입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4차 서울올림픽대회와 제24차 평양 올림픽대회</li> <li>• 공동주최 요구</li> <li>• 축구·양궁·탁구·여자 배구및 기타2개 종목</li> <li>• 서울과 평양에서 각기 개최</li> <li>• SLOOC와 대등한 기구의 평양설치</li> <li>• 북한 개최종목에 한해 북한이 TV방영권 소유</li> <li>• 단일팀구성</li> </ul> |



| 區 分                         | 日 字   | 韓 國  | 北 韓                  |
|-----------------------------|---|--|----------------------|
| 북경아시아<br>안게임관<br>런 체육<br>회담 | 1989. 3.9<br>~<br>1990. 2.7<br>본회담(9회),<br>실무대표<br>접촉(6회)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남북합의사항</div> 1. 호칭<br>• 우리말 : 코리아<br>• 영 문 : KOREA(약자 : KOR)<br>• 중국어 : 可禮亞<br>2. 단기 :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br>3. 단가 : 1920년대 아리랑<br>4. 선수선발방법<br>• 합동훈련기간 마지막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선발전을 통해 선수 선발<br>•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등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br>• 선발전은 기록종목, 체점종목, 투기종목, 구기종목 등 각 종목별 특성에 따라 구분 실시<br>• 이밖에도 선수훈련, 선수단구성, 선수단 경비, 신변안전보장, 공동추진기구 등에서 대체로 원칙적인 합의에 이룸 | • 부최조항 전면철회 요구.      |
| 남북통일<br>축구대<br>회 관련<br>체육회담 | 1990. 11. 29<br>~12.20<br>(2회)                            | • 통일축구대회<br>정례화-국장<br>• 제41회<br>세계탁구선수<br>팀구성<br>합의서안<br>제시  | • 단일팀<br>구성3원칙<br>강조 |

## 南北經濟會談 經過

〈표 IX-9〉

| 區 分 | 日 字          | 韓 國   | 北 韓   |
|-----|--------------|---|---|
| 1차  | 1984. 11.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교역 실시</li> <li>• 남북경제협력</li> <li>• 선교류 후합작투자</li> <li>•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과 북의 경제분야에<br/>서의 합작과 교류실현</li> <li>• 합작과 투자교류 동시<br/>실시</li> <li>• 교역품목 제시</li> <li>•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br/>치</li> </ul> |
| 2차  | 1985. 5. 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회담 공동제안 사항<br/>계속 토의</li> <li>• 1차회담시 쌍방 의견합<br/>치 품목 즉각 교류설시</li> <li>• 경의선 올해안 연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제협조위원회 즉<br/>각 구성</li> <li>• 3가지 원칙과 16개항의<br/>합작 교류방법 제시</li> </ul>  |
| 3차  | 1985. 5.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br/>설치를 포함한 합의<br/>서(안)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경제협조위원회 설<br/>치에 관한 합의서(안)<br/>제시</li> </ul>   |
| 4차  | 1985. 9. 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물자교류 및 경제<br/>협력추진과 남북경제<br/>협력공동위원회설치에<br/>관한 합의서(안)제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물자교류 및 경제<br/>협력추진과 남북경제<br/>협력공동위원회설치에<br/>관한 합의서(안)제시</li> </ul>  |
| 5차  | 1985. 11.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회의 안건 계속토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회의안건 계속 토의</li> </ul>  |

# 資料

- 북한 헌법
- 북한 노동당 규약
- 북한 주요 인물록



# 북한 헌법

(1972. 12. 27 개정)

## 제1장 정 치

-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연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
-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 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 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제 8 조 균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 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
-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시하며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11조 국가는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한다.

제12조 국가는 모든 사업에서 위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다.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며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된다.

## 제2장 경 제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제19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원부원, 중요 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제20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부림집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1조 국가는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2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다.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23조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물질적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5조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줄인다.

제26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균의 역할을 높이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들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7조 근로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참가하며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의성을 내어 일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 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한다.

제28조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적용한다.

국가는 노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

제2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만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30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선진적 사회주의경제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영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 관리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을 관찰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제33조 국가는 넓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앤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또는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제3장 문 화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한다.



-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자연과 사회에 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 제3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
- 제38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낮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 제41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자라나는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반적 10년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킨다.
- 제42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 제43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하여 1년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 제4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
-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작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 제46조 국가는 우리말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 제47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국방체육을 발전시켜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다.
-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제4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제50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51조 국민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52조 만17살이상의 모든 국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국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3조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직을 보장한다.

제54조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55조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제56조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력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57조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8조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9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무원의 무교육을 비롯한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0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창의고안자와 발명가들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1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2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 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64조 공민은 인신 및 주택의 불가침과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체포할 수 없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공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67조 국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8조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제69조 로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0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71조 공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72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제5장 최고인민회의

제73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7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제75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76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회의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77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7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8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부원이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82조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 또는 수정된다.

제83조 최고인민회의는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들을 조직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돕는다.

제84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의원으로서의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 체포할 수 없다.

제85조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무기관이다.

제86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제87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 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현행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
-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 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명령을 낸다.
-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이다.
-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 검찰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 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 제8장 정 무 원

제107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108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09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 정무원 직속기관,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에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 보호 및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부원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제110조 정부원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정부원 전원회의는 정부원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부원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정부원 성원들로 구성한다.
- 제111조 정부원 전원회의는 국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정부원 상무회의는 정부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 제112조 정부원은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13조 정부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114조 부는 정부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부는 지시를 낸다.

##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 제11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제116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제117조 도(직할시)인민회의 임기는 4년,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8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9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0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21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집행한다.

제122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채택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다.

제12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2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부와 권한을 가진다.

-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5. 해당 행정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6. 하급 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 7. 해당 지역안의 국가기관, 기업소 및 사업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제12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2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8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행정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29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30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부와 권한을 가진다.

-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31조 지방행정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제132조 지방행정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행정위원회는 상급 행정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

##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13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4조 중앙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선거한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3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중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3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2.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13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

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3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4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4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4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143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 및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4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정무원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와 범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45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및 해임한다.

제146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제14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 올려감은 비이삭의 타원형 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4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4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북한 로동당 규약

(1980. 10. 13 6차당대회 개정)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192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으로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으며 오랜 항일혁명투쟁을 통해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에서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다.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건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단속 강화한다.

조선로동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의 영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전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최고의 활동 원칙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는다.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을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한다.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공고히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활발히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 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제1장 당 원

1.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투사이다.

2. 조선로동당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된 조선공민으로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규약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3. 조선로동당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입당청원자를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입당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후보당원으로 입당하려는 사람은 입당청원서와 입당 2명의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원이 입당할 때에 시(구역)·군사회주의 로동청  
년동맹 위원회의 입당보증서는 당원 1명의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입당할 때에는 입당청원서와 입당보증서를 당세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세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당보증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2) 입당보증인은 최소한 2년 이상의 당년환을 가져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사회, 정치생활을 잘 알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보증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을 진다.

3) 입당문제는 개별적으로 심사하며,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청원자의 참가밑에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당보증인은 입당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입당문제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을 1개월내에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4)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당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의한다.

5) 타당에서 출당한 사람이 입당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당년환을 가진 당원  
3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타당에서 평당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시  
(구역)·군급의 위원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관할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도(직할시), 중앙위원회 및 간부로 있었던 사람의 입당은  
당중앙위원회가 각각 최종적으로 비준한다.

6)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에게 당원의 자격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당세포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당원심사총회에서 그의  
입당자격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후보당원의 후보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그를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만일 후보당원의 입당 준비정도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후보당원이 후보기간을 마친 후에도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보명부에서 삭제된다.

후보기간을 연기하거나 후보당원을 명부에서 삭제시키는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7) 후보당원이나 후보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당원이 된 자의 입당일시는 당세포총회에서 입당을 결정한 날로 한다.

#### 4. 당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옹호하며 로동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

- 2) 당원은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한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당생활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회의와 당학습을 비롯한 당의 조직 및 사상생활에 충분히 참가하고 당조직의 결정과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며 자신의 당생활을 정기적으로 총화하며 비판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자기를 혁명가로 단련시켜야 한다.

당원은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체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당규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규율 위반에 대하여는 건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 3) 당원은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확립하고 자기의 정치, 사상, 문화 및 기술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로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경제 및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습득하고 현실상황을 료해하며 자신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4) 당원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며 일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며



그들을 교양 개조하여 당주위에 '굳게 결속시키고 혁명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들을 동원하며, 대중의 의견을 정확히 접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 5) 당원은 로동과 생활에서 대중의 규범이 되며 모든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당원은 집단의 혁명화 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원은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법률을 자발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 정통하며 맡은바 임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로동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기업관리운영에 숭신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하여 나라의 경제를 절약해야 한다.

- 6)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당원은 높은 혁명적 자립정신을 발휘하고 모든 애로에 대하여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당원은 항상 소박, 솔직, 검소하여야 하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당과 함께 솔직하며, 인간성이 풍부하고 문화적이어야 하며 국법과 사회질서 및 공중도덕 준수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 7) 당원은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당원은 일상적으로 긴장된 동원 태세를 갖추고 군사지식을 배워 적의 침략으로부터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에 대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 8) 당원은 혁명규율과 질서를 준수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안일과 나태함이 없이 혁명적인 경각성을 높이고 당, 국가 및 군사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9) 당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인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관계 당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10) 당원은 규정된 당비를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5. 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은 당회의와 당출판물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수행 및 당사업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2) 당원은 당회의에서의 투표권과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당원은 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당원을 막론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한 어떠한 지시의 준수도 거절할 수 있다.
- 4) 당원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당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5) 당원은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위원회에 어떤 신소나 정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6) 후보당원의 의무는 당원의 의무와 같다. 후보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이 없는 이외에는 당원의 권리와 같다.
- 7) 당의 규율을 위반하는 당원은 당의 책벌을 받는다.
  - ①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파벌조성행위를 하거나 적과 타협하는 등 당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 ② 당원의 칭호를 박탈하지 않을 정도의 과오를 범한 당원에 대하여는 과오의 경중에 따라 문책, 엄중경고, 또는 권리정지나 후보당원으로 강등하는 책벌을 적용한다.
  - ③ 당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당원을 교양하는데 있다.  
 당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그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 ④ 당책벌은 본인의 참가하에 그가 속한 당세포총회에서 토의 결정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지 않아도 책벌을 토의·결정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직접 책벌을 내릴 수 있다.  
 당원에게 책벌을 적용할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하고 당원자격 박탈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출당에 대한 당세포의 결정이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의 당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당생활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
- 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해당 당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당세포는 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당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당원에 대한 처벌을 해당 당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세포는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범한 과오가 해당위원회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엄중경고까지의 처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해당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중과 및 기타 다른 분과에 참가한 당원에 대한 당규율문제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평당원 또는 시(구역)·군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도(직할시) 당위원회에서, 도(직할시) 또는 중앙당기관의 간부로 있던 당원의 문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
7.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 해결하여야 한다.
8. 당세포는 항상 처벌을 받은 당원을 방조하여야 하며, 만일 처벌을 받은 당원이 자기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이 개선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문제를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여야 한다.  
 당원이 받은 처벌을 해제하는데 대한 당세포의 결정은 해당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이 받은 처벌의 해제는 그 처벌의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해당 당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9.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당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하여 당세포는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당원의 등록과 이동은 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 제2장 당의 조직원리와 조직구조

11.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

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회·보고한다.

- 2)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겸임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게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2.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되며, 어느 한 분야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당조직은 그 분야의 일부사업을 담당한 모든 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당조직으로 된다.
13.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정치적 총참모부이다. 집단적 지도는 모든 당위원회의 기본활동지침이다.

각급 당위원회는 새로운 중요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여 그것을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개인적 책임성과 창발성을 엄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4. 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없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당대표회이며, 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당대표회)가 없을 때는 당총회(당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 2)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직할시)·시(구역)·군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의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의 수는 당대회가 결정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수와 초급당위원회의 위원은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당대표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의 준후보위원은 생산로동에 직접 참가하는 핵심당원중에서 선출된다.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선거는 당중앙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세칙에 따른다.

15.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의 제명 또는 보선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위원 가운데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결원된 수만큼 해당 당위원회 보조위원 가운데서 보선한다.

만약 필요시는 당위원회 결원은 위원회의 후보위원이 아닌 다른 당원으로 보선될 수 있다.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위원의 제명 및 보선은 해당 당총회(당대표회)에서 실행된다.

초급당이 하급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널리 분산되어 있고 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총회(당대표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가 결원보충을 위한 보선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급 당위원회는 결원된 하급당위원회의 책임비서(비서) 또는 비서(부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각급 당기관의 후보위원 및 준후보위원은 해당 당위원회 전원회의에 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16. 당회의는 해당 당조직에 소속된 당원(당위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고 제기된 문제의 결정은 해당 당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17. 각급 당위원회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한다.  
부서의 설치 및 폐지의 권한은 당중앙위원회가 가진다.

18.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그들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초급당위원회 및 분초급당위원회의 조직과 해산은 도(직할시)당위원회가 비준하고 소수당원을 가진 초급당위원회 또는 부문당위원회 및 당세포의 조직과 해산은 시(구역)·군당위원회가 비준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는 당조직의 조직과 해산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당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조직을 막론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 및 당규약을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실적을 태만히 한 경우에 그 당조직을 해산하고 소속당원을 개별적으로 심의하며 그들을 재등록하여 새로운 당조직을 조직할

- 수 있다.
20. 당중앙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부문 및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당조직의 구성, 당조직의 활동방법과 기타 당건설의 제반문제에 관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당의 중앙조직

21.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대회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2.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 3) 당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 4)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23.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 사이에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행을 조직 지도하며 당과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능력을 높이고 기타 정당 및 국내외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24.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한다.
25.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26.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필요시, 당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27.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28.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및 기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29.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0.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대표자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

## 제4장 도(직할시)의 당조직

31. 도(직할시)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도(직할시)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대표회는 3년에 1회 도(직할시)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대표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대표회의 소집일과 의정을 2개월전에 하급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2. 도(직할시)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도(직할시)당위원회와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도(직할시)당위원회 및 도(직할시)당검사위원회 선출
  - 3) 당대회에 파유할 대표자 선출
33.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굳게 무장시키고 그들이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

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도록 감독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

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후비대를 육성하며 당 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하급당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근로대중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기 기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도, 조정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적절히 지도하여 혁명과업 수행을 보장한다.

로동적위대를 강화하고 그 전투력 향상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군사동원 사업을 보장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소관 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4. 도(직할시)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진원회의를 4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도(직할시)당위원회의 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며, 비서처를 조직하고, 도(직할시)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의 사이에 도(직할시)당위원회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비서는 인사행정 및 당내문제에 대해 필요시마다 토의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도(직할시)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35. 도(직할시)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 또는 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로선 및 정책과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제의 및 출당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비준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해결한다.

## 제5장 시(구역)·군의 당조직



36. 시(구역)·군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시(구역)·군당대표회이다.  
시(구역)·군당대표회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3년에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시(구역)·군당대표회는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시(구역)·군당대표회의 소집일자과 의정을 1개월전에 술하 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7. 시(구역)·군대당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의 사업 총화
  - 2) 시(구역)·군당위원회와 시(구역)·군당검사위원회 선거
  - 3) 도(직할시)당대표회에 파유할 대표자 선거
38.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수행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 수행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보장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강화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한다.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의 핵심을 연구 주지시키고 그 대열을 확대시키며 당원 확대사업을 정기적으로 조직·수행하며 당의 력량을 적절히 배치하고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한다.  
당원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과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당기흥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초급당조직의 집행기관을 강화하며 그들의 기능과 역할의 부단한 향상을 위하여 매일같이 지도·방조한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을 강화하고 임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 리행을 감독한다.  
행정 및 경제사업을 정확히 지도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한다.  
로동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자기의 사업에 관해 상급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9. 시(구역)·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3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책임비서 및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시(구역)·군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와 검열위원회를 선거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의 사이에 시(구역)·군당위원회의 명의로 당내사업을 조직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비서처는 문제제기시마다 인사행정 등 당내사업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며 그 결정을 집행한다.

시(구역)·군당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집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한다.

40. 시(구역)·군당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등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규율을 위반한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규율문제와 관련된 당원의 신소를 심의 처리한다.

## 제6장 당의 기층조직

41. 당의 최하기층조직은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42. 당의 기층조직의 조직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당원 5명미만의 단위에는 당세포를 두지 않고, 그 단위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은 린집당세포에 소속시키거나 작업성격과 린집관계를 고려하여 2개이상 단위의 당원을 합병하여 1개의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원 3~4명이 있는 단위 또는 30명 이상의 단위에도 당세포를 조직할 수 있다.

당원 3명미만의 단위에는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추천하는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당소조를 조직할 수 있다.

- 2)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 3) 초급당조직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 생활단위에는 부문(마을)당조직을 둘 수 있다.
- 4) 초급당, 부문당 또는 당세포의 조직형성만으로는 당기층 조직구성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 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5) 이상의 모든 당조직형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중앙위원회  
회의의 기준을 얻어 실정에 맞는 다른 당조직형성을 취할 수 있다.
43. 당기층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조직의 총회(대표회)이다.
- 1) 당세포총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 2) 초급당, 분초급당, 부문(마을)당의 총회(대표회)는 3개월에 1회이상 소  
집한다.  
초급당조직이 500명 이상의 당원 또는 후보당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  
솔하 조직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초급당조직의 총회를 1년에  
1회이상 소집할 수 있다.
44. 당의 기층조직은 1년임기의 해당조직의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 1) 당세포는 총회에서 비서와 부비서를 선거한다.
  - 2) 초급당위원회, 분초급위원회, 부문(마을)당위원회는 각각 당총회(대표  
회)에서 선거하며 비서, 부비서는 각각 당위원회 회의에서 선거한다.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집행위원회를 선거할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3회이상, 분초급당위원회와 부문(마을)당위원  
회는 1개월에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가 조직된 초급당 및  
분초급당위원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집행위원회  
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한다.
  - 3) 중앙기관의 당조직은 당지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45. 당기층조직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당원들과 근로대중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하도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  
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 2) 하급간부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핵심을  
주지, 교양하며 부단히 그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 3)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한다.  
당원들 속에 당규약학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그들에게 항상 혁명을  
위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고, 모든 활동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도록

당의 임무를 부여하며, 높은 정치 사상적 수준에서의 당회의와 당생활 총화를 수행하며 당원의 당생활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을 교양하며, 당원들을 혁명가로 개조하고 비판을 통한 사상투쟁을 강화한다.

당원이 과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 과오를 시정하도록 그를 방조한다.

- 4) 당원 직임자를 발견 등록하며 그들을 조직적으로 교양하여 심사후 자격자를 입당시키며 후보당원과 새로 입당한 당원들을 교양 훈련시킨다.
- 5) 당원들과 근로대중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다.  
당원들과 근로대중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혁명전통교양 및 계급교양이 주내용인 공산주의 교육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뒤리에 결속시킨다.
- 6) 근로대중의 요구와 의견을 겸손히 접수하고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모든 단위와 직장에서 계통과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
- 7) 근로대중의 사회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며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 8) 모든 사업활동에서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및 청산리정신과 방법을 적용하고 정치사업을 선행시키며 행정 및 경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통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대중이 그들의 혁명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기술혁신운동을 촉진하며 로동생산능률을 제고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 절약하도록 그들을 조직, 고무한다.
- 9) 로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 사상, 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 때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10) 당원과 후보당원을 등록하며 당비를 거출하여 자기 사업에 관해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조직

46.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 혁명적 무장력이다.
47.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도(직할시)당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8.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군사료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높은 혁명적 동지에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49.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한다.
  50.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들은 지방 당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대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정치 및 군사간부를 주둔지역의 도(직할시)·시(구역)·군당위원회 및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8장 정치기관

51.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  
중앙기관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 및 그들에게 소속한 정치기관들은 해당부문에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에게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조직 수행하며, 해당단위내에 조직된 당위원회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5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3.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들은 하급정치기관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당위원회들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
54. 정치기관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원들과 근로대중을 동원키 위하여 당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5. 정치기관들은 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한다.

## 제9장 당과 로동대중의 조직

56.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대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사업을 진행한다.
57.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를 통해 동맹원들을 당두리에 결속시키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

58. 각급 당조직들은 로동대중의 간부대열들을 강화하고 근로대중조직의 모체를 통하여 대중과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근로대중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장 당의 재정

59. 당의 재정은 당원들의 당비, 당이 운영하는 기관들과 기업소들로부터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
60. 당원 및 후보당원의 당비는 월수입의 2%로 한다.

## 북한 주요 인물록

### 〈참고〉

- ① 북한 주요인물 146명을 수록
- ② 年月은 사건발생시기 또는  
확인 시기임
- ③ 현직 또는 확인된 직책을  
말미에 표시
- ④ 1990년 11월 현재

ㄱ

강석송(康錫崇·男) 1923 平壤출생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57. 10 당 중앙위 부부장 ○61. 1 내무성 정치국장 ○61. 3 당 감사위 위원 ○68. 10 송도정치경제대학 학장 ○69. 7 자강도 당 책임비서 ○71. 6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4. 9 조·중친선협회 상무위원 ○75. 7 당역사연구소 소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5 당 중앙위 위원 ○85. 5 제8차남북적십자 본회담참석(서울)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

양위 위원, 당 역사연구소장, 조·중친선협회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강성산(姜成山·男) 1926 平壤출생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69. 8 당 자강도위 책임비서 ○69. 11 당 평양시위 책임비서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3. 4 평양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73.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75. 1 정무원 교통·채신위 위원장 ○77. 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77. 12 정무원 부총리 ○79. 9 정무원 부총리겸 철도부장 ○80. 10 당 정치국 위원 ○82. 2 김일성훈장 수훈 ○82. 8 정무원 제1부총리 ○84. 1 정무원 총리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정무원 총리 해임, 당비서국 비서 ○88. 3 함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함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강영섭(男) ○69. 3 내각서기국 차



강 ○69. 12 주무안다 대사 ○71. 12 주말타 대사,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위원장 ○89. 5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현재 조선 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위원장, 조선종교인 협의회 부회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강현수(康賢洙 : 金日成의 外從弟·男) 1925 平壤출생 ○중앙당학교 ○56. 6 송도정치경제대학 맑스·레닌주의 강좌장 ○62. 12 주소련 대사관 무관(소장) ○68.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7 사회안전성 정치국장 ○70. 11 당중앙위 위원 ○74. 3 평양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77. 12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 ○78. 5 평남도 인민위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7 당중앙위결연위 제1부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위원 ○89. 4 황북도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황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강희원(姜希源·男) 1921 平壤출생 ○맑스. 레닌주의학원, 모스크바대학 ○58. 7 전기성 부상, 당 중앙위 경공업부장 ○61. 9 당 중앙위 위원 ○62. 8 평양시 인민위 위원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동 예

산심의위 위원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1. 9 함흥시 인민위 위원장 ○72. 9 평양시 인민위 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8. 9 정무원 부총리 ○80. 7 함북도 당 책임비서 ○82. 2 당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중앙인민위 위원 ○85. 7 평양시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장 ○86. 11 평양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9. 4 정무원 부총리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평양시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장, 조평통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계응태(桂應泰·男) 1918 咸北출생 ○남만주대학, 소련고급당학교 ○57. 5 당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57. 8 최고인민회의 제2기대의원 ○60. 12 외무성 부상 ○62. 3 무역성 부상 ○67. 4 국제무역추진위 부위원장 ○67. 12 무역상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정무원 무역부장 ○76. 12 정무원 부총리 ○77. 1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부장 ○77. 12 중앙인민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1. 5 정무원 경공업위원장 ○81.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강등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9 평남도 당 책임비서 ○85. 8 평남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장

○86. 2 당 비서국 비서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장 ○88. 3 당 정치국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비서국 비서(중앙),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장

계형순(桂亨淳·男)咸北출생, ○김일성종합대학, 체코유학 ○55. 7 평양시 인민위 농업부부장 ○62. 7 농업성 부상 ○62. 12 기계공업위 부위원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9. 12 제1기계공업상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3. 7 김일성훈장 수훈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 정무원 기계공업부 부장, 용접협회 위원장 ○82. 5 대안중기공장 지배인 ○86. 12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금속 및 기계공업위원장 ○87. 10 정무원 기계공업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기계공업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고기준(高基俊·男) 1921출생 ○목사 ○81. 1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정치위원 ○81. 6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서기장 ○89. 3 범민족대회 대표 ○89. 4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 고문 ○89. 5 제13차 세계청년학

생축전 남북회담 대표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현재 조선기독교 중앙위 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공진태(孔鎭泰·男) 1925 平南출생 ○일본대학 ○54 인민경제대학교 관 ○58 대외경제총국 2부장 ○63. 6 대외경제총국 부총국장 ○66. 12 석탄공업성 부상 ○67. 12 대외경제위 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장 ○74. 10 정무원 사무국장 ○75. 6 정무원 부총리 ○76. 4 당 중앙위 위원 ○80.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80. 12 정무원 국가계획위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정무원 무역위원장 ○85. 10 정무원 인민봉사 위원장 ○86. 2 당 정치국 후보위원 소환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인민봉사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권희경(權熙京·男) 1928 慈江출생 ○53. 56 당 중앙위 근무 ○65-72. 1 외무성 부상 ○72. 2 주소련 대사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3. 6 주스웨덴 대사겸임 ○73. 10 제28차 UN총회 대표단 대표 ○74. 9 제61차 IPU총회 대표 ○76. 7 주소련 대사 해임 ○76. 8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 ○82. 2 주소련 대사 재임명 ○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3.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3 당 중앙위 위원 ○90. 2 주스련 대사 해임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길재경(吉在京·男) 1924 출생 ○74. 3 주스웨덴 대사 ○74. 4 주아이슬란드 대사점임 ○76. 10 마약밀수 사건으로 추방 ○77. 7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1. 5 당 국제부 부부장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8. 3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국제부 부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강환(金江煥·男) 1931 평壤 출생 ○만경대혁명학원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81. 4 인민군 중장 ○82. 2 최고 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2. 11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당 중앙위 군사부 부장, 인민군 중장

김경봉(金璟鳳·男)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88. 3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과학원 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김광진(金光鎭·男) 1918 平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소련군포병기술학교 ○민보성 후방총국 참모장 ○70. 3 인민군 소장 ○70. 7 인민군 중장, 포병군단장 ○72. 7 김일성훈장 수훈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3. 4 인민군 중장, 포병사령관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0. 12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84. 7 당 중앙위 위원 ○85. 4 인민군 대장 ○85. 8 인민무력부 부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원회 위원 ○90. 9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김국태(金國泰·男) 1918 咸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62. 10 중앙당학교 지도부 부부장, 인민군 중장 ○63. 8 군 총정치국 부국장 ○66. 10 당국제부 부부장 ○67. 7 사회안전성 정치국 국장, 인민군 상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2 당 선전선동부 부장 ○68. 5 당 중앙위 후보위원 ○70. 11 당 중앙위 위원 ○71. 10 당 문화예술부 부장 ○76. 6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77. 5 함남도 인민위원장 ○77. 10

주이디오피아 대사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3 당 중앙위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간부부 부장,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기남(金基南·男) 1926 江原출생 ○김일성대학, 모스크바국제대학 ○48. 8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54. 1 외무성 제2부장 ○57. 6 주중공대리대사 ○57. 12 외무성 의례1부장 ○61. 8 당 과학교육부 부부장 ○72. 4 노동신문 부주필 ○74. 4 근로자책임주필 ○76. 5 기자동맹 중앙위 위원장, 노동신문 책임주필 ○76. 10 당 중앙위 후보의원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80. 10 당 중앙위 위원 ○81. 10 국제기자동맹 부위원장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2 노동신문 책임주필 해임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7. 9 당 중앙위 제1부부장 ○89. 12 당 중앙위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위원,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기선(金基善·男) 1926 黄海출생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54. 5 황남도 당조직부 부부장 ○57 임업노동자동맹 위원장 ○59. 1 연안군 당 위원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8.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9. 9 황북도 인민위원장 ○70. 7 당 중앙위 후보위원 ○71. 7 황북농촌경리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7. 8 평남도 행정위원장 ○79. 6 남포시 인민위원장 ○80. 7 강원도 당책임비서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5. 8 개성시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개성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달현(金達鉉·男) ○77. 11 과학원 부원장 ○87. 3 정무원 화학 및 경공업위 위원장 ○88. 2 국가계획위 위원장 ○88. 3 당 중앙위 위원 ○88. 6 정무원 대외경제위 위원장 ○88. 10 정무원 무역부 부장겸임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정무원 부총리 ○현재 당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대외경제위 위원장·무역부 부장겸임,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두남(金斗南·男) 1928출생 ○만경대혁명학원, 소련군사아카데미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2. 8 당 정치국 후보위원 ○83. 1 당 군사부장, 당 중앙

군사위 위원 ○85. 4 인민군 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복신(金福信·女) 1926 平北출생 ○중앙당학교 ○57. 8 최고인민회의 제2기대의원 ○58. 6 길주 펄프공장 지배인 ○58. 9 경공업성 부상 ○60. 7 당 경공업부 부부장 ○61. 5 경공업위 부위원장 ○66 평양시 지방산업총국장 ○71. 5 방직공업상 ○72. 7 조선·이라크친선협회 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4. 4 경공업위 방직 및 피복공업 총국장 ○81. 1 정무원 부총리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2. 5 정무원 경공업위 위원장 ○83. 12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84. 1 정무원 대외경제위 위원장 ○85. 10 정무원 부총리 겸 무역위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조선국제합영회사 이사장 ○88. 6 정무원 경공업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경공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봉률(金奉律·男) 1911 平北출생 ○레닌그라드대학 ○47 포병부 참모장 ○48. 3 당 평북도위 초직부장 ○50. 9 인민군 소장 ○52 인민군 중장

○56. 4 당 중앙위 후보위원 ○57 민족보위성 부상 ○60 인민군 상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7. 4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2 인민무력부 부부장 ○75. 7 인민무력부 검열국장겸임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5. 4 인민군 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1. 12 당 중앙위 위원 ○87. 12 공화국 영웅 칭호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원회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봉주(金鳳柱·金日成의 從弟·男) 1930 平壤출생 ○김일성대학 ○65. 4 사료청중앙학교 강좌장 ○76. 11 금성정치대학 학장 ○77. 6 직총 중앙위 위원장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82. 5 조선. 아시아. 아프리카단결위 위원장 ○84.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84. 4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84. 7 당 중앙위 위원 ○85.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89. 10 직총 중앙위 위원장 해임, 당 중앙위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부장, 조·인도친선협 위원장, 조·리버와친선협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석형(金錫亨·男) 1912 慶北출생 ○39 경성제대 ○56. 1 김일성대학교수 ○56. 3 과학원 역사학연구소 소장 ○58. 11 과학원 상무위원 ○61. 5 조평통 위원 ○62. 10 최고인민회의의 제3기대의원 ○6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4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심의위 위원 ○73. 2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조평통 상무위원 겸 부위원장 ○84. 9 사회과학원 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9. 5 제13차 평측 남북회담 대표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사회과학원 원사 교수 역사학연구소 고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조평통 상무위원 겸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김성구(金聖求·男) ○66. 2 주우루과이 통상대표부 요원 ○82. 1 남흥청년화학공장 지배인 ○82. 7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4. 6 당 중앙위 후보위원 ○85. 4 정무원 화학공업부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9. 8 정무원 지방공업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지방공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김성애(金聖愛: 金日成의 後妻) 1924 平南출생 ○평양사범, 김일성대

학 ○54 여맹 순안군 위원장 ○57 중앙호위대 비서 ○63 金日成과 결혼 ○65. 9 여맹중앙위 부위원장 ○70. 11 당 중앙위 위원 ○71 여맹 중앙위 위원장 ○72. 11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원 ○7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대의원 ○82. 11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6 여맹 중앙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여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원

김세영(金世英·男) ○84. 8 조선공업기술총동맹 지질협회 위원장 ○86. 2 당 중앙위 후보위원 ○86. 7 정무원 자원개발부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조선공업기술총동맹 지질협회 위원장, 정무원 자원개발부 부장

김시학(金時學·男) 1923 平南출생 ○모스크바대학 ○56. 11 작가동맹 외국문학분과위원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71. 2 사료청 중앙위 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73 중앙방송위 위원장 ○75. 11 기자동맹 중앙위 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부장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행정부 부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김영남(金永南·男) 1925 咸北출생 ○김일성종합대학, 모스크바대학 ○60 당 국제부 부부장 ○62. 10 외무성 부상, 당 국제부 부부장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3 대외문화연락위 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원, 당 중앙위 국제부장 ○74. 6 당 정치국 후보위원 ○74. 9 중앙인민위 대외정책 위원 ○75. 2 당 비서국 비서 ○7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원 ○80.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12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조평통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김영채(金永采·男) ○62. 6 남포통신기계공장 지배인 ○65. 2 평양전기공장 지배인 ○6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4기대의원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77. 12 정무원 체신부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3. 7 조선. 소련친선협 중앙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8.

9 정무원 체신부 부장 해임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의 자격심사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자격심사위 위원

김용순(金勇舜·男) 1934 咸北출생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60. 1 강원도 인민위 부위원장 ○69. 6 원산시 인민위원장 ○70. 8 주이집트 대사 ○73. 3 대사문화연락위 부위원장 ○74 민주법률가협 부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9 세계인민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부위원장 ○85. 8 당 국제부 제1부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8. 11 당 중앙위 부장 ○89. 11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당 비서국 비서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국제부 부장, 당 비서국 비서(국제),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김원균(金元均·男) 平南출생 ○일본음악학교, 소련유학 ○54 음악가동맹 중앙위 위원 ○57 공훈예술가 칭호 ○61. 7 평양음악대 학장 ○70. 10 음악가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80. 2 인민예술가 칭호, 피바다가득단 총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9. 7 조선음악가 동맹 중앙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현재 음악가동맹 중앙위 위  
원장, 피바다가극단 총장, 조선민족음  
악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대의원

김원진(金元鎭·男) ○80. 2 농업  
과학원 부원장 ○82. 8 조선. 불가리  
아친선협회 부위원장 ○86. 11 최고  
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3 당 중  
앙위 후보위원 ○88. 7 정무원 농업위  
제1부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  
9기대의원 ○90. 10 정무원 농업위  
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농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유순(金俞順·男) 1928 平壤출  
생 ○김일성대학 ○71. 3 조선체육지  
도위 위원 ○76. 4 조선체육지도위  
(89. 6. 29 국가체육위로 명칭변경)  
위원장 ○78. 5 IOC위원 ○80·7 태  
권도위 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11 조선. 말레이시아  
친선협 위원장 ○85. 10 남북체육회담  
대표단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  
기대의원, 올림픽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10  
남북통일축구대회 북한선수단장 ○현  
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국가체육위  
위원장, 조선올림픽위 위원장, 남북체  
육회담 대표단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대의원

김윤혁(金潤赫·男) 1926 平南출  
생 ○김책공대, 레닌그라드공대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최고  
인민회의 법안심의회 위원, 정무원  
사무장 ○80. 3 정무원 금속공업부  
부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정무원 부총리 겸 건설건설재 공업위  
위원장 ○88. 2 정무원 건설건설재위  
위원장 해임 ○90. 4 최고인민회의 제  
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김응상(金應相·男) 東滿洲출생  
○53. 10 당 중앙위 부부장 ○화학공  
업대학 부학장 ○57. 10 교육문화성  
부상 ○61. 9 당 중앙위 후보위원 ○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국  
가건설위 제1부위원장 ○65. 1 건설  
공업상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  
대의원 ○71. 5 내각 사무국 국장 ○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정  
무원 국가건설위 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3. 5 건축가동맹  
중앙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  
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국가건설위 위원장, 건축가동  
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  
기대의원

김일성(金日成·男) 1912 平南출  
생, 본명 성주(成柱) ○26 文中입  
학, 공산청년동맹가입 ○29 東滿지구  
공산주의 청년동맹위서기 ○29. 9  
文中 중퇴 ○31 중국공산당 입당 ○32



중국공산당 조선인부대 지대장 ○35  
 본명 成柱로부터 日成으로 개명 ○42  
 소련입국 ○45. 8 소련군 소좌 ○45.  
 10 소련에서 평양귀환 ○45. 12 조선  
 공산당 북조선조직위 책임비서 ○46.  
 7 북조선노동당 부위원장 ○47. 2 북  
 조선인민위 위원장 ○48. 8 북로당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  
 48. 9 내각수상 ○49. 6 노동당 중앙위  
 위원장 ○50. 6 군사위원회 위원장 ○  
 50. 7 인민군 최고사령관 ○53. 2 元帥  
 칭호 ○53. 8 영웅 칭호 ○56. 4 당  
 중앙위 위원장, 상무위원, ○57. 8 최  
 고인민회의 제2기대의원 ○57. 9 내  
 각수상 ○61. 7 당 중앙위 위원장, 정  
 치위 위원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내각수상 ○66. 10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상무위 당 중앙위  
 원회 총비서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11 당 중앙위 총  
 비서, 정치위원 ○72. 7. 7·4공동성명  
 발표 ○72. 12 사회주의헌법 채택, 국  
 가주석, 중앙인민위 위원, 국방위 위  
 원장,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국  
 가주석, 중앙인민위 수위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정  
 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총비서, 당  
 군사위 위원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 제안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 ○82. 4 국가주석, 영웅 칭호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  
 90. 5 국가주석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  
 앙위 총비서, 당 군사위원회 위원장,

원수,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 중앙인민위 수위, 국가주석,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일철(金鎰喆·男) 1928 平壤출  
 생 ○만경대혁명학원, 소련해군대학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  
 사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  
 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  
 82. 6 인민군 중장 ○83. 7 해군사령관  
 ○85. 5 인민군 상장 ○86. 11 최고  
 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  
 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  
 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해군  
 사령관, 인민군 상장

김정숙(金貞淑: 金日成의 從妹·  
 許 鎡의 妻·女) 咸南출생 ○54. 5  
 민청 중앙위 부장 ○64. 5 사로청 중  
 앙위 부위원장 ○71. 4 직총 중앙위  
 부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  
 기대의원 ○86. 3 민주조선 책임주필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3 당 중앙위 후보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민주조선 책임주필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정일(金正日: 金日成의 長男·  
 前妻 金正淑 소생·男) 1941(1942년  
 으로 고침) 소련 사마르칸트(소련이  
 름 슈라)출생 ○64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 ○64 당 조직지도  
 부 지도원 ○66 호위총국 근무 ○71  
 민족보위성 근무(인민군 소좌) ○72  
 당 중앙위 전선선동부 부부장, 문화

예술부 부부장 ○73. 당 중앙위 조직. 선전담당 비서, 3대혁명소조운동 총책임자 ○73. 12. 당 중앙위 비공개회의에서 김일성 후계자로 결정 ○74. 2. 당 정치국위원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군사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 ○82. 2. 영웅 칭호,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군사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당 사업전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주영(金珠榮·男) ○65. 5. 적십자회 중앙위 국제부장 ○70. 8. 해외동포원호위 부위원장 ○73. 5.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부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6. 교포사업총국 총국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해외동포원호위 부위원장, 교포사업총국 총국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중린(金仲麟·男) 1924. 平北출생 ○민족해방동맹 소속 공산주의자 ○54. 3. 당 중앙위 부부장 ○59. 4. 적십자회 중앙위 상무위원 ○61. 9. 당 중앙위 후보위원 ○62. 10. 당 중앙위 문화부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

기대의원 ○65. 1. 당 중앙위 수산부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7. 당 중앙위 대남사업 비서 ○70. 11.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중앙인민위 위원 ○76. 9. 대남공작기구 남한연구소 소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비서국 비서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2. 당 비서국 비서 해임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7. 3. 조선중앙통신 사장 ○87. 6. 공보위원회 위원장 ○88. 11. 당 비서국 비서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사회단체),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 위원장

김창주(金昌柱: 金日成의 從弟·男) 1923. 平壤출생 ○김일성대학, 모스크바 대학 ○69. 7. 평남 인민위 부위원장 ○72. 11. 내각 사무국장 ○75. 주이라크 대리대사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 정무원 농업위 위원장 ○83. 6. 당 중앙위 위원 ○84. 1. 정무원 부총리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장 ○89. 10. 정무원 농업위 위원장 해임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창호(金昌虎·男) ○59. 2. 당 중앙위 사회교육부 부부장 ○63. 7. 중

양도서관 부관장 ○평양건설건재대학 재료학부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정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82. 10 공업기술총연맹 중앙위 위원장 ○83. 5 정무원 건재공업부장 ○85. 11 건재공업부와 건설부 통합시 해임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9 정무원 체신부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12 정무원 전자자동화 공업위 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후보 위원, 정무원 전자자동화 공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철만(金鐵萬·男) 1910 滿洲출생 ○항일유격대원 ○50. 7 인민군 연대장 ○58. 1 인민군 소장 제37사단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4 민족보위성 작전국장 ○65. 1 인민군 중장, 제2군단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2 인민군 상장, 인민군 부총참모장, 공화국 영웅 칭호 ○70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0.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군사위원회 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원회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철명(金哲明·男)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중앙위 위원 ○87. 12 사회과학자협회 제1부위원장 ○88. 4 주체과학연구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사회과학협회 제1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김필환(金弼煥·男)·함남 단천 용양광산 지배인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0. 1 2중노력영웅 칭호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1 정무원 광업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정무원 광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학봉(金鶴奉·男) 1926 咸北출생 ○김일성대학 ○65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 ○75 당 중앙위 제1공업부 부부장 ○85. 11 평남도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2 당 중앙위 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9. 4 평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9. 11 황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90. 11 평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평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김 환(金 煥·男) 1929 平北출

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동독유학 ○61. 5 중공업성 화학공업연구소 연구원, ○63 함흥공업대학 분석화학강좌교관, ○67. 7 과학원 함흥분국 고열화학연구소 연구원 ○68. 10 방직제지공업성 부상 ○72. 12 정무원 화학공업부 부장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78. 12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 ○80. 10 당 정치국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6 정무원 부총리 ○84. 11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장 ○83. 10 국가체육위 부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6 정무원 화학공업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화학공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 ㄹ

려연구(呂燕九: 呂運亨의 長女·女) 1927 서울출생 ○이화여대중퇴, 모스크바대학 ○81. 6 조국전선 서기국 부국장 ○81. 9 해외동포옹호위 부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3. 1 조국전선 서기국장 ○83. 4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84. 6 조평통 상무위원 ○86. 5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86. 1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89. 3 범민족대회 부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현재 조국전선 중앙위의장, 조평통 부위원장, 범민족대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해외동포옹호추진위 부위원장

렴기순(廉基淳·男)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2 당 중앙위 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9. 4 양강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양강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렴태준(廉泰俊·男) 1921 咸南출생 ○53. 8 당 함북도위 부장 ○60. 6 청진시당 부위원장 ○61. 7 청진시 당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4. 11 내무성 제1부상 ○66. 11 황북도 인민위원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8 황북도당 책임비서 ○69. 12 주소련 대사 ○70. 11 당 중앙위 위원 ○71. 12 직총 중앙위 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6. 4 주라오스 대사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10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조국전선중앙위 의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류호준(柳好俊·男) ○79. 1 주체코슬로바키아 대사 ○85. 5 조선·세인트루시아 친선협 위원장 ○86. 5 조국전선 중앙위서기국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현재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리계백(李季白·男) 1906 淸州출생 ○60 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9. 4 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 해임, 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사회민주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리길송(李吉松·男) 1923 咸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레닌그라드공대 ○68. 8 평남도 당 책임비서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3 양강도 당 책임비서 ○72. 12 함남도 당 책임비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4.

12 함남도 인민위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5. 5 함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5. 11 정무원 교통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교통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락빈(李樂彬·男)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7. 12 보건상 ○69. 11 조선·알제리친선협 위원장 ○70. 11 당 중앙검사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정무원 보건부 부장 ○80. 10 당 중앙검사위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검사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 단(李 湍·男) 서울출생(연극 연출) ○46 월북 ○58 국립연극극장 부총장 ○62 공훈배후 칭호, 국립연극극장 총장 ○65 인민배후 칭호 ○79. 8 조선연극인 동맹 중앙위 위원장 ○85 남북고향방문단원 서울방문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조선연극인동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두익(李斗益·男) 1921 滿洲출생 ○항일유격대원 ○48. 8 인민군 중대장 ○58. 2 인민군 연대장 ○62.

2 인민군 사단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3. 5 민족보위성 국장, 인민군 중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6 공화국영웅 칭호, 인민군 대장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80. 10 당 중앙군사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몽호(李蒙鎬·男)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56 김일성대학 역사학교원 ○58 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60 중앙당학교 강좌장 ○83. 3 당 중앙위 위원 ○85. 8 대외문화 연락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조선반핵평화옹호위 위원장 ○87. 6 조선도시연맹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국 부국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대외문화 연락위 위원장, 조선반핵평화옹호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사무국 부국장

리봉길(李奉吉·男) 1926 平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67 자강도당 책임비서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81. 3 함북도 당 책임비서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

의원 ○84. 6 자강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자강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봉원(李奉遠·男) 1925 咸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70. 8 개성시 당 책임비서, 당 중앙위 후보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 ○73. 3 개성시·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74 함남도 당 책임비서 ○75 황남도 인민위원장 겸임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군사위 위원 ○85. 4 인민군 상장,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당 중앙군사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인민군 상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선실(李善實·女) 1925 兩江출생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성록(李成祿·男) ○72 무역부 국장 ○78. 8 무역부 부부장 ○82. 11

무역촉진위 위원장 ○84. 11 남북경제회담 대표단단장 ○89. 4 김일성훈장 수훈 ○90. 5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현재 정무원 무역부 부부장, 국제무역촉진위 위원장, 남북경제회담 대표단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성호(李成鎬·男) ○80. 3 평화옹호전국민족위 부위원장 ○80. 10 주버마 대사 ○81 주태국 대사점입 ○83. 11 버마암살 폭발사건으로 추방 ○84. 5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84. 8 조선법률가협 부위원장, 적십자협 중앙위 부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적십자협 중앙위 부위원장, 조선법률가협 부위원장,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용무(李用茂·男) ○70. 6 인민군 중장, 군 총정치국 부국장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1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3. 10 인민군 상장, 군 총정치국 국장 ○74. 6 당 정치국 위원 ○77. 10 군 총정치국 국장해임 (반김정일문제관련) ○88.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89. 6 당중앙위 위원, 국가기열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국가검열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을설(李乙雪·男) 1921 咸北출

생 ○소련군사아카데미 ○62 인민군 중장, 제15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당 중앙위 위원 ○72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당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호위총국 국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지방(李資方·男) ○61 과학원 공학연구소 연구원 ○63 과학원 중앙기계공업연구소 역학연구실장 ○70. 5 기계공업협 위원장, 제1기계공업성 부상 ○73. 7 정무원 기계공업위 설계총국장, 김일성훈장 수훈 ○83. 3 정무원 기계공업위 위원장 ○85. 5 정무원 제1기계공업부 부장 ○85. 5 국가과학기술위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의원 ○85. 9 조선·중국친선협 중앙위 위원장,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국가과학기술위 위원장, 조선·중국친선협 중앙위 위원장,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재윤(李載允·男) 1923 咸北출생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56. 5 당 중앙위 조직부 부부장 ○61.

9 당 중앙위 위원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함남도 당 책임비서 ○72. 12 최고 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80. 1 평남도 당 책임비서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5. 1 당 중앙위 부장 ○85. 10 남포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1 사리원시 인민위원장 ○88. 11 정무원 노동행정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노동행정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종률(李鍾律·男) 1924 咸北출생 ○중앙고, 세브란스의전중퇴, 모스크바의대 ○84. 2 정무원 보건부 부부장 ○85 당 중앙위 후보위원, ○85. 5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단장, 적십자회 중앙위 부위원장 ○85. 11 정무원 보건부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3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보건부 부장, 조·소친선협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종옥(李鍾玉·男) 1911 咸北출생 ○하르빈공대 ○48 청진방직공장 지배인 ○48. 8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49. 10 산업성 국장 ○50 산업성 부상 ○54. 3 경공업성 부상 ○55. 1 경공업상 ○56. 1 당 중앙위

공업부장, 국가계획위 위원장 ○56. 4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57. 8 최고인민회의 제2기대의원 ○60. 1 부상 ○60. 4 중공업위 위원장 ○61. 9 당 정치국 위원 ○62. 10 부상 겸 금속화학공업상 ○65. 10 과학원 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중앙인민위 위원, 중공업위 위원장 ○76. 12 정무원 부총리 ○77. 12 당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80. 10 당 정치국 상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4. 1 국가부주석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국가부주석, 국가학위 학직수여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지찬(李智燦·男) 平北출생 ○48. 8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55. 2 전기성 부상 ○59. 6 전기석탄공업성 부상 ○70. 11 당 중앙위 위원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77. 12 정무원 전력공업부부장 ○78. 3 노력영웅 칭호 및 국기훈장 제1급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김일성훈장 수훈 ○85. 11 전력공업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전력공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철봉(李哲奉·男) 1936 출생 ○



70. 1 인민군 소장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74. 7 교통체신위 육해운 부장 ○84. 6 사회안전부 부장, 인민군 상장 ○84. 7 당 중앙위 위원 ○85. 10 정무원 사회안전부 부장 해임 ○89. 6 정무원 도시경영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인민군 상장, 정무원 도시경영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충성(李忠成·男)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5. 12 정무원 전력공업부 부부장 ○81. 2 조선·중국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조선측 이사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 ○85. 12 전력공업위 부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정무원 전력공업위 부위원장, 조·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조선측 이사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리하일(李河一·男)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7. 1 당 중앙위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원회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림춘길(林春吉·男) ○80. 2 정무원 국장, 남북고위급회담준비 실무대표 ○84. 11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85. 5 남북적십자회담 서울방문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9 남북고위급회담 수행원 서울방문 ○현재 정무원 국장, 조평통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림형구(林亨九·男) 1923 咸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57. 11 민청 중앙위 위원 ○61. 11 황북도 당 선전선동부장 ○67. 3 황북도 당 책임비서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8 신의주 당 책임비서 ○70. 11 당 중앙위 위원 ○73. 12 정무원 인민봉사위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4. 10 강원도 당 책임비서 ○85. 5 강원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강원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ㅂ

박관오(朴官五·男) ○70. 8 과학원 부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8 정무원 원자력위 부위원장 ○81. 1 김일성종합대 총장 ○89. 5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남북회담

대표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위원 ○현재 김일성종합대 총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위원

박남기(朴南基·男) 1928 海州출생 ○김책공대, 레닌그라드공대 ○72. 5 금속공업성 부상 ○76. 5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84. 6 당 중앙위 제2경제부장 ○84. 7 당 중앙위 위원 ○85.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 정무원 국가계획위 위원장 ○88. 11 당 비서국 비서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중공업부 부장, 당 비서국 비서(경제),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박성철(朴成哲 : 金日成의 從妹夫·男) 1914 咸北출생 ○일본공산당 당원, 일본上智大중퇴 ○50. 3 인민군 제15사단장 ○55. 5 주불가리아 대사 ○56. 8 당 중앙위 국제부장 ○56. 10 외무성 부상 ○57. 8 최고인민회의 제2기대의원 ○59. 10 외무상 ○61. 9 당 중앙위 위원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4. 6 당 정치국 후보위원 ○66. 10 당 정치국 위원, 부수상 ○70. 7 제2부수상 ○72. 5 박정희대통령과 회담(비공식 서울방문), 남북조절위 평양측 공동위원장

○72. 12 중앙인민위 위원, 부총리 겸 인민봉사위 위원장 ○76. 4 정무원 총리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77. 12 국가 부주석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국가부주석,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박수동(朴守東·男) 1923 平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68. 6 양강도 당 책임비서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9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4. 2 당 중앙위 조직부장 ○75. 9 당 비서국 비서 ○77. 9 당 정치국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4.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84. 7 황남도 당 책임비서 ○85. 6 농근맹 중앙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조선·방글라데시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농근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박승일(朴勝一·男) 1922 平南출생 ○중앙당학교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4. 6 주수단 대사 ○80. 6 자강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 위원장 ○80. 10 당 중앙검사위 위원 ○84. 10 평양시 인민위원장 ○85. 6

정무원 인민봉사위 위원장 ○86. 1 남포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2 당 중앙위 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원 ○86.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남포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박용석(朴容錫·男) ○61. 8 교통성 도시건설국장 ○62. 6 교통성 부상 ○6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4기대의원 ○69. 2 당 중앙위 부장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9 당 중앙위 운수 부장 ○77. 4 정무원 철도부 부장 ○79. 6 정무원 철도부 부장 해임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5. 9 정무원 교통위 위원장 ○86. 3 정무원 철도부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철도부 부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박중국(朴重國·男) 1918 咸北출생 ○중앙보안간부학교, 소련국제관계대 ○58. 10 외무성 참사관 ○63. 1 외무성 제1국장 ○64. 9 인민군 소장,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71. 6 인민군 중장, 군 부총참모장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74. 8 주루마니아 대사 ○77. 10 당중앙위 후보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82. 2 최고

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5 인민군 상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7. 9 주쿠바 대사 ○88. 3 주멕시코 대사겸임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상장, 주쿠바 대사 겸 주멕시코 대사,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박태호(朴泰鎬·男) ○80. 9 불교도연맹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9. 5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현재 불교도연맹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부회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방학세(方學世·男) 1912 소련출생 ○소련에서 교육 ○45 소련군 대위 ○48. 8 최고인민회의의 제1기대의원 ○49 내무성 정치보위국장 ○51. 3 사회안전상 ○56. 4 당 중앙위 위원 ○57. 8 최고인민회의의 제2기대의원 ○60. 11 최고재판소 소장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중앙재판소 소장 ○7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의 법안심의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의 법안심의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재판소 소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법안심의위 위원

백남준(白南俊·男) 1929 출생 ○ 72 평화옹호전국민족위 상무위원,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직맹 부위원장,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84. 9 적십자 중앙위 상무위원, 북측수재물자 전달대표 ○85 기자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89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단장, 정무원 참사 ○91. 1 조평통서기국장 ○현재 적십자회 중앙회 상무위원, 기자 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정무원 참사 실장, 남북고위회담 대표

백범수(白範守·男) 1928 咸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67. 9 황남도 당 책임비서 ○68. 9 황남도 당 책임비서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80. 7 황남도 당 책임비서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5. 6 황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위 위원 ○88. 2 황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해임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정무원 농업위 위원장 ○90. 11 황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황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백세운(白世允·男) ○72. 2 「전자공업과 자동차공업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자」 논문발표 ○87. 5 북한·체코친선협 부위원장 ○88.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88. 12 정무원 전자자동차공업위 위원장 ○90. 4 최고인

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전자자동차공업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백인준(白仁俊·男) 1919 平北출생, 시인 ○연회전문 2년중퇴, 일본유학 ○74. 9 김일성훈장 수훈 ○80. 10 백두산창작단 단장 ○86. 3 문예총 중앙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문예총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백학림(白鶴林·男) 1921 滿洲출생 ○48. 8 중앙호위대장 ○50. 6 인민군 연대장 ○52. 3 민족보위성 정치안전국장 ○58. 5 인민군 소장 인민군 제3사단장 ○60 군사정전위 위원 ○61. 9 당 중앙위 후보위원 ○61. 10 내각사무국 원호처장 ○67. 8 인민군 중장 사회안전성 경비국 국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2 안전호위처 사령관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8. 8 인민무력부 부부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5. 4 인민군 대장 ○85. 10 정무원 사회안전부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회 위원 ○88. 10 공화국영웅 칭호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법

안심의회 부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정무원 사  
회안전부 부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  
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부위원장

人

서관희(徐寬熙·男) 1926 平南출  
생 ○모스크바대학 ○54. 5 평양시  
인민위 농업부장 ○63. 9 평양시 농  
업관리위 위원장 ○64. 1 평양시 농  
촌경리위 위원장 ○67. 11 최고인민  
회의 제4기대의원 ○72. 12 최고인민  
회의 제5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예  
산심의위 위원 ○73. 9 정무원 농업위  
위원장 ○76 당 중앙위 위원 ○81. 6  
정무원 부총리 겸 농업위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당 비  
서국 비서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농업),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  
원

서윤석(徐允錫·男) 1929 북간도  
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  
대 ○64 당중앙위 조직지도부 부부장  
○70. 8 해주시 당 책임비서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70. 12 황남도  
당 책임비서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8. 5 평양시 당 책임  
비서 ○80. 4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2. 9 당 정치국  
위원 ○85. 5 평양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  
8기대의원, 평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2 중앙인민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평남도 당 책  
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서철(徐哲·男) 1907 東滿洲  
출생 ○외무성 제2국장 ○55. 6 주월  
맹 대사 ○56. 4 당 중앙위 후보위원  
○58. 7 인민군 중장, 군 총정치국 국장  
○61. 9 당 중앙위 위원 ○62. 8 당  
중앙위 부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6 대외문화연락협 위  
원장 ○67. 12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69. 12 당 중앙위 비서 ○70.  
11 당 정치국 위원 ○72. 12 최고인  
민회의 제5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73. 6 중앙검열위  
위원장 ○73. 7 조국전선 의장 ○77.  
10 인민군 대장, 군 총치국장 ○77. 11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  
회의 제8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검열위 위원장

손성필(孫成弼:康良煜의 사위·  
男) 黃海출생 ○64. 11 중앙당학교  
학부장 ○69. 8 인민경제대학 학장 ○  
70. 7 고등교육상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71 적십자회 중앙위 위원

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5. 5 당 중앙위 위원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0. 11 인민경제대 총장 ○81. 9 조. 일 우호 촉진선협 부회장 ○83.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85. 9 북측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인솔 서울방문 ○86. 2 당 중앙위 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90. 2 주소련 대사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주소련 대사,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

안병수(安炳洙·男) 1928 출생 ○73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 수행원 ○82 조평통 과장 ○88 조평통 상무위원 조평통 서기국장 ○88. 8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 ○89 문익환·문규현 접촉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90. 9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서울방문 조평통 부위원장 ○현재 조평통 부위원장,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대변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안승학(安承鶴·男) 1922 咸南출생 ○56 함남도 당 조직위원 ○58 평양고무 공장 부공장장 ○61 함흥시 당

위원장, 당 중앙위 후보위원 ○62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당 중앙위 부장 ○67. 12 상업상 ○70. 12 당 중앙위 위원 ○78. 12 황해도 행정위 위원장 ○80. 10 평양시 행정위 위원장 ○83. 4 당 중앙위 부장 ○85. 10 부총리 겸 화학공업위 위원장 ○86. 2 함남도 행정·경제지도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양형섭(楊亨燮 : 金日成의 從妹 夫·男) 1923 濟州출생 ○모스크바 대학 ○54. 5 인민경제대 교육학부장 ○61. 10 중앙당학교 교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7. 12 고등학교상 ○70. 1 당 비서국 비서 ○70. 11 당 정치국 후보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중앙인민위 위원 ○75. 7 국가검열위 위원 ○79. 11 조국전선 의장 ○80. 6 사회과학원 원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3.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조국전선의장, 사회과학원 원장, 조평통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연형묵(延亨默·男) 1925 北滿洲 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 대학, 소련 우랄공대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11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부장 ○71. 12 당 비서국 비서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중앙인민위 위원 ○74. 12 당 정치국 위원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5. 10 정무원 제1부총리 ○85. 11 정무원 제1부총리 겸 급속 및 기계공업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비서국 비서 ○88. 12 정무원 총리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9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서울 방문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남북고위급 회담 수석 대표,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오극렬(吳克列·男) 1928 中國 吉林省출생 ○만경대혁명학원, 소련공군대학 ○인민군 소장 ○67. 10 인민군 중장, 공군사령관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8. 7 인민군 중장, 군부총참모장 ○79. 9 인민군 총참모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80. 9 인민군 상장 ○80. 10 당 중앙군사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5. 4 인민군 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2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88. 4 당 정치국 위원

탈락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당 중앙위 민방위부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오성렬(吳成烈·男) ○67 육해운상 ○72. 12 교통체신위 해운총국장 ○83.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86. 3 정무원 교통위 해운총국 총국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해운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오진우(吳振宇·男) 1917 咸南출생 ○54 인민군 소장, 제3사단장 ○56. 4 당 중앙위 후보위원 ○인민군 군단장 ○58. 3 인민군 중장, 공군사령부 참모장 ○60. 8 인민군 상장, 인민군 제1집단군 사령관 ○6 당 중앙위 위원 ○62.1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3. 10 민족보위성 제1부상 ○67. 5 인민군 대장, 군 총정치국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9 당 비서국 비서 ○72. 12 중앙인민위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6. 5 인민무력부 부장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0. 10 당 정치국 상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5. 4 인민군 차수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 부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무력부 부장, 인민군 차수,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원동구(元東九·男) 咸南출생 ○ 모스크바대학 ○62. 5 중공업위 부위원장 ○65. 10 정무원 화학공업성 부상 ○72. 12 정무원 화학공업부 부부장 ○77. 12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정무원 화학공업부 부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9. 10 직총 중앙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직총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윤기복(尹基福·男) 1926 咸南출생 ○경기중 4년중퇴, 모스크바대학 ○56. 1 인민경제대 교수 ○62. 8 보통교육상 ○67. 12 재정상 ○69. 7 당 중앙위 위원 ○69. 9 국가계획위 위원장 ○71. 11 당 중앙위 과학교육부장 ○72. 8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남북적십자회담 자문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원,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위원 ○80.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비서국 비서 ○81. 5 조평통 부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위원장, 김일성 훈장 수훈 ○83. 3 평양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 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88 중앙인민위 경제정책위 위원장 ○89. 3 범민족대회 위원장 ○90. 1 당 비서국 비서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대남), 조평통 부위원장, 범민족대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장

윤기정(尹基貞·女) ○80. 4 정무원 재정부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1. 6 조선·시리아친선협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4. 11 조선·몽고친선협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재정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ㄱ

장성택(張成澤 : 金日成의 사위·長女 京姬의 남편) ○85. 7 당 중앙위 청소년부 제1부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광복거리건설 중앙지휘부 성원 ○89. 4 노력영웅 칭호 ○89. 6 당 중앙위 후보위원 ○89. 12 당 중앙위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당 중앙위 청년단체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장 칠(張 徹·男) 1926 慶北출생 ○일본明治대학 ○48. 3 북로당 중앙위 위원 ○48. 8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57. 5 조총련 중앙교육부 차장 ○61. 5 조총련 중앙교육부 부장 ○65. 2 문화성 부상 ○70. 11 당 중앙위 후보위원 ○72. 12 문화예술부 부부장 ○83. 8 조선공연협회 회장 ○86. 5 정무원 문화예술부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3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정무원 부총리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문화예술부 부장, 조평통 부위원장, 조선공연협회 회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전금철(全今哲·男) 1924 咸北출생 ○김일성대학 ○72. 11 제3차 남북적십자 회담 대변인 ○73. 3 남북조절위 제2차 간사회의 참가 ○73. 5 남북조절위 제3차 간사회의 참석 ○74. 6 남북조절위 대변인 ○80. 12 조평통 부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5. 7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현재 조평통 부위원장, 사회과학원 부원장,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 위원

전문십(全文馨·男) 1921 咸北출생 ○중앙당학교 ○56. 4 인민군 소장,

인민군 제10사단장 ○60. 8 인민군 중장, 제2군단장 ○61. 6 인민군 상장, 인민군 제2집단군 사령관 ○61. 9 당 중앙위 위원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4 사회안전성 부상 겸 호위국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4. 4 당 정치국 후보위원 ○75. 9 노동적위대 총책임자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0. 10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7. 4 인민군 대장 ○88. 5 인민무력부 부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반제투사노병위 위원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전병호(全炳浩·男) 1925 咸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70. 11 당 중앙위 위원 ○71. 10 당 중앙위 부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2. 9 당 정치국 후보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비서국 비서 ○88. 11 당 정치국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원회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경제), 당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정두환(鄭斗煥·男) ○56. 4 당 중앙위 후보위원, 당 중앙위 상업재정부 부장 ○57. 8 최고인민회의 제2기대의원 ○59 상업상 ○61 당 중앙위 위원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2. 10 주루마니아 대사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68. 2 주소련 대사 ○72 노동상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7. 5 주이집트 대사 ○80. 9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80. 10 당 중앙위 검사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정문산(鄭文山·男)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정무원 사무국장,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정무원 사무국장 ○현재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정무원 사무국장

정송남(鄭松南·男) 1926 咸南출생 ○63. 5 국가과학기술위 대외과학기술협조 국장 ○68. 3 대외경제위 부위원장 ○69. 10 대외과학기술교류협 부위원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75. 4 당 중앙위 위원 ○79. 9 대외경제사업부 부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

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대외경제사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정신혁(鄭信赫·男) ○77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4. 4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9. 3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제1부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제1부위원장 ○89. 11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원 ○현재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원

정준기(鄭俊基·男) 1924 출생 ○62. 1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 ○63. 4 노동신문 책임주필 ○64. 2 기자동맹 중앙위 위원장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3. 9 정무원 부총리 ○73.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81. 9 자연보호연맹 중앙위 위원장 ○81. 10 조평통 부위원장 ○82. 4 정무원 부총리 겸 과학원장,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원 ○89.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조평통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조명록(趙明祿·男) 1922 滿洲출생 ○만경대혁명학원 ○78 인민군 중장, 공군사령관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85. 5 인민군 상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인민군 상장, 공군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조세웅(趙世雄·男) 1927 平北출생 ○김책공대, 소련유학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기양뜨락또르공장 초급당 비서 ○73. 7 금성뜨락또르공장 초급당 비서 ○78. 3 김일성훈장 수훈 ○80. 9 김일성 대안중기계공장 현지지도시 부상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81. 10 평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8 함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중앙인민위 위원 ○88. 2 정무원 부총리 겸 건설경제공업위 위원장 ○89. 10 평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90. 11 평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해임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조철준(趙哲俊·男) ○모스크바대학 ○58 건설성 국장 ○64. 12 국가건설위 부위원장 ○66 건설협회 위원장 ○73. 5 정무원 건설부 부부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1. 5 정무원 건설부 부장 ○88 정무원 건설경제공업위 부위원장 ○88. 6 정무원 건설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건설부 부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주도일(朱道一·男) 1922 滿洲출생 ○소련군사대 ○58 인민군 연대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4. 10 인민군 소장, 인민군 제15사단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8. 10 인민군 상장, 인민군 제3군단장 ○79. 5 공화국영웅 칭호 ○80. 10 당 군사위 위원 ○85. 4 인민군 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국방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 위원, 인민군 대장, 인민군 제2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주영훈(朱英勳·男) ○81. 3 정무원 경제공업부 기술처장 ○88. 6 정무원 경제공업위 위원장 ○89. 4 정무원 경제공업부 부장 ○90. 1 당 중앙위 후보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정무원 건재공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주창준(朱昌俊·男) 1922 咸北출생 ○일본대중퇴, 소련고급당학교 ○58. 7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 ○59. 4 인민군 소장,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62. 10 최고인민회의의 제3기대의원 ○63. 2 주버마 총영사 ○72. 5 대외문화연락위 국장 ○72. 8 적십자회 중앙회 부위원장 ○73. 8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74. 2 평화옹호전국민족위 부위원장 ○75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 대표 ○76. 7 민주법률가협회 부위원장 ○80. 4 주유고슬라비아 대사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수훈 ○84. 1 당 중앙위 위원 ○85. 7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대표단 부단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의 의원 ○87. 4 노동신문 책임주필,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위원장 ○88. 9 주중국 대사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주중국 대사,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지창익(池昌益·男) 咸北출생 ○중국유학 ○54. 10 중앙당학교 교무부장 ○57. 5 당 중앙위 과학교육부 부부장 ○62. 9 국제대학 학장 ○64. 10 김일성종합대 제1부총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0. 12 김일성종합대 총장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최고인민회의의 상

설회의 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서기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서기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서기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 ㄸ

채희정(蔡喜正·男) 1924 咸南출생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55 인민경제대학 교수 ○58 金日成 정치경제부문 비서, 과학원 사회과학부문위원 ○65. 5 인민경제대학 교무부장 ○61. 9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부부장 ○62. 10 최고인민회의의 제3기대의원 ○65. 4 내각 참사 ○7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대의원 ○77. 12 정무원 노동행정부 부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3. 6 당 비서국 비서 ○84. 1 최고인민회의의 법안심의위 위원장 ○85. 4 김일성훈장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8. 9 정무원 노동행정부 부장 ○88. 11 정무원 합영공업부 부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심의위 부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심의위 부위원장

최 광(崔光·男) 1918 咸北출생 ○48. 2 인민군 제1사단장 ○48. 8

최고인민회의의 제1기대의원 ○50. 6 인민군 제13사단장 ○53. 10 인민군 제5군단장 ○54. 1 제1집단군 참모장, 인민군 중장 ○56. 4 당 중앙위 후보위원 ○57. 8 최고인민회의의 제2기대의원 ○58. 10 공군사령관 ○61. 9 당 중앙위원 ○62. 9 민족보위성 부상, 인민군 상장 ○62. 10 최고인민회의의 제3기대의원 ○63. 2 인민군 총참모장 ○66.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6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4기대의원 ○68. 2 영웅 칭호 ○69. 2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77. 4 재등장과 함께 황남도 인민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81. 3 정무원 부총리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88. 2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 대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당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 대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최기룡(崔基龍·男) ○85 고등교육부 부부장 ○86. 11 김책공대 부학장 ○87. 9 고등교육부 제1부부장 ○88. 5 과학기술 총연맹 부위원장 ○89. 6 정무원 교육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정무원 교육위 위원장, 과학기술총연맹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만현(崔萬鉉·男) ○54 국가계

획위 종합계획국 부국장 ○56 당 중앙위 부부장 ○61 국가과학기술위 부위원장 ○73. 10 사회과학위 부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1. 3 공업기술총연맹 위원장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정무원 급속. 기계공업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7. 10 정무원 급속공업부 부장 ○88. 3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급속공업부 부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문선(崔文善·男) 1926 黄北 殷 票출생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 대학 ○58 당선전부 지도원 ○67 당선전선동부 부부장 ○70. 3 황남도 당 비서 ○74. 9 황북도 인민위원장 ○76. 6 황북도 당 책임비서 ○80. 10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5. 5 황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9. 4 평양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평양시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복연(崔福淵·男) ○84. 9 강원도 인민위 위원장 ○85. 5 강원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수산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정무원 수산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상욱(崔相旭·男) 1929 平北출  
생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군사  
대학 ○80. 10 당 중앙위 위원, 당 중  
앙군사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6 인민군 소장 ○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  
87. 1 인민군 중장 ○90. 4 최고인민  
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포병사령관, 인민군 중장, 당 중  
앙군사위 위원,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대의원

최영림(崔英林·男) 1926 江原출  
생 ○김일성대학, 모스크바대학 ○67.  
10 당 중앙위 부부장 ○70. 11 당 중  
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  
기대의원 ○73. 4 당 중앙위 부장 ○  
80. 10 당 정치국 후보위원 ○83 정  
무원 제1부총리 ○86. 11 최고인민회  
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90. 5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현재 당 중  
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  
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최  
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룡해(崔龍海·男) ○김일성대학  
○85 축구협회 회장 ○86. 8 사로청  
중앙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의원, 당 중앙위 위원 ○88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  
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사로청  
중앙위 위원장, 축구협회 회장, 최고  
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인덕(崔仁德·男) ○67. 11 최고  
인민회의의 제4기대의원 ○70. 10 인민  
군 중장, 공화국영웅 칭호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8. 9 인민군 상장, 함  
흥지구군단 사령관 ○80. 10 당 중앙  
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  
대의원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  
대의원 ○87. 7 인민군 대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 인민군 대장, 당 책임비서 겸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태복(崔泰福·男) 1929 咸北출  
생 ○만경대혁명학원, 동독유학 ○80.  
12 정무원 교육위 위원장 ○82. 2 최  
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6. 11 최  
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중  
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비서국 비서(교육), 당 정치  
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  
의원

ㅎ

한덕수(韓德銖·男) 1907 慶北출  
생 ○47. 1 조총련 중앙위 문교국장

○55. 5 조총련 중앙위 ○57. 4 조선대학 학장 ○67. 7 조선대학 이사장 ○6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4기대의원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77. 2 국기훈장 제1급 ○77. 11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대의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9. 9 조총련 의장유임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조총련 의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한상규(韓相圭·男) 1926 咸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77. 12 최고인민회의의 제6기대의원 ○80. 7 황북도 인민위 위원장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2. 4 중앙검찰소 소장 ○85. 4 김일성 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최고인민회의의 법안심의위 위원, 중앙검찰소 소장 ○88. 3 당 중앙위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의 법안심의위 위원, 중앙검찰소 소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검찰소 소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법안심의위 위원

한성룡(韓成龍·男) ○70. 7 제2기 계공업부 부상 ○71. 5 제2기계공업상 ○72. 12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대의원 ○80. 10 당 중앙위 후보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85. 6 자강도 행정 및 경제지도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중앙위 위원 ○88. 11 당 정치국 후보위원 ○88. 12 당 비서국 비서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비서국 비서(경제),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한시해(韓時海·男) 1934 출생 ○73. 4 정무원 외교부 국장 ○75. 10 주UN 상임대표부 차석대사 ○76. 3 외교부 부부장 ○77. 11 주UN 상임대표부 대사 ○85. 12 당 중앙위 부부장 ○89. 7 조평통 부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위원 ○현재 당 중앙위 부부장, 조평통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위원회 위원

한장근(韓將根·男) ○78. 7 정무원 인민봉사위 부장 ○83. 9 정무원 상업부 부장 ○84. 12 소비자협동조합연맹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대의원 ○89. 6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정무원 상업부 부장, 조선 소비자협동조합연맹 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허 답(許 鏞 : 金日成의 從妹 夫·金貞淑의 남편) 1925 元山출생 ○모스크바대학 ○48. 10 의무성 참사

○60. 4 외무성 의례국장 ○62. 1 외무성 부상 ○69. 12 외무성 제1부상 ○70. 7 외무상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중앙인민위 위원, 정무원 외교부 부장 ○73. 2 정무원 부총리 ○75. 5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11 당 정치국 위원 ○83.1 12 당 비서국 비서 ○84.1 1 조평통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9. 11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위원, 조평통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허정숙(許貞淑·女) 1908 咸北출생 ○배화여자고보, 일본관서학원, 상해외국어학교 ○45. 10 북조선공산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48. 3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 선전부장 ○48. 8 최고인민회의 제1기대의원 ○48. 9 문화선전상 ○57. 8 사법상, 최고인민회의 제2기대의원 ○59. 10 최고재판소 소장 ○72. 11 조국전선 서기국장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77. 1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80. 10 당 중앙위 위원 ○81. 7 조평통 부위원장 ○81 당 비서국 비서 ○82. 4 해외동포인호위 부위원장 ○84. 2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현재 당 중

앙위 위원, 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해외동포인호위 부위원장, 조평통 부위원장

현무광(玄武光·男) 1913 咸南출생 ○소련고급당학교 ○57. 12 함남도 당 위원장 ○61. 7 당 중앙위 중공업부 부장 ○61. 9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3. 9 기계공업위 위원장 ○67. 11 최고인민회의 제4기대의원 ○70. 11 당비서국 비서 ○71. 4 함남도 당 책임비서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중앙인민위 위원, 정무원 교통·체신위 위원장 ○77. 4 함북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1. 9 당 비서국 비서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중앙인민위 위원, 국가검열위 위원장 ○89. 6 국가검열위 위원장 해임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준극(玄峻極·男) 1922 咸南출생 ○만경대혁명학원, 모스크바대학 ○56. 5 노동신문 편집국장 ○59. 4 노동신문 부주필 ○60. 10 기자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62. 7 당출판사 사장 ○66. 12 주중국 대사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75. 4 당 중앙위 후보위원 ○77. 12 당 중앙위 부부장 ○79. 6 당 중앙위 위원 ○80. 4 남북총리회담 실무수석대표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2. 4 중앙인민위원회 ○86. 3 당 중앙위 부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8. 12 노동신문 책임주필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노동신문 책임주필, 기자동맹 중앙위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철규(玄哲奎·男)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당 중앙위 부장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86 함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11 함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중앙인민위 위원, 함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홍성남(洪成南·男) 1924 元山출생 ○체코 프라하공대 ○73. 9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78. 12 당 중앙위 위원 ○82. 2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대의원, 평남도 경제지도위 위원장 ○82. 4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심의위 위원 ○82. 9 당 정치국 후보위원 ○82. 12 평남도 당 책임비서 ○86. 2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 위원장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6. 12 당 정치국 위원, 중앙인민위원회 ○87. 90 정무원 부총리 ○88. 6 정무원 국가계획위 위원장 ○89. 11 당 정치국 후보위원 ○90. 4 최고인

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홍시학(洪時學·男) 1922 咸北출생 ○중앙당학교, 소련고급당학교 ○58. 5 함북도 인민위원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8. 9 평북도 당 책임비서 ○69. 10 광업상 ○70. 11 당 책임비서 ○69. 10 광업상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5 강원도 당 책임비서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77. 12 중앙인민위 위원, 최고인민회의의 예산심의위 위원장 ○80. 10 당 비서국 비서 ○81. 9 정무원 부총리 겸 채취공업위 위원장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6. 2 당 정치국 후보위원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87. 1 함남도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90. 4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90. 5 중앙인민위 위원 ○90. 10 정무원 부총리 ○현재 당 중앙위 위원, 당 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의 제9기대의원

황장엽(黃長燁·男) 1925 咸南출생 ○소련유학 ○54. 10 김일성대학 철학강좌장 ○58 과학원 사회과학부 문 위원 ○59. 12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 ○62. 10 최고인민회의 제3기대의원 ○64. 10 내각 참사관 ○65. 6 김일성대학 총장 ○70. 11 당 중앙위 위원 ○72. 12 최고인민회의 제5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의 의장,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의장 ○77. 11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80. 11 당 비서국 비서 ○82. 2 최고인민회의 제7기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82. 4 김일성훈장 수훈 ○83.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해임 ○86. 11 최고인민회의 제8기대의원 ○90. 4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현재 당 중앙위 위원, 조평통 부위원장, 당 비서국 비서(사상), 최고인민회의 제9기대의원

## 북한개요

---

인 쇄 : 1990년 12월 24일

발 행 : 1990년 12월 31일

발행처 : 통 일 원

제작처 : 문 학 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TEL. 720-2144, 738-7776

---

\* 비 매 품

